

KOREAN ARCHITECT

月刊 建築士 1994년 2월호
통권 298호 (매월 15일 발행)
발행 · 대한건축사협회
137-07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03-55
등록 · 1967년 3월 23일
등록번호 · (서)라-26
1985년 12월 31일 제3종우편물
(나)급인가

建築士

The Journal of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February 1994



칼럼
건축사의 자부심을 포기하지 말자/배동권

일하며 생각하며
지방 건축계의 활성화 노력을.../신삼호

회원작품
서울대학교 박물관/(주)서울건축
연세재단 세브란스 빌딩/송기덕
한국투자신탁 사옥/최경일+홍영희

|충언+김광섭
물관/오기수
(주)정림건축

반포 페밀리 아파트/이강주+이창우

기고
무엇이 바뀌어야 하는가? (1)/이근창

특집
건축설계시장 개방에 따른 우리 건축계의 현실과 대처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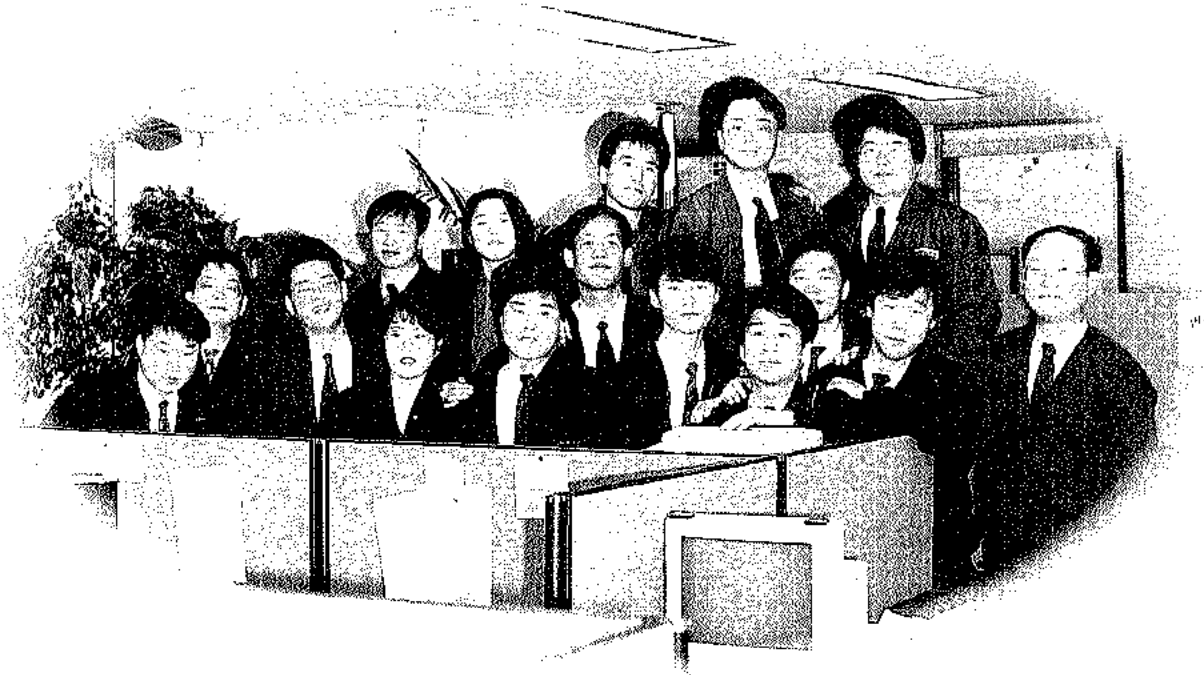
현상설계
대전 건축사회관, 강서구 의회 의사당, 부천시 실내 체육관

자료
건축사업무 및 보수기준
건축사 세무의 이론과 실제(1)

J
540.5
대 92 7
298c. 4

2

FEBRUARY



신뢰로 자라납니다.

수많은 컴퓨터회사 중에서
건축설계의 전문적인 지식과 고도의 컴퓨터 활용기술을
갖춘 전문회사만이 믿을수 있는 건축CAD의 TOTAL SOLUTION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국내 최고의 건축CAD전문회사인 (주)건캐드
그간 250여개사의 성공적인 건축CAD시스템 구축한 풍부한 경험과 차원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최신의 정보와 지속적인 기술을 지원하여
고객의 실질적인 만족과 이익을 제공합니다.

성공을 향한 신뢰의 선택 (주)건캐드!

하드웨어



- 최상의 고성능 컴퓨터 486 SYSTEM
- 저렴하고 다양한 CAD SYSTEM 보유
- 완벽한 호환성과 뛰어난 확장성
- LAN, PLOTTERS, PRINTER, MONITOR 등

소프트웨어



- 최고의 건축CAD설계지원시스템
CADPOWER Ver 6.0
- 건축설계지원시스템 MECADPOWER
- AutoCAD R11, R12, 전산율 등 판매

CAD기술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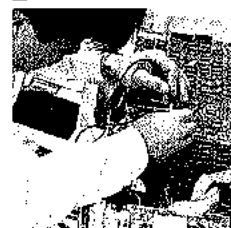
- 효율적인 건축CAD활용 기술연구
- 건축CAD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
- 건축설계전산화 프로그램 운영
- 건축CAD 3D 맵핑, 모델링 용역

건축CAD교육센터



- 건축설계실무에 비합리적인 교육
- 체계적인 단기·중기 건축CAD교육
- 다양한 시간대의 전문과정 개설
- 건축CAD실무지 망성 및 취업알선

아프터서비스



- 신뢰, 성실의 애프터서비스 제공
- 24시간 신속한 서비스 체계구축
- 고객 업무 라인의 연속성 유지체계
- 실무자의 시스템 관리 능력 교육

건축 CAD 전문회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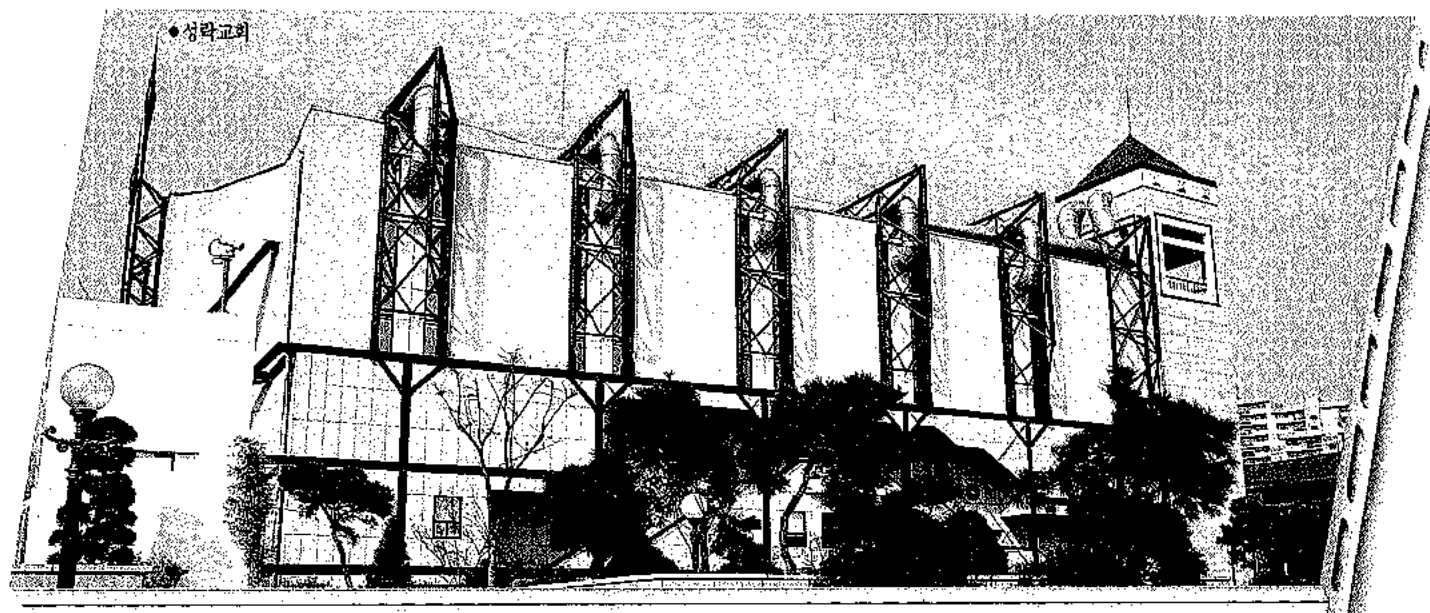
주식회사 건캐드

서울시 서초구 서초1동 1444-2 풍원빌딩 4층

대표전화 : 594-6490, FAX 587-1803

CAD연구소 : 풍원빌딩 5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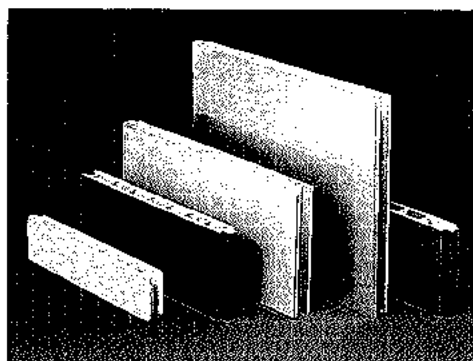
전화 : 590-1496, 1437



●성락교회



미려한 건축물에는 벽산 베이스패널 입니다



시멘트를 주원료로 진공 압출성형한 벽산 베이스패널은 경량의 조립식 패널로서 제품 내부에 이상적인 공간이 형성되어 있어 강도가 높고, 차음, 내화, 단열성이 우수한 내구성 자재입니다.

- 경량성 M² 당 무게가 50kg 으로 건물의 구조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 내구성 내동결 융해성이 우수하고 강도가 높아 영구적입니다.
- 안정성 고압 증기 양생하므로 시공후 수축, 팽창, 뒤틀림이 전혀 없습니다.
- 의장성 건물의 외관에 따라 패널의 표면을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 마감성 타일, 본타일, 페인트 등 자유롭게 시공이 가능합니다.
- 내진성 이상적인 조립방법에 의해 시공되므로 지진에 의한 충격을 흡수합니다.

용도/건축물의 외벽·칸막이·계단·도로변의 차음벽

치밀한 고강도 압출패널

벽산 베이스패널

●제품·시공문의상담 (02)260-8250~8 특수영업부

앞서는 기술, 앞서는 품질



숨은 역사 20년 —

No.1을 추구하는 무대기계 전문회사입니다.



설계·시공해 왔으며, 그 실적과 경험을 인정받아 명실공히
무대 메카니즘의 최정상 위치를 꾸준히 지켜가고
있습니다.

1969년 국내 최초로
무대기계에 첫발을
내디딘 대아공전
주식회사는 선진기술의
도입과 독자적 연구
개발을 통하여 국내 주요
대형 무대를 독점하여

주요 공사실적

- | | | |
|----------|---------------|-----------|
| 새중문화회관 | 유관순기념관 | 안양문화예술회관 |
| 국립극장 | 충현교회 본당 | 중앙대예술대학강당 |
| 웨라문화거점 | 문화예술진흥원(문예회관) | 새문나루 예술극장 |
| 롯데호텔 | 리틀엔젤스 전용공연장 | 육군박물관 |
| 부산문화예술회관 | 서울·제주 신라호텔 | 대전시민회관 |
| 이화여대강당 | 수안보와이키키관광호텔 | 부곡하와이 등 |

주요생산품목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TAGE & STUDIO BASIC EQUIPMENT SYSTEMS — THEATRE STAGE — TELEVISION STUDIO — OPERA HOUSE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ONFERENCE ROOM — SCHOOL STAGE ● DESIGN & ENGINEERING ● MANUFACTURE ● TURN-KEY PROJECTS |
|--|---|



大雅互電株式會社
DAE AH ENGINEERING & ELECTRONIC CO., LTD.

本社: 서울특별시 麻浦区 城山洞 108-1
TEL. (02) 332-4500(代表), (02) 335-4642(代表)
FAX. (02) 332-2751

工場: 京畿道 金海郡 金海邑 大亭面 山209-1 松麻里 山209-1
TEL. (0341) 987-4184, (02) 632-0216

입고는 즉시 출고는 40초

삼성셔틀파킹

삼성이 만든 차세대 주차설비, 셔틀파킹

1978년 국내최초로 기계식 입체주차설비를 제작 설치한 삼성이
드디어 미래형 주차설비인 셔틀파킹을 선보입니다.

연속적인 동시 입출고

삼성셔틀파킹의 가장 큰 특징은 입고실과 출고실을
분리 운영한다는 점입니다.
입출고시에 다음 팔레트가 동시교대로 준비되므로
입출고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됩니다.

팔레트 동시교대로 대기시간 제로

셔틀파킹의 최대 비밀은 팔레트 교환시스템에
있습니다. 자동차가 팔레트에 실려 고속 승강기로
올라갈 때, 다음 차를 위한 빈 팔레트가 동시교대로
입고실에 대기하므로 종래시스템에서 문제시되던
입고대기시간을 완전히 없앴습니다.

분당 300m의 고속이동대차

셔틀파킹 시스템의 고속성능 발휘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고속이동대차는 1분에 약 300m의 속도로
주행하며, 정확한 정지가능을 갖고 있습니다.

기계식 주차장의 5배 공간효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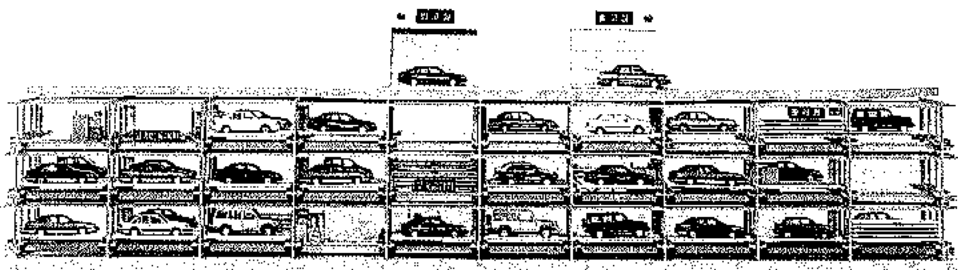
셔틀파킹의 한 유니트(Unit)는 3단 기준으로 평균
138대까지 주차할 수 있습니다. 주차선반은 최고
6단까지 설치가능하고, 유니트를 병렬로 연결했을
경우 대규모 주차도 가능합니다. 바닥면적 대비 설비
가동효율과 주차공간활용면에서 종래의 기계식
주차장에 비해서 5배 이상 효율적입니다.

분당 120m의 고속 승강기

자동차가 팔레트에 실려 입고되면 고속 승강기를
통해 지시된 층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삼성 셔틀파킹은 1분에 120m를 승강하는 고속
승강기를 내장, 기존 시스템보다 훨씬 신속하게
자동차를 원하는 층으로 이동시킵니다.

문열림 사고방지 시스템 채택

기계식 주차설비에서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자동차
문열림 사고—이러한 사고는 자동차의 파손은 물론,
전체 주차시스템의 밸런스를 깎니다. 셔틀파킹은
팔레트에 자동차의 문열림 방지장치가 부착되어
있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합니다.



세계속에 한국을 펼쳐가는 —

SAMSUNG

삼성중공업



패널의 품질 - 중간단열재가 결정한다.

아이소핑크가 중간단열재로 사용되는 핑크월 - 조립식 단열패널의 새로운 시대를 리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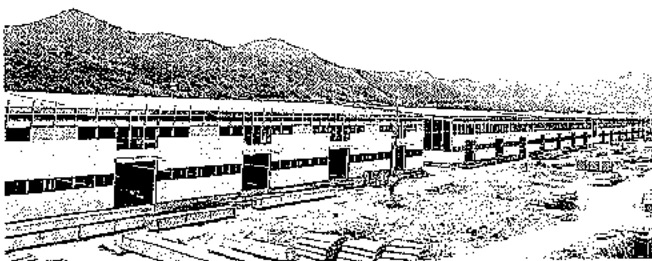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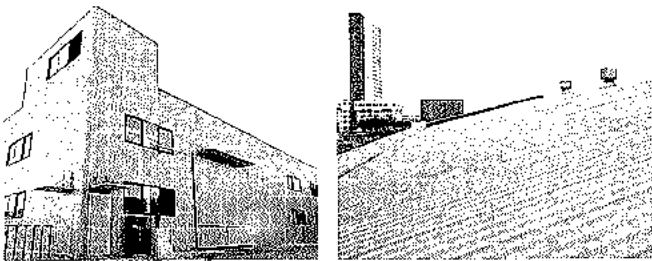
핑크월은 세계 최고의 단열재 메이커인 미국 유씨 언더스트리의 하이드로백 공법으로 생산하는 최고급 단열재 아이소핑크를 중간단열재로 사용하여 건축자재 톱메이커인 벽산의 기술로 생산하는 고품질 조립식 단열패널입니다.

핑크월의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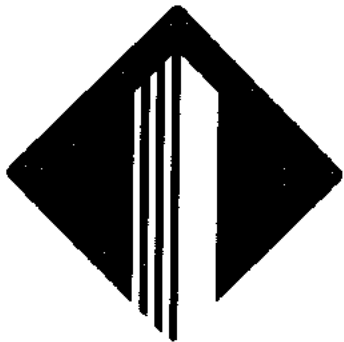
- 냉·난방비용을 대폭 절감해 줍니다.
- 견고한 구조강도에 비해 가볍습니다.
- 공사기간이 짧습니다.
- 방수·방습·방음효과가 있습니다.
- 모든 면에서 경제성이 뛰어납니다.

핑크월

패널시스템



새로운 이름을 가졌습니다
새로운 의지를 다졌습니다



연합인슈킨실

더욱 큰 도약을 위해!

10년간 아꼈던 대명건업이란 이름을 뒤로 하고, 1993년 12월 15일 연합인슈킨실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가졌습니다.

끊임없는 자기혁신과 도전으로, 급변하는 미래를 향해 나아갈 연합인슈킨실 -

시공 건축물의 A/S 제도, 공정준수 운영 등의 선진 건축 개념의 도입과, 신건축공법 개발을 통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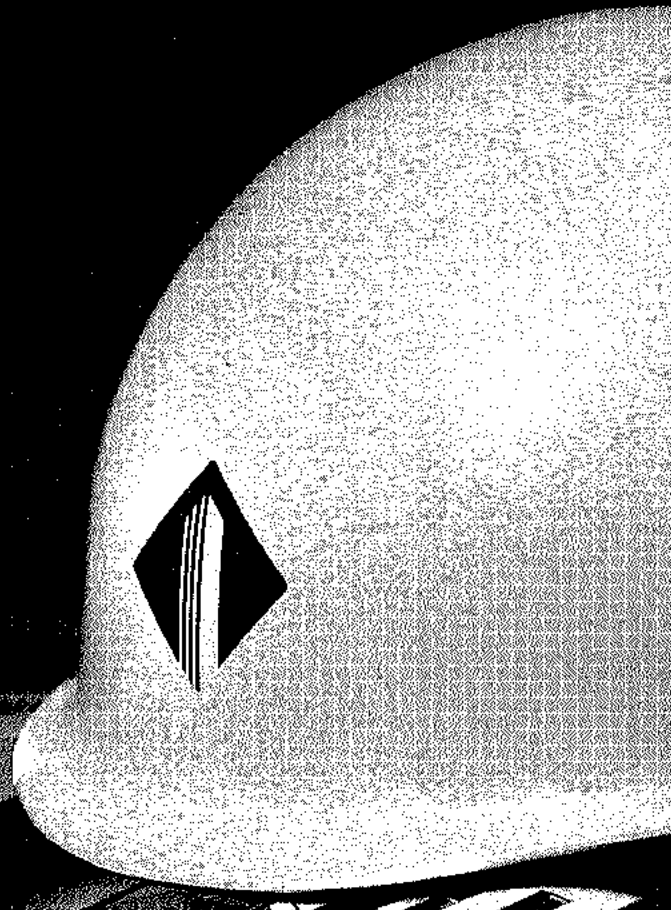
보다 앞선 시공력으로 전문 시공기업으로서의 입지를 더욱 다져 나갈 것입니다.

새로워진 이름과 새로운 각오로 새롭게 도약할, 그 힘찬 의지를 지켜봐 주십시오.



연합인슈킨실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3-6 연합인슈 빌딩
TEL : (02)222-7000 FAX : (02)553-18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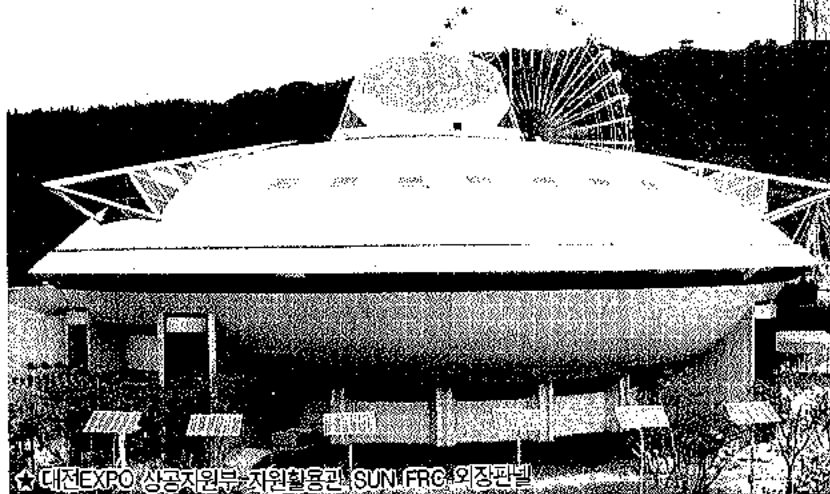




하이테크 첨단 파인세라믹스 SUN FRC

SUN F.R.C 장기시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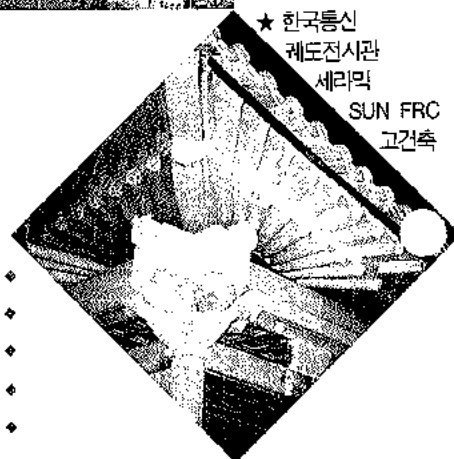
항목		시험결과
내연성(aA법)		불연성
인장강도(kg/cm ²)		254
압축강도(kg/cm ²)		663
휨강도(kg/cm ²)		407
충격강도(kg cm/cm ² , Charpy)		9.0
밀도(g/cm ³)		1.762
흡수율(%)		0.01
경도(Durometer, H ₆ D)		93
내열성(100°C, 2hr)		이상없음
내약품성	o 10% 황산	이상없음
	o 10% 염산	이상없음
	o 10% 질산	이상없음
	o 10% 수산화나트륨	이상없음
	o 95% 메틸 알콜	이상없음



★대전EXPO 상공지원부 지원철용관 SUN FRC 외장판넬



★SUN FRC 지구관 세라믹 영상인공폭포



★한국통신
레도전시관
세라믹
SUN FRC
고건축

1. SUN F.R.C 기술설명서

1. SUN FRC는 조형성이 뛰어나고 어떤 곡면이나 크기형태(디자인)의 제작이 자유로우며 1m/m~200m/m 두께로 제작이 가능한 파인 세라믹스입니다.

2. SUN FRC는 콘크리트에 비해 낮은 물의 계수에서 인장강도와 휨강도가 10배나 높습니다. 경화는 낮은 온도에서도 뛰어난 유연성 때문에 효과가 큼니다. 인장강도 시험결과 오랜 시간에도 일정성을 유지하고 100년에 준하는 가속시험결과 외부노출에도 이상이 없습니다. 용력도가 뛰어나 어떤 형태의 변화에도 다양성있게 사용할 수 있고 가볍고 강도가 높아 300m/m~300m/m~3m/m의 평균무게가 450g 정도이어서 대략 FRP와 비슷합니다.

3. 온도 팽창계수는 강철과 비슷하게 낮은 F에서 inch당 7~10⁻⁶입니다. 충격에 강하며 하중에 의한 손상은 그 부분뿐이고 균열이 없어 보수가 용이합니다. 일반마모에는 물론 연마기에 의한 기계적 마모에도 저항성이 강하고 필요에 따라 페인트 등을 표면에 처리할 수 있고 판넬자체에 원하는 색상을 넣어 제작할 수도 있습니다.

4. SUN FRC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완전 불연성이며 시간경과에 따른 감기상각이 없는 고신장력을 갖고 있는 무공해 첨단 신소재인 것입니다. 또한 현장 접합 시공시 전기용접, 볼트 등으로 작업이 용이하고 보온, 방수, 방음, 방사선 차폐, 낙뢰부전도 등에 효과가 커서 일반 건물내외 장제와 고건축 문화재 복원 등 조형물제작에 적당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 가격: 물가자료 75쪽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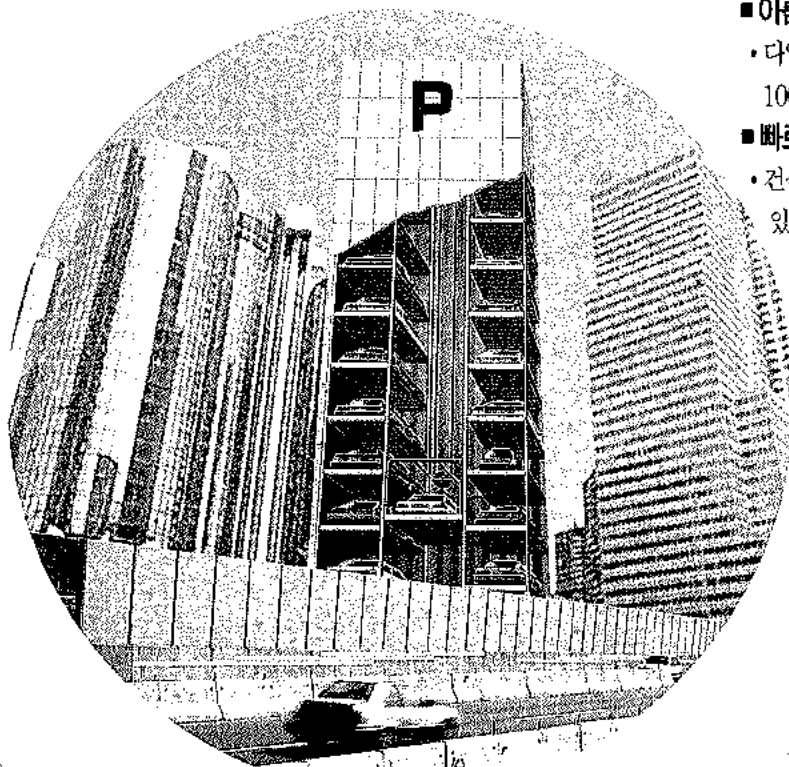
콘크리트 보다 3배 단단한 시멘트 압출 판넬

신소재의 탁월한 특성으로 선진국에서는 이미 70년대부터 사용되어온 에이스판넬 -
(주)서일건영이 에이스 판넬의 국내생산으로 건축 문화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납품, 시공 실적으로 그 장점이 입증된 서일 에이스 판넬 -
이제 판넬재라면 서일 에이스판넬을 주목해 주십시오.

서일 에이스판넬

서일 에이스판넬의 특징점

- 얇고 단단하다.
 - 中空구조이므로 경량이며 방음, 단열효과가 뛰어납니다.
 - 벽의 두께가 1/3로 줄어 보다 넓은 실내공간이 확보됩니다.
- 아름다운 모양을 자유롭게 표현한다.
 - 다양한 표면무늬의 연출이 가능하여 건축주의 취향을 100% 만족시킵니다.
- 빠르게, 경제적으로 시공한다.
 - 건식공법이므로 계절에 관계없이 경제적으로 시공 할 수 있습니다.



서일 에이스판넬의 용도

- 고층빌딩, 아파트의 외벽재 및 바닥재
- 산업프랜트 및 공장의 내·외벽재
- 조립식 농촌주택의 내·외벽재
- 도로 및 철도변의 방음벽
- 주차 타워의 외벽재
- 지하 이중벽

■ ACE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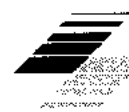
(Autoclaved Cement Extrusion)
시멘트 복합소재를 진공압출 한 후,
고온고압의 증기 양생에 의해
완성하는 건축자재 제조분야의
新기술을 뜻합니다.

ACE 공법에 의해 만들어지는 판넬은
내·외벽재로 적합한 고강도의 전혀
새로운 물성을 보유하게 됩니다.



■ 대리점 상담문의:

02) 552-0945/ 영업부



주식회사 서일건영

본사: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2-28 선릉B/D (代) 552-0945
공장: 충북 음성군 대소면 부운리 252-3 (0446) 877-2916

● 계열사 제품: 서일 암스트롱, 주일 세라멘트 문·창틀, 주일 레미콘, 주일 열수축류브

發行人: 吳雄錦
編輯企劃: 編纂委員會
委員長: 李俊憲
委員: 吳龍夫, 李柱勳, 金相景, 梁海潤, 崔泰容, 李 靚, 金宗植
編輯・取材: 弘報部/梁元錫, 鄭孝相, 李洪植, 趙漢國
發行處: 大韓建築士協會
住所: 서울特別市 瑞草區 瑞草洞 1603-55
郵便番號: 137-070
電話: 代表 (02)581-5711, 581-5712 ~14
팩시밀리: (02)586-8823
登錄番號: 서울 라-26(月刊)
登 錄: 1967年 3月 23日
U. D. C.: 69/72(054-2): 0612(519)
印刷人: 李鳳秀/正文社

칼럼

건축사의 자부심을 포기하지 말자/裴東權 12

알아라 생각하라

지방 건축계의 활성화 노력을.../申三鎬 14

94년도 각 위원회 위원장 인사(1)

회원작품

서울대학교 박물관/(주)서울건축 18

연세재단 세브란스 빌딩/宋基德 24

한국투자신탁 사옥/崔慶一+洪英熙 30

신문대학교/李忠彦+金光燮 36

청도 농기구 박물관/吳基守 42

전북은행 본점/(주)정림건축 46

반포 패밀리아파트/李康周+李昶雨 50

계획작품

천관사(千寬寺)/金寬錫 54

소재처

기산리 주택/卞鍾睦 56

기 고

무엇이 바뀌어야 하는가? (1)/李根昌 58

특 집

건축설계시장 개방에 따른 우리 건축계의 현실과 대처방안
成仁洙/金昶一/朴舒弘/姜基世/金知德/金自浩/將應在/
李必勳/金宇成/崔勝元 62

현상설계

대전건축사회관 66

강서구의회 의사당 90

부천시 실내체육관 94

자 료

건축사업무 및 보수기준 100

건축사 세무의 이론과 실제(1) 105

법 률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중 개정령, 주택건설촉진법중 개정법률,
건설업법중 개정법률, 소방법중 개정법률, 소음·진동규제법중 개정법률,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중 개정법률 110

통 계

1993년 11월분 전국도서 신고현황 134

협약소식

136



표지사진: 선문대학교
(설계/이충언+김광섭)

전국시도건축사회 및 건축상담실 안내

■ 서울특별시건축사회/서울특별시서초구서초동1633-55, 581-5715~48 · 서대문분회/서대문구연희동169-25, 333-6411 · 관악분회/관악구신림동1422-17, 882-6744 · 도봉분회/도봉구수성동191-13, 903-3425 · 영등포분회/영등포구당산37181, 632-2143 · 강동분회/강동구성내동317-4, 484-6840 · 강서분회/강서구화곡동1105-05, 604-7168 · 성동분회/성동구구의동252-15, 446-5244 · 동대문분회/동대문구신설동101-7, 923-0158 · 종로분회/종로구수성동46-18, 735-0905 · 마포분회/마포구성산동275-1, 333-8251 · 송파분회/송파구송파50-12, 423-9158 · 중구분회/중구로2가49-11, 279-1415 · 용산분회/용산구원효로1가129-22, 717-6607 · 서초분회/서초구서초1동1623-1, 552-8468 · 은평분회/은평구녹번동79-32, 388-1486 · 동작분회/동작구사당동206-6, 815-3026 · 강남분회/강남구논현동242-30, 517-3071 · 노원분회/노원구상계1동707-4, 933-8076 · 양천분회/양천구신정동1027-9, 653-2892 · 중랑분회/중랑구민곡동166-46, 437-7356 · 성북분회/성북구상선57110, 922-5117 · 구로분회/구로구구로동66-4, 852-2275
■ 부산직할시건축사회/부산시진구법천동847-18, 28 (051)634-4973~9
■ 대구직할시건축사회/대구직할시수성구범어동3711-8, (053)753-8980~5
■ 인천직할시건축사회/인천직할시남동구간석1동558-1, (032)437-3381~4
■ 광주직할시건축사회/광주직할시북구종로동694-10, (062)521-0025~6
■ 대전직할시건축사회/대전직할시중구대흥동487-1, (042)255-9350~4
■ 경기도건축사회/경기도수원시매산로371124-5, (031)47-6129~30 · 직할분회/경기도수원시매산로371124-5, (031)43-6662, 7072 · 안양분회/안양시안양동523-5, (0343)49-2698 · 부천분회/부천시중구원미동88-1, (032)664-1554 · 성남분회/성남시수정구태평동3407, (0342)755-5445 · 의정부분회/의정부시의정부동182, (031)876-0458 · 송탄분회/송탄시서경동343-22, (0338)666-6153 · 고양분회/고양시관원당주교38동16동10, (0344)63-8902 · 구리분회/구리시수택동409-2, (0346)63-2337 · 이천분회/이천시이천읍중리192-1, (0338)635-0545 · 광명분회/광명시철산동220-2, (02)694-5845 · 안산분회/안산시고잔동536-1, (0345)80-9130 · 시흥분회/(032)694-4121
■ 강원도건축사회/강원도춘천시옥천동39-5, (0361)54-2442 · 원주분회/원주시중앙동60-54, (0371)43-7290 · 강릉분회/강릉시정내동6-14,

COLUMN

We don't Have to Give up the Pride of Registered Architects / Bae, Dong-Kweon 12

ESSAY

It is necessary to Activate Local Architecture / Shin, Sam-Ho 14

16

WORKS

Seoul National University Museum / Seoul Architects & Engineers 18

Yonsei Jaedan Severance Building / Song, Ki-Duk 24

Korea Investment Trust Ltd. / Choi, Kyung-Il & Hong, Young-Hee 30

Sunmoon University / Lee, Chung-Eon & Kim, Kwang-Sub 36

Cheong do Agricultural a Museum / Oh, Ki-Soo 42

Cheonbuk Bank Head office / Junglim Architects & Engineers 46

Banpo Family Apartment / Lee, Kang-Joo & Lee, Chang-Woo 50

PROCESS WORKS

Chuncheon Temple / Kim, Kwun-Suk 54

SKETCH

Kisanri Residence / Byun, Jong-Mok 56

FEATURE

What Should Be Changed? (1) / Lee, Keun-Chang 58

ISSUE

UR(Attendant on Architecture Design Market Open)-Our Actuality and Countermeasure

Seong, In-Soo / Kim, Chang-Il / Park, Seo-Hong / Kang, Ki-Se / Kim, Chi-Dok /

Kim, Cha-Ho / Chang, Eung-Jae / Kim, Woo-Sung / Lee, Pil-Hoon / Choi, Seung-Won 62

COMPETITION

KIRA, Taejeon Branch Building 86

Kangseo - gu Assembly Hall 90

Pucheon - shi Gymnasium 94

MATERIALS

Architect's Business and Recompense Rule 100

Architect's Tax Affairs Theory and Practice (1) 1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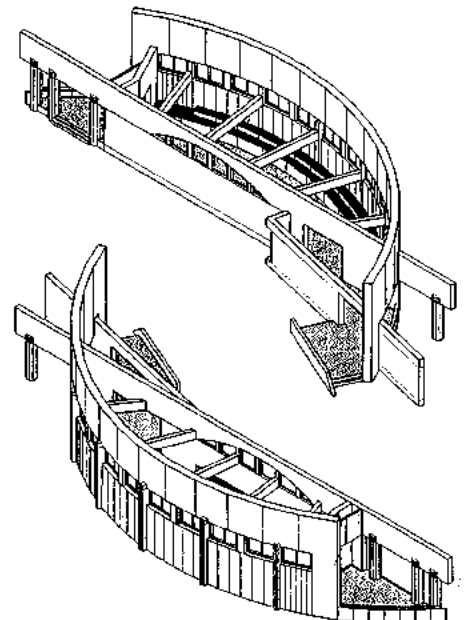
LAW & ORDINANCES 110

STATISTICS 134

KIRA NEWS 136

- (0391)41-7371 · 송초분회/송초시동명동466-63, (0392)33-5081 · 삼척분회/삼척시남양동55-43, (0394)31-8708 · 영월분회/영월군영월읍영월1리960-12, (0373)374-2659
- 충청북도건축사회/충청북도청주시북문로37-87-3, (0431)56-2752, 53-7342 · 충주분회/충주시역전동673-1, (0441)847-3082 · 제천분회/제천시외동8-8, (0443)43-6253 · 옥천분회/옥천군옥천읍삼당리222-206, (0475)33-3502
- 충청남도건축사회/대전직할시중구대흥동452-2, (042)256-4088 · 천안분회/천안시문화동160-1, (0417)551-4551 · 홍성분회/홍성군홍성읍오른리239-1, (0541)32-2755 · 부여분회/부여군부여읍동남리703-1, (0463)835-2217 · 대천분회/대천시대천동197-10, (0452)34-3367 · 서산/ (0455)64-8500
- 전라북도건축사회/전라북도전주시서노송동635-5(대흥빌딩506), (0652)87-6007~8 · 이리분회/이리시남중동1가77-22, (0653)52-3796 · 군산분회/군산시신창동35-4, (0654)43-3816 · 남원분회/남원시정동106-2, (0671)32-5000
- 전라남도건축사회/광주직할시사구화정동783-238(추선회관), (062)346-7567, 33-9944 · 목포분회/목포시대안동1, (0631)72-3349 · 순천분회/순천시정전동51-11(0661)743-2457 · 여수분회/여수시관문동441번지, (0652)652-7023
- 경상북도건축사회/대구직할시중구신천4동338-1, (053)742-8317~8 · 포항분회/포항시죽도동43-8, (0562)44-6029, 46-1664 · 경주분회/경주시동원동801-4, (0561)2-4710 · 구미분회/구미시송정동34-3, (0546)51-1537~8 · 안동분회/안동시서부동157-4, (0571)54-5703 · 김천분회/김천시남산동24-2, (0547)434-2541 · 영주분회/영주시하영3동341-12, (0572)34-5560 · 정선분회/정선시중앙동280-3, (0581)53-6677 · 상주분회/상주시남성동36-7, (0582)32-5868 · 경산분회/경산시중앙동859-5, (053)812-6721 · 달성분회/달성군화원읍천내리113-3, (053)634-6336 · 영천분회/영천시상구동26-10, (0536)34-8256
- 경상남도건축사회/경상남도마산시중앙동37-47, (0551)46-4530~1 · 울산분회/울산시남구신정동585-6, (0522)74-8836 · 진주분회/진주시본성동7-20, (0591)745-6403 · 충무분회/충주시서호동163-18, (0557)645-7420 · 김해분회/김해시부원동611-1, (0525)35-5692 · 밀양분회/밀양시내일동392-1, (0527)355-4848 · 거창분회/거창군거창읍중앙리274-3, (0598)43-6090 · 양산분회/양산군양산읍남부동457-19, (0523)84-3050 · 거제분회/거제군산영읍고현리139-2, (0558)635-3432 · 삼천포분회/삼천포시동금동91-6, (0693)33-9779
- 제주도건축사회/제주도제주시2도리1200-6, (064)52-3248 · 서귀포분회/서귀포시서귀동299-6, (064)62-2233

Publisher : Oh, Woong-Suk
Editor : Editorial Committee
Chairman : Lee, Chun-Heon
Member : Oh, Yong-Boo / Lee, Joo-Hoon /
Kim, Sang-Kyeong / Yang, Hae-Yoon
/ Choi, Tae-Yong / Lee, Bok /
Kim, Chong-Shik
Assistant Editor : Public Relations Department
Publishing Office :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Address : 1603-55 Seocho-dong, Seocho-gu,
Seoul Korea
Zip Code : 137-070
TEL : (02)581-5711, 581-5712~4
FAX : (02)586-8823
Registered Number : Seol Ra-26
Registered Date : March 1967
U.D.C. : 69/72(054-2) : 0612(519)
Printer : Lee, Bong-Soo(Cheong Moon Printing
Co.)



건축사의 자부심을 포기하지 말자

We don't Have to Give up the Pride of Registered Architects

裴東權/경남건축사회회장, 전미건축

by Bae, Dong-Kweon

최상 최고의 삶의 질을 추구하는 인간의 무한 욕망중 주거에 대한 비중이 점차 높아짐에 따라 건축사의 사명감 또한 비례해질 수밖에 없는 일이다. 적자생존의 치열한 생존 경쟁 속에서 그야말로 전쟁하듯이 살아가는 인생의 목표가 남보다 더 잘먹고, 더 잘입고 하는 바람은 이제 어느정도 노력만 하면 욕구 충족이 가능하고, 일반화 됐지만, 어느 누구보다도 더 좋은 집을 소유하기 위하여, 또한 부의 축적 수단으로 나, 우리만의 이기심에 찬 인간의 최후의 욕망이 바뀌고 있다.

남의 욕망을 채워주고 꿈을 현실화해 주는 직업이 바로 우리 건축사가 아닌가 싶다. 이런 직업이 인기직업 서열에 끼지도 못하고, 전망의 대상은 커녕 불신과 매도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가? 우리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곰곰히 생각해 보자. 우리들 스스로가 긍지를 가지지 못하고 사명감을 망각한 탓은 아닌지, 우리의 위상은 우리가 창조해야지 남들이 만들어 주지 않는다는 냉혹한 현실을 잊지 말아야 할 일이다. 아직도 우리사회 모든 분야의 의식구조가 경제 우월론에 따라 가진자의 사고방식과 이기주의의 횡포가 성실한 사람이 살사는 사회의 정의사회 구현이 요원한 상황에서 온갖 행정규제의 모든 책임을 행정 편의주의에 따라 변형하는 울가미에 묶여 차라리 감내하고 마는 입장이고, 실권없는 건축사의 미약한 설득력 만으로는 대단히 힘겨운 일임에 틀림이 없다. 그래도 우리 건축사는 생활 예술인의 창조자로서 최고 직업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으로 신용을 담보로 하여 건축주의 이기주의를 꺾고 설득할 수 있는 기술자가 먼저 되어야 한다.

오늘날 수많은 인기직업 중에서 존경은 못받더라도 세인들의 비난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전망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의사와 변호사라는 대표 직업과 우리 건축사라는 직업을 사회통념상의 관점에서 비교해 보자.

인간은 가장 강한척 하면서도 위기 상황에 처하면 나약해지고 곤경에 빠지면 미련하리 만큼 순수해 지기도 하지만 조금만 여유가 있다 싶으면 우월감이 발작하여

안하무인격이 되는 습성이 있나 보다. 병들어 죽을 지경에 처하다 보면 모든 것 소용없고, 그저 선생님 낮게만 해주시고 살려만 주십시오. 뭐든지 다 들어 드리겠습니다. 병들어 나약한 정상인이 아닌 애원하는 환자들이 주 고객인 의사는 위대해 보이고 존경스러워 보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니 고분고분 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

어쩌다 나만 잘먹고 잘살아 보겠다는 본능의 과욕때문에 순간의 실수로 범법자의 신세가 된 죄인이나 사기당한 억울한 신세의 다급한 순간의 짜증스런 고달픈 고민자들의 소망은 오직 벌금형이라도 좋으니 풀려나게만 해달라고 매달리는 입장이고 보면 변호사의 존재는 구세주일 수밖에 없지 않은가?

그런가 하면 우리의 상대 고객들은 어떤 분들인가? 자수성가 해서 돈벌어 최후의 꿈을 이루고자 하는 거만하고 자신 만만한 비교적 성공한 사람이라고 자처하고 목에 힘주는 건축주가 아닌가. 여유가 있고 돈이라는 위력의 칼자루를 쥐고 있으니 어지간해서 전문가의 조언을 들어 주려고 하질 않는다. 내돈 가지고 내맘대로 건축하겠다는데 건축법이 뭐고 남의 입장은 안중에도 없다. 혹시 건축사가 시키는 대로 하면 재산손실이라도 있을까 해서인지 남의 말을 믿으려 하지않고 피해의식에 젖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마지막 전재산을 투자하여 평소의 한과 꿈을 이루는 순간이니 오죽하라! 그 기분 우리가 모를 리가 있겠는가. 그러니 더더욱 우리 건축사는 책임을 통감하고 실수하지 않게 후회없는 좋은 집을 짓게하기 위해 내집 짓는 기분으로 설득하고 온갖 아이디어를 동원하여 수십가지 계획을 놓고 아양까지 떨어가며 애교도 부려본다. 다차원의 창작성 구상을 그림 몇장으로 설명 할래야 비전문가의 입장에서 보면 난해하고 납득이 안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지금까지 그런 좋은 집에 살아본 경험 없는 사람으로서는 이해가 안가는 것도 당연한 일이다. 그래서 각 분야마다 전문가가 있지 않은가? 모르면 전문가에게 맡기고 일임해서 잘해 달라는 부탁만큼 어렵고

“

28년동안 국가정책의 지원이나 보조없는 자생단체로서 협회를 구심점으로 혼연 일체가 되어 민족문화의 창조자로서 수십차례의 격변기 속에서도 열악한 국민 주거환경의 개선은 물론, 국가 건설의 근대화 사업에 묵묵히 헌신적으로 참여하여 오늘과 같은 괄목할만한 발전과 번영의 견인차 역할을 하였음에도 어느 누구 건축사의 역할을 행해주는 사람하나 없는 냉혹한 현실을 인식하고, 건축사의 위상정립을 재고해야할 시점이라고 본다. 누가 뭐라 해도 우리 건축사는 건축사협회를 중심으로 정직한 신념을 밀천으로 지역사회 번영의 길잡이가 되어 파괴된 생활 환경을 개량하는 선구자적 봉사자가 되어야한다.

”

현명한 주문인 것을 왜 모르는가? 언제 건축사아닌 건축주가 되어 보는데 우리 건축사의 소박한 꿈이 아닌가? 하도 안타깝고 답답해서 내 계획안대로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건축주가 되는 길밖에 없으니 말이다.

몸이 아파 병들었을 때 의사의 진단을 무시하고 거역할 수 있는가. 의료수가만큼은 선불하고 청구하는 대로지 깎아 달라고 감히 누가 때를 쓸것인가. 또한 송사에서 패소를 한다해도 변호사에게 환불요구는 커녕 항의라도 할 수 있던가. 패소하면 법이 그러하니 당연한 것이고, 승소하면 변호사 재주와 실력 때문이니 사례금까지 청구하는 입장이니 협정요율이 얼마인지 감히 물어볼 엄두도 못내고 10분상담에 얼마라는 상담료 요금표를 게시해 놓고 답답해서 몇마디 법률상식 물어보는데 상담료까지 요구해도 당연지사라 받아들이는 순진한 고객들에 비하면 우리 건축주는 차원이 높고 통이커서 좋긴하다.

한건 수주하기 위해 손발이 닳도록 뛰어 다니고 온갖 재주를 동원하여 비위를 맞추고 수만가지 규제조항 찾아 법망의 제한속에서 최대한의 건축주 영리수단을 강구하여 밤새워 만든 여러가지 계획안을 입이 아프도록 설명해 본들 한가지 비위만 안맞으면 휴지가 되고만다. 각고의 노력끝에 채택되면 설계비 깎아먹는건 이쯤이 나서 할라거든 하고 말려면 말아라 하는 식이다. 여기저기 경쟁부처 선택에서 제외되면 말한마디 없이 그것으로 끝나 버리니 몇마디 상담해 주고 상담료까지 챙기는 그런 직업의 순진한 고객이 존경스러울 뿐이다.

이런 건축주를 내 고객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건축사는 만물박사가 되어 박식해야 하고, 사람을 다스릴 줄 아는 사교성이 뛰어나야 하고, 믿음을 줄 수 있는 겸손한 생활인이 되어야 하며, 한건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건축사의 품위에 저해되는 행위는 결단코 자제할 줄 아는 건축사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요즘 듣기 좋은 유행가 “애모”의 노래도 자꾸 들으니 지겹던데 하물며 직업에서 늘상 대하는 상대가 병든자,

노약자, 도둑놈, 범법자의 쨍그린 얼굴의 어려움에 치한 짜증스런 사람들의 위기심리를 이용하여 편하게 돈버는 직업보다는 즐겁고 여유있고 적어도 경제적으로는 출세한 사람만 상대하는 우리의 직업인 건축사가 선망의 대상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의사, 변호사가 그렇게해서 돈벌면 결국 찾게되는 곳은 우리 설계사무소를 찾는 일이 아닌가 싶다. 그래서 우리의 고객이 되어 마지막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말이다. 환희에 찬 여유 만만한 사람들만이 고객이 될 수 있는 우리 건축사의 직업이야말로 얼마나 신나고 즐거운 직업인가?

그런데도 이렇게 좋은 직업을 우리 스스로가 격하시키고 국가에서 인가해 준 보수요율하나 제대로 받을 줄 모르고, 서로 실력경쟁은 하지 않고 가격 경쟁으로 남이 애써서 계획설계까지 해놓은 것을 하등의 가격없이 가로채는 일이 허다하지 않은가?

자존심은 포기하고 건축사라는 호칭이 부끄러워 건축사이면서 건축사이기를 포기하고, 자칭 “건축가”로 자처하는 우는 범하지 말자! 자성해 불일이다.

저마다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다할 때 우리의 위상은 지켜지는 것이고, 존경받는 선망의 대상이 되는 것이지, 건축사 아닌 다른 사람이 위대하게 만들어 주는 것은 결코 아님을 명심하자.

28년동안 국가정책의 지원이나 보조없는 자생단체로서 협회를 구심점으로 혼연 일체가 되어 민족문화의 창조자로서 수십차례의 격변기 속에서도 열악한 국민 주거환경의 개선은 물론 국가 건설의 근대화 사업에 묵묵히 헌신적으로 참여하여 오늘과 같은 괄목할만한 발전과 번영의 견인차 역할을 하였음에도 어느 누구 건축사의 역할을 행해주는 사람하나 없는 냉혹한 현실을 인식하고, 건축사의 위상정립을 재고해야할 시점이라고 본다. 누가 뭐라 해도 우리 건축사는 건축사협회를 중심으로 정직한 신념을 밀천으로 지역사회 번영의 길잡이가 되어 파괴된 생활환경을 개량하는 선구자적 봉사자가 되어야한다.

지방 건축계의 활성화 노력을...

It is necessary to Activate Local Architecture

申三鎭/서진건축사사무소

by Shin, Sam-Ho

지방건축계와 중앙건축계와의 관계는 상하 종속 관계나 예속 관계가 아닌 이상 지방건축만의 특수한 구조적 모순이나 병폐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현실적으로 볼 때 지역적 정체성으로 인한 건축적 수준이 낙후와 정보의 부족에서 오는 기술적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러한 기술적인 요소보다 더욱 우려가 되는 것은 대개 건축인들의 건축적인 의식에 다분히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건축인 스스로가 느끼는 소외감, 이것은 모든 문화가 중앙 집중화되어 있는 현실에서 각종 건축문화 활동 참여 범위가 간접적으로 격리되고 지방건축인 스스로가 지역건축의 활성화를 위한 능동적이고 자구적인 노력부족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혹자는 “지역건축문화의 실종! 현대건축의 크나큰 비극이다.”라고 했듯이 지방건축계의 모순은 나아가 한국건축계의 모순과 병폐를 지적하는 것과도 같다.

여대껏 중앙집권형 권력구조 사회에서 지방건축문화에 대한 지원이나 정책적 배려가 전무했으므로 지방건축의 특수성이나 참신성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더욱이 근대 건축의 서양사조가 무비판적으로 수용되는 상황에서 지방에서는 이것을 재모방하는 모순의 악순환 과정을 통해 지방건축문화는 더욱 열악한 상태로 방치되어 온 것이다.

이러한 지방건축계의 실태는 건축관계자인 설계, 시공, 건축행정자 등 모든 분야에서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그 중에서 설계사무소의 실태를 보면 영세성과 함께 기술력의 축적 부족으로 현 상태에서는 크게 개선의 방향을 모색하기 힘든 상황이다.

소장 한명에 5명 정도의 직원으로 구성된 소규모 집단이 주류를 이루고, 명색이 종합건축사사무소라 해도 대개가 단독운영으로 단독사무실이나 별 다를 바가 없다.

이런 구조내에서는 모두가 슈퍼맨이 되어야 한다.

계획을 하고 상세도도 그려야 하고 전적도 하고 구조계산, 투시도 등 모든 것을 혼자서 다 해결해야 한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전문성이 부족한 계획, 깊이가 없는 기술, 전문성에 대한 노하우의 축적보다는 다양한 걸치레 경험에 의한 전문능력의 부족으로 인해 일정 수준 이상의

프로젝트 설계 수행능력으로 발전되지 못하는 것이다.

설계 각분야(수주, 행정, 계획, 구조, 실시, 설계, 감리, 전적, 시방, 전기, 설비, 조경)전문 인력의 포맷을 구성함으로써 각기 전문성을 살리고 깊이 있고 종합적인 설계능력의 배양과 기술 축적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최근 건축사의 다량 배출로 인하여 이러한 상황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덩핑에 의한 수주 경쟁, 이에 따른 설계, 감리의 질적저하의 우려와 함께 지방건축의 앞날은 쉽게 예상할 수 있다. 조직적 구성원 모두가 일정 수준의 전문성밖에 갖지 못하고 일정기간을 지나 면허를 취득하여 개업에 대비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닐 것이다. 세분화된 조직 바탕위에서 각기 분야의 역할과 팀워크를 바탕으로 중무장되어야 대외적인 경쟁력에서 살아 남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지방의 대규모 프로젝트는 서울에 설계를 맡기려 가는 실정이고, 지방의 관공서 건물도 현상설계를 할 경우 계획규모보다 더 큰 실적을 자격조건으로 내세우며, 지방 설계자의 참여를 간접적으로 제한하는 경우를 왕왕 볼 수 있다.

이러한 척박한 현실 속에서 지방 건축인의 각성과 사회변화의 추이를 예측하고 대응하는 시각의 변화가 더욱 절실히 요구된다.

얼마전 모 건축잡지의 편집장을 만났을 때 지방 도시의 큰 건물과 웅장한 건물은 알고 보면 거의가 서울에서 설계를 한 것이고, 막상 지방 건축사의 작품을 게재하고 싶어도 적극적인 참여도 부족하고 볼만한 건물을 찾기도 힘들다고 하였다. 어쩔 수 없는 현실이고 지방건축의 현상환인 것이다. 어떤 획기적인 방법을 모색하기 보다는 지방 건축인의 사고와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본다.

96년부터 UR개방에 의해 설계업무의 범위도 사업성의 기획에서부터 설계, 감리, 준공 후 유지 관리에 이르기까지 서비스의 범위가 더욱 확대될 경우 지방의 중소규모 설계사무실의 입지범위는 더욱 부족하게 될 것이다. 또한 연초의 건축사 업무 보수요율의 상승에 따라 설계, 감리에 따른 무한 책임의 부담과 함께 설계 외육이 더욱 위축될 가능성도 안고 있다. 이전같이 면허증 하나 가지고 회소성에 의해 어느정도의 생계는 보장되고 나름대로 사회적 지위도 주어졌던 시대는 이미 지나가고 전문 직업인으로서

지방 건축계의 개선 방향은 구조적인 모순에 대한 정책대안도 중요하지만 급선무는 모든 건축인이 급변하는 사회상에 대한 평형감각과 시야를 넓히고, 건축계의 내재적인 모순과 지역 건축계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가 필요한 것이다. 지방 건축의 지역성을 확보하고, 지방건축의 발전을 위한 역할은 지방건축인에게 주어진 몫이고 의무이다.

지역을 선도하는 건축사로서 소명의식이 투철할 때 지방건축문화의 질적향상과 아울러 한국 건축문화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도태될 수밖에 없는 급변하는 사회의 조류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다.

위기는 위협과 기회가 동시에 주어지는 상황이라고 했다.

위기의식에 사로잡혀 움츠러들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슬기를 모아 지방건축계의 활성화를 위한 기회로 전환시키는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방에서 건축활동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각종 정보 교류와 재교육의 기회가 거의 없다는 것이다. 각종 세미나 전사회가 거의 서울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큰맘먹고 참석을 하려하면 1박2일은 생각을 해야 한다. 물론 지방 자체에서 이러한 건축행사를 기획, 진행을 하면 굳이 많은 시간을 들여서 서울까지 갈 필요는 없을 것이다. 어느 지방이건 건축 3단체(건축학회, 건축가협회, 건축사협회)가 있지만 정작 전문 집단인 모임으로서 건축관계 활동이나 행사는 거의 본 적이 없다. 그러다 보니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바도 없으므로 건축에 대한 지방건축문화의 인식도 낮아지고 우리의 위상도 점차 낮아지게 되는 것 같다. 지역 건축 문제에 대한 쟁점이나 관심사를 건축단체에서 공청회나 세미나를 통하여 여론을 수렴하고 건축 및 도시행정에 직접 반영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은 지방 건축 단체의 중요한 역할의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행사의 홍보와 참여가 중요한 데 그렇지 못하다는 데 있다.

부끄러운 얘기지만 우리지역에서 얼마전에 지역 건축사들의 작품전시회를 개최하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에서 출판하는 작품수가 부족하여 전시회를 연기하였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 이러한 참여 의식의 결여는 실제 건축설계를 업으로 하면서도 건축의식에 대한 자멸감과 소외감에 대한 반영으로 보여진다. 한시바빠 이러한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아진다.

‘건축 교육 문제’는 지방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건축계의 전반적인 문제이다. 건축종합예술학교의 설립이나 학부 자체의 커리큘럼 변경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인 범위내에서 산학 협동체제의 연계성 부족을 들 수 있다. 학교 교육을 정상적으로 받은 졸업생이 정작 사무실에 들어오면 실무 적응에 상당한 애로 사항이 많다. 학교에서는 실무를 위한 건축이 아닌, 학문으로서의 건축을 광범위하게 접하다 보니

아는 것도 없고 모르는 것도 없는 머리만 큰 건축인을 양산하게 되는 것 같다.

제도적으로 교수들의 설계실무 참여제한은 반대로 실무를 하는 건축인들이 곧 실무를 해야 할 학생들에게 실무교육을 할 수 있는 관계를 단절시켜 버리는 아이러니한 구조속에서 우리의 후배들은 자라고 있다. 일부 지방에서는 ‘대학생 건축디자인 캠프’를 개설하여 학생들에게 건축디자인 실무를 간접 경험하게 하고, 나아가 지역의 후배들에게 지역건축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 주는 산학 관계의 좋은 예를 볼 수 있다. 지역의 모 교수는 “이제는 지역을 뛰어넘는 건축적 비전을 갖는 우리의 지역 건축가를 만들기 위해 교육계가 먼저 나서야 한다.”고 말하였다.

‘지방건축’이란 지역 정서와 환경에 의해 정착된 지역의 성향이 반영되는 건축문화라고 할 수 있다. 해양도시 건축, 내륙도시 건축 등 각 지역의 특성이 반영된 산물이 되어야 한다.

서울의 건축은 한국적인 건축이 될 수가 없다고 본다. 오히려 서울의 건축은 국제적인 조류에 의해 형성된 무국적주의적인 건축의 전시장인듯한 느낌을 받게 된다.

문화란 중앙의 문화가 한국적 문화를 대변할 수 없듯이 지역 건축간의 상호적인 균형과 다양성의 존중에 의하여 전체 건축 문화의 질을 높일 수가 있다. 지방 건축은 중앙 건축에 대하여 종속관계가 아닌 지역적 전통과 다양한 지역어휘를 바탕으로 지역적 아이덴티티(Identity)를 가져야 한다.

즉, 지방 건축계의 개선 방향은 구조적인 모순에 대한 정책대안도 중요하지만 급선무는 모든 건축인이 급변하는 사회상에 대한 평형감각과 시야를 넓히고, 건축계의 내재적인 모순과 지역건축계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가 필요한 것이다. 지방 건축의 지역성을 확보하고, 지방건축의 발전을 위한 역할은 지방건축인에게 주어진 몫이고 의무이다.

지역을 선도하는 건축사로서 소명의식이 투철할 때 지방건축문화의 질적향상과 아울러 한국 건축문화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94년도 각 위원회 위원장 인사(1)



李鍾寬 理事
법제위원회 위원장

격변의 계유년을 보내고 갑술년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대한건축사협회 임원의 일원으로서, 새해 새로운 포부와 각오를 몇자 읊기고자 한다.

지나온 한해는 건축사법 개정관계로 협회가 온통 소용돌이속에서 온갖 시련과 진통을 겪었던 한해였다고 하겠다.

새해에도 지나온 한해동안 풀지 못하였던 많은 난제들이 우리들 앞에 가로놓여 있다.

그 가운데 새정부 출범과 함께 발족되었던 행정쇄신위원회에 상정, 의결되었던 7개의 과제들은 앞으로 풀어야 할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우리들에게 많은 인내와 지혜를 요구하고 있다.

복잡다변화 되어가는 현사회에서 기능분야별로 법을 세분화하는 추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사법을 건축법에 흡수, 단일법으로 통합하려는 정부의 발상은 우리를 실망시키는 처사로서 협회는 이에 적극대처하여 건축사법은 현재와 같이 별도의 법으로만 존속하도록 건설부에 전달하여, 현재 개별법으로 개정 작업중에 있다.

현재, 협회의 당면과제로서는 분리감리폐지 및 설계도서신고제도 개선에 따른 후속 절차마련과 건축법, 건축사법개정(안)에 대한 건설부의 협의를 거쳐 내년 3월 임시국회에 상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특히, 국가공무원법, 검사징계법, 변호사법 등에는 징계사유의 시효가 명시되어 징계사유가 발행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이를 행사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있고, 건설업법 등에도 공사하자담보 책임기간이 있으나, 건축사법의 경우에는 이런 규정이 없어 그동안 설계감리한 행위에 대하여 건축사가 무한 책임을 지고, 평생을 잠정적인 불안상태에서 지내야 하는 불합리를 시정하기 위한 내용을 보완, 반영한 건축사법 개정안을 추진코자 한다.

이같은 우리 회원의 실질적 현안을 비롯해 협회발전과 회원의 권익보호에 앞장설 것을 다짐해 본다.

회원 여러분의 지도편달과 아낌없는 성원을 기대한다.



李鍾寬 理事
홍보위원회 위원장

새해를 맞아 협회발전과 회원 모두의 건승을 기원한다. 홍보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소임을 다하기에는 미력하나, 그동안 협회운영에 참여했던 경험을 살려 홍보분야를 활성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현대사회는 이미지로 평가되고 선택되는 이른바 「이미지 사회」이다. 상품은 상품자체의 실질적 차이가 아니라 상품의 이미지로서 팔리고, 조직은 조직의 이미지로서, 또 정치인은 각종 대중매체와 개인홍보에 의해 만들어진 대중적 이미지로서 선택된다.

이렇게 볼 때 「이미지 사회」라는 말은 바로 홍보사회를 일컫는다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 이미지를 만들고 유지하고 개선하고 강화하는 그 모든 것이 홍보라는 수단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보와 홍보는 이제 모든 조직의 경영전략 그 자체이자 생존을 위한 안보 그 자체가 되고 있다. 사실 그동안 우리 협회홍보는 이같은 변화를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고 위기홍보에만 급급해 온 인상을 감출 수 없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우리 협회도 과거와는 달리 홍보의 가치와 효용성을 다시금 새롭게 인식하고 이를 조직의 안보차원에서 중대한 업무로 다루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협회 구성원 한사람 한사람이 자기 협회, 자기 직장을 대표한다는 구성원 모두의 「홍보 마인드」의 확산이 전 협회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겠다.

이를 바탕으로 새해에는 홍보위원회 활동을 활성화하여 홍보목표의 설정, 홍보대상의 선정, 홍보전략(프로그램)개발, 실행 등을 하나하나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

또한, 건축사업무가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홍보업무 역시 고도의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협회 사무처에 홍보전문가를 양성, 장단기 홍보계획을 수립하여 체계화된 홍보의 발판을 구축하는데 미력하나마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

회원 여러분의 각별한 이해와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



金洸都 理事
건축설계위원회 위원장

갑술년 새해를 맞아 우리 회원들의 건승하심을 기원한다.

지난해를 돌이켜 보건대 우리 건축사들에게는 너무나 가혹한 상처뿐인 한해였다.

內憂外患이란 바로 이런 것이구나 하는 생각이다.

합심단결해도 막아내기 어려운 敵前에서 안으로 분열하고 책임전가하기 급급한 추한 모습들이 우리들을 슬프게 만들었다.

이것이 물론 묵묵히 건축사의 본분을 지켜나가는 대다수 회원들의 얘기가 아니다.

어둡고 혼돈했던 긴 터널을 뚫고 새해를 맞았으면 얼마나 좋을까만은 아직도 터널은 끝나지 않은 것 같다.

새해는 어김없이 돌아 왔지만 우리들의 새해는 아직 오지 않았다.

지난해의 아픈 경험을 거울삼아 우리들의 모습을 재조명하고 반성과 다짐이 필요한 때이다.

소집단의 편가르기는 단호히 근절되어야 한다.

집단 이기주의는 우리들 스스로 추하게 만든다.

말없는 다수의 회원을 대변하는 협회, 소수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기울이는 협회, 우리의 문제는 우리 스스로 해결하는 대화의 장(場)으로서의 협회가 되어야 한다.

끝까지 개방 않겠다고 뺄이 개방되고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까지 했다.

대세의 흐름을 빨리 감지하고 사전에 철저히 대처하지 못한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우리 협회가 당면한 산적한 법안의 개폐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쌀개방의 교훈을 다시 새겨볼 때이다.

우리 모두의 뜨거운 가슴과 냉철한 머리를 한곳으로 결집하여 신뢰와 화합으로 해야겠다. 어려움을 극복해야 한다.

그런 후 우리 삶의 질을 높이고 보다 나은 환경을 창조하는 우리 본연의 일에만 정진할 수 있는 진정한 새해 아침을 맞이할 준비를 합시다.



朴容漢
건축설비위원회 위원장

희망찬 갑술년 새해를 맞았다.

지난해는 정치적으로 커다란 격동의 해요, 엄청난 일들이 많이 일어났던 한 해였다. 국내적으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서 민주화로 가는 시련의 장이 되어 고통을 온 국민이 분담하였고, 국제적으로는 환경문제, 북한의 핵 문제, UR협상 등 어려웠던 한해를 보냈다. 94년도 건축설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맡게 되어 책임이 무겁다.

주지하다시피 건축설계는 의장, 구조, 설비(기계, 전기)등 삼요소가 조화가 이루어져야 좋은 건물을 설계할 수 있는 시대가 왔다.

이런 시기에 의장 및 구조의 학문적, 기술적 수준은 거의 국제적 수준에 가깝게 발전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런데 건축설비는 양적인 성장을 많이 하였으나 질적 수준은 아직도 국제 수준에는 미달되고 있는 것이 현실정이다.

전 세계가 에너지 문제와 환경 문제가 생활공간에서 야기되는 많은 문제로 건축설비위원회에서는 건축설계에서 설비적인 문제점을 연구, 검토하여 훌륭한 건물을 창출하도록 건축을 조언하도록 노력하겠다. 그리고 에너지 분과위원회에는 판매시설에 대한 "에너지 절약형 건축설계 핸드북"을 3월까지 발간하고 에너지 심의용 종합편을 7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그리고 건축물에 관계되는 건축설비에서의 문제는 건축설비 계획에 관한 문제와 아파트 가스배관 및 연료 문제 등을 건축에 참고 할 수 있도록 문제를 검토 및 연구 과제로 계획하려고 한다. 아울러 전기 통신 분야는 건축도면, 통신 관계법규 등을 검토하고 앞으로 정보화 시대에 발 맞추어 I·B(Intelligent Building)에 대한 자료를 잡지에 기재하여 건축설계에 도움이 되도록 건축사와 설비 기술자는 건축의 목적에 대한 충분한 공통의 이해를 갖도록 하여 훌륭한 건축을 구현하도록 노력하겠다. 끝으로 시간이 허락하면 그간 잡지에 기고한 글을 종합하여 책자를 발간하는 계획을 세워 보겠다. 회원 여러분의 헌신과도 같은 도움을 바란다.

서울대학교 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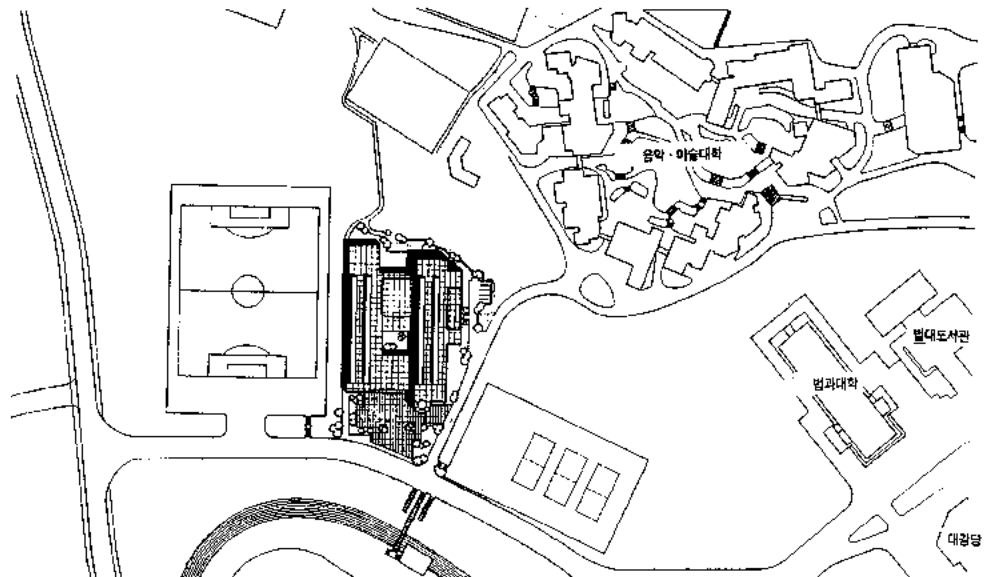
Seoul National University Museum

(주)서울건축

Designed by Seoul Architects & Enginee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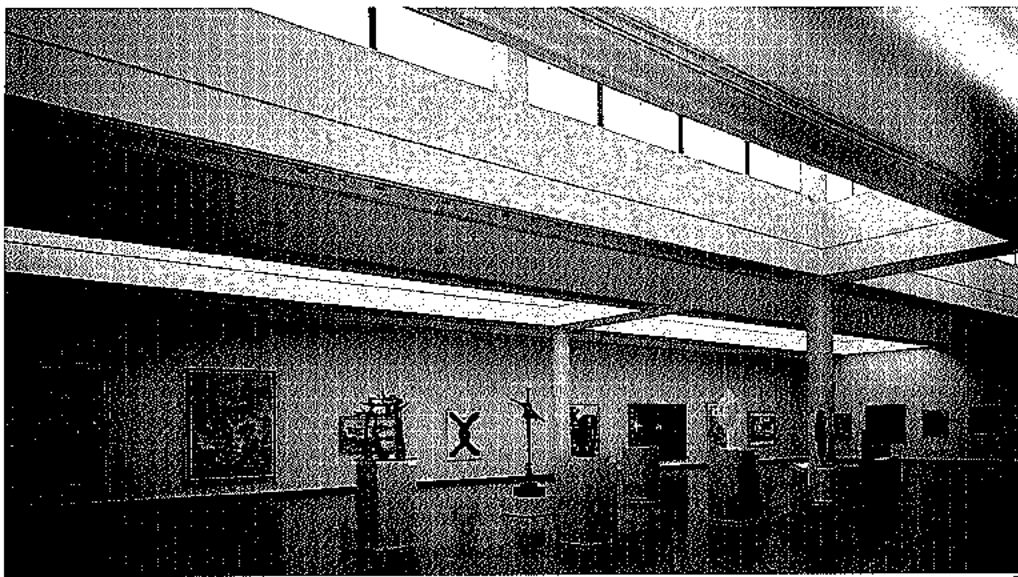


위치 /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산56-1
 대지면적 / 351.167㎡
 건축면적 / 3.767㎡
 연면적 / 6.165㎡
 건폐율 / 7.19%
 용적률 / 20.23%
 규모 / 지하 1층, 지상 2층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외부마감 / 화강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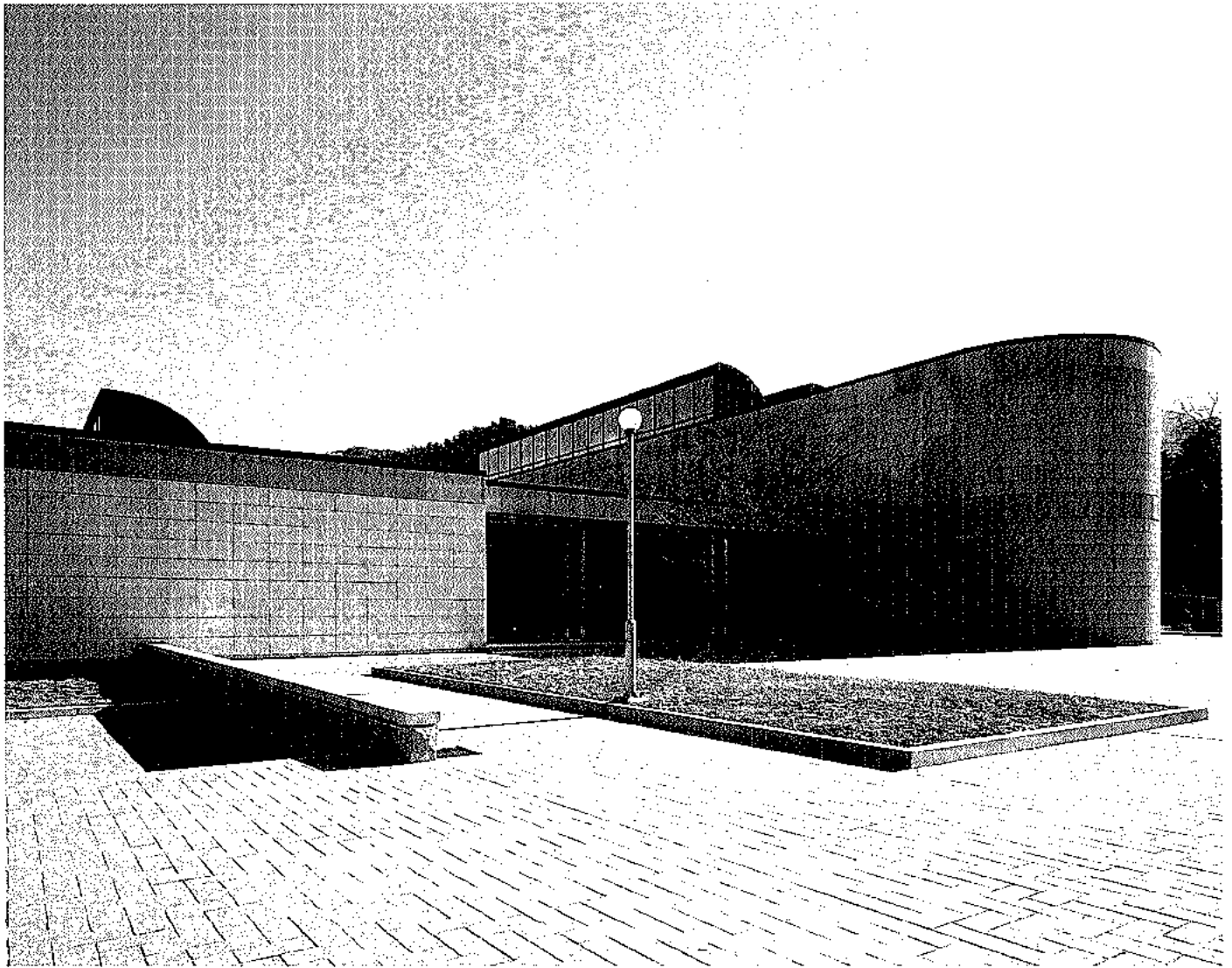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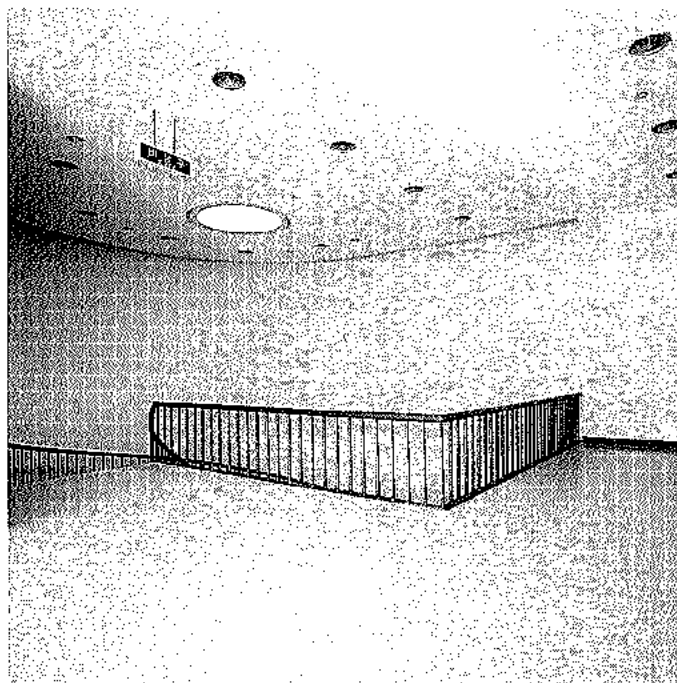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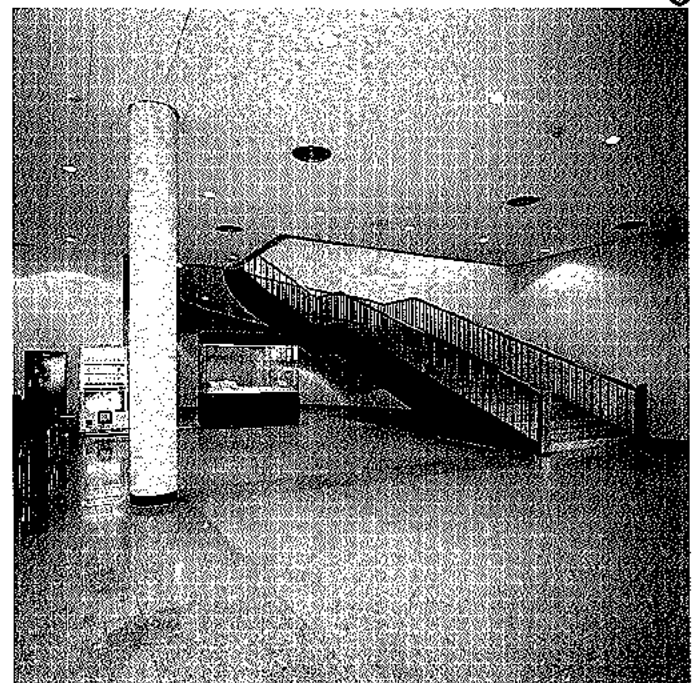
- ① 남측 전경
- ② 배치도
- ③ 중정을 둘러싼 순환공간에
자연광이 항상 흘러
들어오도록 배려한 중정
- ④ 1층 현대미술 전시실



6



6



7

- ⑥ 북서측 전경
- ⑦ 천장이 보이는 2층 휴게공간
- ⑧ 연결계단부 상세
- ⑨ 1층 휴게실 전경

- ⑩ 중정에 면한 전시용 복도
- ⑪ 강당 전경
- ⑫ 종단면도



8



9

이번에 개관한 서울대학교 박물관은 10년 전인 1983년에 현상설계에 당선하여 설계하였던 작품이다. 설계할 때에 예측할 수 있었던 몇가지 전제는 지금도 유효한 반면, 또다른 설계조건들은 그간 많이 수정되었는데 시공과정에서 반영이 안된 것이 아쉽다.

서울대학교 캠퍼스내에서의 박물관의 위치는 정문의 동남으로 배치된 운동장에서 미술대학과 음악대학사이의 구릉지대로서 캠퍼스활동의 결절점 역할을 하는 위치이다. 계획당시에는 서울대학교 체육관과 위치가 확정되었던 반면, 선경경영학관은 계획되기 이전이었다. 박물관이 완공됨으로써 체육관, 경영학관, 박물관을 지나서 미대, 음대 방향으로 향하는 보행동선이 활발해질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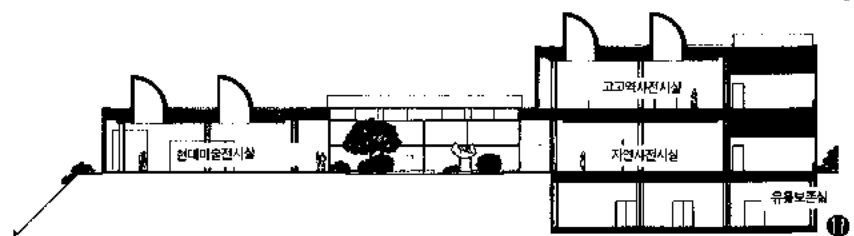
박물관의 구성과 배치는 정문출입구를 시각적으로 부각하고, 스케일을 과다하지 않게 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반원통형의 계단실을 전면에 배치한 2층 높이의 볼륨, 얇은 판상의 패시시아(Pascia) 밑에 후퇴해서 놓여진 유리의 주출입구, 두열의 1/4원호형태의 스카이라이트만 지붕위에 배열되고 다른 개구부가 없는 1층 높이의 전시실의 세부분으로 구성된다.

투명한 현관으로 진입하면 로비공간을 지나서 같은 축위에 중정이 놓이고 그 내부쪽으로 강당이 놓여있다. 이 중앙 Zone이 고고학, 인류학, 자연사와 현대미술을 망라하는 광범위한 성격의 전시실들을 완충하며 동시에 여러분야의 만남을 도모하도록 평면계획상에 주안점을 두었다. 중정을 둘러싸는 순환공간은 자연광이 항상 흘러 들어오도록 계획하였고 강당 양쪽의 통로는 벽면이 상당한 전시면적을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 설계의 도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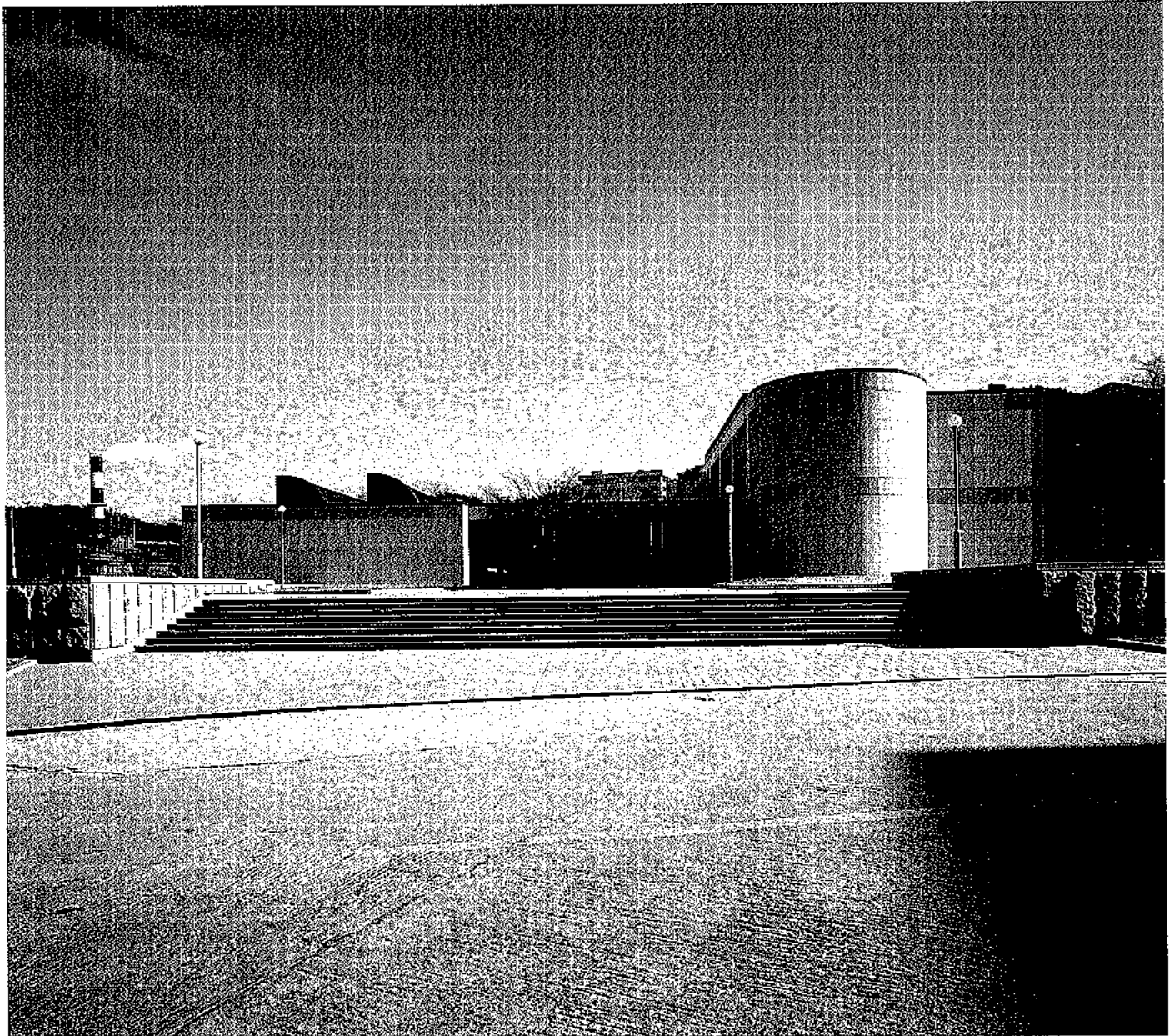
1층의 북쪽전시실은 자연광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현상설계시와 실시설계시에는 기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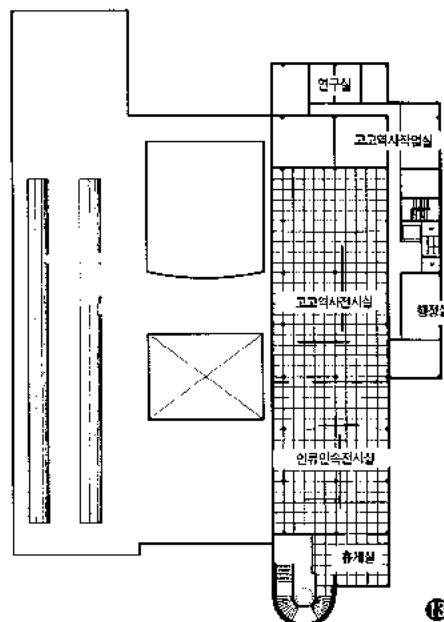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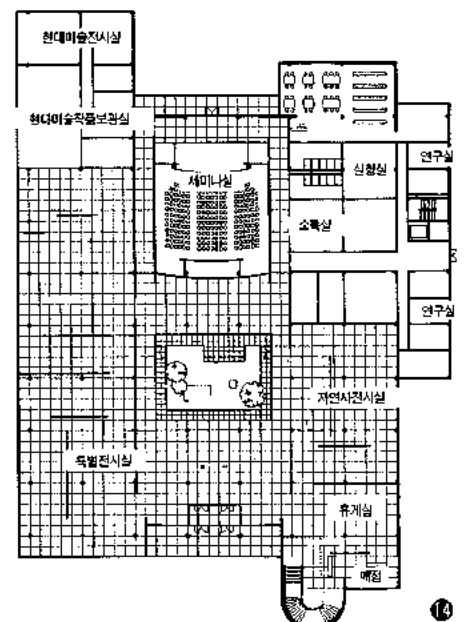


12

- 12 서측 전경
- 13 2층 평면도
- 14 1층 평면도
- 15 남서측 전경
- 16 로비



13



14



15



16

획전시와 현대미술전시실로 계획되었으나 로비에서 처음 접근하는 전시실이 자연사전시실에 할애되었다.

1층 남쪽 전시실은 인공조명에 의존하는 전시실로서 현재 고교역사전시실로 할당되었고 2층 남쪽 전시실은 다시 자연광이 인입되는 전시실들로 인류민속전시실과 전통미술전시실로 사용된다. 행정 및 학예기능은 전시실 천장높이보다 낮게 남쪽에 별도 매스로 구성되었다.

외벽은 국산화강석 물갈기와 버너마감으로 구성되어 스카이라이트의 곡면과 측벽면은 동쪽으로 처리했다. 내부마감은 강당을 둘러싸는 순환 공간을 나무패널로 감싸아서 전시실 내부의 벽지 마감과 대조를 꾀하였다. 조명은 자연광이 인입되는 전시실이나, 인공조명에만 의존하는 전시실이나, 트랙(Track)에 스포트와 플러드(Flood)의 등기구를 필요에 따라 연결하여 해결하는 것이 설계의도였다. 개관한 전시실의 조도가 전반적으로 낮은데, 현대미술과 자연사전시실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관람객이 어둡다고 느끼지 않을 정도 조도를 높여야 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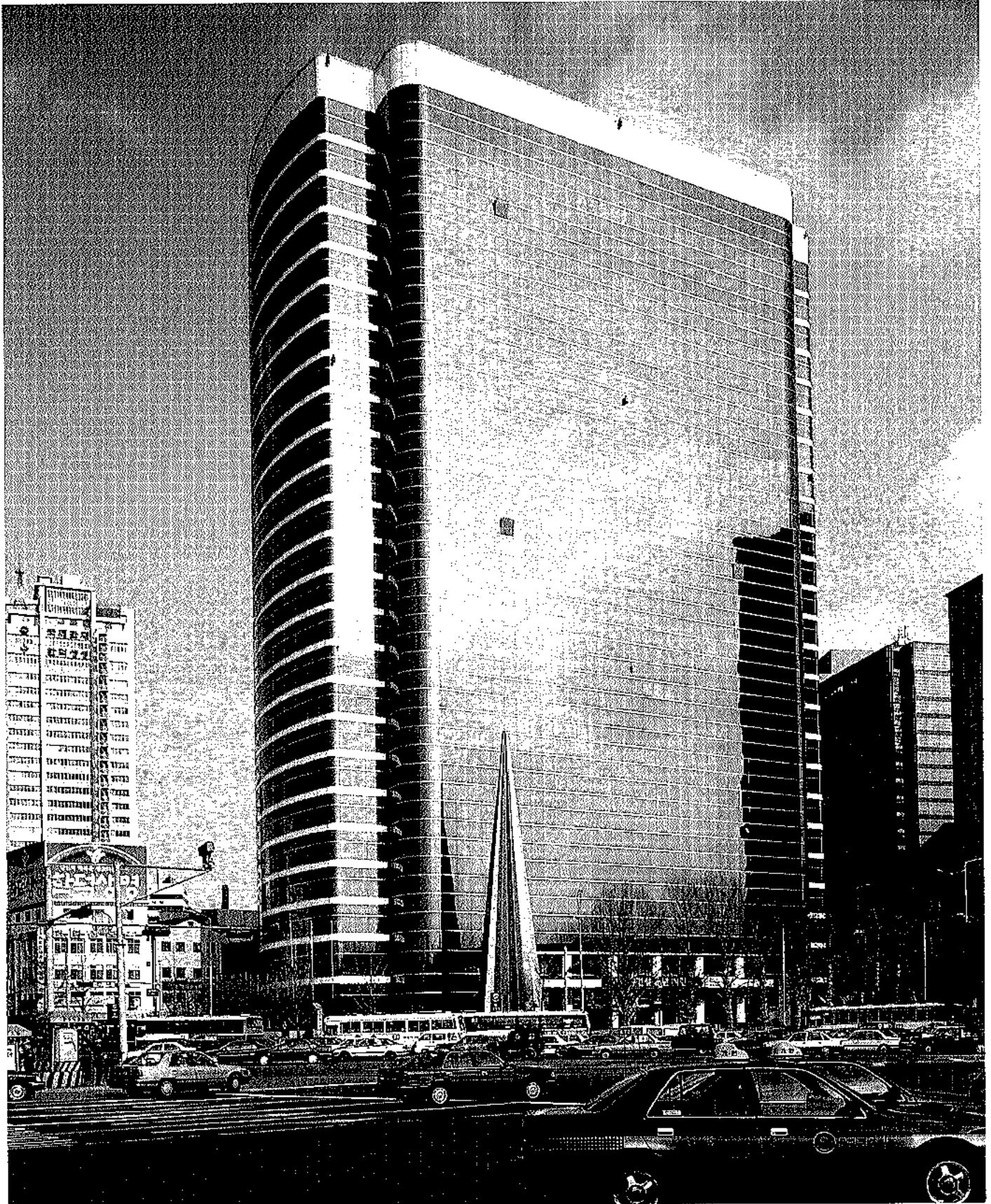
주출입구를 구성하는 두개의 원형기둥 앞에 설계의도와는 무관하게 셋터의 트랙이 설치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조속한 시일내에 수정되기를 기대한다.

연세재단 세브란스 빌딩

Yonsei Jaedan Severance Build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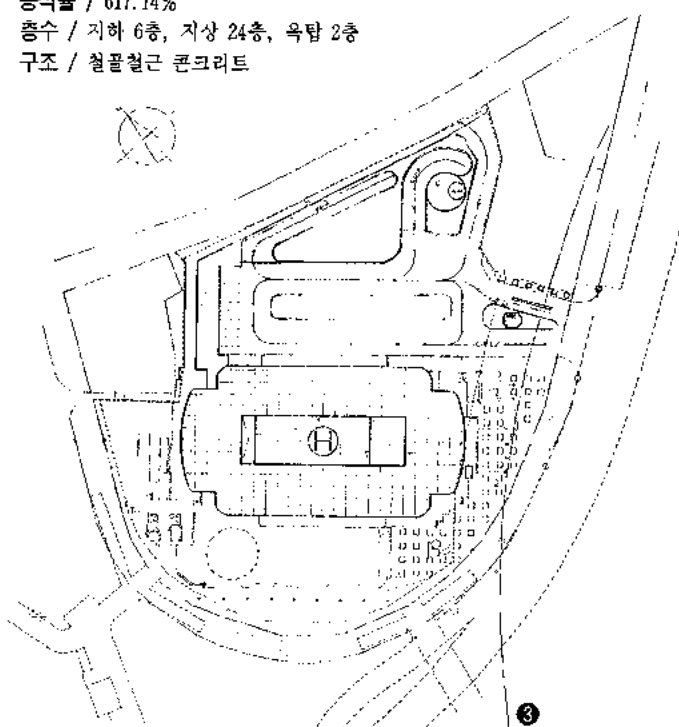
宋基德/정일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Song, Ki-Du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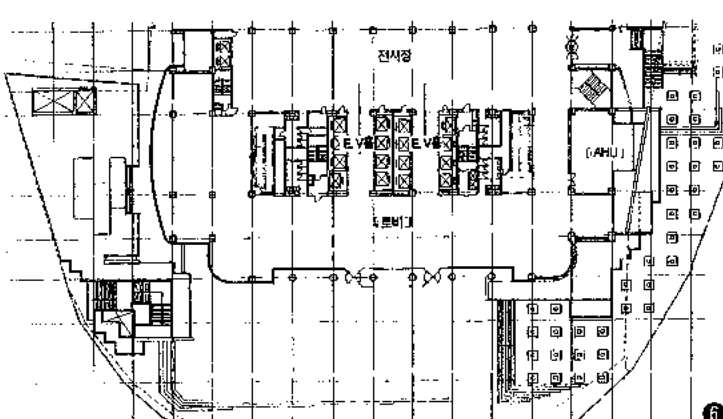
대지위치 / 서울 중구 남대문로 5가 84-11
 대지면적 / 10,442.65㎡
 건축면적 / 4,008.20㎡
 연면적 / 108,886.78㎡
 건폐율 / 38.38%
 용적률 / 617.14%
 층수 / 지하 6층, 지상 24층, 옥탑 2층
 구조 / 철골철근 콘크리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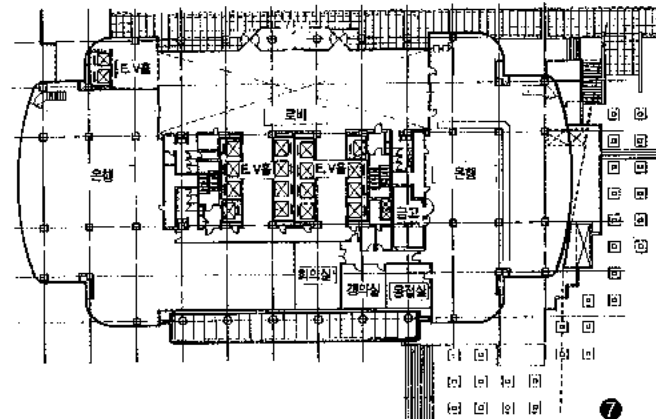
- ① 염천교쪽에서 본 전경
- ② 올라다 본 외벽상세
- ③ 배치도
- ④ 2층 출입구측 상세



5



6



7

설계소묘

- 본 건물이 위치한 곳은 서울에 가장 유서 깊은 몇가지 요소들로 연계되어 있다. 전면으로는 서울역, 부지를 끼고 있는 좌우측에는 퇴계로와 남산, 남대문로와 남대문이 있다. 서울의 중심이면서 관문이라는 지역적 특성은 위치상으로 4면 모두 동질의 잠재성을 요구하고 있으며, 특히 초입이라는 시작점에서 놓고 볼때 모든이들에 대한 인지성과 시각적 공공성을 요구한다. 따라서 배치상 건물의 축을 자연축(Natur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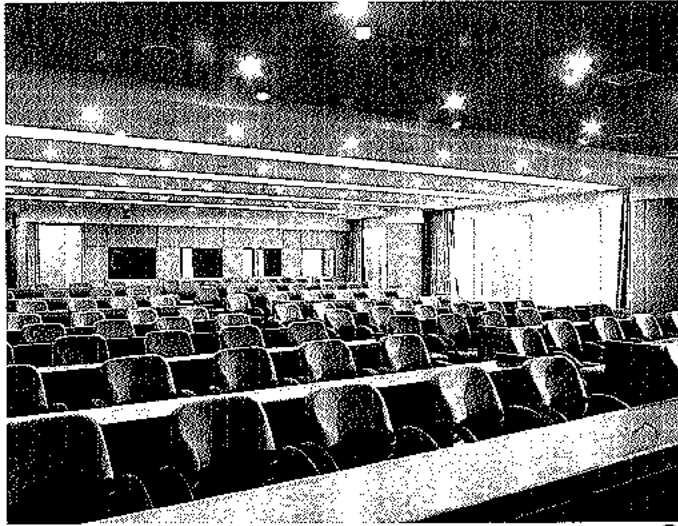
Axis)보다 서울역 광장을 향한 시각위주의 축을 가지게 하여 인지성을 증대시켰다. 이로 인해 인근 건물과 더불어 자연스럽게 서울역을 축점으로 병풍식 입면이 형성되었다.

- 도시 여진상, 보다 나은 환경이 절실히 요구되기에 많은 사람이 불비는 서울역 주변환경 변화를 주도코자 경제하고 산뜻한 외관 형성에 초점을 두었다. 외관은 All Glass처리를 하여 시간이 흘러도 도시환경을 청소하듯 늘 깨끗함을 유지케 하고, Mass의 경직성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코너 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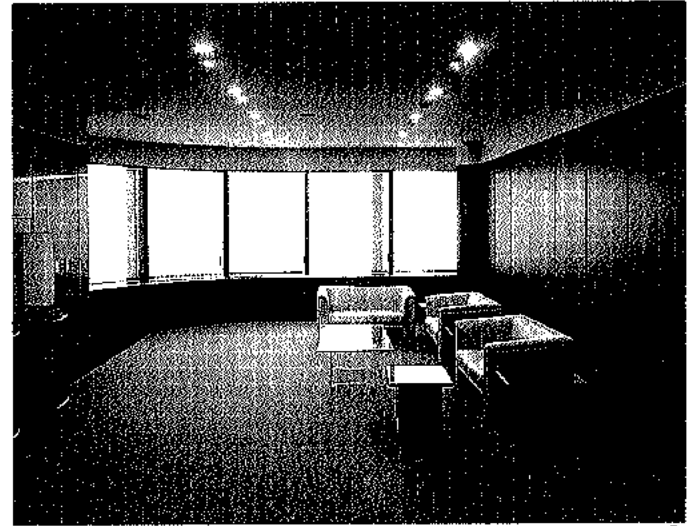
분을 곡면처리 하여, 시각적 친근감을 유도하였다.

외부의 현란한 변화를 가능한 절제하고 Round형 양쪽 돌출부로 본 건물을 잡아주어 시각적으로 떨어져 보이는 착시를 교정하고 안정감을 주었다.

- 평면 계획에 있어서는 중심코어를 두고 내부공간은 가변성(Flexibility)을 주어 공간의 효율성을 최대화 하였다. 로비는 2개층을 Open 시켰고 테라스형 복도와 대형 벽화를 두어 내적 쾌적성을 증대 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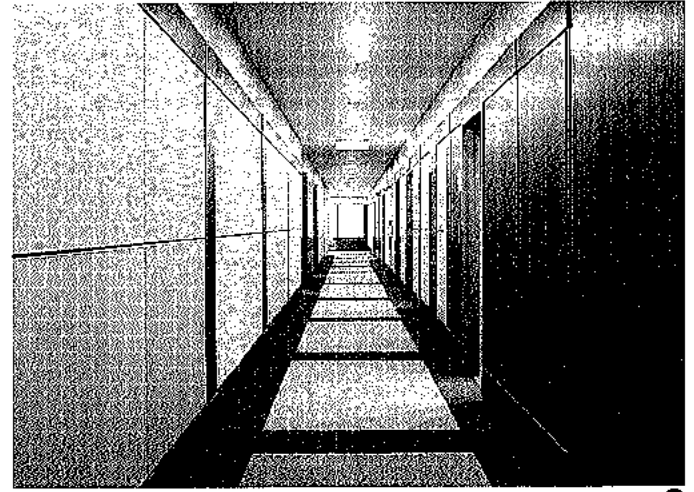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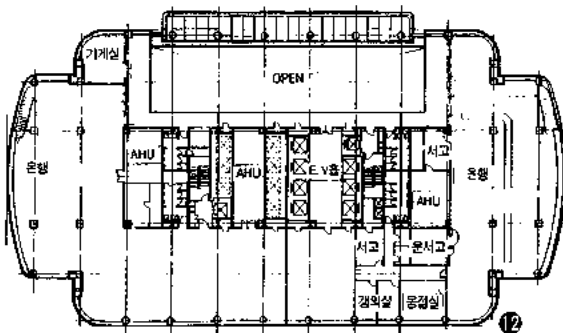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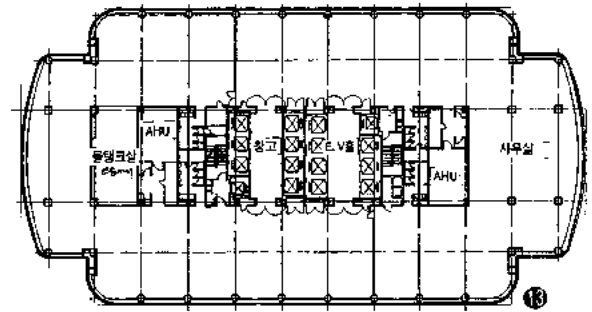
10



11



12



13

• 조경 계획에 있어서 기본 방향은 미관을 저해하는 주변환경을 정화하고 공중통행 부분 및 진입부분에 대한 수목터널 조성에 두었다.

• 후면부에는 화강석 판석위에 분수보다 얇은 물 흐름이 있는 수반을 두어 작은 계곡 바위 사이를 연상케 하였다. 건물 전면에 위치한 환경조형물은 진리와 자유라는 이상의 요람인 연세의 머리글자(O·S)를 기하학적 단순형태로 시각화 하고,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의 흔적을 상징화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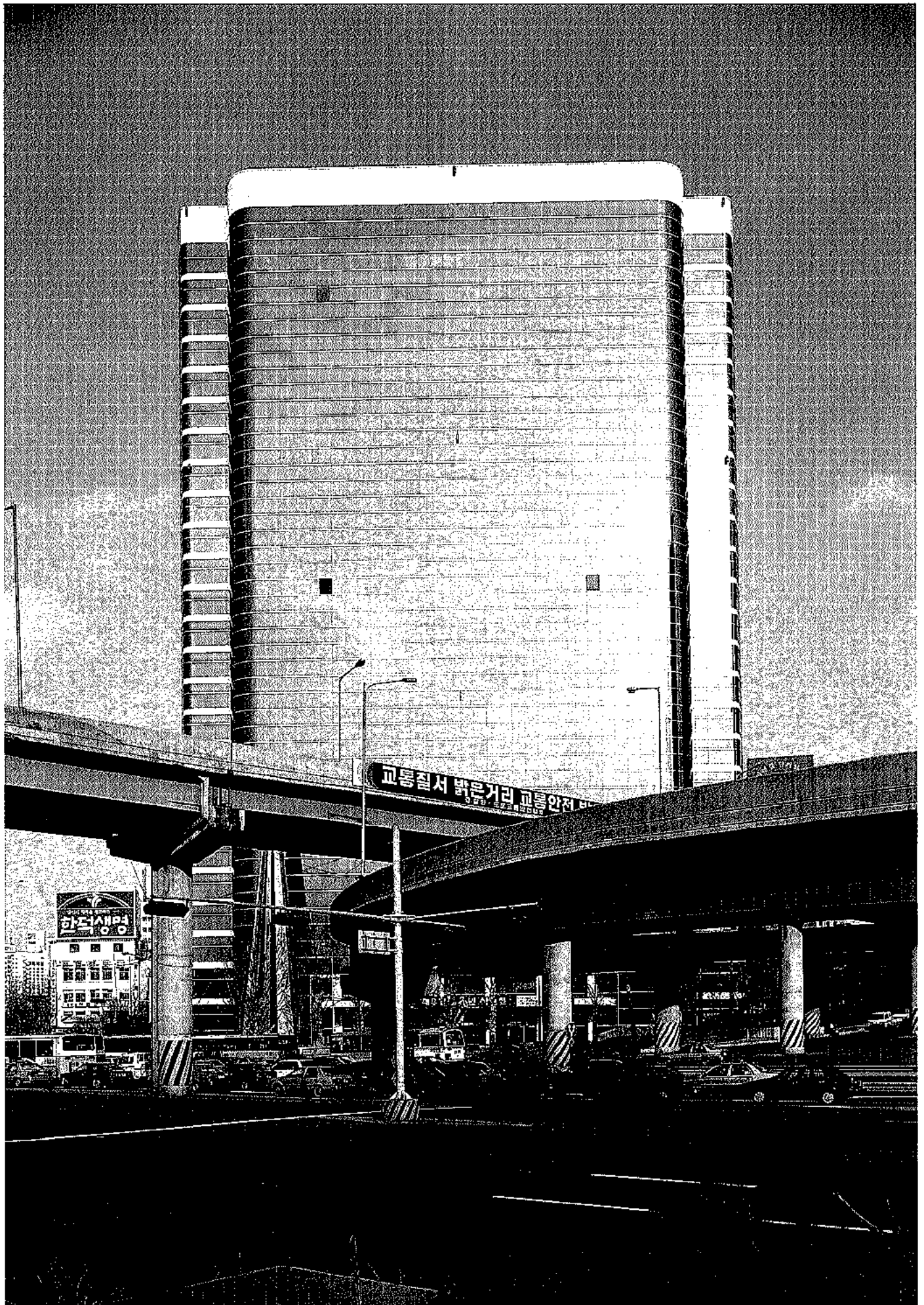
24각은 완전(Perfection)을 의미하고 색동의 6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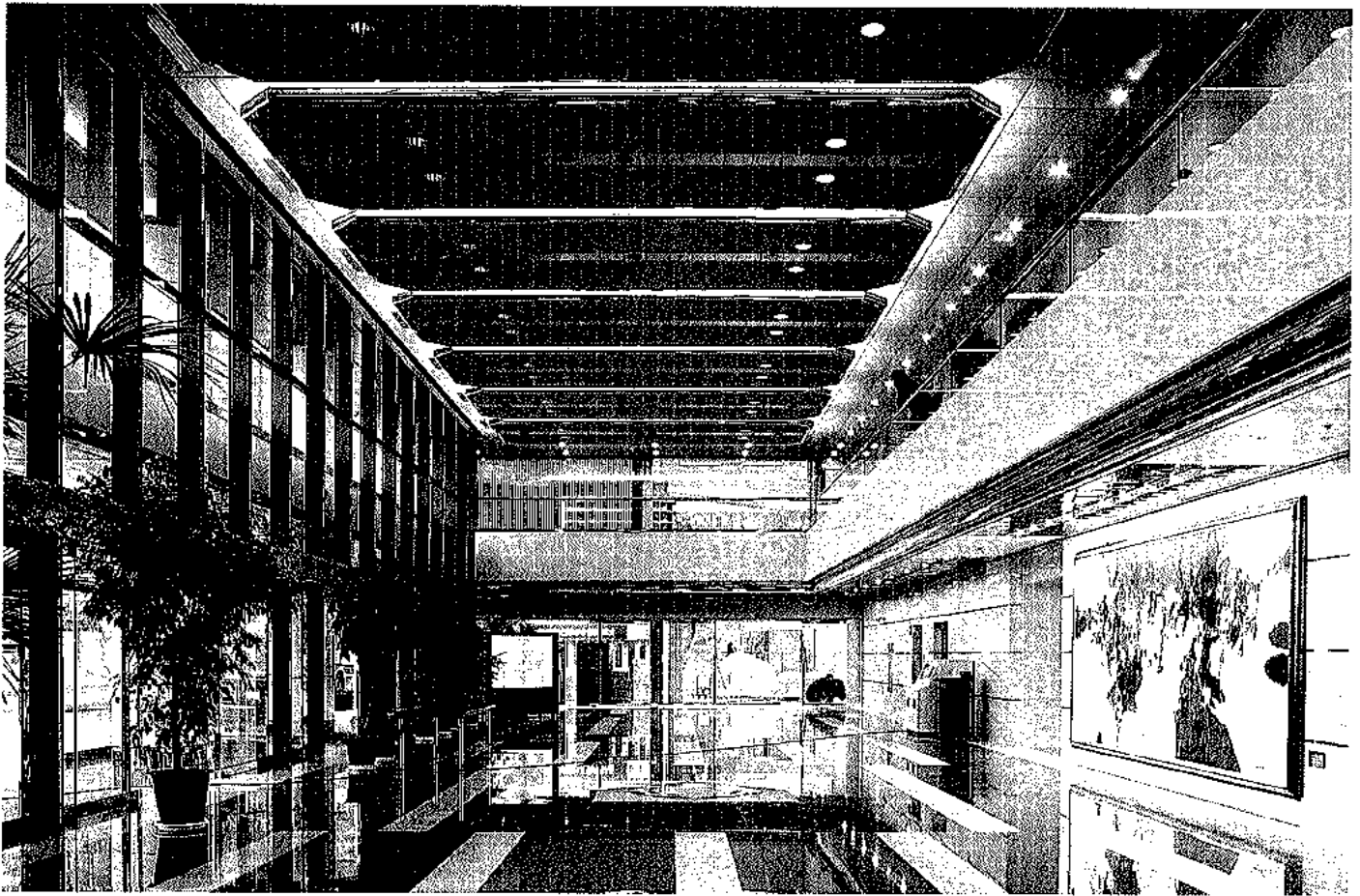
지 색상은 우리 민족의 교유상을 표현한 것이다.

• 설비적 측면에서는 미래 첨단 자능 빌딩(IES 빌딩시스템)에 맞추어 종합정보 통신망(ISDN), 국제화사회의 시스템, 자동빌딩 안내 시스템, 번호판 자동식별 주차관제시스템, IC-CARD 출입통제 시스템 등을 두어 사무공간으로서의 최상의 질을 높이게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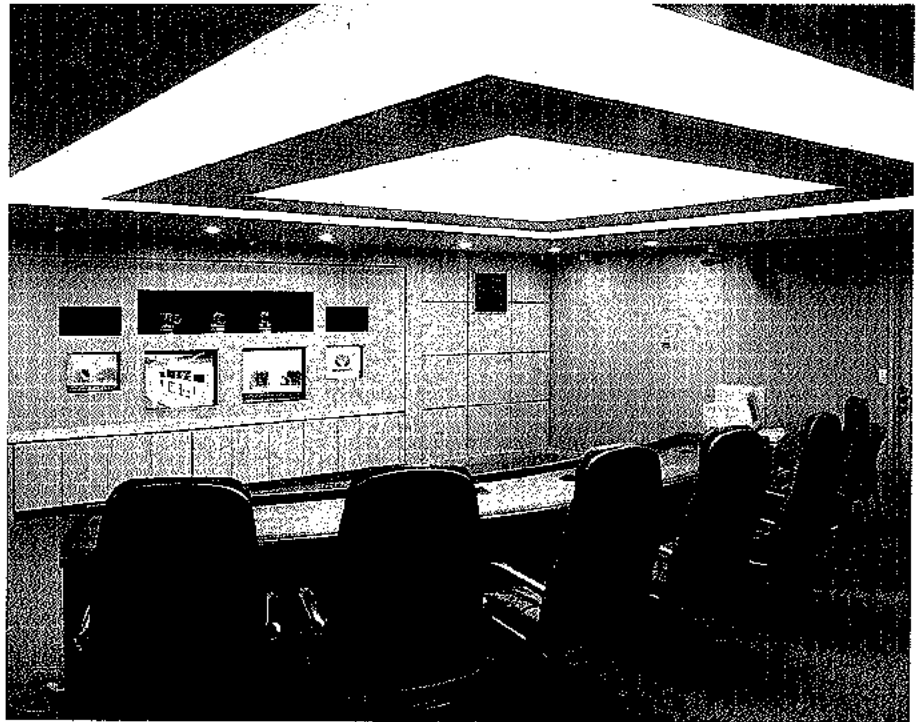
본 건물이 보다 나은 도시 환경에 걸맞게 주변환경 정화를 주도해 나가고 세월이 흐를수록 건물의 진가를 발휘해 나가기를 기대한다.

- ⑤ 서울역 광장에서 본 전경
- ⑥ 1층 평면도
- ⑦ 2층 평면도
- ⑧ 대회의실 전경
- ⑨ 라운지
- ⑩ 엘리베이터홀 전경
- ⑪ 연결복도
- ⑫ 3층 평면도
- ⑬ 4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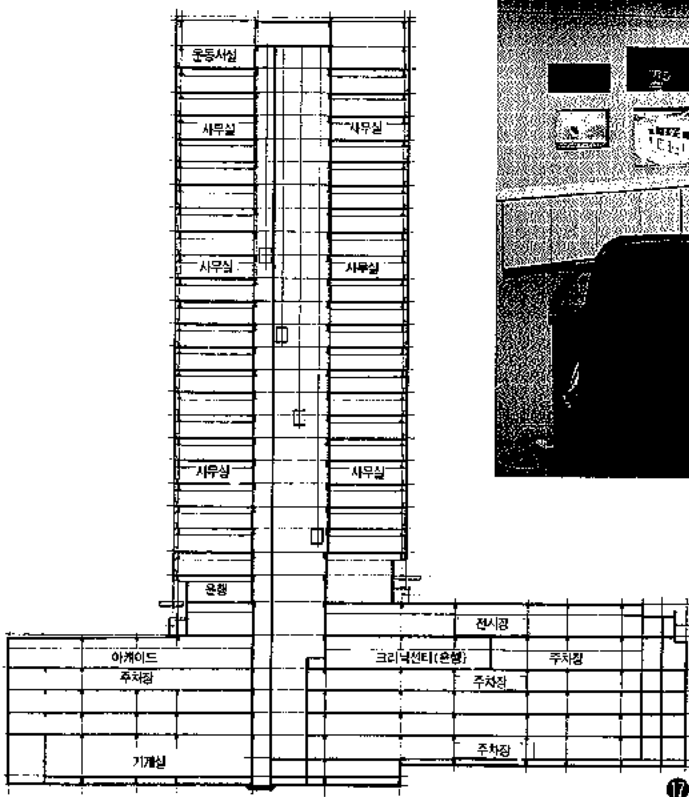




15



16



17

- ④ 서울역 광장쪽에서 본 전경
- ⑤ 2층 로비
- ⑥ T.V 영상회의실
- ⑦ 단면도

한국투자신탁 사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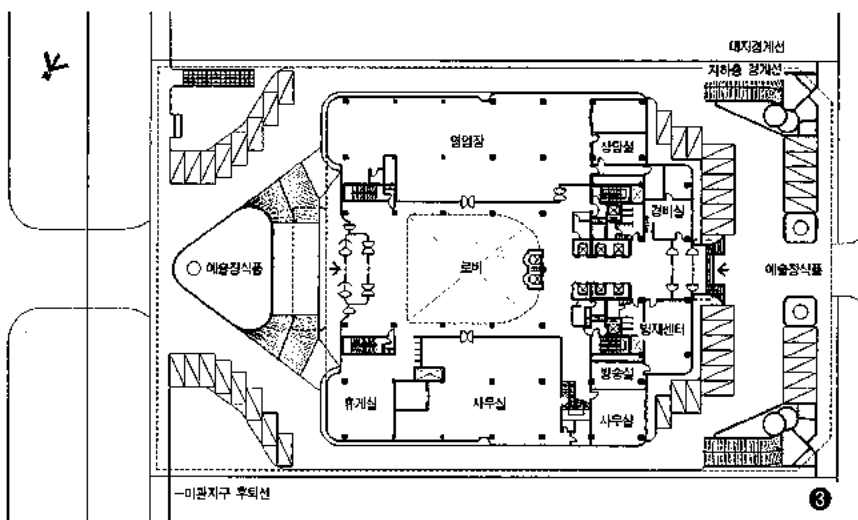
Korea Investment Trust Ltd.

崔慶一+洪英熙/신한종합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Choi, Kyung-Il & Hong, Young-Hee





2



3

위치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7-1
 지역·지구 / 일반상업지역, 주차장 정비지구,
 1종미관지구
 대지면적 / 6,611.996㎡
 건축면적 / 2,898.96㎡
 건폐율 / 43.8%
 용적률 / 500.7%
 규모 / 지하 5층, 지상 20층
 구조 / 철골, 철근 콘크리트조
 주차대수 / 482대
 외부마감 / THK 24mm 복층저반사유리, 알루미늄
 시트



4

- ① 북동측 전경 (의사당로측)
- ② 주출입구 돌출 캐노피
- ③ 배치 및 1층 평면도
- ④ 주출입구 돌출 캐노피



■ 설계 소묘

여의도 5·16광장에서 정면은 의사당로(100m 도로), 배면은 광장 APT(20m도로)를 배경으로 한 건물로서 86년 착공당시 호벨로 설계, 착공한 이래 여러가지 사유로 인해 설계를 변경, 93년 11월 중순에 준공되어 저층부(지하1~6층)는 건축주가 사용하고 고층부(7~19층)는 임대, 20층은 직원 후생복지시설로 사용하고 있다.

당초 호텔로 계획시에는 건물 내부에 분수를 설치하여 여러가지 기능의 동선을 유도하고 내부 인테리어를 규모에 맞게 설계하여 City 호텔로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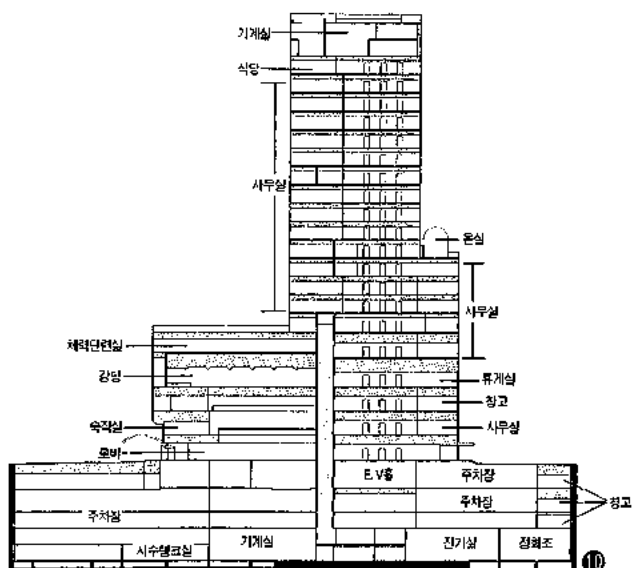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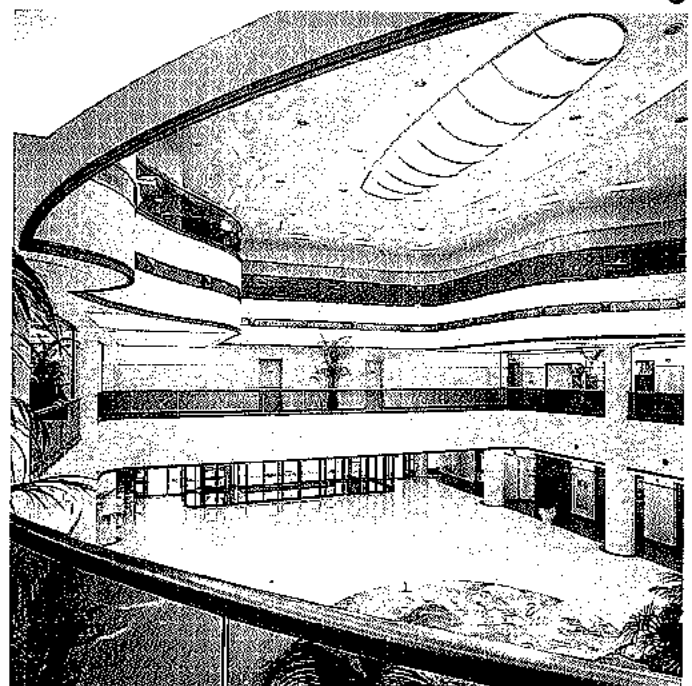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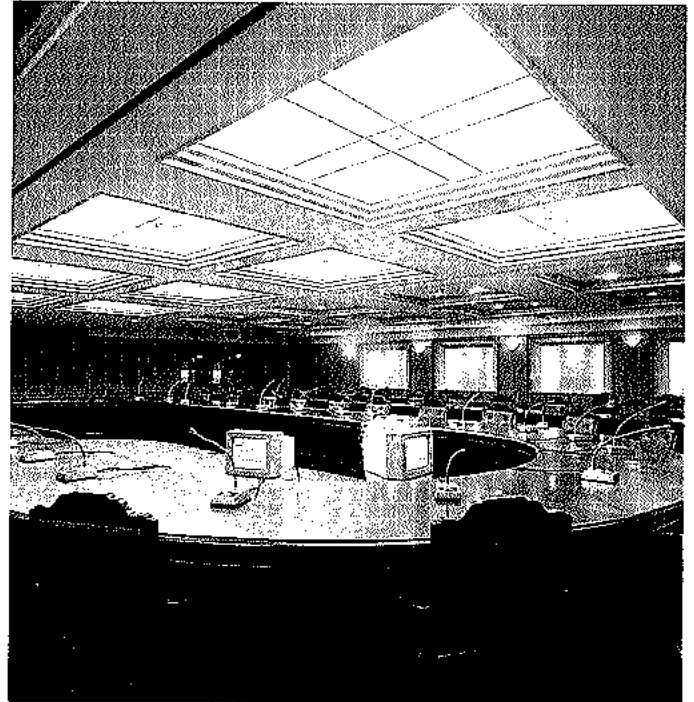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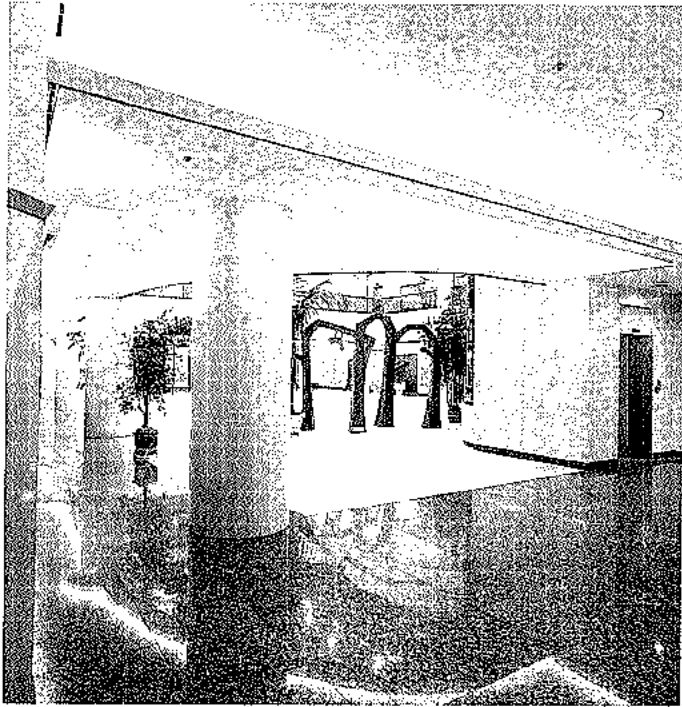
의 개성있는 분위기를 연출하고자 하였으나, 순수한 업무시설로서의 기능변경으로 업무기능의 개념에 맞게 아늑하고 부드러운 분위기를 독창적으로 표현하고자 심사숙고한 부분이다.

또한 업무기능의 작업 능률을 위해 바닥을 System floor로 설계하여 전기, 통신, 운송설비의 첨단화를 꾀함으로써 건물을 인텔리전트 빌딩에 가깝게 설비의 극대화를 꾀하고 추후 통신 및 전산망의 증설로 인한 점을 충분히 반영 설계한 것이 이 건물의 특성이라 할 수 있다.

건물진입 및 주변도로에서의 차량 진출입 또한

중앙부에 위치한 조경 및 예술장식품을 기점으로 동선을 자연스럽게 유도하여 명확하게 차량동선을 유도 분리시켰으며, 의사당로 지하도로부분에서 바로 진입할 수 있는 것 또한 특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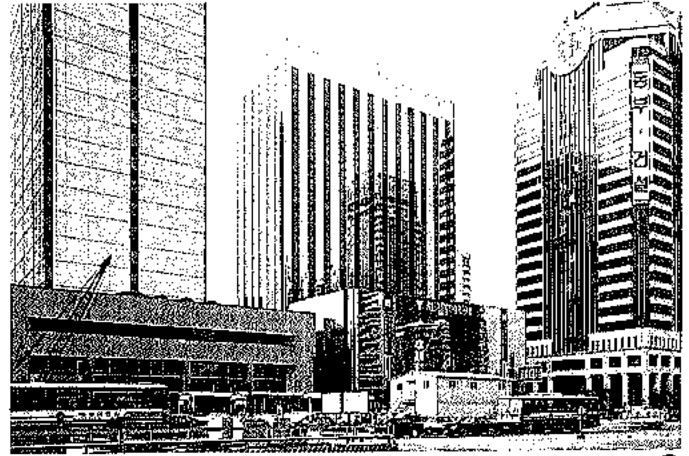
이같이 여의도 주변 많은 고층건물군에 각기 다른 개성으로 계획되어 단일 건축물로서의 기능은 충분히 고려되었다고는 하나, 나름대로의 신선한 이미지가 형성될까의 여부는 판단키 어려운 일이라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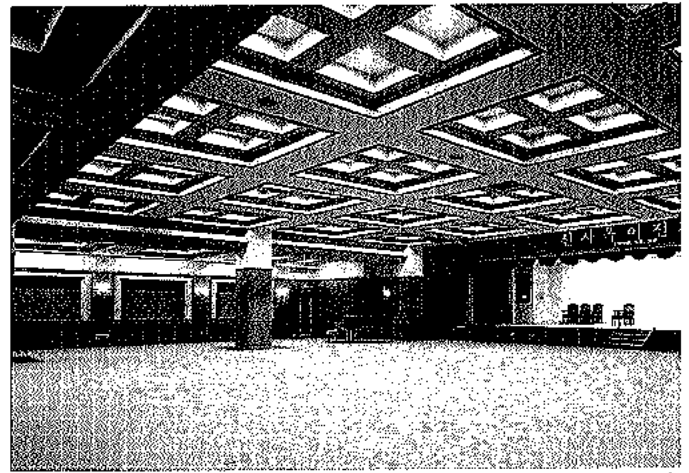
- ⑤ 주출입구측 예술조형물
- ⑥ 1층 로비 전경
- ⑦ 3층 세미나실 전경
- ⑧ 1층 내부 주출입구측 전경
- ⑨ 1~3층 중정부분 전경
- ⑩ 종단면도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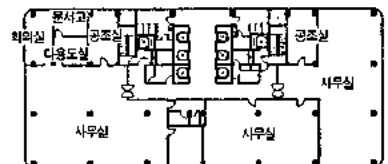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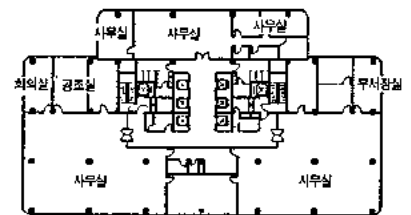
15



16



17



- ① 동측전경 (의사당로측)
- ② 지하 1층 평면도
- ③ 2층 평면도
- ④ 1층에서 본 중정
- ⑤ 여의도 소파타운에서 본 전경
- ⑥ 5층 대회의실 전경
- ⑦ 3층 내부에서 바라본 전경
- ⑧ 7층 평면도
- ⑨ 기준층 평면도

선문대학교

Sunmoon Univers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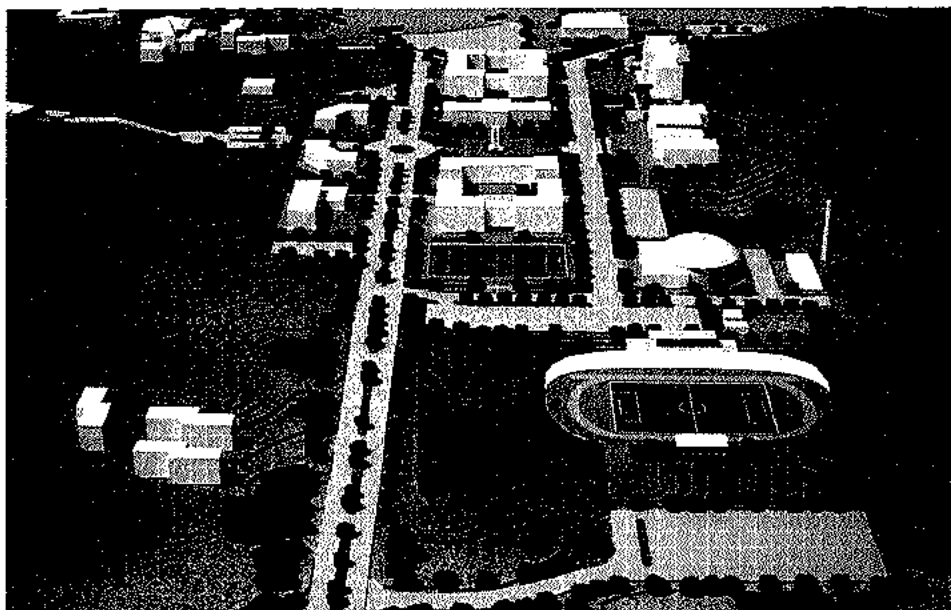
李忠彦 + 金光燮 / (주)원일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Lee, Chung-Eon & Kim, Kwang-Sub



①

대지위치 / 충남 아산시 탕정면 갈산리
 산91-1의140필지
 계획면적 / 2,400,000㎡(전체계획면적)
 대지면적 / 392,978.08㎡(1차 입지승인 면적)
 연면적 / 231,406.00㎡(1차 면적)
 용도 / 교육연구시설(대학교)
 외부미감 / 화강석 및 적벽돌



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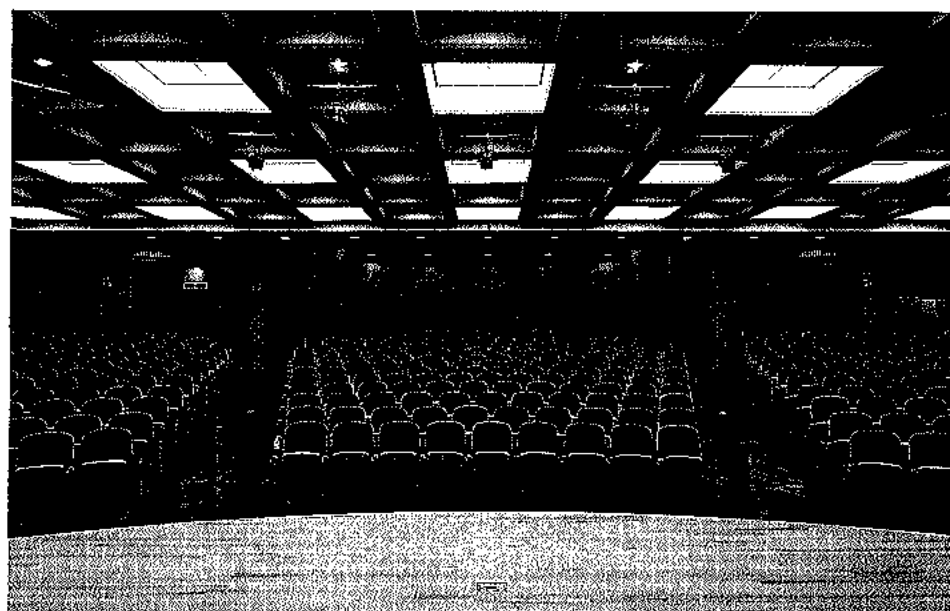
- ① 이공학관 전경
- ② 마스터플랜 모형도 1
- ③ 이공학관 남측입면도
- ④ 이공학관 대강의실 내부
- ⑤ 대강의실 내부



3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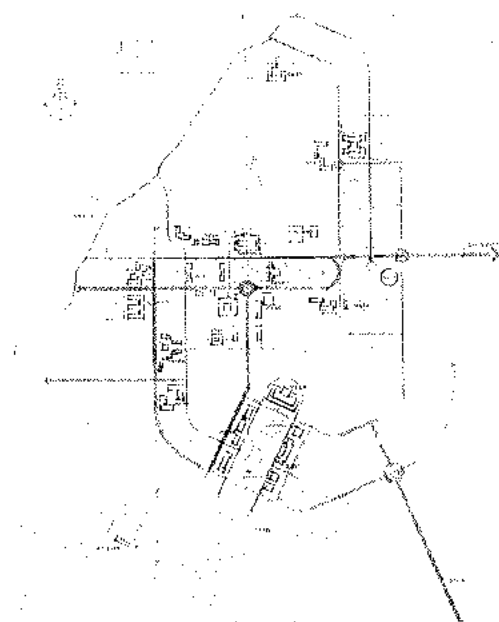
5

아산군 탕정면에 건립되어지는 본 프로젝트는 충청도의 인심품은 여유와 넉넉함을 지닌 대지의 풍광과 산수이다. 주변의 여건은 천안을 중심으로 한 태대학들의 이전으로 캠퍼스군을 형성하면서 교육도시로서의 면모를 더해가고 있다. 또한, 고속전철의 인접 연결과 함께 아산만의 발전 전망을 대비할때 좋은 입지여건이라 할 수 있다. 지형 또한 대지 북단의 삼봉산을 중심으로 지맥의 흐름을 이어 남쪽의 국사봉에 이르니, 전체의 축설정은 남북으로 설정되며, 부지내의 지형은 편안하고, 자연스럽고 잘 길들여진 수목의 식생군과 함께 조화되어 밝고 명랑한 아름다움을 더하고 있다.

이러한 대지의 환경과 공함이 맞는 건축물들을 스케치 하면서 어느덧 이 언덕, 저 언덕 넘나들기를 몇해 보냈던가, 건축주의 깊은 철학과 교육사업으로 후대를 위한 미래 지향적인 세계적 스



6



7



8

게일에 놀라며, 마스터플랜의 작업은 계속되어
졌다. 계속되어지는 마스터플랜의 작업에 건축주
와의 많은 시간과 대화로 이상과 현실속에서 건
축가로서의 생각할 수 있는 즐거운 고민을 갖
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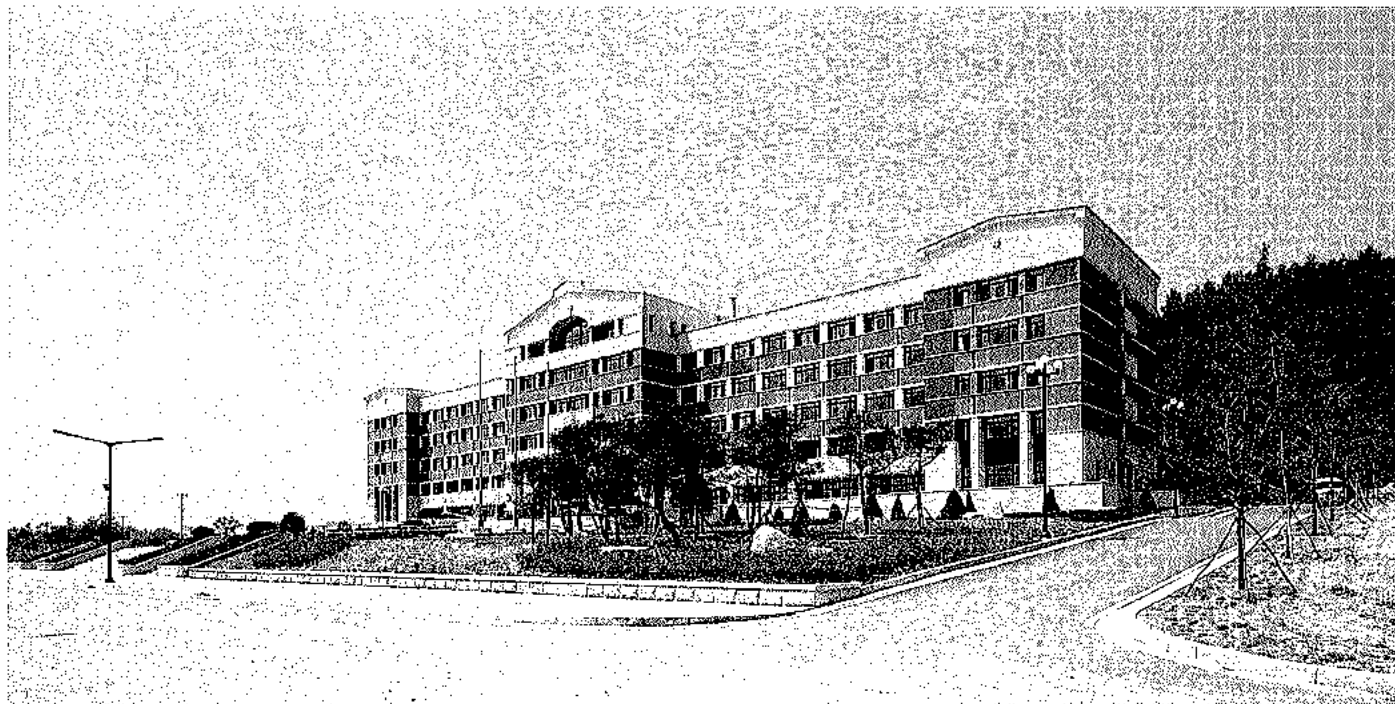
전체 마스터플랜이 Phase I 및 Phase II로 진행
되면서 점차 중심축이 잡힌 윤곽으로 Phase I의
이공대학 1차 강의동이 준공되었다.

이공학관으로서의 평면기능 및 외관, 변경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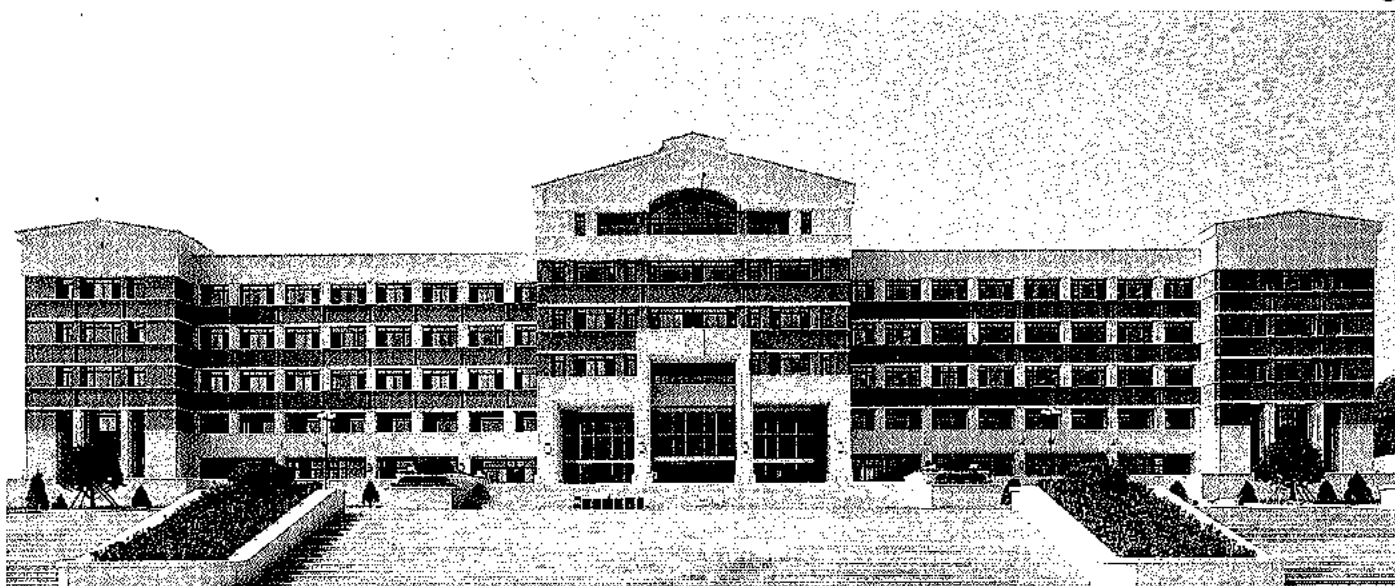
과정으로 조화를 이루지는 못하였지만 캠퍼스 분
위기의 첫 이미지 표출이자 장래 건축물들의 시
작으로 기준되어지는 건물이기 때문에 많은 시간
의 과정속에 만들어진 결과이다.

이후 Phase I의 이공대학본관, 사회대학 및 기
숙사, 천교관이 1993년 12월에 착공되었고, 계속
이어지는 국제문화센터, 학생회관, 대학본부, 중
앙도서관 등이 설계되어지면서 기능, 외관, 대학
으로서의 대학다운 낭만이 깃들고, 대 자연의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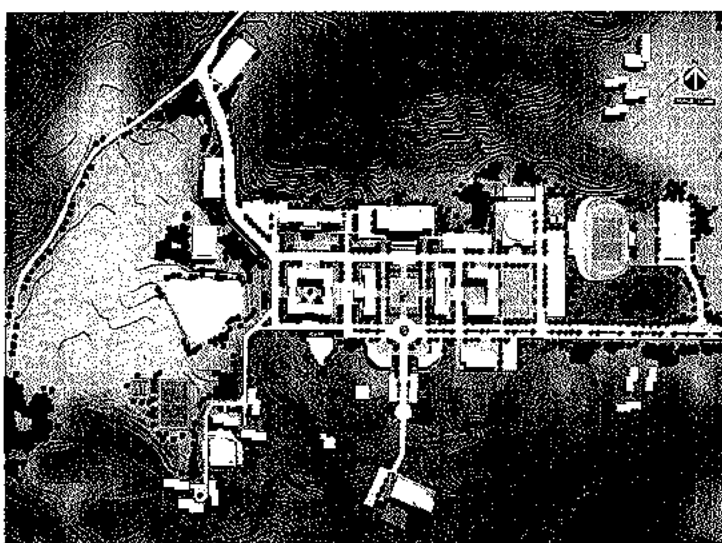
리와 건축주의 이념과도 일치되는, 여가에 담겨
져 탐구하고 연구하는 학생들 마저도 구성요소가
되어 전체적이면서도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이 되
어질 때 국가와 민족을 위한 세계적인 인체가 배
출되어지는 종합대학의 발전을 기대하면서 스테
디는 계속 되어질 것이다.



9



10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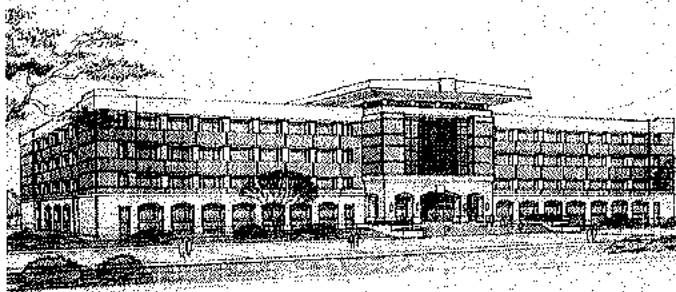


12

- ⑥ 이공학관 정면 전경
- ⑦ 마스터플랜 Phase I
- ⑧ 이공학관 계단실 전경
- ⑨ 이공학관 전경
- ⑩ 이공학관 전면 전경
- ⑪ 마스터플랜 모형도 II
- ⑫ 이공학관 기준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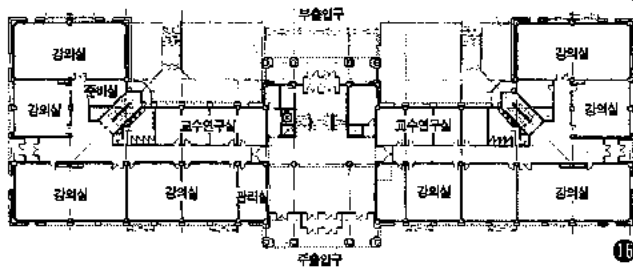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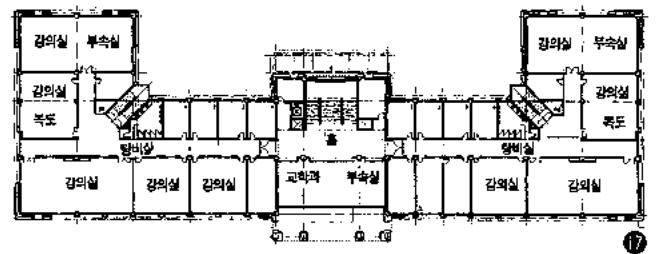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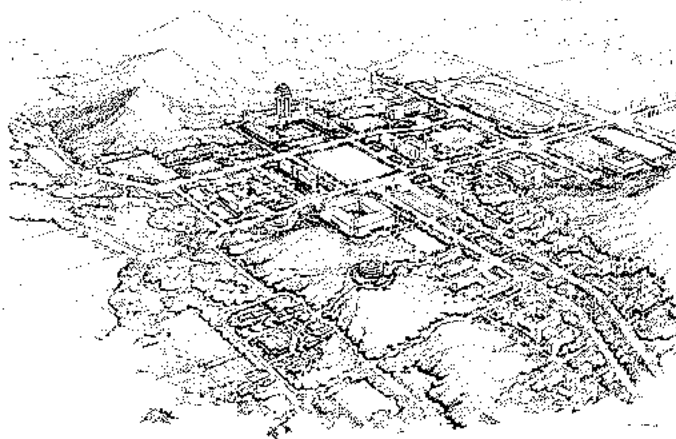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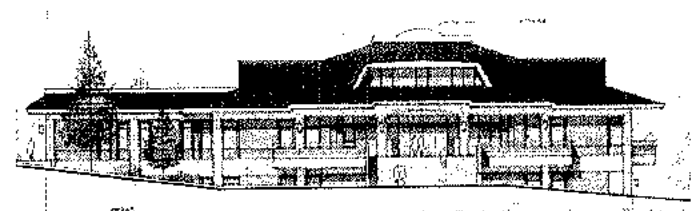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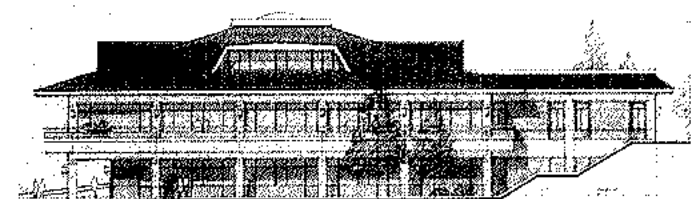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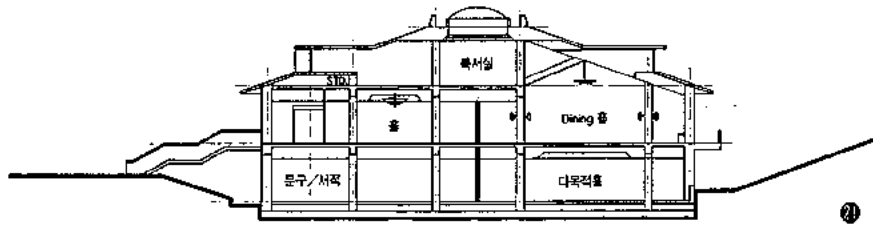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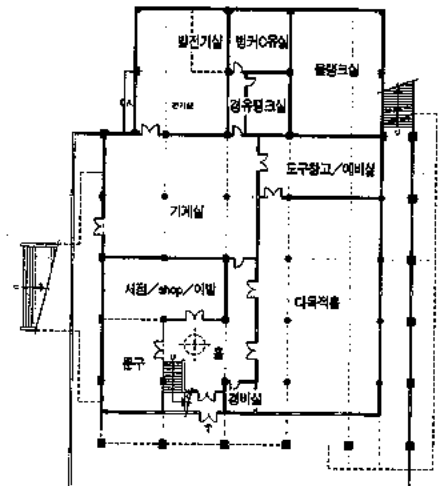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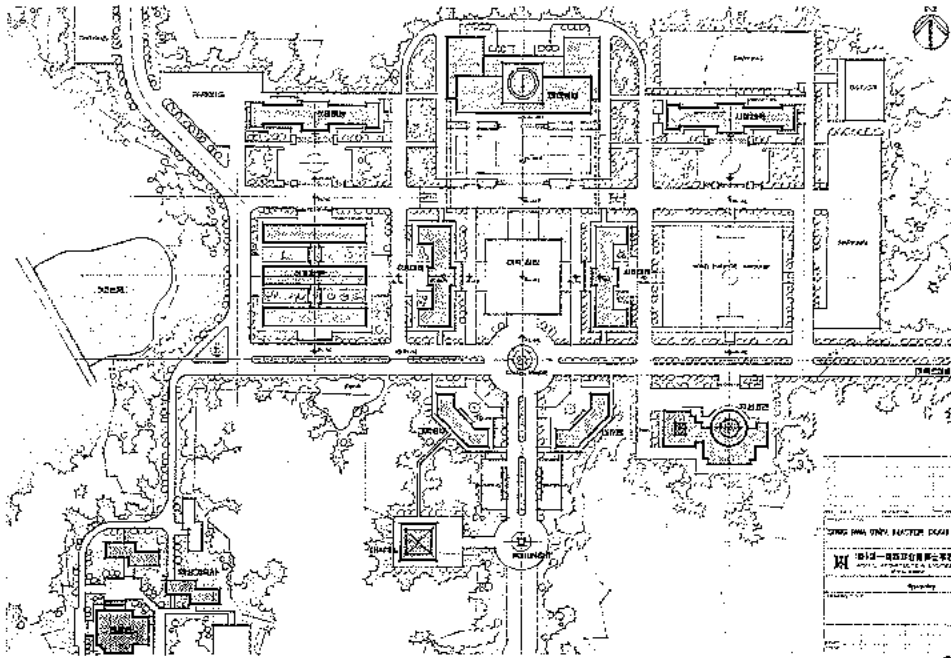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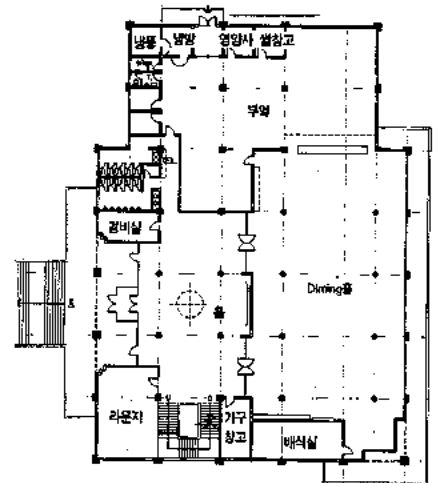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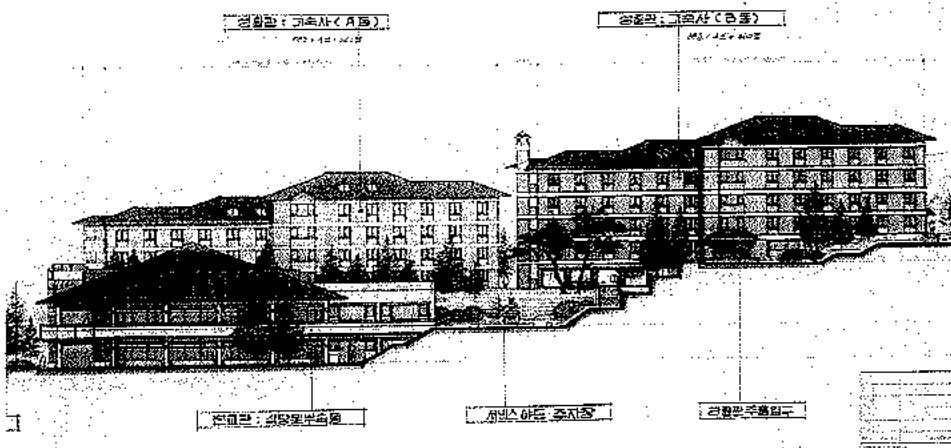
21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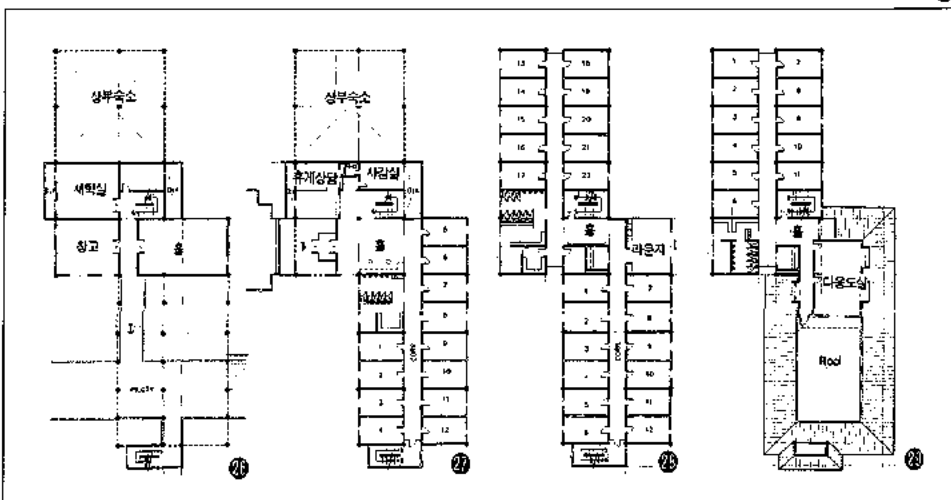


23



24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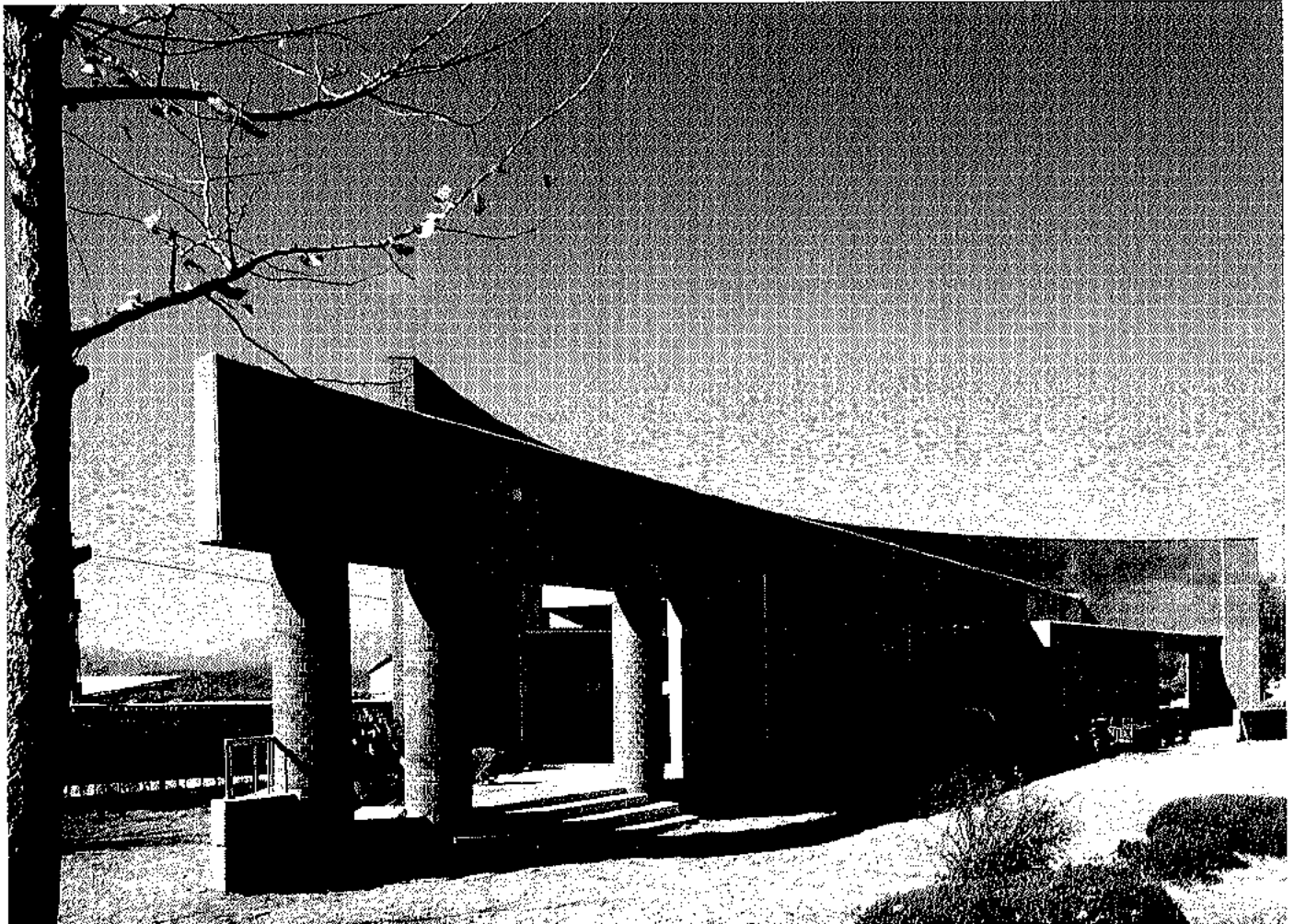
- ⑫ 이공학관 대강의실 전경
- ⑬ 자연과학관 정면 투시도
- ⑭ 후면 투시도
- ⑮ 1층 평면도
- ⑯ 2층 평면도
- ⑰ 조감도
- ⑱ 천교관 전면 투시도
- ⑳ 후면 투시도
- ㉑ 단면도
- ㉒ 1층 평면도
- ㉓ 2층 평면도
- ㉔ 미스터플랜 Phase II
- ㉕ 기숙사동 투시도
- ㉖ 기숙사동 1층 평면도
- ㉗ 2층 평면도
- ㉘ 3층 평면도
- ㉙ 3층 평면도

청도 농기구 박물관

Cheongdo Agricultural a Museum

吳基守/종합건축사사무소 환경·스페이스 5

Designed by Oh, Ki-Soo



1

대지위치 / 경북 청도군 각남면 예리리

지역 / 도시계획외 지역

대지면적 / 4,582㎡

건축면적 / 149.56㎡

연면적 / 149.56㎡

건폐율 / 3.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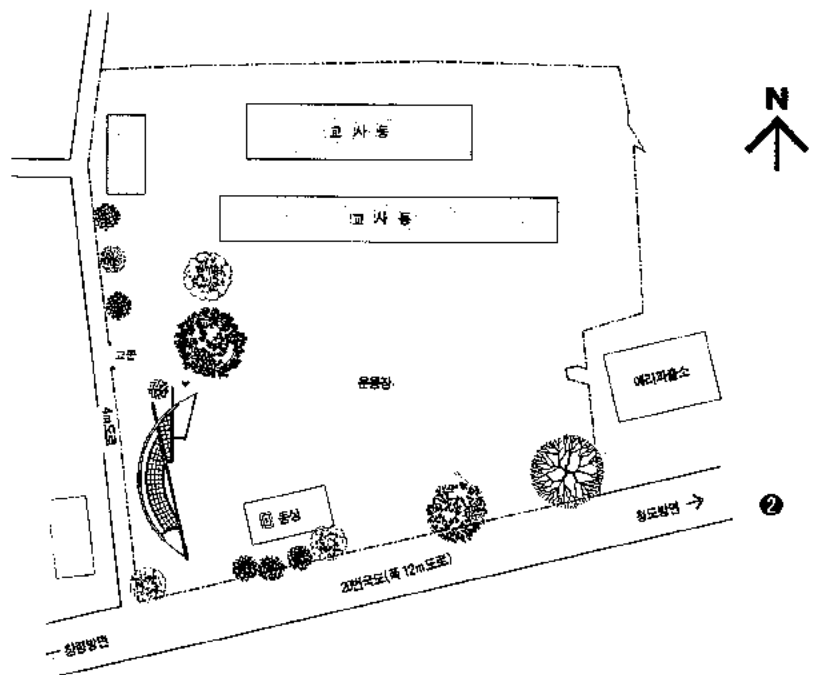
용적률 / 3.26%

규모 / 지상 1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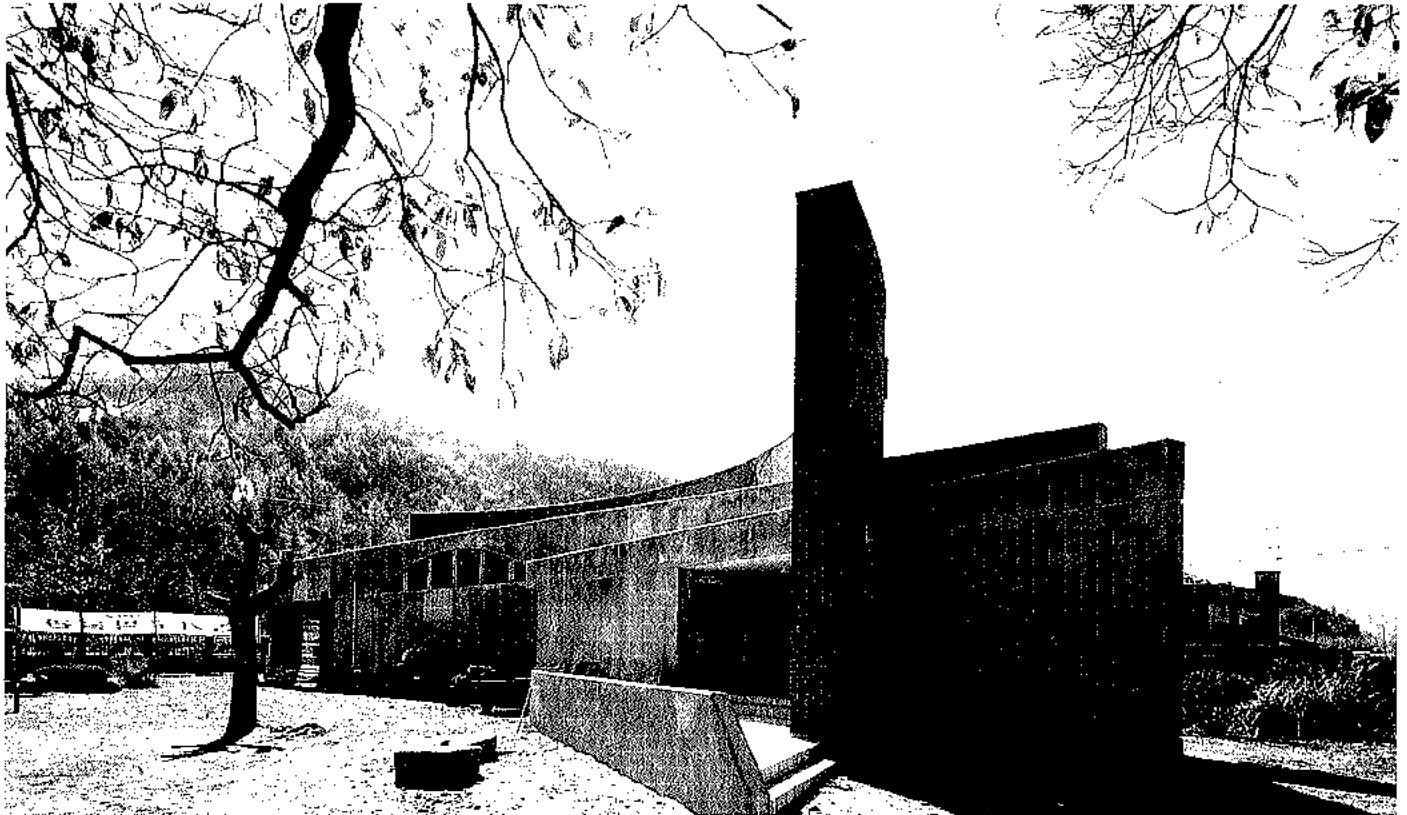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주요용도 / 전시시설

외부마감 / 노출콘크리트, 붉은벽돌 치장쌓기



2



설계소모

시대는 급변하고, 우리의 일상생활 양식도 다 변화되고 있다.

어제 쓰던 것들이 오늘 필요없게 되고, 오늘의 요구가 내일이면 무용지물이 된다.

과거,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이라는 우리 조상들의 절대명제 속에서 농기구는 우리들의 농경생활 속에서는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생활 필수품의 하나였다.

그러나 시대는 변하고 도시화의 물결은 우리 농촌의 들판을 뒤흔들어 놓았다. 대량생산과 편리성에서 농기구의 기계화는, 어제의 팽이, 호미를 더 이상 석양이 지는 농촌 들녘에서 볼 수 없게 만들었다.

농기구 박물관.

이제 이러한 Project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생소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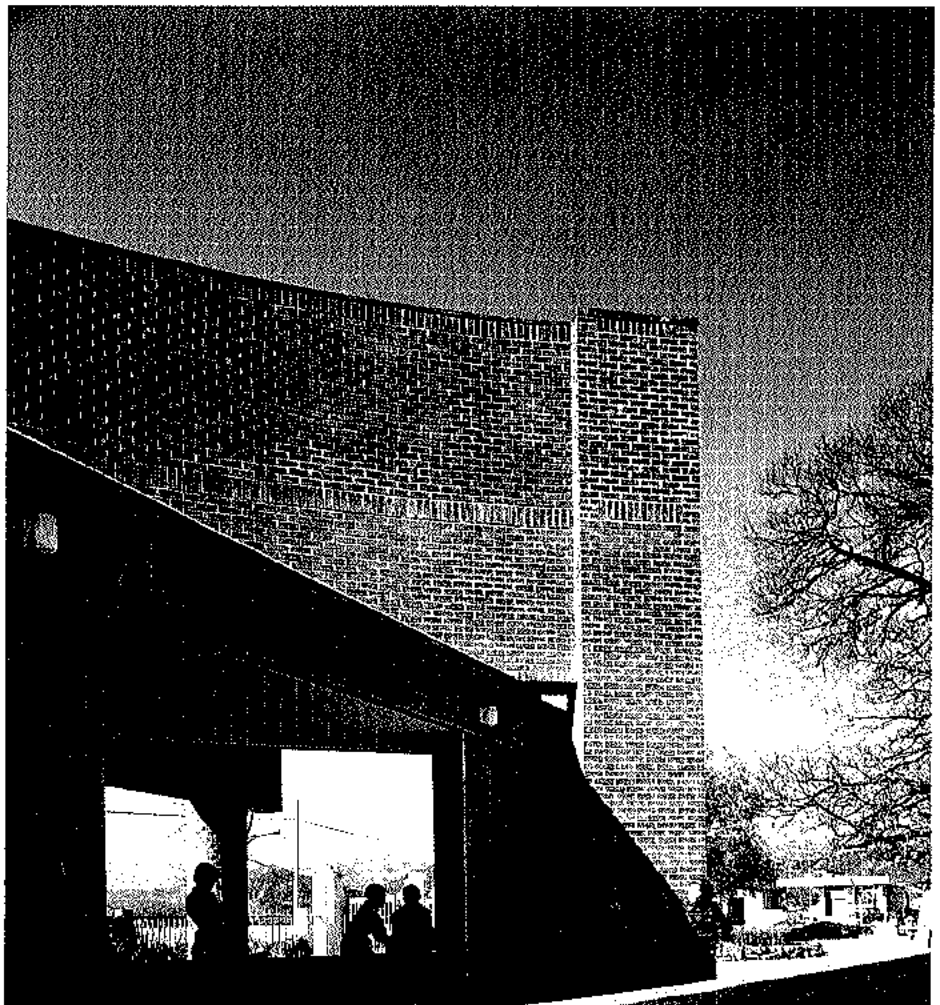
한 시대를, 아니 우리의 과거 들녘을 품어왔던 재래 농기구들은 이제 진열장(?)에 자리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우리 조상들의 소박한 숨결을 느낄 수 있는 쉼터 말이다. 그러한 쉼터가 처음 기획된 것은 92년을 마무리할 즈음이었다. 대구에서 자동차로 한 시간 남짓 걸리는 조그마한 시골학교인 각남 국민학교에 차차 사라져가는 농기구를 수집, 보관하며 홍보, 교육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농기구 박물관을 기증하겠다는 운경재단의 의견을 듣고, 기꺼이 설계를 시작하게 되었다.

이러한 운경재단의 노력이 확대되어, 우리의 것을 찾고자 하는 모든이들에게 신선한 감동이 되었으면 한다.

설계에 임하면서 다음의 몇가지를 기대해본다.

건물은 단순히 비바람을 막는 수단만이 아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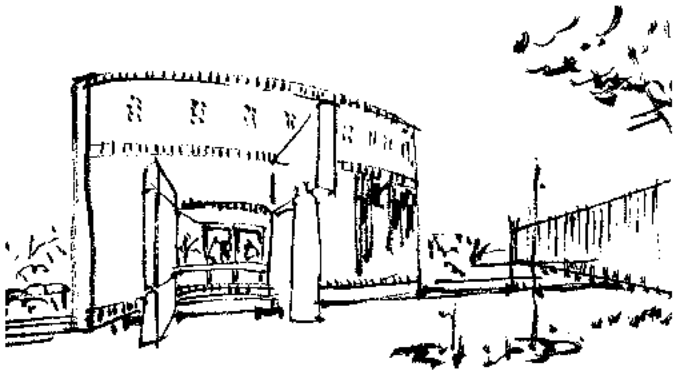
1 동측전경

기하학적 곡선으로 될 입면은 보는 이로 하여금 유연함과 역동감을 느끼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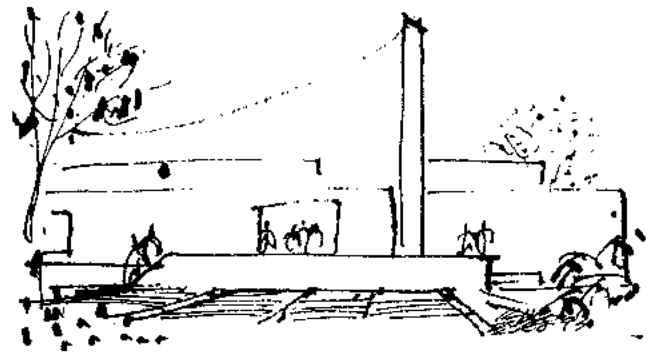
2 배치도

3 북동측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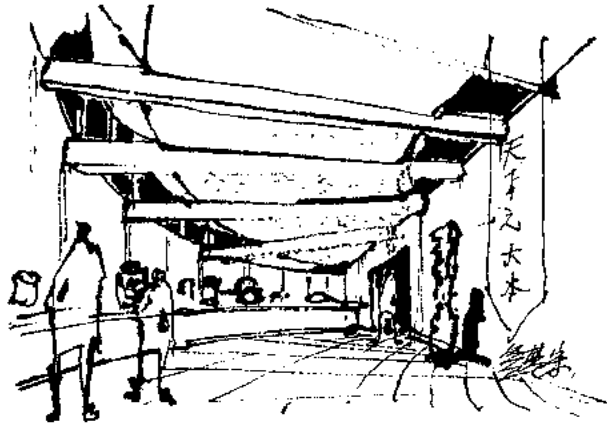
4 외부상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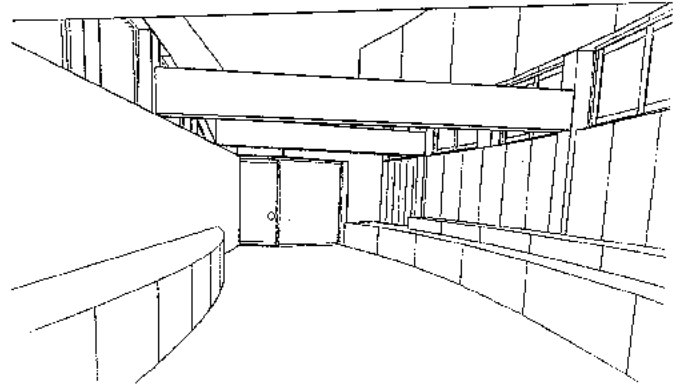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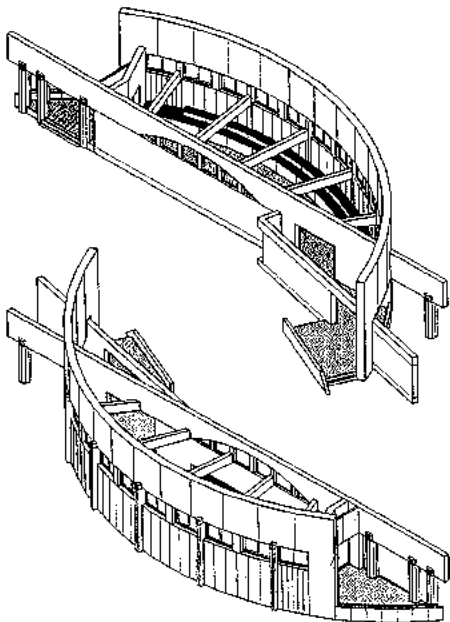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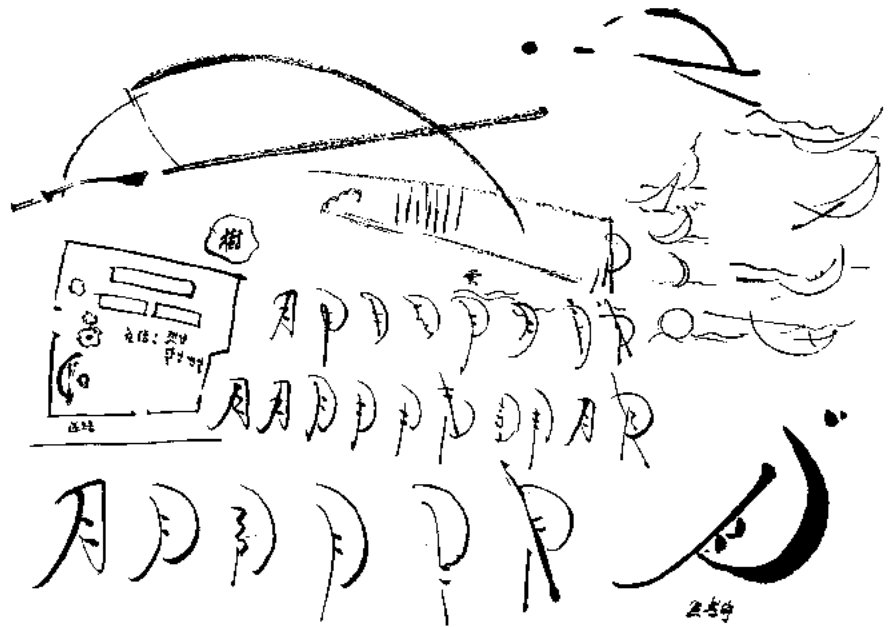
7



8



9



10

라, 건물 이외의 기능도 수용하고 있다는 것을 어린 학생들에게 자연스럽게 느끼게 하며, 교육의 장, 놀이의 장, 기념의 장으로서 어린 학생들에게 인식되어 학창시절이 보다 아름답게 기억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계획개념

흔히 작은 시골 학교에서 느낄 수 있듯이 남향 집 교사 2동이 넓은 논밭에 덩그러니 놓여지고, 남쪽에 자그마한 운동장이 있다. 여기에 놓이게 되는 작은(45평) 농기구 박물관이다.

계획의 착안점으로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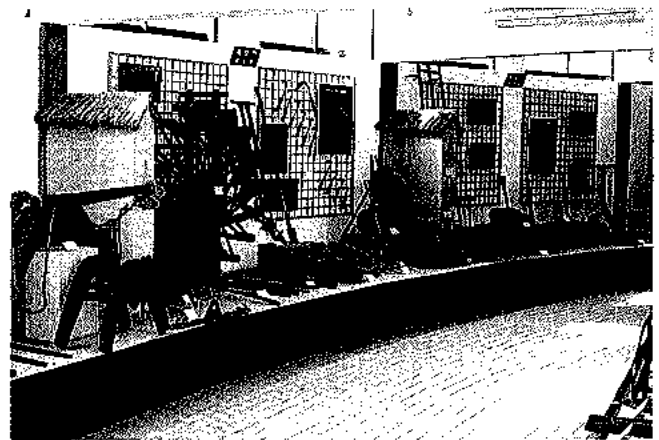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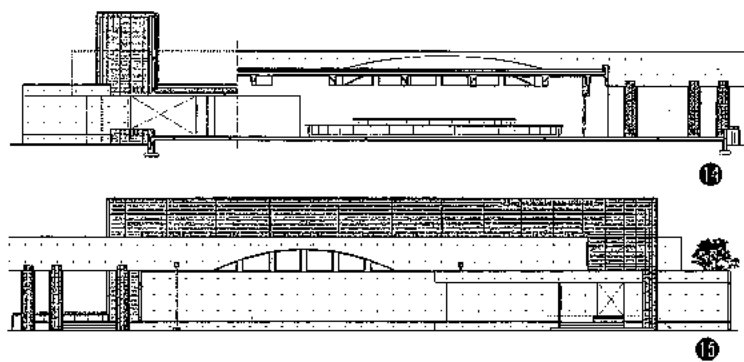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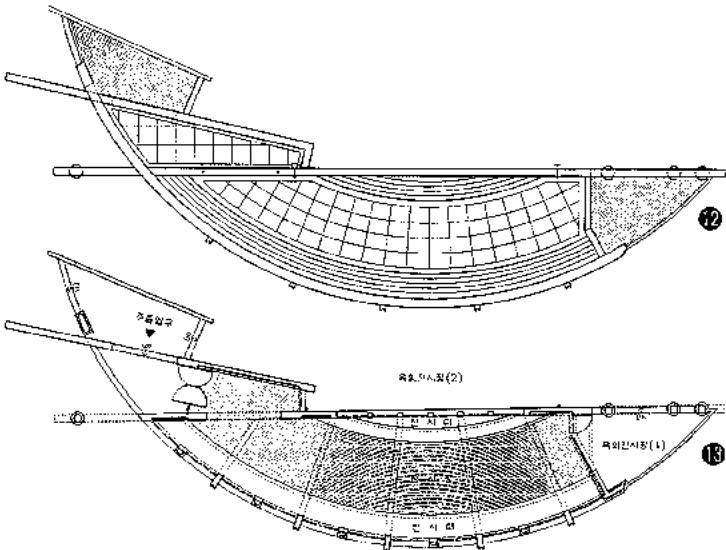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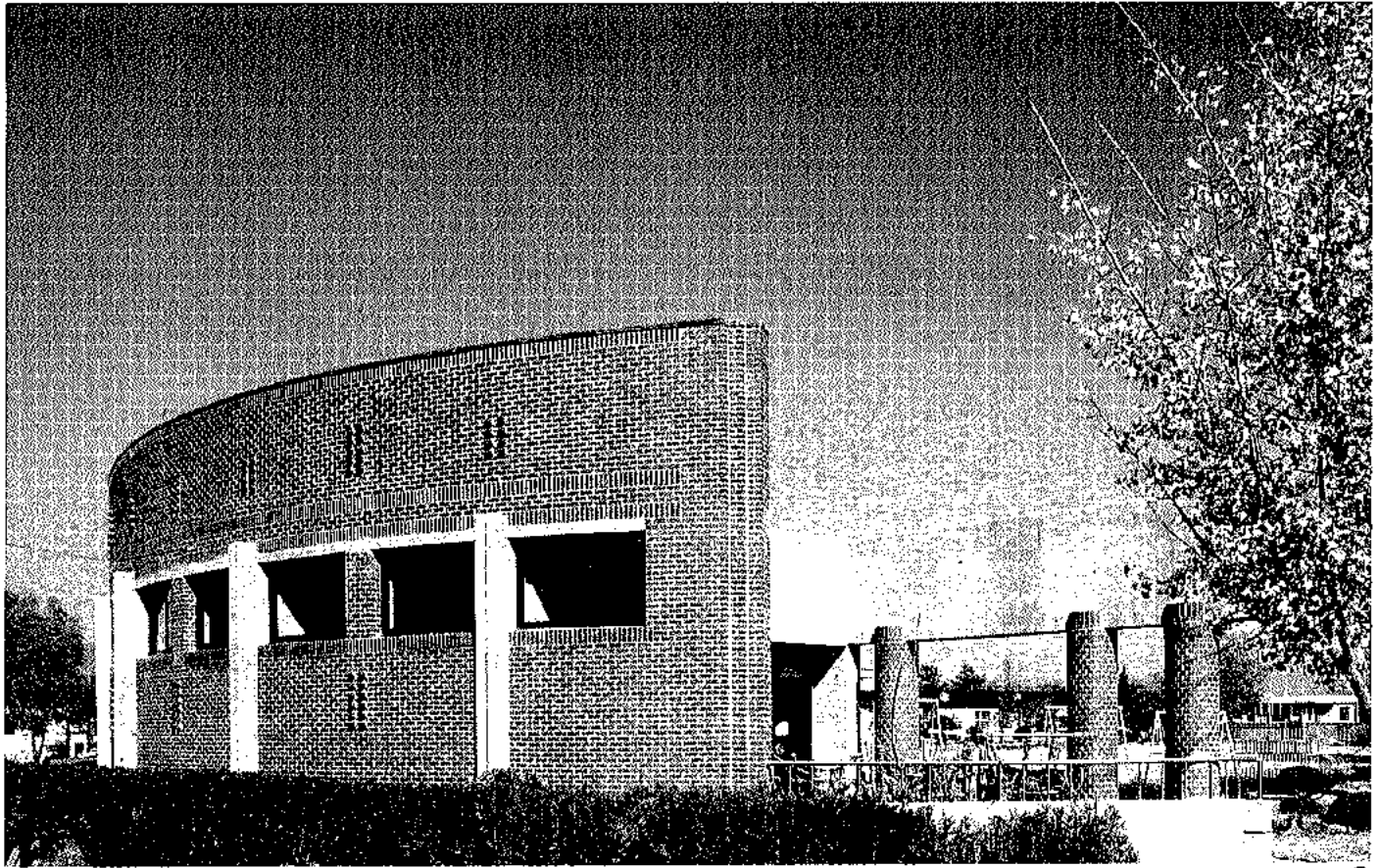
1. 공간에 잣대(尺)를 주어 크기를 느끼게 하

- 고, 친근감을 느낄 수 있는 분위기 부여와,
2. 별관에 놓여져 있는 단순한 상징적인 건물에서 벗어나 밀도가 높은, 그리고 적극적인 활동이 보이는 공간을 조성 함으로서 어린 학생들에게 보다 강력한 의미를 제공하며,
3. 모교에 대해 주인의식을 가질 수 있는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분위기가 함께 하기를 기대한다.

운동장 서쪽에 남북으로 길게 배치된 본 건물은 운동장을 "L"형으로 감싸줌으로서 기존의 고목(古木)과 더불어 밀도 있고, 친근감을 주는 공간으로 만들어 줄 것을 기대하며, 곡면을 이룬

벽은 학교교정의 내,외를 인지할 수 있게 한다. 구조물이 이루는 틀(그림의 액자)을 통하여 느껴지는 풍경, 조망은 크기를 알게하는 자(尺)의 기능을 해줄 것이다. 곡면을 따라 열려진 높은 창은 천장의 반사를 통하여 충분한 밝기를 실내에 제공함으로써, 에너지를 절약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소박하게 처리된 외부재료는 가식없는 순전한 어린이의 마음과 동화되어, 오래 록 기억에 남는 건물이 될 것으로 믿는다.



- | | | |
|-------------|------------|------------|
| ⑤ ⑥ 입면스케치 | ⑩ 형태개편 스케치 | ⑬ 종단면도 |
| ⑦ 내부스케치 | ⑪ 서측전경 | ⑭ 동측 입면도 |
| ⑧ 실내 투시도 | ⑫ 지붕 평면도 | ⑮ 전시관 내부전경 |
| ⑨ 입면 엑소노메트릭 | ⑬ 1층 평면도 | |

전북은행 본점

Cheonbuk Bank Head Offi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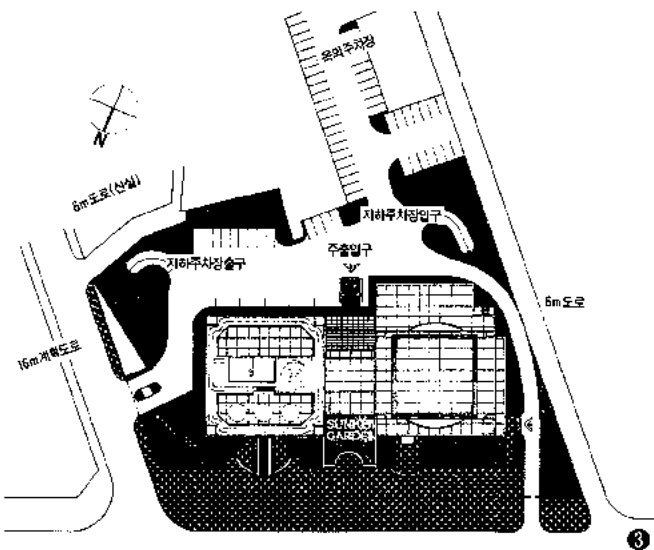
(주) 정림건축

Designed by Junglim Architects & Enginee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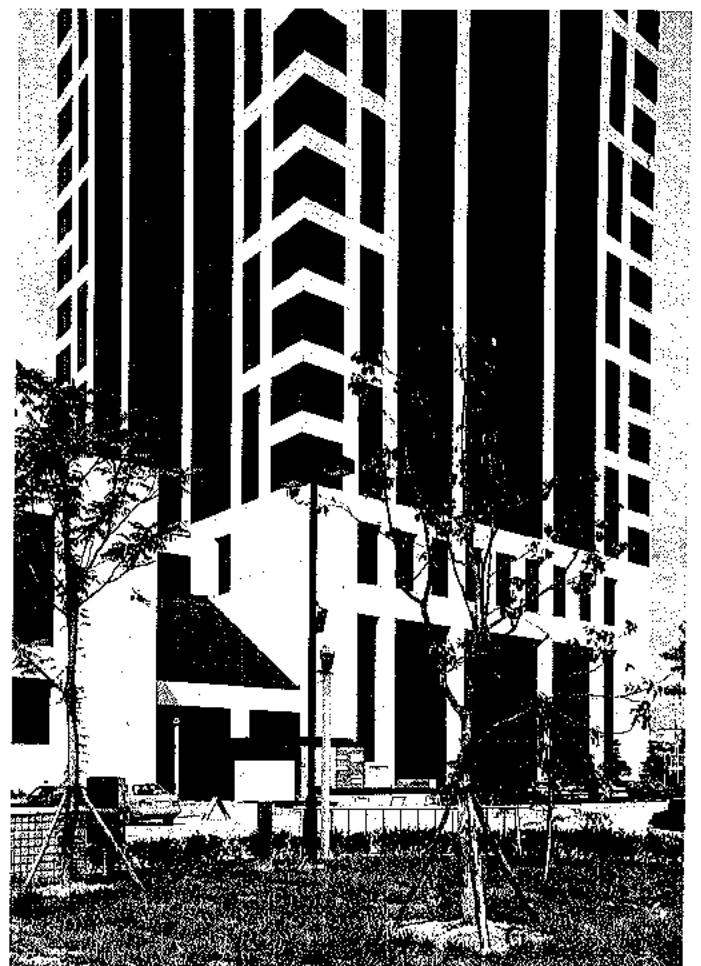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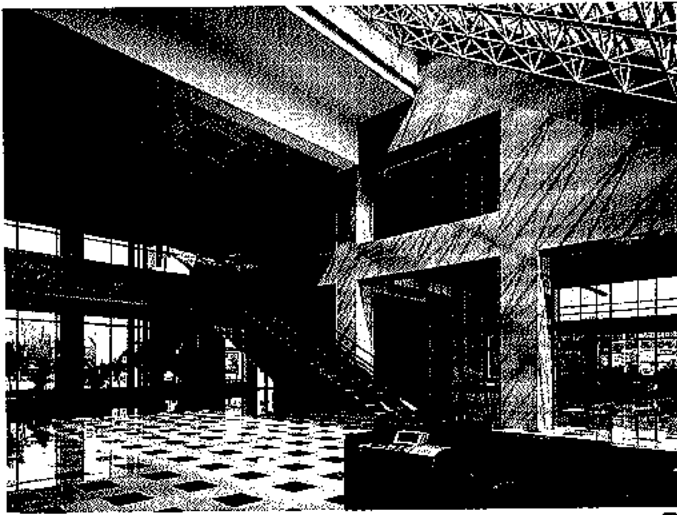
3

위치 /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669-2의 30필지
 지역·지구 / 주거지역, 상업지역, 3종미관지
 구, 최저고도지구, 방화지구
 대지면적 / 10,787.00㎡
 건축면적 / 3,184.08㎡
 연면적 / 41,892.91㎡
 건폐율 / 29.51%
 용적률 / 252.00%
 규모 / 지하 3층, 지상 20층, 옥탑 2층
 구조 /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외부마감 / 화강석물감기
 비너구이(건설)+클러알부미늄 새
 시 THK24 열선반사복층유리

- ① 전경
- ② 내부 아트리움
- ③ 배치도
- ④ 외부상세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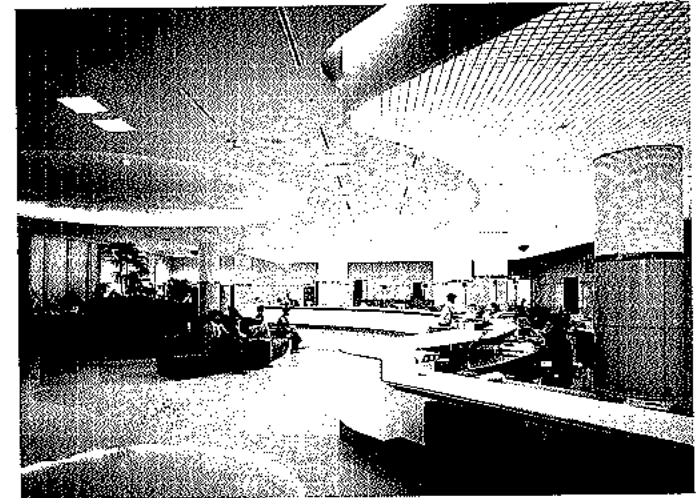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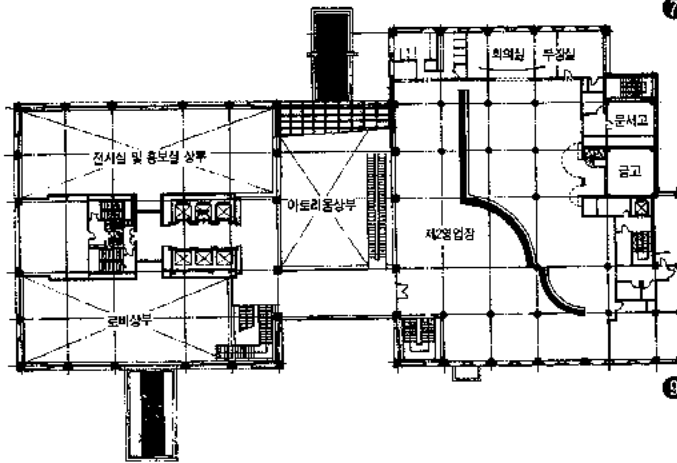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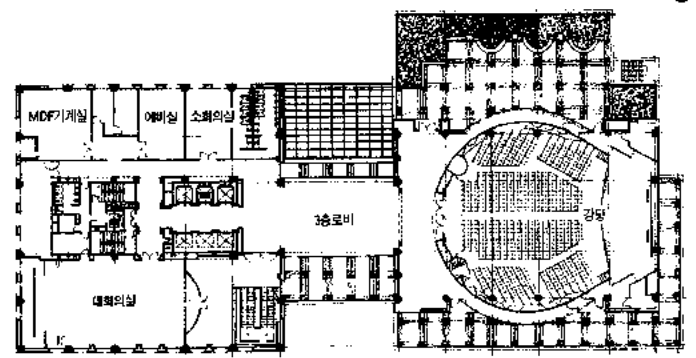
7



8



9



10

■ 설계소요

호남고속도로의 전주전입로인 팔달로와 전국의 세역사와 팔달로를 잇는 백제로를 사이에 두고 전북 대학교와 마주하고 있다.

공공에 대한 기본을 위하여 건물의 전면부에 대규모는 녹지와 선관기둥을 조성하여 가로공간을 풍부하게 하였다.

차량은 건물의 측·후면으로 유도하고, 보행자는 건물의 전면부를 이용하여 사무실과 영업장 출입구를 분리하여 이용과 관리의 효율을 높였다.

매 스

고객과 접촉이 빈번한 부분은 저층부에 수평적

매스로 사무실은 고층부에 수직적 매스로 계획하였다. 영업장 및 대규모 집회공간과 사무실 부분은 별도의 출입구를 설치하고 두 기능을 연결하는 상징적 공간으로 Major Space로 아트리움을 설치하였다.

기준층 및 코어

계획대지 규모 및 법규, 전체계획면적 등의 제한 고려사항을 검토하여 기준층 면적을 약 350평으로 정하였다.

코어로 건물을 크게 양분하여 양측의 사무공간으로 직접 진입함으로 불필요한 복도면적을 줄이는 동시에 부서 및 각실의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

게 했다.

파사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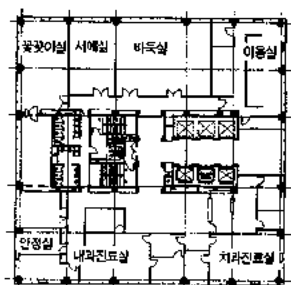
타워는 반사유리면을 바탕으로 수직화강석 스트라이프를 상징적으로 구성하였으며, 면의 확장성과 고층부 전체의 통일감을 갖도록 모서리 부분의 밀도를 높였다.

저층부는 강당부분에 곡면미러글라스를 도입하여 장방형 건물에 경쾌함을 주어 육중한 이미지에서 탈피, 조형성을 강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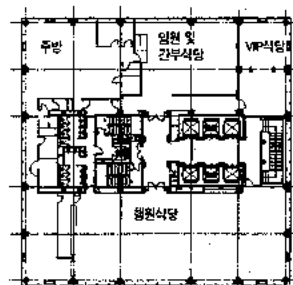
아트리움은 타워와 저층동을 연결하고 저층부와 유사한 패턴을 도입 통일성을 부여하였다.



11



12



13

- ⑤ ⑥ ⑦ 로비전경
- ⑧ 평면배치도와 조화시킨
천장부 디테일
- ⑨ 2층 평면도
- ⑩ 3층 평면도
- ⑪ 좌측면 전경
- ⑫ 18층 평면도
- ⑬ 20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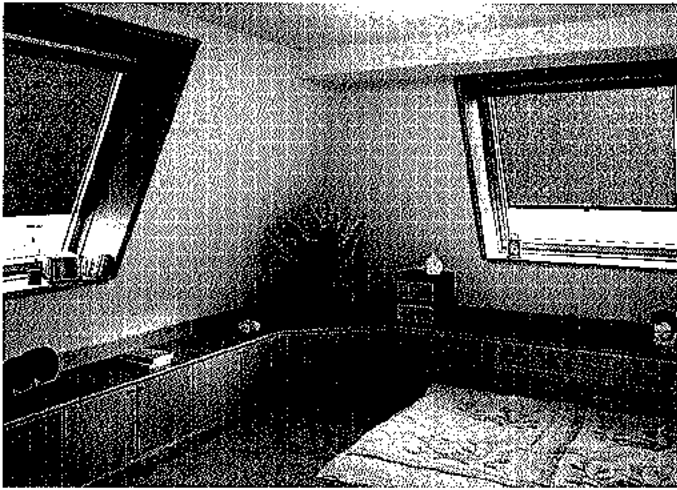
반포 패밀리아파트

Banpo Family Apart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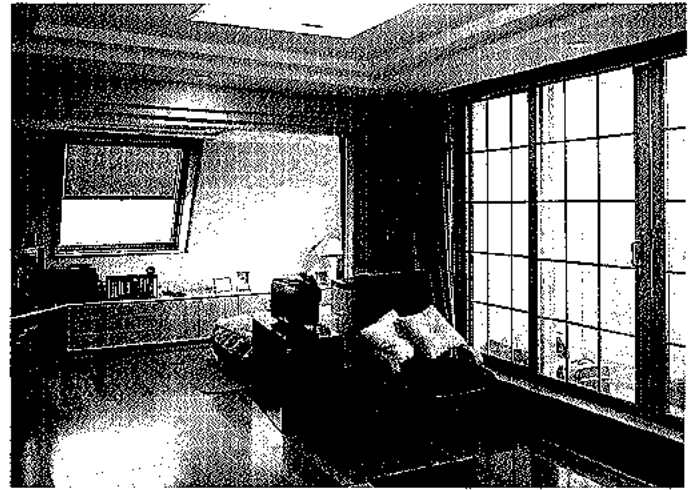
李康周 + 李昶雨 / 가람 · 나라 종합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Lee, Kang-Joo & Lee, Chang-Woo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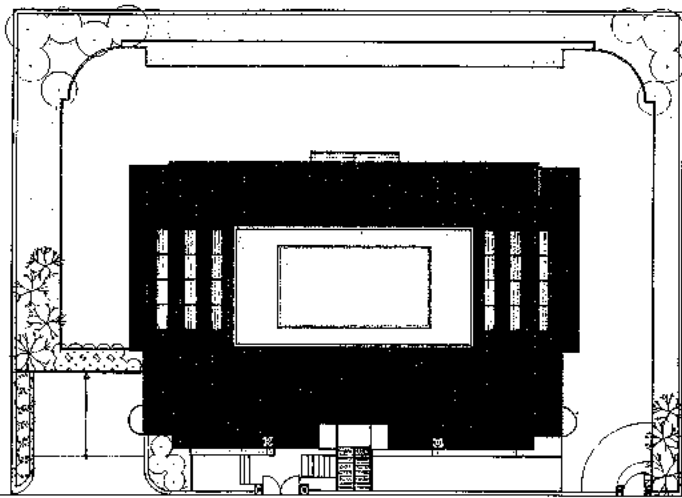
3



4



5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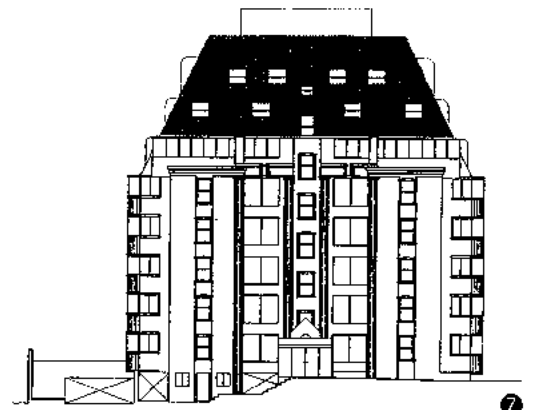
■ 실례소요

법원청사 북편의 둘러싸인 관계로 주변 교통량에 비해 조용하고 쾌적한 환경을 갖고 있는 본 대지는 서측에 8m도로를 끼고 있고, 남북으로 긴 형태를 가지고 있다. 북측으로 경사진 대지인 관계로 일반적으로 주거지로 바람직하지 않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남측과 북측 경계까지 약 2m의 고저차를 이용하여 지하 주차장을 여유있게 설치하고 지상의 공간을 정원으로 사용할 수 있음이 강남의 값 비싼 택지위에 최대의 용적으로 설계해야만 하는 현실에서 좁은 대지상에 계획하는 아파트로서는 다행으로 생각된다. 평면 계획에서 전용면적 규모제한으로 한층에 2세대를 배치하게 되었고, 대지 형상이 남측으로 길게되어 입주민의 양해 아래 남쪽과 북쪽 세대로 나누어지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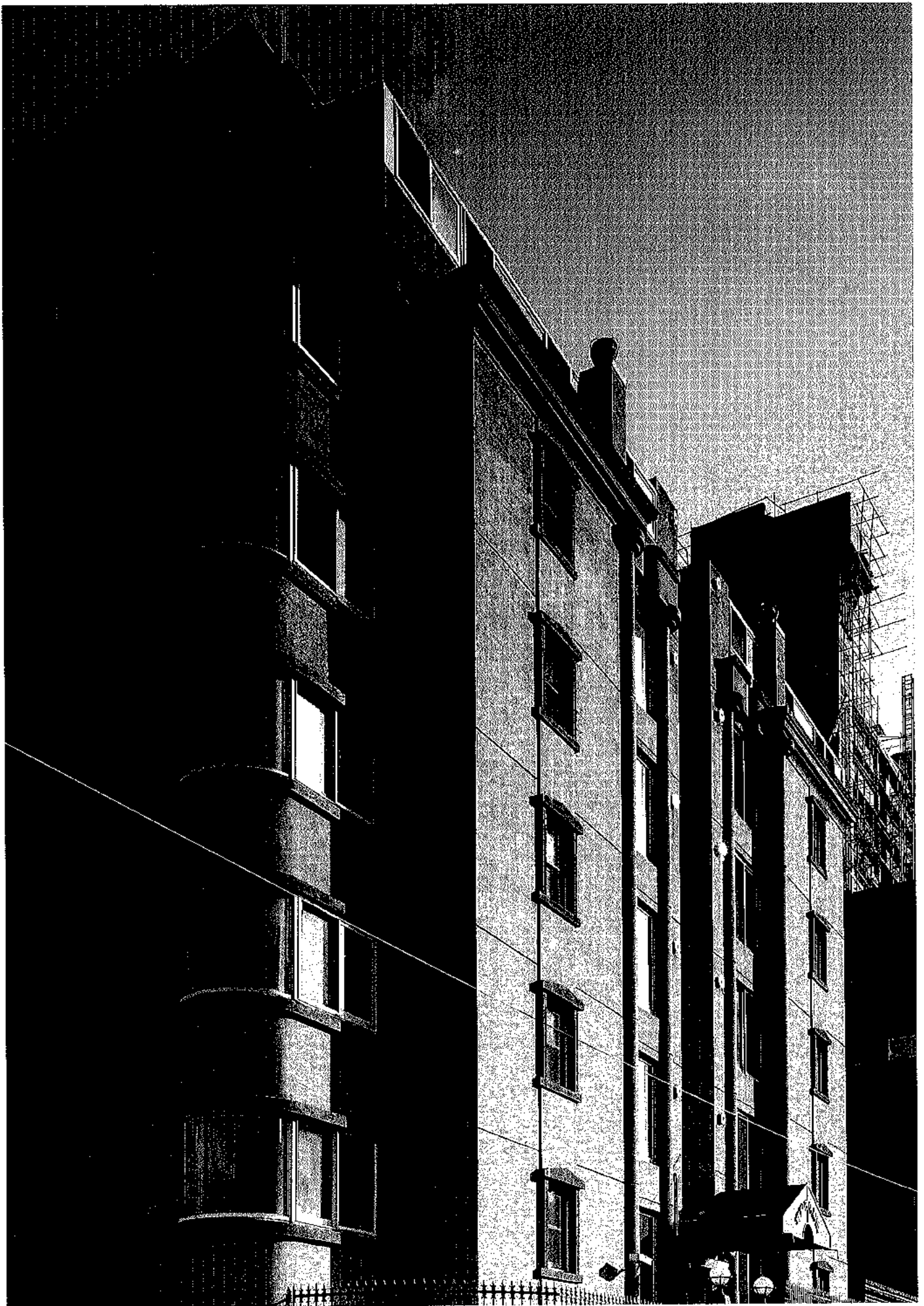
가정생활이 점차 거실 중심으로 바뀌게 되고 안방의 기능이 침실의 역할로 줄게 되어 거실 공간을 동일한 평형의 다른 주택들보다 넓게 개방적으로 계획하였다. 좁은 대지에 가득차 보이는 외관을 평면상의 요철과 드라이브를 사용하여 클래식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7~8층의 줄어든 부분의 경사지붕 처리 등으로 해소하려고 노력해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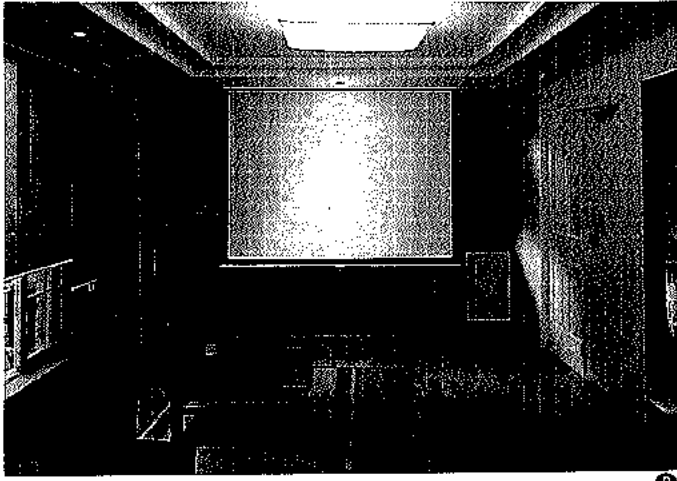
대지위치 / 서초구 반포동 49-6
 지역·지구 / 일반주거지역, 주차장정비지구
 대지면적 / 397.8㎡
 건축면적 / 346.29㎡
 연면적 / 2,613.86㎡
 건폐율 / 38.57%
 용적률 / 291.14%
 구조 / 철근 콘크리트조
 층수 / 지하 1층, 지상 8층
 주차대수 / 18대

- 1 우측전면 전경
- 2 7층 침실
- 3 7층 안방
- 4 기준층 거실
- 5 기준층 주방
- 6 배치도
- 7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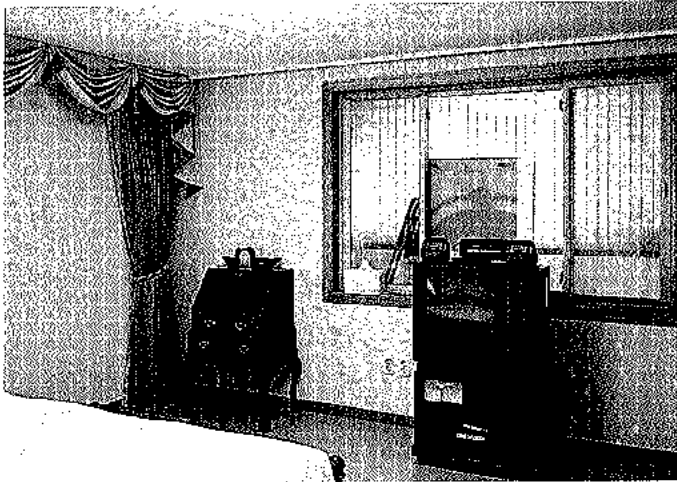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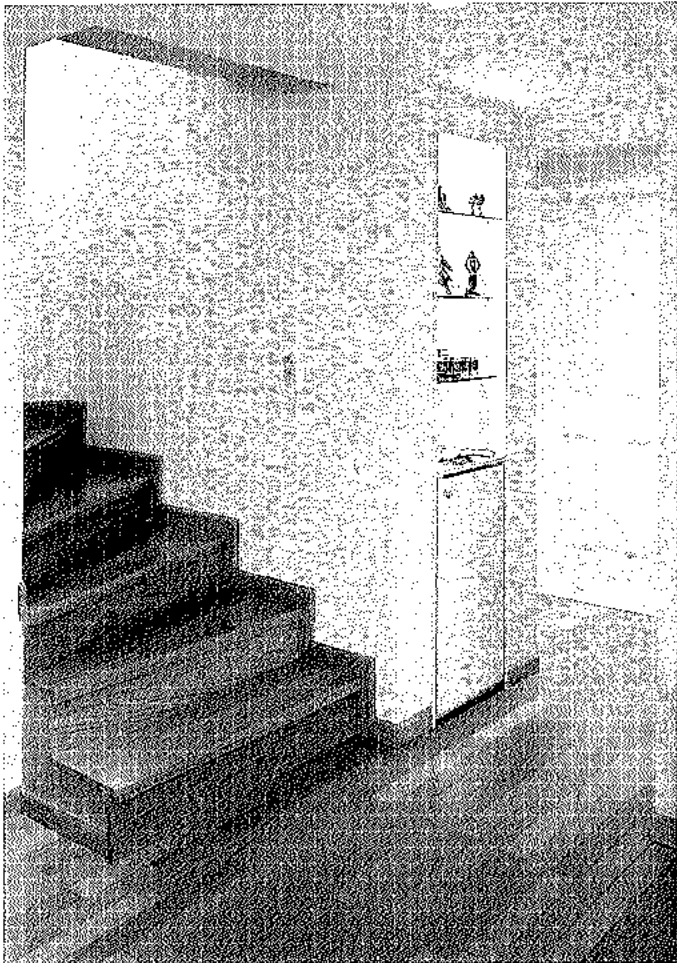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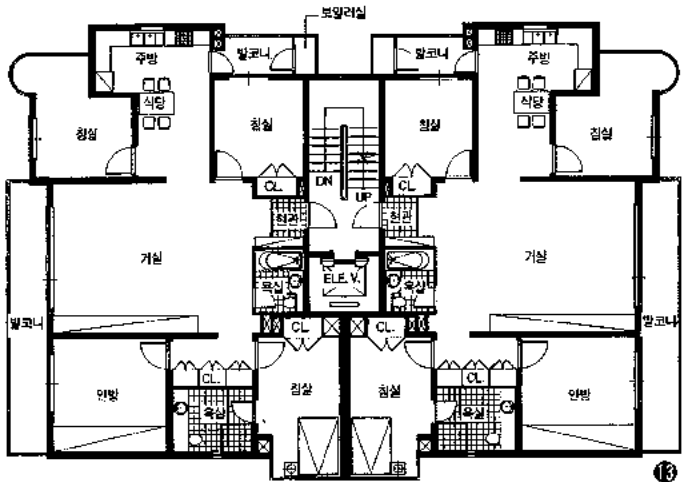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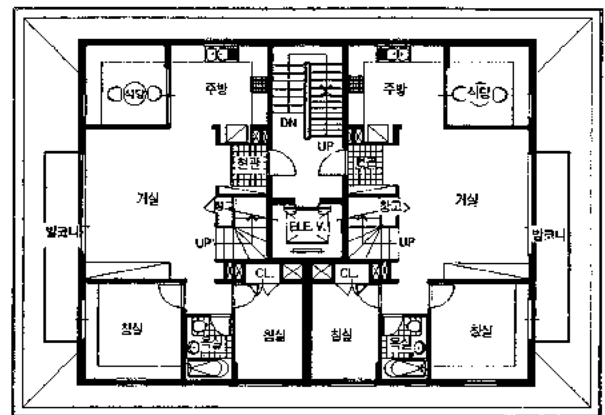
11



12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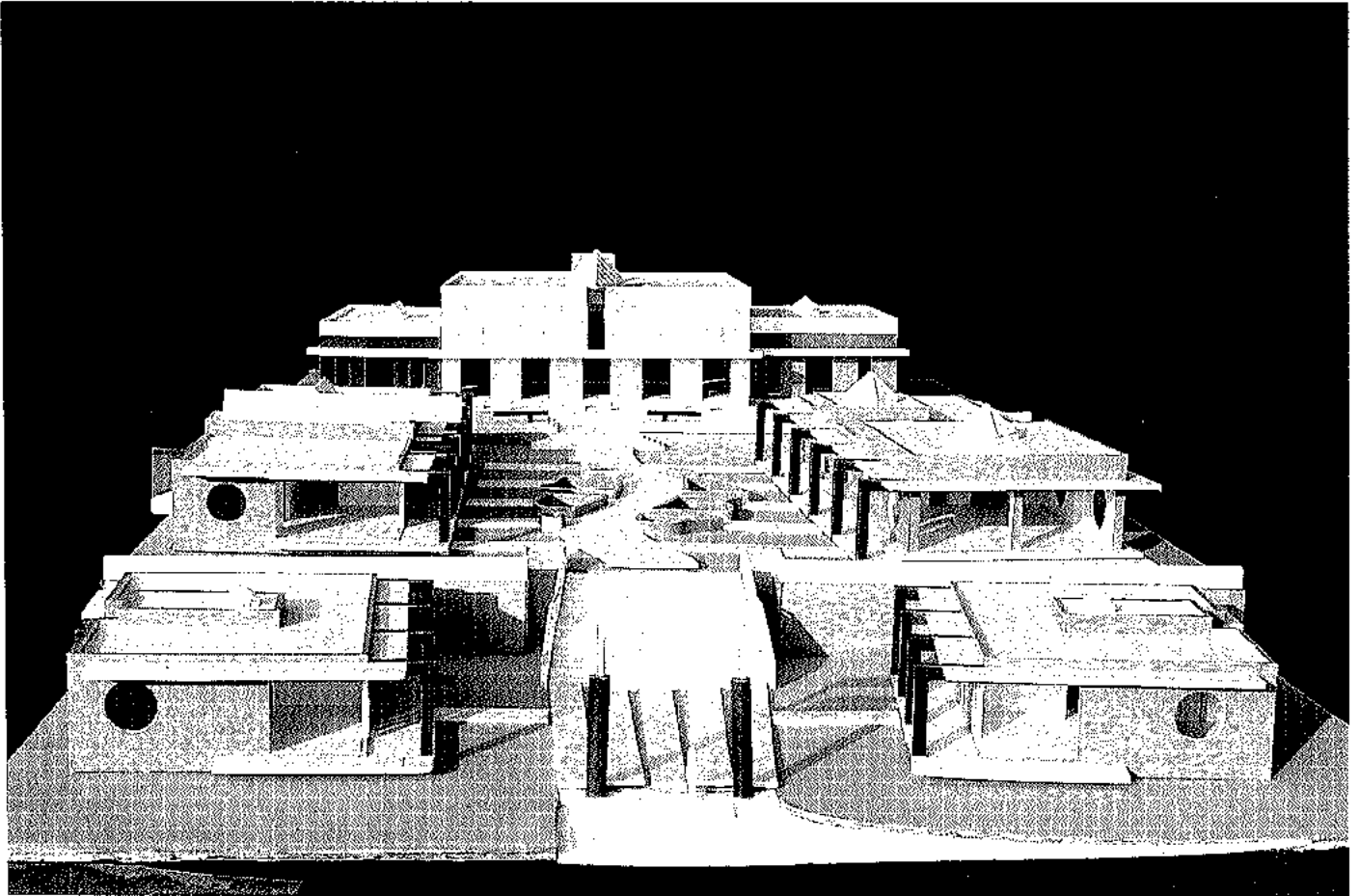
14

- ⑨ 좌측 전경
- ⑩ 7층 안방 측벽상세
- ⑪ 기준층 안방 측벽상세
- ⑫ 7층 내부계단 전경
- ⑬ 전면 주출입구측 상세
- ⑭ 기준층 평면도
- ⑮ 7층 평면도

천관사(千寬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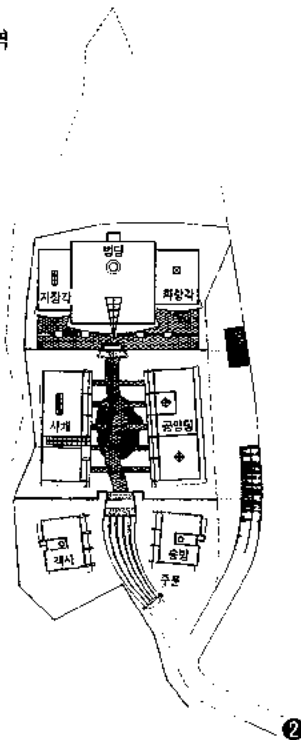
Chunkwan Temple

金寬錫/건축사사무소 아르텍
Designed by Kim, Kwan-Su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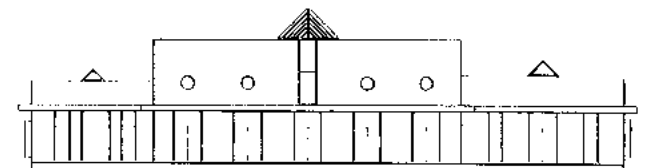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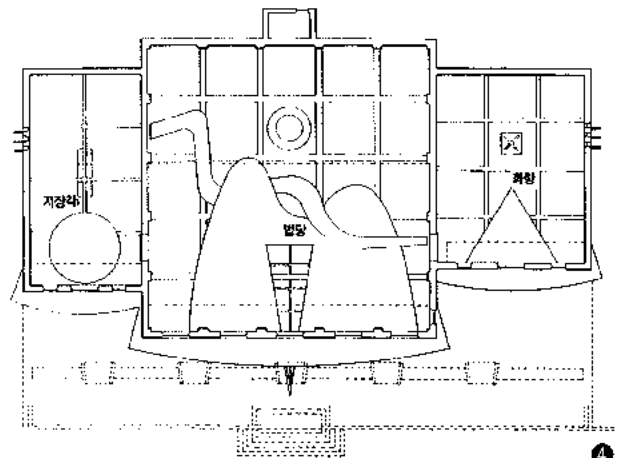
위치 / 경기도 가평군 상면 봉수리 32-1
지역·지구 / 산림보전지역, 도시계획외 지역
대지면적 / 4,860㎡
건축면적 / 1,112.65㎡
연면적 / 1,058.29㎡
건폐율 / 22.89%
용적률 / 21.78%
규모 / 지하 1층 3층
구조 / 철근콘크리트(대웅전),
조적조(사채 및 공양당)
외부마감 / 입자도료코팅
설계 / 김영곤, 이호운, 정평현(보조),
차주영(C.G 프리젠테이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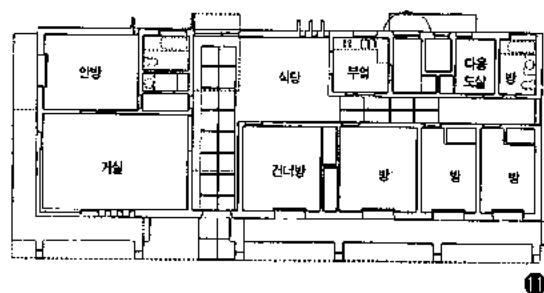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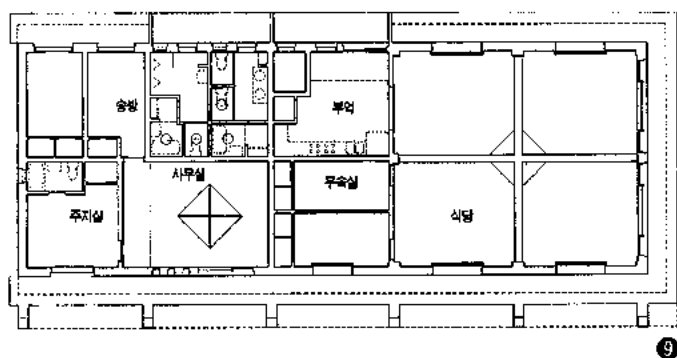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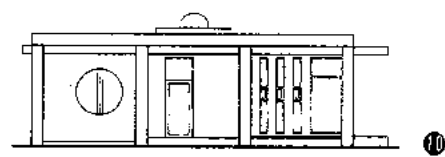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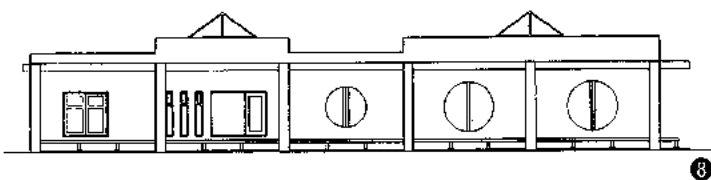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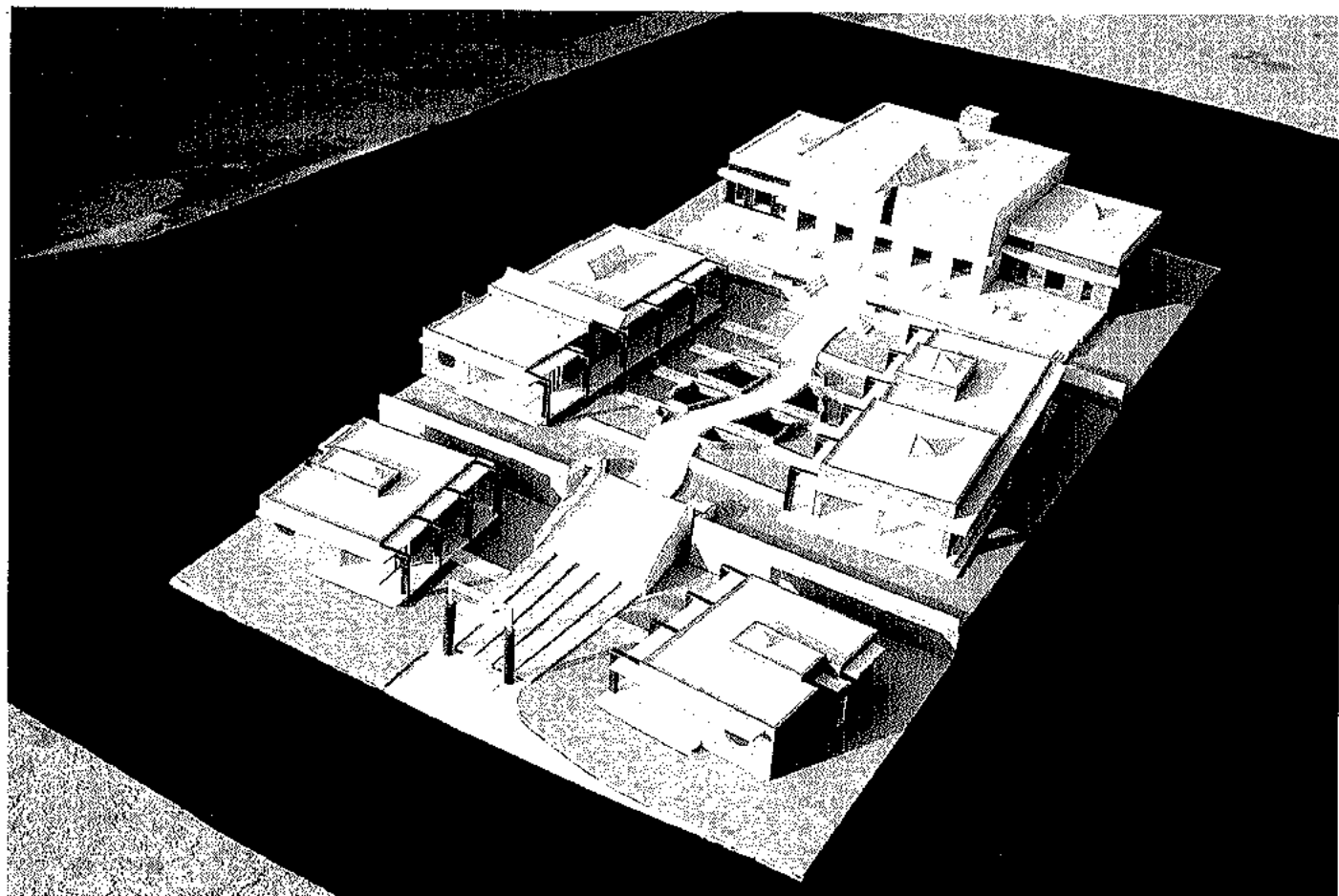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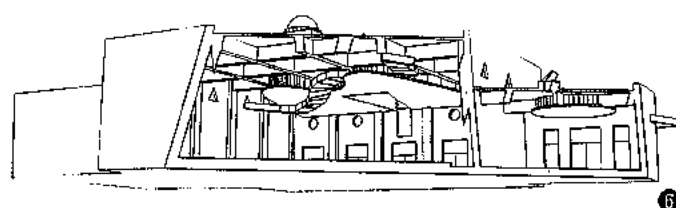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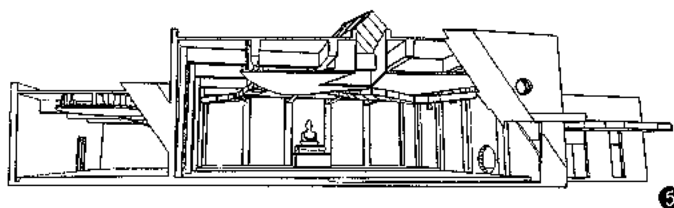
2



3



4



- | | | |
|--------------|-----------------|--------------|
| ① 전체 모형도 I | ⑤ 대웅전 단면 투시도 I | ⑨ 공양당 천정 평면도 |
| ② 배치도 | ⑥ 대웅전 단면 투시도 II | ⑩ 승방 서측 입면도 |
| ③ 대웅전 남측 입면도 | ⑦ 전체 모형도 II | ⑪ 사채 천정 평면도 |
| ④ 대웅전 천정 평면도 | ⑧ 공양당 서측 입면도 | |

스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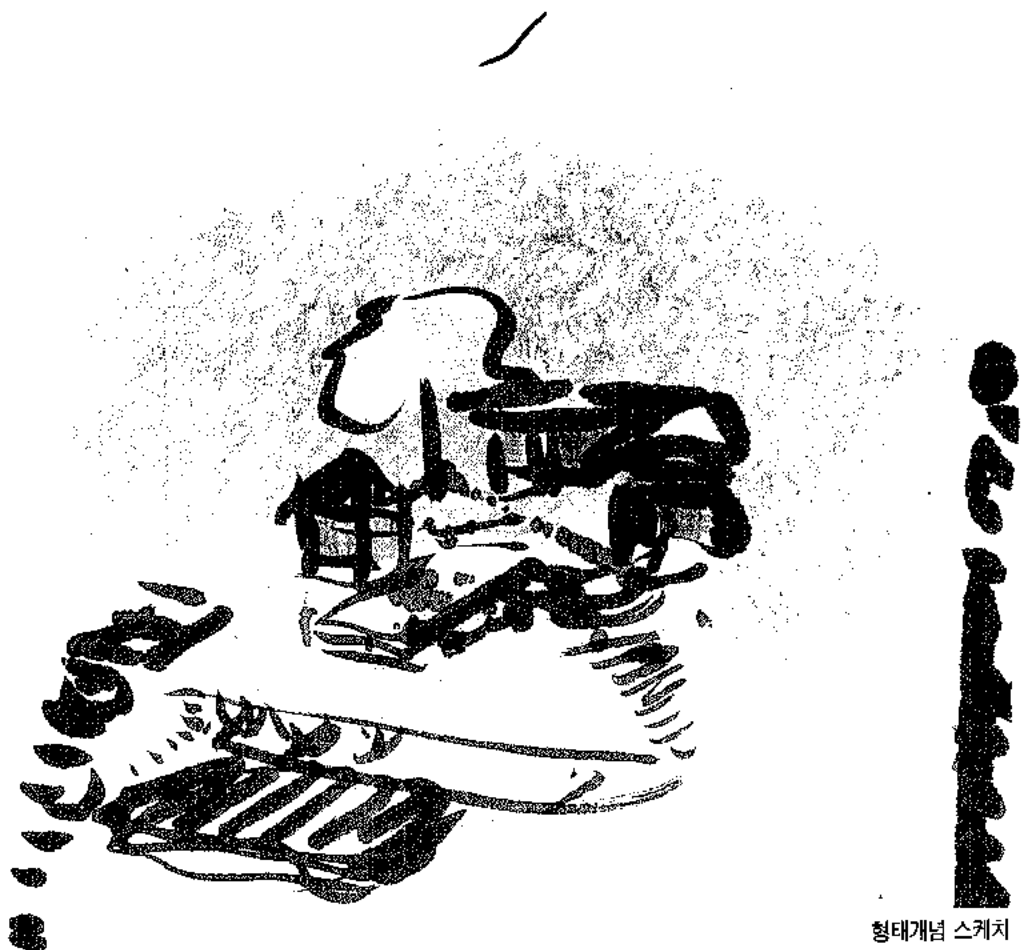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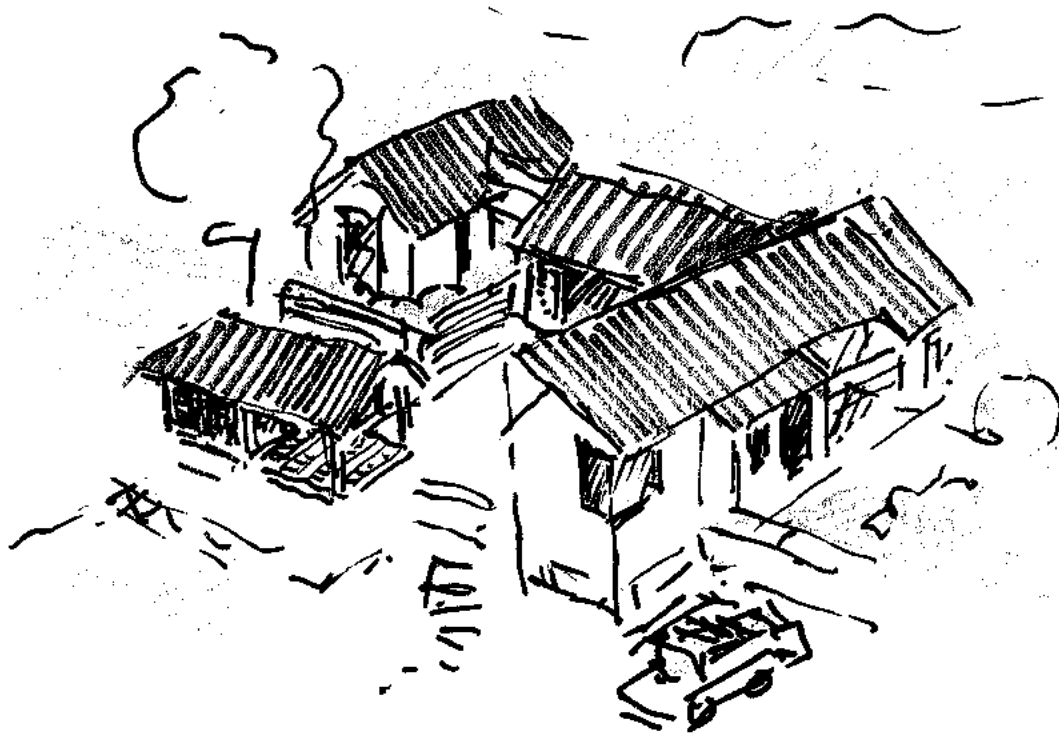
SKETCH

기산리 주택

Kisanri Residence

卞鍾睦/건축사사무소 둘건축

Designed by Byun, Jong-Mok



형태개념 스케치

아파트 건물의 난잡시대다.

시골의 풍경을 그래도 간직하고 있는 지방 소도시 주변에도 서울근교의 신설 Bed Town처럼 높다란 상자덩이가 똑같이 들어서고 있다.

아파트주거는 그 경제성과 편리성에도 불구하고, 규격화되고 물개성화된 실체로 인하여 가능한 억제되어야 할 건축방법이다.

아파트의 단지 또한 개발이라는 명목하에 자연 경관을 완전히 무시한채 긴세월동안 형성되어온 마을의 정취를 강그리 갈아엎는다.

평면의 첫수만 틀릴뿐 똑같은 평면의 똑같은 입면들.

다음 세대에 이 엄청난 아파트들은 어떻게 될까?

그때의 사람들도 지금처럼 아파트 한채 얻고자 주택부금 붓고 순번기다려 뽐기하는 난리를 치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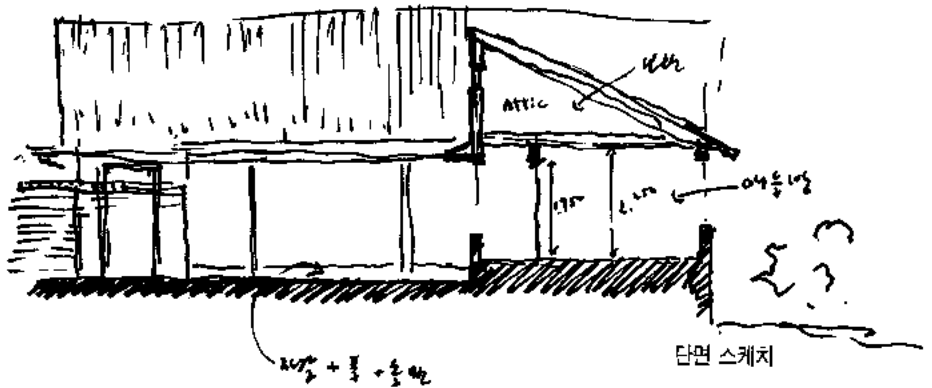
조상대대로 경작하던 터를 신도시에 수용당한 사람이 파란치처럼 옮겨가서 마련한 부지였다 지을 집이다.

남동쪽으로 산이 걸쳐있어 긴 그림자가 덮는 계곡이 배후에 있는데 부지는 다행히 구름으로 돌출되어 있어 충분한 일조량을 획득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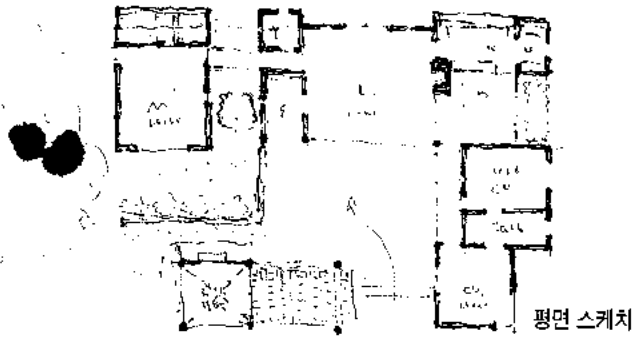
포장하고 있는 산작로에서 개울을 건너 다리가 놓여있고 몇채의 마을집들 사이로 난 길을 오르면 큰나무 몇그루 서 있는 부지가 방죽처럼 나타난다.

뒷산의 배경이 좋고 앞은 마을길로 트여지며 건너편에도 높지않은 산자락이 이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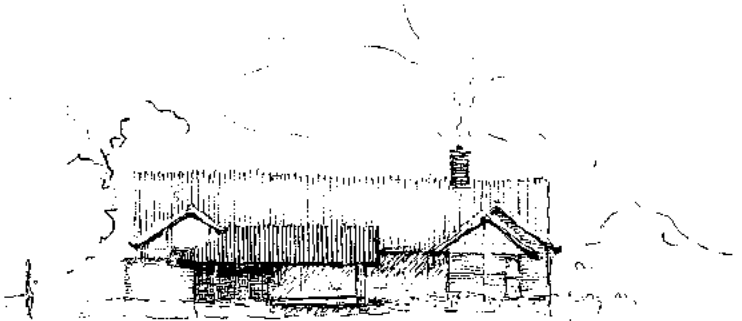
짓고살이의 새로운 고향으로 정착되어지길 바라지만 언제 또 개발바람이 이곳까지 밀어닥칠지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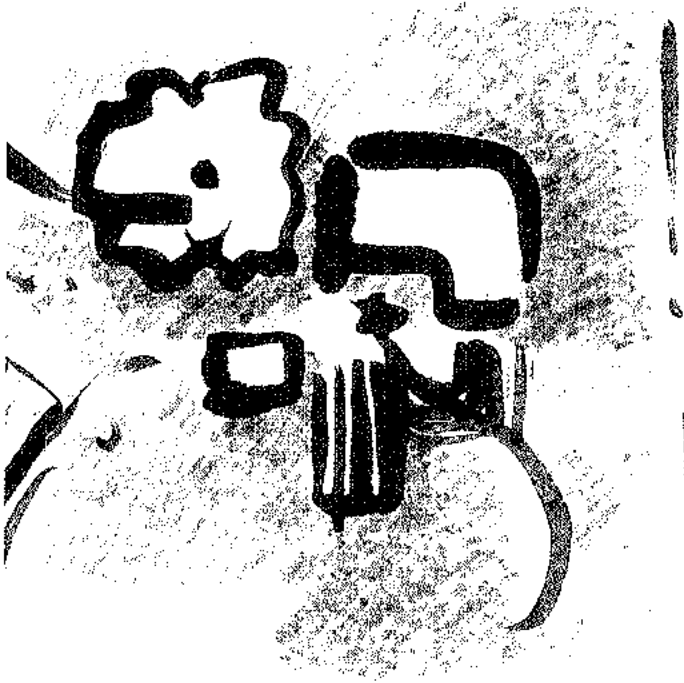
단면 스케치



평면 스케치



입면 스케치



안바탕+1층
뒷산→Deck
여름 휴가로

배치개념 스케치

무엇이 바뀌어야 하는가(1)

What Should Be Changed ?

李根昌/ 종합건축사사무소 아미형태, 본 협회 국제위원

by Lee, Keun-Chang

이 글은 15년간 미 극동공병단(Corps of Engineers)에서 설계실, Project Manager, Engineering/Construction Coordinator 등 여러 부서를 거치고 설계사무소를 개설한 지 3년 동안 현실을 경험하면서 불합리하게 느꼈던 점과 그 대응책을 단편적으로 기술하였다.

세계시장이 개방되면 무엇이 과연 우리의 영역을 침해할 것인가에 대해 막연한 불안감을 접하고 있으나, 그들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설계, 감리, 공사의 품질을 향상하는데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최근 설계·감리비의 인상은 기술료가 비싼 외국기술자의 기반을 만들어 줄 수도 있다는 우려와 함께 건축사들의 각성에 의해 우리의 지위향상에 일조하기를 진정 바라는 바이다.

I. 설계의 품질

1. 배경

여기서 논하고자 하는 설계의 품질은 도시경관과의 조화를 고려한 예술성이나 설계작품 형상을 평가에 따른 것이 아니고 현대건축의 동향에 따른 실질적인 현실감에 맞추어 건축설계의 내실을 구하고자 하는데 있다.

자연공간을 건축물(인위적)에 의해 구분하여 활용함에 있어 구획된 공간의 질을 높이고 건축주, 설계자와 시공자와의 문제 발생 요소를 최소화 하는데 있어서의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제는 국내 건축흐름의 방향을 설정하여 곧 다가올 국제화, 개방화를 대비하며 그들과의 경쟁에 대처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의 미비한 점을 그들의 설계의 질과 비교 검토하여 좀더 세밀한 대응책을 수립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한다.

단편적인 이야기이지만 일반적인 건축동향이 가능성을 고려한 공간의 배치 및 사치풍조와 동반하여 예뻐움을 입히기에 급급한 나머지 유명 브랜드 제품을 고가에 구입하여 걸침으로써 자기의 부와 미를 선보이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될 줄 안다. 그중 설계와 근검을 중시하여 주어진 틀에서 몸부림치는 경우도 있지만 이 시대의 한국건축은 탈현대주의(Post Modernism)가 상륙한 이래 우리의 뿌리를 잊은 채 외국 유명작가의 성향이나 패턴을 무분별하게 도입하여 정당화하는 것은 시대 조류에 민감한 우리 건축계의 발전(?)일까?

그러나 문제는 외파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작품이나 건축물이 현실에 선보일때까지의 과정이나 작품내에 존재하고 있는 기술적인 합리성과 섬세함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예술의 세계가 전세제적이며 국경을 초월한 분야임을 상기할 때 이는 단지 노파심일 수도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 우리가 겪는 고충이 향후 모든 시장이 개방되었을 때 우리를 잊고 행한 건축설계에 반성과 대책을 수립하여 방향설정의 시급성이 될 수 있는 지침을 설정하고 이를 지켜나감으로 외세에 흔들리지 않는 한국건축 제도를 정립해야 할 줄 안다.

국제건설시장에서의 기술적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설계와 엔지니어링의 기술수준 향상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차적으로 건설분야가 뒷받침해야 한다. 과거 국내 건설회사의 경우 그 생산활동이 Hardware 분야이고, 인력시장이 상대적으로 저임금이었고, 최소한 규모와 능력을 겸비하였기에 국제 시장에 진출하였으며, 현재에도 인정을 받고있는 반면 설계용역을 위한 진출은 여러면에서 미약한 형편임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설계의 국제 경쟁력을 갖추지 않고 건설업에 치중한 진출은 결국 건설기술 종속과 건설자재 생산업체의 기술개발의 지연을 초래하고 국제시장 진출의 원천적인 걸림돌이 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설계의 품질을 향상시켜 설계도서가 계약대로 완벽한 완성품이 되어 건축주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설계자와 시공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건설시장개방을 목전에 두고 우리의 영역침투에 알레르기 반응을 하기보다는 해외로의 진출을 생각해야 하고, 이에따른 국내 건설자재의 수출에 더 많은 관심을 쏟아야 한다.

특히 우리는 품질의 개념을 매우 한정적 개념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실제적인 품질의 실체는 계약당사자 상호의 경험과 기술에 의하여 합의된 적정 기대치의 설정범위인 것이다. 즉, 품질수준은 건축주의 투자비용에 따라 절대적으로 한정되며, 허용오차는 최소한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품질 허용오차를 판단하는 척도가 “설계의 품질”임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2. 토의

건축사는 공간과 형태를 마련하는 작업외에 공간을 인위적으로 변형시키는 요소들 즉 가구의 크기, 기능성, 기술성, 조명, 색깔, 향내 더 나아가 사용자의 인품이나 성격, 주변 환경과 어울리는 형태, 전통성의 고려가 설계시 더불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작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설계이전 또는 설계시 변화를 해야 할 몇가지 요건의 검토가 있어야 할 줄 안다.

첫째, 건축주와의 사업에 대한 이해정립이다. 즉 설계조건을 설계 착수 전에 명확히 해야 한다. 설계조건에는 사업의 규모설정, 자금 확보에 따른 예상공사비, 재료 선택의 폭, 부대설비의 System 결정, Life Cycle 등이 검토된 설계조건을 건축설계 전에 건축주로부터 건축설계자에게 주어져야 한다. 설계조건을 마련하기 위해 건축주는 전문인의 도움을 받아 사실의 타당성 조사와 함께 자신의 기본 요구조건을 상세히 서술해 줌으로써 설계자와의 마찰을 최소화하고 건축주의 요구사항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며, 또한 설계자로 하여금 계획안 수립의 한계를 설정, 고급 설계 인력의 Lost Effort를 줄임으로 경제적, 시간적인 낭비를 막을 수 있다.

설계조건 작성시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은 건축주의 자금계획과 시설의 준공시점에 맞추어 예상공사비의 산정을 건설자재와 노임의 흐름에 따라 공사기점과 완료시점을 고려하여 불가상승에 따른 Escalation이 포함되어야 하며, 자금 수급계획에 따른 단계별 설계 및 시공이 가능토록 하는 Technic이 필요할 줄 안다. 또한 예상 공사비는 실제 공사비(공사계약액)와 상이하므로 설계서 작성시 예상공사비를 초과하는 부분은 공사 수주업자에게 확보된 예산 내에서 공사 가능한 부분이나 장비를 Additive Items으로 선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둘째, 공사의 품질은 설계의 품질에 따른 부가가치라는 인식을 설계자는 가져야 한다. 공사는 설계의 부산물이며, 공사 품질의 기준은 설계자의 의도와 설계 내용을 얼마만큼 충실히 근접시켰느냐로 판단되어야 한다.

이처럼 설계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설계자는 시공성, 안전성, 쾌적성, 효율성, 경제성, 기능성 등이 적절히

고려됨은 물론 Life Safety에 관한 사항은 특별히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건축물이 무한성에 대한 유한성의 시도이며 유한한 인본주의에 근간을 두어야 하기 때문이다.

미적인 감각에 심취되어 고층 건물의 Guard Rail을 수평으로 나누거나 그 폭을 넓게 했을 때 어린이들의 추락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인식해야 하는 것처럼 인본주의적 기준이 앞서야 한다. 이는 건축물의 안전이 사용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요소이므로 Non Negotiable Item이다.

모든 항목이 서로 연관성이 있지만 시공자로 하여금 안전성과 기능성에 대한 선택의 폭을 최소화하여 설계자의 의도가 현실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면 마감재료의 Pattern이나 색깔의 기준을 설계도에 정확히 명기하여 주어야 하며, 기능에 따른 Type과 형태가 구체적으로 표기되어 건축주와 시공자간의 마찰을 줄여야 할 것이다.

설계서의 부실한 작성으로 인하여 재료 선택의 폭이 넓어져 시공자는 표기된 재료중 뎀(?)것을 찾게 되고, 사업주는 상급의 질을 요구하게 되어 발생하는 난점을 설계서에 명확히 표기하고 설치방법 및 재료기준을 정하여 의도한 재료의 품질이 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 국내 설계서에서 특히 많이 범하는 오류중 창호철물의 경우 Look Set 1조 또는 Door Closer 1조로 표기하고 있으나 Look Set이나 Door Closer는 그 기능과 형태 재질에 따라 생산 제품별로 많은 차이가 있고, 문짝과 문틀 제작과도 연관이 있으므로 보다 상세하게 표기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국내에는 비상 탈출구의 여단이 방향과 위치의 규정은 있으나 그에 상응하는 창호철물의 상세한 규정은 제정하고 있지 않고 있다. 만일 다중이 모이는 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많은 인원이 비상 탈출구에 도착하였으나 Panic 상태가 되어 설치된 Lock Set의 Lach를 작동시키지 못하여 그들이 희생되었다면 누구의 책임으로 인정할 것인가? 이는 곧 설계사의 무지에 의한 잠재적인 살인 방조인 것이다.

셋째, 설계자가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건축주의 건축설계에 대한 횡포를 막아야 하며, 그들의 의식 개혁을 위해 설계자의 무단한 노력과 제반 법규의 개정으로 이해시키고 홍보해야 할 것이다. 그 방법으로 다음과 같은 안을 제시하며 이에 따른 행정부처의 협조가 요구되는 바이다.

1) 설계 의뢰시 설계자는 꼭 건축주의 낱안이 된 설계조건(Design Criteria)을 요구하며 소규모인 경우에는 이에 관한 내용을 정리하여 계약조건에 첨부한다. 이것은 후후 건축주의 요구 변경에 따른 추가 설계에 대해 대응할

수 있다.

2) 계약전에 Design Criteria와 함께 설계 수탁시에는 설계자는 필히 설계의뢰서를 작성하고 사본을 건축사협회 또는 분소에 송부하여 의뢰사실을 알리어 건축주가 제2, 제3의 설계자에게 재 의뢰시 설계 진행 상황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한다.

3) 계약시 확인된 규모, 구조에 따라 설계비를 책정하고 등록된 설계자와 보조원의 일당(Manday Rate)에 따라 정할 수 있도록 융통성을 가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개설하고 있는 모든 사무소는 그에 속해 있는 설계자와 보조원 및 기타 운용요원의 Manday Rate를 건축사협회나 정부부처에 신고하고 필요시 수정, 보완한다. 단 보수를 기준에서는 상한치(Statutory Limit)만 정하고 사무소의 성격과 특성에 따라 자체 요율에 따르도록 하여 설계자의 자존심과 작품에 대한 열의와 질을 향상시킨다. 이는 예술작품의 경우 작가에 따라 가격이 다르고 사무소의 규모와 작업능력 효율에 따른 부가가치를 설정해 줌으로써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며 기술자 인원 관리에 도움이 되리라 본다.

4) 계약된 설계기간과 설계비 지불과 연계하여 설계비 지불이 지연되는 기간은 자동적으로 설계기간 연장으로 간주하도록 하고 지불이 지연되는 기간에 대해서는 건축주는 정당한 배상을 하도록 한다. 이는 용역업자에 적용하는 지체상환금에 대응하는 평등 조항이다.

넷째, 설계자의 설계의도가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에 표현되는 만큼 그 표현방법과 작성은 명쾌하여야 하며 한 방향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특히 반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규격화 내지 표준화 하여 시행하고 각 사무소별 표준도면과 시방서를 그 실정에 맞도록 작성, 자문기관의 검수를 받아 사용토록 한다. 제품 생산업자의 생산규격화에 따른 적용과 활용에도 적극적인 협조를 이루어 생산성 증대뿐 아니고 단가 절감에도 이바지해야 한다. 시방서는 공사시공 전반에 걸쳐 Guide Line이 되므로 공사범위 기타 일반계약 조건을 표기한 일반시방(General Provision), 제반 법규적용을 표기한 특기사항 시방(Special Provision) 및 건설 재료와 시공방법 기타공사의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시방(Technical Specifications) 등으로 나누어 작성하되 이는 건축주의 예산과 품질을 고려하여 공사자와의 계약의 기본틀이어야 한다. 또한 제품생산회사의 Know-How나 시공자의 시공방법에 의해 가변성있는 부분은 그들에게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시 요구되는 조건만 제시하는 성능시방(Performance Specifications)이나 Option 사양으로 하여야 하며, 설계자는 불필요한 상세의 작성을 억제하여야 한다.

다섯째, 주어진 설계기간에 쫓기어 도면상호간의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시공시 문제가 야기되는 일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설계서 검토시에는 건축주가 제시한 설계기준과 설계기간중 토의되었던 내용을 참고하여 도면검토 목록(Design Check List)을 만들어 상관되는 항목의 Cross Check가 담당책임자에 의해 행해져야 한다. 이를 위해 도면감수를 위한 최종 검토실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하며, 검토인원은 설계실 요원과 겸하도록 구성하는 것이 좋다.

여섯째, 설계자는 시공중 발생하는 설계변경(Modification)에 신속하게 대처하여 설계도서(도면과 시방서)를 적법하게 작성하고 건축주는 사안에 따라 상응하는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설계변경의 필요성은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대별하면 1) 건축주의 추가요구사항(Client Request), 2) 가치공학에 의한 변경(Value Engineering), 3) 시공상의 편의(Constructibility), 4) 설계의 잘못(Design Deficiency), 5) 기타 등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치공학에 의한 변경은 제안자에게 절감비용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며, 설계 잘못에 의한 변경은 설계자가 전적으로 기술적, 경제적인 책임을 감수해야 한다.

3. 결론

건축 설계의 품질 향상은 시대적 유물에 대한 가치를 높이고 건축 문화 창달과 도시미관에 기여할 뿐더러 국민의 의식구조 개혁과 생명, 재산보호라는 대전제를 두고 볼 때 건축에 종사하는 모든 건축인은 합심하여 효율성 있는 운영에 힘써야 할 것이다. 더욱이 국제화, 개방화의 물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건축 설계시 여러곳에 내재되어 있는 기술적, 제도적인 문제점들을 분석 수정하여 구조적인 개혁이 절대 필요한 시점임을 인식해야 한다. 당장 각 건축인의 피부에 닿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건축설계 서비스 개방을 소홀히 생각하는 동안 설계의 품질을 앞세운 외국 선진국 설계회사의 물결에 우리의 생활 패턴이 잠식되지 않도록 건축행정 정부부처와 건축인, 건설인은 그 미래의 임지 정립을 위해 피나는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설계부분이 국내시장에 안주하거나 선진국 설계회사에 대한 방어적인 소극적인 자세보다는 국제표준 품질의 인증을 획득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리라 본다, 그렇지 않고 현재 상태에 머물러 있다면 대형 Project는 선진 설계용역회사에 빼앗기고 국내 건축설계사무소는 그 아류로 전락하고 상대적으로 소규모 사무소는 그들의 틈바구니에서 몸부림쳐야 하는 기술적 도미노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서로의 최대공약수를 찾기 위한 다짐을 해야 할 것이다.

건축설계시장 개방에 따른 우리건축계의 현실과 대처방안

지난 연말 UR의 타결로 국내 건설사장이 올해부터 외국업체에 문호를 개방하게 되었으며, 이와 관련해서 98년부터는 건축설계 분야도 외국 건축사가 국내 건축사와 공동계약할 경우 개방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그야말로 국제화·개방화 시대를 맞이해야 하는 우리 건축사 회원은 부단한 새 기술개발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키우고, 그에 따른 대처방안을 모색해야 할 절대절명한 시점에 와 있다고 하겠다. 이에 따라 본지에서는 국제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국내 건축계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건축설계시장 개방에 따른 우리 건축계의 현실과 대처방안”이란 제목으로 대회의 장을 마련하여 특집으로 다루고자 한다.

- 까닭을 알수 없는 불안의 연속—UR 成仁洙
- 설계업무에서의 質관리 시스템 金和一
- 개방에 대비한 사무소 형태와 기능 朴舒弘
- 건축설계시장 개방에 따른 우리들의 자세 姜基世
- 국제화와 건축설계 분야 金知德
- 우리건축계의 실천과제 金自浩
- 설계협력에 따른 계약의 문제점 蔣應在
- 한국건축의 해외진출을 위한 지름길 金宇成
- UR—그 허구의 벽 앞에서의 자성 李芝勳
- 참여와 약속 崔勝元

1

까닭을 알수 없는
불안의 연속—URContinuative Anxiety from the Unknown
Reason—Urguay Round

成仁洙/울산대 교수

by Seong, In-Soo

1. 불안의 실체

불안이란 아주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스트레스의 한 형태이다. 불안한 사람은 왜 자기가 그렇게 느끼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하면서 숨이 가쁘고 가슴이 울렁거린다든지, 근육이 긴장된다든지, 사고를 분명히 할 수 없다든가 하는 등 스트레스에서 나타나는 모든 증상을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불안을 유발하는 감정은 내적, 외적인 압박감에서 비롯되는데, 대부분 사회현상에서 시작되는 외적 압박감은 급속히 변모하는 사회에서의 적응에서 기대만큼의 성과를 얻지 못하므로써 유발된다. 우리가 무엇에 대해 무섭거나 두려움을 느낀다는 것은 우리들이 그 대상이 두려움, 불안, 압박감, 공포 등을 유발하리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만약, 우루과이 라운드(UR)가 우리에게 불안감을 주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경험해 보지 않은 미래의 것이라는 점에서 증폭되고, 구체적인 피해나 이로움 없이 무엇인지를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 그러할 것이다. 즉, UR에 대한 우리의 행태와 반응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 지 모른다는 것 때문에 불안할 것이다. 불안하지 않는 분이 있다면 그 피해나 유익한 점을 파악한 뒤라 최소한의 대응방법을 알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제 세계시장은 단일화되고 있다. 세계경제는 시장 단일화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경제적인 격차에 의해 새로운 종류의 선진국과 후진국으로 개편될 것이다. 이 틈새에서 앞으로의 준비에 따라 건설업과 맞물린 국내 설계업체의 진로 및 향방이 결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다. 이 글은 그간의 신문과 잡지를 바탕으로 정리된 글이다. 편의를 위해 신문일자와 출처를 밝힌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건축 언론분야에서 1986년부터 7년간에 걸치는 UR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다루지 못했다는 것이다.

2. 올바른 이해

우선적으로 그간의 우루과이 라운드의 진행상황을 살펴보기로 한다. 이미 대부분 보도 등을 통해 알려진 내용이지만,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 서술하였다.

1940년부터 진행된 GATT 다자간 무역협상은 케네디 라운드(6차, 1962년), 동경라운드(7차, 1973년)를 거치면서,

진행되다가 1974년의 오일 쇼크로 인해 소강상태를 맞이하였다. 1986년 9월부터 GATT 8차 다자간 무역협상이 우루과이(Uruguay)의 수도 근교도시 푼타 델 에스테에서 개최된 원탁회의(Round)로 부터 시작되어, 몬트리얼, 제네바, 브뤼셀 등으로 이어지며 진행되었다.

선진국과 후진국간의 상황에 따라 다양하고 천예하게 전개된 무역협정이 급기야 건축설계분야에도 엄청난 충격을 주기에 이르렀다. 우루과이라운드는 무역협상위원회 산하 두그룹에 의해 진행된다. 즉, 관세 물품, 비관세 물품, 농산물, 섬유, 열대산품, 천연자원 등 시장개방 분야와 새로운 분야로 지적 소유권 및 무역관련 투자시책을 다루는 무역협상그룹(GNG)과 새로운 분야로 서비스교역을 다루는 서비스 협상그룹 (GNS)

서비스 협상그룹의 판장을 받는 서비스 품목에 건축설계가 포함된 것은 어떠한 근거에 의한 것인가. 이것은 1984년에 개정된 미국 통상법을 근거로 미국, 캐나다 등에서의 인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미국 통상법 306조 '서비스 분야의 국제 무역에 관한 규정'에서 서비스를 "유형의 생산물을 산출하지 않는 경제활동"으로 정의하고, 건설업도 서비스업의 하나로 예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1988년 1월에 미국과 캐나다가 조인한 포괄적인 '자유무역협정 제4편, 14장 무속서 1408'에서 협정적용서비스로 건설서비스가 포함되었다. 그뒤 유럽경제협력기구에서 확대 개편된 기구인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나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등의 국제기구에서의 서비스무역에 관한 토의자료에서도 건설업은 서비스업의 일종으로 취급하고 있다.

건설업은 실제로 시공을 하는 하드웨어적 분야 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기타의 분야에서의 고부가가치품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선진국의 주력상품으로 나타났다. 인력과 하도급 공사를 바탕으로 한 후진국의 건설업 입장과는 다른 것이다. 건설업은 현장에서의 제조, 건설공사, 자재조달 등의 하드웨어적인 것만을 지칭한다는 시각이 아니라, 폭넓은 작업으로 확대하여 이를 바탕으로 살펴본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건설현장을 지원하는 각종 소프트웨어적인 것까지 일괄적으로 다루는 것이 턴키 베이스 시스템으로 나타났다. 각종 소프트웨어적인 것들은 다음을 포함하고 있다. 사전조사(정보수집, 조사·기획, 영업), 설계(기본설계, 상세설계, 시스템설계, 생산설계), 입찰(자금조달), 계약, 시공(공정관리, 노무관리, 하도급외주관리, 자금관리·경리), 인도, 보수(유지, 가동지도, 감리) 등의 모든 과정을 말한다.

여기서 현실적으로 건축설계가 일반 건설업에 포함된 하나의 분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세계적인 현상으로 나타나는데, 국내 건축계는 건설부의 입장을 효과적으로 제어하지 못하고, 설계사무소들의 입장이 그룹별로 나뉘어져서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웠다. 건축이라는 문화 또는 산업 현상앞에서 우리의 입장이 정리되지 못한 채, 우리의 의견이 분열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할 정도로 어려운 지경에 있다.

즉, 건설기술관리법, 감리제도의 문제나 종합건설업 면허제 도입 등은 국내 건설회사의 선진국시장으로의 진출에 목표를 두고, 이를 확보하기 위하여 상대적으로

개방해야 할 수준에 따라 건설 및 건축분야의 피해를 적게 하기 위하여 만들어 하는 것이다. 종합건설업 면허제는 건설업체가 설계업을 겸할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내용은 건설부처의 협상담당자들에게서 확인 할 수 있는 내용이다.

서비스 교역은 다음과 같은 거래를 포함한다. 서비스의 국경간 이동, 소비자의 국경간 이동, 생산요소간의 이동 등이다. 여기서 서비스의 國境間 移動이란 '모든 자료와 정보의 이동' 및 '동 목적달성을 위한 공중 통신망과 국내 유통망의 이용'을 포함한다는 것이다.

즉, 모든 회원국가의 건축사는 우루과이 라운드 협정에 서명한 회원국 국경을 초월하여 건축설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모든 회원국가의 건축사는 다른 회원국 국가의 소비자에게 건축설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모든 회원국가의 건축사는 설계를 생산하는 요소를 이동시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 또한, 설계에 필요한 '모든 자료와 정보의 이동' 및 '동 목적달성을 위한 공중 통신망과 국내 유통망의 이용'을 포함한다는 것이다. 국내 유통망이란 설계조직의 지사 등 연결관계를 포함시킬 것이 예상된다.

당시 협상에 임한 건설부 해외협력과장의 말에 의하면, 한국만이 건설시장에 관심이 높은 유일한 국가였다고 했다. 즉, 한국의 건설업체가 외국에 무리없이 진출하려고 시도하는 방편으로 UR을 이용하려 했다고 한다. 따라서 협상팀은 해외로 건설업계를 진출시키기 위해 건축설계나 엔지니어링 분야는 개방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는 분위기를 설명하기 위하여 주력하였다.

이 점은 최종 합의한 건설서비스 부문 양허업종을 나라별 비교를 통해 보면, 그 내용을 짐작할 수 있다. 한국(5), 미국(5), 일본(5), 캐나다(5), 중국(5), 대국(3) 등으로 건설서비스 양허업종은 비교적 다른 서비스 분야에 비해 나라별로 편차가 적은 편이다.

3. 그간의 일정과 개방쪽의 추이

1991년 1월15일에 제출된 서비스교역에 관한 일반협정중 건축설계분야에서 GATT에 제출한 양허(量許)계획표 즉, 외국에 대해 양보하고 허락하는 양허계획은, 시장접근(Market Access)에 대한 제한조치라는 업체등록의 요건을 남겼었다.

(1) 國境間 제공 : 국경을 초월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있어서, 건축사업 등록이 필요하다. 국내법인 건축사사무소와 공동으로 계약이 가능하다. 1996년 1월부터 시행 가능하며, 내국민 대우에 대한 조건·제약이 없다.

(2) 해외 소비 : 국내 시장에 접근하는데 제한 또는 조건없으며, 내국민대우에 대한 조건·제약이 없다.

(3) 상업적 주재 : 외국의 건축사가 한국에서 머무르며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국내 建築士法에 의한 자격취득 및 등록이 필요하다. 내국민 대우에 대한 조건·제약이 없다.

여기서 '내국민 대우'는 서비스수출 및 수출업자(외국 건축사)에게 모든 법률, 규정 및 행정관행과 관련하여 내국인 서비 스 및 내국인 서비스 공급자(국내 建築士)에게 주어지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국내기업 보호를 위해 예상되던 단서조항이

누락되었다. 일정부분 한국에 하도급 의무화, 일정비율 국산 기자재 사용의무화, 외국건설업체에 기능인력양성 의무화, 문화보호를 위하거나 안보, 국방시설의 경우, 외국업체 참여를 배제시킬 수 있다는 조항이 누락되었다.

1992년 2월에 1차 수정양허안 제출을 통해 기본적으로 추가공약을 단서조항으로 달아 제한사항을 철회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에 벌어진 상황을 요약한다.

1993년 7월14일 기획원은 서비스분야 종전 55개 분야에서 70개 분야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이를 반영하여 7월26일에 2차 수정양허표를 제출기로 하였다.

1993년 10월19일 미국과의 쌍무협정에서 업무용토지, 임직원용 택지, 필수불가결한 부대용지를 외국인도 지취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안보기관을 제외한 중앙정부기관, 15개 시도의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물품, 서비스 및 건설구매입찰에 외국업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기로 했다.

1993년 10월29일 건설부는 "지방개장에 따른 건설부문 대응방안"을 마련하였다. 턴키방식의 입찰제도, 대안입찰제도, 사전심사제도의 도입등을 골자로 한 대응방안이 마련되었다.

1993년 11월26일 최종양허표를 GATT사무국에 제출하였다.

1993년 12월10일 제2차 양허안을 통해 중앙정부 발주공사 50억원이상 지방 자치단체 발주공사는 160억원이상에 한해 외국업체의 참여를 보장하는 수준으로 제안했으나, 미국 EC등 GATT 주도국가들에 의해 이같은 안이 거부되었다. 이들 나라는 중앙정부 발주공사, 지방자치단체 발주공사외에 정부투자기관 발주공사까지 모두 50억원이상에 대해 개방토록 요구하고 있다. 이 경우 건설업체는 12조원의 건설시장중 50% 수준인 6조원 정도가 외국 대형건설업체에 잠식당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또 하나의 변수는 조달협정이었다. 105여개국에 참여하여 민간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UR과 연계하여 별도로 타결된 정부조달협정에 우리나라는 21번째 나라로 가입했는데, 일본과 미국의 건설시장에 지금까지, 미국에는 자국건설업체를 우대하고 있는 제도, 일본에는 특정국의 기업만이 참여할 수 있는 예외적 조치가 있었는데, 이 벽을 뚫기 어려웠다. 그러나 정부조달협정 발효와 함께 미국, 일본 등 선진국 건설시장의 개방이 가능하여, 제도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다만 우리의 건설 기술력과 경쟁력에 따라 승패가 좌우될 것이다.

그러므로 중앙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물품, 서비스, 건설구매 입찰을 개방하므로서 한국건설업체의 선진국으로의 진출을 시도한 것이다. 역으로 한국건설업체들이 선진 외국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다면, 우리는 정부조달협상에서 얻은 것없이 내주기만 한 꼴이 될 뿐이다.

1993년 12월16일 건설시장은 조달확장협상에서 대통령 비서실 및 경호실, 국가안전기획부 등을 제외한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에서 발주하는 50억이상의 건설공사에 대해 외국업체의 참여를 허용한다는 계획이 그 기준가격에서 다소 조정되었다. 42개 중앙정부기관이 발주하는 약 53억원 이상의 공사와 1억5천만원 이상의 건축설계를 정부조달 협상에 가입한 다른 20개국의

건설업체에 97년 1월1일 부터 개방해야 한다. 9개 지방자치단체와(당초 협상안에 없었던) 23개 정부투자기관이 발주하는 160억원 이상의 건설과 2억2천만원 이상의 건축설계도 함께 개방된다.

정부조달 시장이 개방되면, 8조원에 이르는 국내 공공공사 규모의 절반에 가까운(46.4%) 3조7천억원의 건설시장에서 국내건설업체들은 외국업체와 치열한 수주경쟁을 벌이게 될 전망이다. 국내 지사를 이미 개설한 시미즈, 가시마, 다이세이社 등은 4, 5년전부터 국내 연락사무소를 개설했다. 건설분야의 다국적기업이라 할 수 있는 벡텔社도 이미 국내에 지사를 차려 놓고 원자력발전소, 경부고속전철 등 수익성 높은 특수공사의 사문을 하고 있다고 한다.

국내 대기업들도 1994년 들어 국제 무역환경을 정확히 알기 위해, 협상에 참여했던 정부관계자를 초빙하여 판세 인하, 반 덤핑, 섬유협정 등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열중이라는 신문기사가 보여주는 것은, 우리들이 이를 정확하게 자세히 알고 있는지와 관련 분야별로 교섭과정이 어떻게 되었으며, 각 분야에 대한 각 국가간의 이해상충되는 부분이 무엇인지 알고자 하는 일일 것이다.

국내의 언론은 내용을 부분적인 것만 과장해서 보도하여 여론을 호도하는 경향이 짙기 때문에, 근래에도 농업부문이 너무 강조된 나머지 정작 따져야 할 다른 부분의 서비스 수준 개방문제가 약화되었다. 최종문서(요약본)의 〈UR협정의 수락기간〉에 의하면, “모든 참가국은 본 협의를 늦어도 1995년 1월1일까지 수락할 것을 희망한다. 각료는 본 협의의 실시형태를 결정하고 1994년 말까지 발효기준을 결정한다.”고 되어 있다. 즉, 2월15일 시한인 각국의 이행계획서 제출과 4월 중순으로 예정된 미국의 국회 등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우리의 대응방안을 결정해야 한다고 ‘쌀과 기초농산물 수입개방저지 범국민비상대책위원회’는 주장하고 있다.

일본에서 우리나라 12개 건설업체가 면허를 따놓고서도 수년이 지나도록 이렇다 할 수주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자칫 우리는 日本, 英國 등에서 얻는 것없이, 국내시장을 내주기만 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4. 건축설계서비스 분야

일본의 설계시장은, 6명 정도의 미국건축사를 포함하여 약 25명의 서양건축사들이 민간 설계시장에서 참여하고 있다고 한다. 대규모 공공시설의 경우 1988년에 들어 일본이 겨우 그 틈을 허락하고 있다는 미국의 시각이다. 일본의 기업가, 개발업자, 시공자들이 미국의 건축사들에게서 사들이는 것은 개념과 기본계획(Concept and Schematics) 정도이며, 미국건축사들의 역할이 협조설계자로서 뒷전에 남아있게 되는 것을 미국은 탐탁하게 여기지 않는 것 같다.

이미 일본에서의 건설분야의 마찰은 1986년 2월의 당시 ‘맨스필드’駐日大使가 간사이 공항에의 미국기업의 참여요청으로 문제가 표면화되었다. 건설시장을 둘러싼 미·일 양국간의 쌍무교섭의 개벽에는 중등건설시장의 물량감소와 일본건설시장의 확대 등이 시장변화와 함께 서비스 貿易自由化 논의와도 관련이 있다.

일본 설계 및 건설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하지 못하게

됨을 美·日간의 쌍무협정으로 해소해 가고 있었다. 1988년 5월에 발효한 협정에 의해 향후 15년간 169억불에 달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에 참여할 기회가 생겼다. 참여기회가 넓혀진 미국은 그 이후 간사이공항이나 ‘과학도시’등의 프로젝트에 참여했으나 실익은 거두지 못했다.

간사이공항은 계획개념을 제안한 프랑스의 뿔 앙드레에게 돌아갔고, 1988년 12월에 주터미널 빌딩은 이탈리아의 렌조 피아노에게 돌아갔다. 이러한 실패에도 미국은 이 협정이 진행중인 것으로 판단했다.

1988년부터 1993년까지 설계가 이루어지고 1991년 5월에 착공된 오사카만의 인공섬위에 세워질 간사이 공항터미널 빌딩은 ‘렌조 피아노 파리티프’으로 설계경기에 참여했고, 기본설계나 실시설계는 컨소시엄에 의해 진행되었다.

일본과 미국의 쌍무협정과 관계없이, 1988년(미국 레이건 대통령이 1989년 8월23일에 서명한) 종합무역법 302조에서 미국업체가 일본 고객들에게 제공하려는 서비스를 일본정부의 ‘法, 政策, 慣行’이 방해하는 것이 효과적이지를 조사하도록 명시했다. 이의 정당성에 대한 논란이 있었음에도 진행되었고, 미국인들은 그 동안의 가뭄(설계수주가 없었던 긴 가뭄)이 해소되리라고 여겼다.

건축설계분야는 시장점유의 거점이 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듯하다. 건설만하는 건설회사와는 달리 건축설계분야는 낙관적으로 이해하고 있다. 미국건설협회 부회장(Mark Chalpin)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일본인들은 미국건축사들의 경험을 활용하고 싶어한다. 이것이 건설분야와 다른 점이다. 낙찰된 건설업자는 누구라도 강력하게 영향을 행사할 수 있다. 일본인들은 배운 것을 자국내 건설시장에서 확대한 후—그리고 개방은 금지한 뒤—다시 수출을 하려한다. 건축에서는 그렇지 않다. 일본의 건축은 건설만큼 경쟁적이지 못하다. 특히 낙찰 회사보다는 일본인들은 외국의 어느 건설회사도 경쟁을 못하게 한다.”

일본 건축계가 지닌 단점의 근원을 이해하고 미국건축사들이 활약할 기회가 많아지려면, 美·日 두나라 간의 전문가 훈련 과정의 차이에서 그 해답을 구할 수 있다. 1987년에 영국의 대학이 일본 부동산회사의 의뢰를 받아 일본건설산업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는데, 이 보고서에 의하면,

“日本 建築家 중 소수는 훌륭한 상상력을 지닌 설계로 국제적인 명성을 얻고 있지만, 대부분의 일본 건물들은, 솔직히 말해서 멍청한(dull) 건물들이다. (보고서는 건물들이 서구기준에 맞게 지어지며, 대형건물들이 대부분 그렇다고 기술하고 있다) 그 건물들은 미학적 기준에 의하기 보다는 대부분 기술적 결과로 보인다. 아마 이것은 일본 건축사들은 건축기술자로 교육을 받기 때문에 그리 놀랄 일은 아니다. 정말로 대부분의 건축사들이 스스로 엔지니어라고 생각하는 듯 하다.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에서 일본인과 일을 해본 적이 있는 미국인은 이러한 의견에 확신을 지녔다고 했다. 민간부문에서 일본의 개발업자들은 “설계를 진행하는 일본 건축사의 이익에는 민감해 하지만, 미국인에 의한 건축설계에는 건축적 조형이라고 상당한 기대를 건다”고 일본에서 계약을 끝낸 미국건축사가 말했다고 레인(Layne)은 글에 썼다.

최근 일본시장에서, 미국의 벡텔社나 선진국 업체들이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특인”을 받아 참여했지만, 현재 공공공사는 물론 민간공사에서도 낙찰실적이 거의 없다고 한다. 우리나라가 일본에 대해 ‘특인’을 받은 것은 첫째, 한국업체가 외국에서 한 모든 건설경험을 인정받은 것과, 둘째, 한국의 기술사를 인정했기 때문에, 단서조항으로 일본어 테스트를 거치는 것만 부과했다는 것이다.

미국과 칼라 힐스는 일본과의 쌍무협정에서, 일본이 개방을 했다고는 하지만 일본시장에서의 관행이 철폐되지 않는다면, 일본시장은 더 진전을 볼 수 없다고 강력히 요구해, 1990년 7월5일 일본의 ‘日建連’을 중심으로 한 경영자문위원회와 골프모임인 ‘綠會’가 해산되었다. 비공식적인 담합으로 골프회동중에 나눠먹기식으로 진행되는 일본의 관행에 대해 미국이 이견을 강력히 제기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많다.

5. 국내 설계사무소의 입장

외국설계 사무소와 비교하여 국내설계 사무소의 입장을 비교해 보는 것은 불확실한 가정으로부터 출발하는 예측일 뿐이다.

시급한 것은 UR 체제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무엇이 가능한지를 아는 길이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예측하기에 필요하고 충분한 자료를 우리가 쥐고 있느냐 하는 점이다. 이 글을 쓰기 위해서도 필요한 자료는 흔히 우리가 볼 수 있는 건축잡지에서는 거의 구하지 못했으며, 대부분 일간신문과 다른 분야에서 얻었다는 점이며, 아마도 그것이 우리의 미래를 말해준다고 하겠다.

1. 외국의 입장과 건설부의 입장

“종합건설업 면허제는 건설업체가 설계업을 겸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이다. 역사적으로 근세로부터 현대에 이르기 까지 사회의 모든 부문이 분업화, 전문화되어 가는 과정에 있고 건축분야 또한 설계와 시공분야가 분업 전문화의 필연성에 의해 서로 業을 달리하여 발전해 온 터인데 돌연히 합병을 주장하는 것은 무슨 연고인가.

현재 건설부의 입장은 건설수출의 길을 열기 위해, 국내건설시장에 관한 한 개방일변도라는 것이며, 이 배경에는 미국을 비롯한 외국의 시각과 요구가 반영되어 있다는 것은 앞에서 설명한 대로이다. 한 편으로, 건축사협회의 회원들의 입장은 충분히 단일화되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 그것은 건축사 회원들의 세대가 다양하고, 교육배경이 다양하므로 필연적인 결과로 보인다.

건설부가 추진하는 논리에 대해 대항논리는 ‘건축이 예술’이라는 원론과 그간의 실적을 바탕으로 건축자립의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건설정책연구원 주최 토론회에서도 개진되었으나, 건축계의 힘이 미약한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 그런가 하면 건축사 사무소들이 효과적으로 개방체제로 돌입하기를 권하고 있기도 하다.

현재의 문제는 건축사협회의 의견이 건설부에 효과적으로 대변되거나 요청되지 못한다는 데 있다. 그것은 두 그룹의 의견이 다르기 때문이며, 이를 해소할 정치력이 사협회에 없다는 것만 드러났다. 정치력 부재란 직능별 전국구 국회의원으로 배출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建築士 출신의 國會議員이 없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 꼭 로비스트로서의 국회의원을 지칭한 것은 아니다.

또한, 지방자치시대가 되면, 상황은 더욱 복잡해 질 것이다. 장기간의 군사정권을 겪은 우리는 문민시대에도 아직 지방자치를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 외국시장이 장벽을 열었다 해도, 우리는 각국의 지방자치단체의 벽을 또 겪게 될 것이다.

2. UR에 대한 득실

“아직 예상피해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자료는 없다”

“우리 업계의 관행을 감안 할 때 반드시 비판적인 것은 아니다”

이 말들은 건설개방에 따른 피해와 이에 대한 대책을 묻은 기자들의 질문에 대한 건설부 관리의 답변이다. 물론 이해득실의 계산이 짧은 기간안에 될 일은 아니지만, 장기적인 비교를 하기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UR에 의한 이해득실은, 최소한 건축사협회나 협회가 상설연구원이라도 발족시켜, 우리가 진출하고자 하는 UR 회원국가들에서 제출한 양허계획서를 확보하여 분석하여, 진출가능성을 분석한 후에 파악될 것이다. 협정공식언어는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라 한다. 최소한 각국의 건축설계, 일반건설, 전문건설 분야에 대한 최종개방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2월부터 분석하여, 이견이 있으면 다시 요구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효과적이지 못했으면 앞으로도 유사할 것으로 보이지만 말이다.

3. 턴키방식입찰제의 확대

정부는 건설시장 개방에 대비하여, 국내업체의 기술개발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한 업체가 설계에서 공사완공까지를 떠맡은 턴키방식의 입찰제도의 도입과 ‘원하청 기업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시공업체가 발주처의 계획보다 더 나은 방안을 제시토록 하는 대안 입찰제도를 활성화 하기로 발표했다.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를 미리 심사, 선정하는 사전심사제도(PQ제도)를 도입하여 시공여건 등 당해공사의 성격이나 내용에 밝은 국내업체들이 수주경쟁에서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미 국내에는 외국의 대형건설업체가 들어와 있고, 이들이 턴키시스템으로 수주를 원하고 수주할 능력이 있다면, 그 뒤에 외국 설계사무소는 대기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그들이 공동계약을 할 국내 건축사를 구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다. 국내 건축사가 외국에의 연고권을 내세워 국내 대리인을 자처하거나, 국내 건축사를 고용할 외국업체가 등장할 것이다.

4. 설계경기 풍토의 변화

대형 공공공사를 위주로 하는 설계경기는 국내업체와 공동으로 참여하는 외국업체들의 참여기회를 확대시켜 주기 때문에 자주 개최될 것이다. 서비스 협정에 포함될 원칙중에 공개주의나 투명성의 원칙(Transparency)이 있으므로, 그 동안 진행되던 심사방법등에 영향을 줄 것이다. 외국팀과 공동설계한 팀으로 당선자가 결정되는 비율에 따라 미국 등 선진국이 이에 반응을 할 것이다. 아니면, 국내, 국외의 심사위원의 비율에 대해서도 관심을 지닐 것이다.

5. 다양한 파트너십의 등장

진정한 의미의 파트너십을 가진 종합사무소를 설립하여 공동으로 운영하는 것은 순수한 의미의 대책은 되겠지만, 국내업무 수주권 방위에 효과적이지 못하며, 공정한 경쟁을 한 준비를 마친 셈이며, 결과는 건축의 질에 따라 판별날 것이다. 왜냐하면, 큰 규모의 건설부문 공공공사부터 외국업체들에게 잠식되면, 건축설계일부도 턴키 시스템안에 일부가 포함될 것이며, 그 여파는 국내 설계사무소에게 전반적으로 수주규모의 하향화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1994년부터 설계비가 올랐는데, 공공부문은 개방규모를 결정하는 것이 설계비 규모를 근거로 하기 때문에, 결국 개방폭만 커지는 일일 뿐이다.

다양한 파트너십이 존재할 것이라는 것은, 건축사의 규모나 예측관계에 따라 다양한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6. 시급한 일

외국인 설계도면에 충실한 편이다. 또한 수출품은 그 품질이 좋기 때문에 건축설계라 하더라도 더욱 그러할 것이다. 기본도면, 풍부한 상세도면, 책에 가까운 분량과 시방서, 높은 설비수준을 동원한 그들의 기술에, 그들이 지닌 단점이란 국내 지역적 사정을 모르는 것과 한글을 모르는 것뿐이다. 국내 지역사정과 한글은 국내 파트너가 해결해 줄 것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것이 없을 것 같다.

우리의 설계비는 도면 장수로 계산하면, 상대적으로 비싼 설계가 될 것이다. 즉, 설계의 질에 의해 비교한다면, 비싼 편이다. 근래 설계비가 오른 것과 비교하면, 결과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다.

7. 기술의 수준차이

기술적 수준의 차이에 의해 잠식되는 부분이 많아질 것이다. Ove Orup 등의 외국 엔지니어링의 기술에 구조, 설비등의 일도 잠식되고 충격이 있지 않을까. 기우일지 모르나, 초기에는 혼란스러움이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혼란스러움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새 다가오는 것처럼 나타날 것이다. 7년 간의 우루과이 라운드가 언제 우리에게 절실했는지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대체로 일이 다 벌어진 이후에 그것을 실감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러한 일은 주기가 있을 것이다. 몇십년간의 기간을 거치며 다양한 현상으로 재편되리라고 예상되나, 아직은 추측일 뿐이다. 개장 초기에는 잘 드러나지 않고 서서히 잠식되고, 뒤에는 경쟁력을 지닌 설계사무소가 같이 경쟁하게 될 것이다.

서비스 협정의 원칙에는 점진적 자유화(Progressive Liberation) 원칙이 있다. 고도의 서비스 거래를 점진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이를 저해하는 요소들은 점차로 감소 및 제거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이후에도 개방실적에 따라, 동등한 개방을 목표로 다음 회의를 향해 추진되리라 생각된다.

8. 예외조항의 설치와 정기적인 권고

건축설계를 통해 문화적인 혼란을 초래 할 우려가 있거나, 도시의 역사성을 무시하거나 또는 문화환경을 왜곡한 작품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을 하지 못한채 이를 받아들이면서 나타날 문화적 피해는 돈으로 계상될 성질은

아니다.

서비스협정에는 공공질서의 유지, 국가 안보, 공중도덕, 건강, 문화적·사회적 가치, 환경보호, 안전 등을 이유로 예외조항을 둘 수 있는 근거는 있으나, 이러한 예외가 서비스 협정 자체의 목적을 회피하거나 서비스교역을 위장된 제한된 요소로서 작용되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명시했다.

협상초기에 단서조항을 두려던 계획은 무산되었다.

9. 외국으로의 진출

우리도 외국에 진출할 여건을 갖추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가격경쟁을 해서 나갈 수 있는지 여부는 앞으로의 UR 체제 적응훈련을 효과적으로 마친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이후에 계속될 Green Round 조차 그 향방에 따라 건축설계와 건설분야가 영향을 더 받을 것으로 보여진다.

건축사협회나 어느 단체라도 건축연구원을 설립하여, 계속적으로 외국의 설계와 관련된 법, 제도, 관행에 대해 연구하고, 외국사무소 규모별 사례 및 실태조사 등을 통해 경영 및 작업과정을 연구하여 우리의 자세를 가다듬어야 할 것이다. 그 대상은 미국, 일본 등 보다는 다른 지역의 국가에게서 더욱 가능성을 맞이 할 것이나, 그것도 경쟁력을 이기기 위한 방법이 임금체제도 영향을 줄텐데, 임금을 줄이려 하기 보다 경영개선을 통해 효율을 높이는 쪽으로 해야 할 것이다.



설계 업무에서의 質관리 시스템

Management Quality System in Design Work

金昶一/(주)정림건축

by Kim, Chang-il

1. 序

연전에 유럽에서 교환교수로 국내에 와서 3년간 머물다 돌아간 어느 여교수가 했다는 말이 생각난다. ‘한국에서의 3년간은 마치 혁명기를 보낸듯한 인상’이었다는 것이다.

88올림픽 등의 대규모 체육행사, 대전EXPO, 청문회, 재산공개 등 역사의 한 획을 그을 만한 유럽에서라면 적어도 몇십년간에 걸쳐 정치적 문화적 변화를 포함해서 이루어질 대형행사나 사건들이 불과 수년동안 치루어지는 것을 보면 빠른 변화에 둔감해진 필자도 그 여교수의 감탄(?)을 이해할 것 같다.

더구나 최근의 UR의 타결에 따른 개방화는 이러한

분위기를 더욱 증폭시키고 있고, 어느 분야에서도 혁명기적 상황은 마찬가지여서, 신문이나 방송 심지어는 서점의 각종 서적들에서는 국제화 개방화에 대한 논의를 단시일만에 끝내겠다는 듯이 들쭉서놓은 벌집처럼 안팎이 소란하다.

이러한 정보의 홍수는 우리의 입장을 정리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다소 문제삼고자 하는 부분이 있다면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고 서적에서는 우리의 상황과 맞는지 안맞는지 검증도 되지 않은 낱건의 번역서가 변화의 분위기를 주도하는 가벼움이 다분히 있다는 사실이다.

앞서 언급한 대규모의 국가적인 행사나 사건들이 역사속에서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어떤 의미로 정리되었고, 우리네 생활속에서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알 수가 없었다는 점도 같은 맥락에서 들 수 있겠다.

이러한 관점에서 건축사지에서 특집으로 계획된 내용은 실무자들의 진지한 접근이라서 환영할만 하고, 필자는 개방화에 대해 아무도 찾아내지 못한 '묘수찾기'를 하기 보다는 개방의 내면의 의미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바탕으로 한 우리 나름대로의 안목을 중시하고자 한다.

개방화가 갖는 성격에 대한 논의는 충분히 언급될 것이므로 본글에서는 생략한다. 필자에게 의뢰된 '설계도서의 질향상'에 대한 주제는 정림에서의 질관리 방향이 결과물관리로서의 설계도서관리가 아니라, 설계도서가 생성되는 과정의 관리로서의 시스템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으므로 '설계업무에서의 질관리 시스템'으로 바꾸어 정리하였음에 양해를 구한다.

2.品質에 대한 인식제고

1. 기본적인 인식으로서의 품질

품질의 달성을 사양(Specification)과 코드(Code)의 필요(Requirement)에 의해 이루어지겠지만 우선은 우리들(특히, 경영자) 자신의 관심에 달려 있다. 품질향상이 단순히 효율을 높여준다든지 품위있게 보이게 한다든지 하는 생각의 오류를 비려야만이 비로소 품질활동의 첫단추가 끼워졌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품질활동이 성과를 나타내기 이전에 광고에 대상이 되거나 미화되고 있다면 '조금도 꾸며지지 않은 실상의 바탕으로서의 질(質)'이 아닌 양(量)이 되어버리는 신비한 속성을 갖고 있는 것이다. 질관리의 궁극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꾸준한 헌신과 인내 그리고 시간이 필요하다.

2. 국제적 기준으로서의 품질

산업전반에서 가격경쟁 위주에서 품질경영 우위 상황으로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건축주의 관심사도 단순한 품질관리 개념에서 탈피해서 총체적인 품질활동인 품질경영을 요구하는 시대가 되었다. 간단히 말해서 건축주에게 신뢰감 및 만족감을 줄 수 있는 공인된 품질시스템을 구축해야만 어려운 환경에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더구나 현재 세계건설요소 패권을 주도하고 있는 EC(Engineering Construction)화 경향속에서도 그러한 기준이 더욱 중요해진다. 최근 전산업계에 열풍처럼 몰아치고 있고 ISO 9000시스템이 그 예가 되며, 건축설계 분야에서도 규모에 따라 그 인증의 필요성과 시기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

3. 개성화로서의 품질

우루과이 라운드(UR)을 선도했던 서비스협상의 숨겨진 배경을 보면, 이차대전 이후 세계 상품교역 시장을 독점하여 오던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이 개발도상국의 경제력 향상과 더불어 그들 상품판매에 한계점을 느끼면서 이의 대체효과를 노려 아직도 비교우위에 있는 각종 서비스를 저개발국에 수출하여 무역수지를 개선해 보겠다고 벌이는 것이 그 실체라고 할 수 있다.

우리의 것을 잇은 채 선진국에서는 이미 효용을 다한 이론이나 기술의 단편에 매달리기 보다는 국제적 흐름에 동참하면서도 한국적인 풍토에 맞는 기술의 공동 연대에 의한 개발이 필요하다. 서구의 방법으로 그들을 앞서겠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고, 그 이전에 필요하지도 않은 것이다. 앞으로 제도에 의한 국내시장 폐쇄는 불가능하지만 강한 풍토성을 바탕으로 한 대국외사무실과의 경쟁은 가능할 것이다.

3. 質관리 시스템의 필요성

건축설계는 본래 아주 복잡한 과정을 거쳐 진행되는 분야로서 정량화(定量化)하기 어렵다. 단순한 몇개의 시스템 만으로서는 설명되어질 수 없는 건축작업마다의 독특한 형식의 자율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 하나의 관점은 건축을 하나의 문화로 보느냐 상품으로 보느냐에 따라 여러가지 입장이 있을 수 있다. 정림의 경우도 국내에 맞안되는 대형 설계집단의 하나로서 합목적적 설계를 지향하는 조직을 추구하고 있지만 작품으로서의 질과 업무로서의 효율을 함께 얻지 못하는 경우를 자주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설계업무의 특성들은 작업결과를 중시하는 품질관리 활동에 몇가지 어려움을 준다. 첫째는 質관리의 기준이 되는 표준화가 어렵다는 점이다. 반복적인 제조공정에 적합한 표준화가 일정한 작업의 반복성이 없는 건축설계 분야에는 어떤 면에서 적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둘째는 건축주와 설계자, 설계자와 전문용역업체 그리고 시공업체 등의 관계가 그때그때 일의 성격에 따라 관계자를 연결하는 계약을 통해서 업무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볼 때, 다자간의 관계가 일정치 않고 변화가 많다는 점이다.

셋째로는 일반적으로 인력이동이 매우 심하여 구성원 개인들을 중심으로 한 질관리에 의존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앞서서 언급한대로 정림의 질관리 방안에서 업무과정의 부분관리나 결과물을 중시하는 설계도서 관리가 아니라, 설계도서가 생성되는 과정의 관리로서 시스템 관리에 중점을 두게 된 이유가 된 것이다.

요소를 표준화하기 보다는 전체 구조를 표준화하고, 관련분야간 결과물을 규정하기 보다는 협력과정을 규정하게 되는 것이다. 전체시스템을 중시하는 업무구조는 EC화의 특성—기획부터 설계, 시공, 유지관리까지 통합되어 이루어지는—과도 개념적인 연관성이 고려되었다.

4. 正林에서의 質관리 시스템

정림은 내부적으로는 장기발전 계획의 일환으로 외부적으로는 개방화에 대해서 오래전부터 대비해 왔으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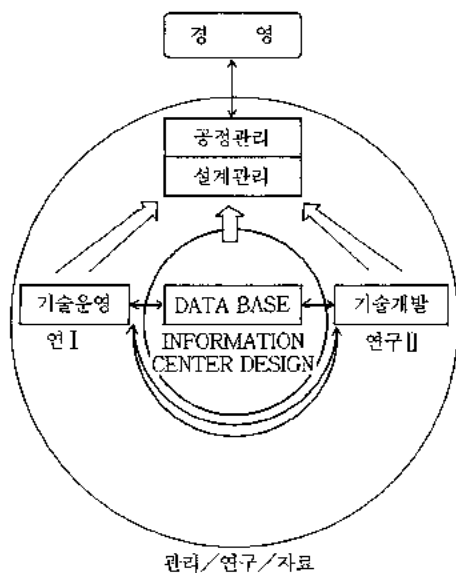
93년도에는 종합기술정보실을 설치하고 분산되어 운영되던 설계분야의 질향상을 위한 업무(특히, 기술분야)를 전담하도록 했다.

1. 質관리 시스템의 기본구조

정립의 질관리시스템의 기본구조는 크게 관리·연구·자료(Data Base) 3개의 카테고리로 요약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시스템을 각종 메뉴얼, 계획서, 지침서를 작성하여 문서화되도록 하고 있다. (표1)

관리 분야는 경영목표에 직접 연관을 갖으며 크게 공정관리와 설계관리로 나누어지는데 공정관리의 주요사항은 책임과 권한을 규정하는 공정관리체계와, 그 절차, 사후 평가를 위한 기록 보관이 된다. 설계관리는 국제적인 기준과 정립고유의 스타일에 적합한 설계프로세스의 개발과 관리, 입·출력자료의 관리, 설계도서의 접수까지의 일련의 과정이 포함된다.

연구에 대한 관심을 향후에는 과거에 비해서 기술의 유효기간이 짧아질 것이라는 가정에서 비롯된다. 진정한 의미의 경쟁력은 정보의 보유량에 있다기 보다는 정보의



(표1) 정립건축 질관리시스템

운용이라는 소프트한 분야가 중요해질 것이다. 연구분야는 기술운영과 기술개발 분야로 나누어지는데 기술운영은 경영전략과 연동하는 기술목표 수립과 그에 따른 장·단기 기술운영 전략수립과 설계방법, 계획자료 개발등을 통해 설계관리 분야를 지원한다. 기술개발 분야는 Data Base화와 설계관리에 기준이 되는 각종 표준화와 메뉴얼 작업, 디테일 시방서제정, 사내 주요 프로젝트의 컨설팅을 담당하게 된다.

자료(Data Base) 관리는 각종 설계결과물과 표준화된 연구자료들이 분류체계에 따라 관리되고, 가공되어 이용될 수 있도록 관리·이용자체계를 만들고, 향후에는 '종합정보센터'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다. (표2)

2. 설계업무의 표준화 및 전산화

향후 정립의 기술운영 방향을 통합화, 전문화로 요약되어질 수 있다. 관련업무가 설계에만 국한될 수 없기 때문에 건설관련 전 분야와의 협력관계를 구성할 때 기준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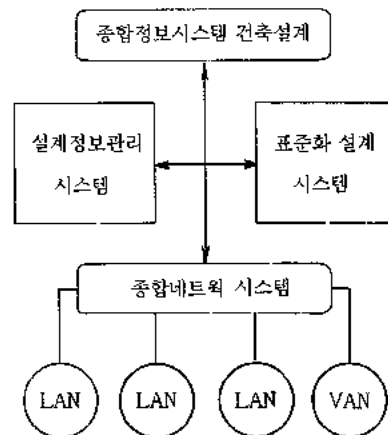


(표2) 자료(Data Base)운영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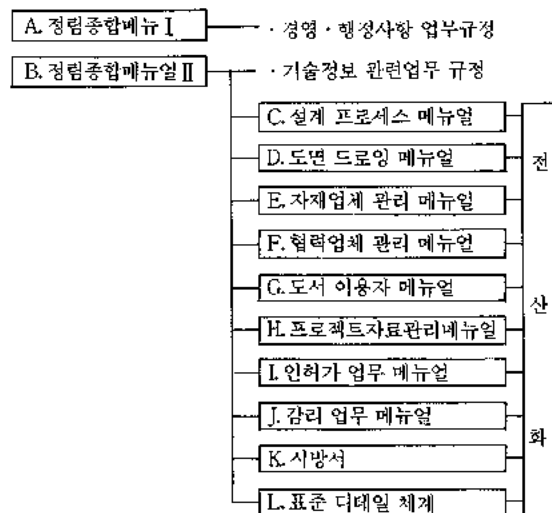
될 수 있는 각종 시스템의 구성이 필요하다. 이미 추진중에 있는 표준화, 전산화는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과제이다. 표준화, 전산화 체계에서 정립에서는 (표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종 설계 정보관리시스템과 표준화된 설계시스템을 종합네트워크로 연결하는 종합정보시스템(MIS)이 구축된다.

관련 전문분야들 간에는 VAN으로 연결하고 표준화된 각종 정보를 ON-LINE 서비스하게 된다. 단계적으로 관련전문 분야와의 표준화된 컴퓨터 자료교환과 설계업무의 질관리를 위한 기초작업이 되도록 한다. (표4)는 質관리 시스템을 뒷받침하는 메뉴얼체계이다.

이제 변화의 물결은 이미 우리 곁에 와 있다. 서론에서 언급했듯이 개방화, 국제화에 대한 대응자세가 단순히



(표3) 표준화·전산화 체계도



(표4) 정립 메뉴얼 체계

새로운 용어들의 소비가 아닌 진지한 접근이 필요하고, 정립의 質관리 시스템과 같은 제도 이전에 회사전체가 지향하는 비전과 행동양식(Corporation Identity)의 명확한 설정과 조직구성원의 행동양식을 통일화하는 작업(Mind Identity)이 필요하다. 참고로 정립에서는 조직개편 작업과 더불어 전문업체에 협력해서 CI작업을 추진중에 있다.

3

개방에 대비한 사무소 형태와 기능

A Form and Function of Architect's office

朴舒弘/단·회산종합건축사사무소
by Park, Seo-Hong

1. 가치관의 실존적 위기

산업사회의 최후의 선택이었던 냉전 체제가 무너지고 와해 되어가는 시점이 공교롭게도 20세기가 끝나가는 시기의 세기말적 현상과 겹치면서 혼란과 당혹스러움과 무질서라는 미증유의 상태에 우리는 놓여 있다.

선과 악의 이분법적 논리 만을 강요하였던 서구 근대 문명은 전세계에 풍요와 진보의 희망찬 미래를 제시했을 뿐만 아니라 산업사회가 안고있는 갖가지 모순과 갈등의 시스템도 이식 했다.

거기에 고치지 않고 그들은 한걸음 더 나아가 서구권 지배하의 불평분자들까지 포용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던 것이니 투쟁과 타협의 방법이 바로 그것이다. 혁명과 대화를 통한 방법은 즉각 전세계적인 보편성을 가지며 퍼져 나갔고 우리의 근대사에도 예외없이 스며 들었다.

지난 세월 투쟁과 대화 속에서 오간 고통과 분노는 어김없이 저들이 정해 놓은 길을 걸으며 숫구치기도 하였고 소멸되기도 하였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오랜 연습을 거친 그 두가지 비방이 약효를 잃고 비틀거리기 시작했다. 혁명적 방법은 배타시 되었고 학생운동의 이론적 모태였던 마르크시즘은 빛이 바래져가고 있고 투쟁은 온건화의 길을 걷고 있다. 서방은 물론 동구권이나 중동에 이르기까지 계급 이데올로기에 기초한 대중운동보다 계층, 계급의 구분없이 참여하는 시민사회 운동으로의 질적 변화가 보이는 가운데 이전까지의 고유의 강박들이 허물어지면서 마치 인류 화합의 대축제를 열기라도 하려는 듯한 광렬함을 표출하고 있다. 종래의 군사 대결 대신 자리한 경제나 문화적 갈등이 적과 아군을 구분못할 지경의 이전투구 양상을 띄우면서 확산되고 있고, 이해집단 간의 협력이나

조정은 회의수만 늘리는 답보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모임도 누가 객이고 누가 주체인지 모를 혼란 상황만 연출하다 그칠 뿐이다. 개인에서 국가에 이르기까지 산적한 문제와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방안을 찾아보지만 예전의 방법은 적용될 수도 없고 또 먹혀 들지도 않는다. 혹시 기준을 잘못 적용한 것이 아닌가 하여 뚝 나 흠을 뒤적거려 보기도 하고 베이슨이나 사이드를 기웃거리려 보기도 하지만 그러는 사이에 변화의 물결은 저 멀리 앞서 나가고 있는 걸 발견만 할 뿐이다. 과거의 원리가 힘을 잃은 반면 미래의 전망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 모든 것이 무의미하고 매사가 불투명한 요즘이기에 뭔가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하지 않으면 안될 상황이다. 불행하게도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지금 우리는 새로운 삶의 원리를 창조해야만 할 출발점에 서 있는 것이다.

2. 개방과 국제화

갑자기 밀어 닦친 국제화의 물결이 개방이라는 바람을 등에 업고 온 나라를 휘젓고 있다. 국가 단위의 정책 의지에서나 개인이나 기업 단위의 대응전략에 이르기까지 가히 혁명적 이라고 할 만하다. 하지만 우리에게서는 익숙한 갑작스러운 단어는 세계적인 흐름으로 볼 때는 아주 생경스런 용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그간 우리 사회의 지식자들이 제시한 21세기의 미래에 대해 장미빛 그득한 환상만을 그리고 있었기 때문이라. 물론 일부 그룹에서는 많은 가능성과 함께 위기를 예견 안한 것은 아니지만 위기의 구체적 실체가 제시되지 않은 까닭으로 여러 분야에서 의미없이 시간만 허비하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미래란 분명하게 예측될 수 없는 속성이 있다. 그러나 자연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삶에도 최소한의 일정한 규칙성이 있으므로 그러한 삶의 규칙성을 하나 하나씩 파악해 나가는 과정에서 미래에 대한 준비도 갖춰지리라고 본다.

언제부터 인지는 모르지만 우리들은 과거를 뒤 잊어버리는 사회적 건망증이라는 기억 상실증의 병을 앓고 있다. 장래를 예측하는 시각도 역사적 동시성을 외면한채 현실을 출발점으로 한 미래만을 보기를 고집한다. 작금의 우리의 현실을 빚대어 제2의 개항이라고 외치는 사람들조차 한세기전의 개항 당시와 요즘과의 시차를 망각해버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정도이다. 지난 세기말 우리나라의 현실은 혼란과 무기력의 극을 달리고 있었음을 우리는 역사에서 읽고 있다. 진주와 동학 혁명의 와중에 소용돌이쳤던 갑신정변과 갑오경장이 우리의 근대화예의 길을 열어 주기도 하였지만 치유되기 힘든 치욕을 안겨 주기도 하였다. 세월은 흘러 오늘에 이르러서 당시의 개혁이 시대를 달리하여 비슷한 양상으로 지금의 개혁으로 재현되고 있다. 그리고 유감 스럽게도 당시의 개방압력이나 지금의 개방압력의 본질이 다르지 않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100년을 격하여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면서 우리에게 또 한번의 해결을 전제로한 결단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개항 한세기를 맞이하는 시점이다.

3. 삶의 형태(style)와 세계화

다분히 정치적인 배려와 영향이긴 하지만 우리 사회의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은 어리둥절 하다못해 한심하다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미숙하기 짝이 없다.

개념이나 용어의 정의는 실증된 채로 해답만을 찾기 일쑤고 총론을 전개하다가 뒤집어서 각론에서 해매는가 하면 국제화 의식을 논하다가도 세계화의 관행을 울부짖고 있다.

사회적 용어인 다원화와 정치적 개념의 지방화에 뒤섞여서 문화적 어휘인 대중화의 개념이 설 자리를 잃고 있어도 누구 하나 제자리를 찾아주려는 사람은 없다. 오로지 경제성장만을 추구하며 살아온 지난 수십년은 우리 사회 구축구축이 부정부패에 오염되지 않은 곳을 찾아볼 수 없도록 하였고, 이땅 전역을 권위주의의 두터운 장막으로 뒤덮이게 하였다. 그와함께 우리의 몸매 밴 인습과 관행과 의식구조 역시 미처 체질강화의 기회도 갖지 못한채 엄청난 도전에 직면해 있는 오늘의 우리의 모습이다.

서구 선진문화가 이룩한 다원적 시민사회가 정착 되기도 전에 전개될 미래가 또 그 미래가 제공할 가공스러울 변화라는 것이 우리는 일찍이 경험해 본적이 없는 새로운 삶의 모습을 요구하리라는 것은 어김없는 사실이다.

국제화(Internationalization)는 삶의 여러관계가 국내 중심에서 국제적으로 확대되는 것을 의미한다. 국경이나 국내외의 구분 없이 관계가 형성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면 보다 정치적 영역에 가깝다. 그러한 국제화가 국경을 전제로 해서 나온 국가중심 사고라고 한다면 국제화의 의식에서 입안되는 전략은 세계화(Globalization)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세계화는 활동범위가 국경에 구애받지 않음을 뜻하므로 보다 기업 차원의 의미를 담고 있다. 경쟁의 대상이 세계로 개방되고 확대 되는 것이 틀림 없다면 국내에서의 경쟁시대는 끝났다고 할 수 있고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조건은 경쟁력 뿐이라고 할때 그러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국가나 기업들끼리 협력하면서 서로의 생존을 위한 전략을 짜나가는 것을 지역화(Regionalization)의 사고라 할 수 있다. 또한 지역화의 필요에서 외국에 진출 했을때 현지 기업과 똑 같은 조건에서 경쟁한다는 의미에서의 실행이 현지화(localization)전략이다.

이제 세계화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적인 환경의 기준이 되어가고 있다. 세계화로의 전환 과정에서 또 국경이 없어져가는 필연적인 세계 환경화에서 정부나 관료들이 생각 하여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여태까지 국가에서 장악하고 있던 권한을 개인이나 지방으로 이관하는 것이다.

세계화 환경에 기업이나 개인이 적응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적응이 자유롭게 이뤄지도록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 정부에서 일일이 관여하는 규제는 개선 정도가 아니라 아예 철폐되어야 한다.

건축사 수를 인위적으로 조정하고, 협회를 간접적으로 다스리고, 업무상의 조그마한 과실을 벌미로 무수한 죄인 아닌 죄인만을 양산하고 한결을 더 나아가 사무소 형태까지 좌지우지 할 수 있다는 생각은 (개인, 단독, 법인1, 법인2, 등과 같이 사무소 형태를 규제 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터무니 없는 행정편의주의와 비민주적 관행에 저들은 한국적 관료집단에서나 나올만한 생각이다) 타성에 젖은

관료적 발상 일뿐더러 극히 비개방적인 사고일 뿐이다.

자유시장의 경제 원리는 관료집단의 선택의 대상이 아니라 선택의 여지가 없는 적용의 문제인 것이다.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개혁의 원칙이라면 손발을 다 묶어 놓은 상태에서 개방을 준비하라는 말은 세계화 시기를 맞이한 지금의 시점에서 보더라도 반민족적 사고이며 반국가적 행위이다. 지난 한세기전의 세계사적 모순과 갈등에 대응했던 몇 사람의 정직된 사고가 그후 우리민족에게 얼마나 엄청난 수난을 강요 했었는가. 결코 잊어서는 안될 기억이다.

4. 사무소 형태의 결정요인

설계시장개방에 따르는 사무소 형태와 기능이란 것이 먼저 물리적인 외형만 갖춰서는 세계화와 개방이라는 필연적인 대세의 흐름에는 적합하지 않다는걸 우리는 확인 하였다. 하지만 어떠한 형태로든 존재하여야만 하는 사무소이기에 그 사무소 구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일(Project)의 성격, 즉 다른 말로 건축적인 삶의 행태를 규명하고 파악해 보는 것은 장래의 준비에 조금의 도움은 되리라고 믿는다.

여태까지는 개방에 따르는 우리의 삶의 모습의 변화는 단순히 경제적인면 위주로 추구해 왔지만 사실은 우리의 정신문화에 엄청난 충격을 가져올 것으로 예견된다.

경쟁력을 무기로한 무한 경쟁의 논리가 세계를 지배하게 되는 과정에서 경제의 개방 물결은 국경을 소멸해 나가게 되겠지만 유일한 예외로 인정할 수 있는 분야가 문화 부분이다. 경제에서의 개방이 공격적인 경쟁의 논리라면 문화의 세계화는 공존의 논리이기 때문이다. 민족문화를 바탕으로 한 국제사회에서의 우리는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 그간 사상과 문화적 측면에서 보수주의적 시각이 견지되어 온 것은 남북 대립의 상황이라는 특수성 때문이었다. 이제 우리의 특수성 만을 인정해 달라고만 할 수 없는 세계화의 시점에서 우리의 정신 문화가 세계라는 대해로 나가서 견딜 수 있는 잠재력과 민족문화의 정체성을 인정만 한다면 두려워만 할 필요는 없는것이다.

중국문화권의 변방의 하나의 지류로 위치하기 수천년 그 오랜 세월동안 우리의 문화적 정체성을 지금껏 이정도로 지너온 것을 보더라도 지금 전혀 다른 문화와 만난다 하더라도 충분히 아겨 나갈 만한 힘은 내재해 있는 것이다.

다만 문제가 되는것은 우리의 고유성을 찾는 일과 우리나라의 자연과 문화(Nature & Culture)전반에 대한 새로운 인식적 접근과 함께 연구 및 조사가 철저히 수행되고 검증되는 일이라 하겠다. 어차피 외국인의 우리나라에 대한 접근이 철저한 기본데이터와 거기서 비롯된 기본개념(Concept Basic Data)의 설정에 의한 것으로 예측한다면, 그러한 데이터와 개념은 우리들은 이미 알고 있는게 아니겠는가. 다만 여태까지 감각으로만 지너온 우리의 것에 대한 합리적 정리에 의한 접근이 뒤따른다면 시작부터 지고 들어가는 일은 생기지 않으리라고 믿는다.

아울러 세계화의 과정에서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인 수 있다는 환상을 버리게 함으로써 건축의 문화적 영역에서의 보편성을 획득 하도록 하는 것이 한국적 문화를 테마로 삼되 그것이 서양이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주게 되는 계기가 되리라고 본다.

산업사회의 논리로 자리 잡아온 대량생산과 대량소비의 문제는 모듈(Module)이나 표준화(Standardization)와 더불어 필연적으로 가격(Low Cost)우위의 체계를 확립 하였다. 반면 생산자 입장에서의 공급측면만 강조 해온 결과 소비자 입장에서의 욕구가 반영되지 못한 결과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당면한 사회는 요구하고 있다.

설계 단가란 것이 요율표만 올린다고 결정되는 것이 아님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다.

지금 현재도 미국 등 선진국보다 객관적 평가에서 20~30% 더 비싼 설계비를 우리는 받고 있는 바, 과연 내용에 있어 그 만한 설계의 질과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인가에 대한 부정적 견해 또한 심정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우리들이다. 지금 외국과의 경쟁에서 우위에 설 수 있는 가격 경쟁력을 우리는 갖고 있는가. 물론 여기에서 말하는 가격은 설계비를 위해서 건설 단가에 이르는 넓은 의미의 가격이지만 기본적으로 시간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는 걸 간과해서는 안된다.

얼마전에 미국서 A0크기의 투시도를 그려 오는데(6매) 비용이 2,000\$로 결정되는 걸 본적이 있다. 소요시간은 불과 7일. 우리의 모 해외건설업자가 최근 수주한 120층짜리 고층 건물의 골조(철근콘크리트조) 시공 기간에 대한 요구조건은 90일(물론 설계조건임) 이었다.

외국인들의 설계에 접하는 시간에 대한 인식은 우리의 그것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강도를 갖고 있음을 막연하게만 이해해 왔다. 이제 우리도 가격과 시간의 문제는 삶의 일부분으로서 받아 들여야 할 시점에 서있는 것이다.

가격의 논의에서 본질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생산성과 질(Quality)에 관한 점으로 압축된다고 본다.

설계의 생산성은 우리의 노력과 준비에 따라 어느 정도는 극복 가능하리라고 보여지는데 철저한 기계(컴퓨터) 사용에 의한 도면 작업과, 시방의 기준, 자료의 정리, 협력업체(Subroom)와 컨설턴트의 조직 및 자질 향상 등의 선결 조건에 의해 그 가능성이 판단되리라고 생각된다. 하지만 이 모든 작업이나 준비가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시간이 걸리는 행위라고 보면 장단기 계획의 수립하에 이뤄짐이 마땅하다고 본다. 어쩌면 지금의 젊은 컴퓨터 세대들에게 이 분야의 미래를 위임한다는 기분으로 오늘의 당면한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일견 현명 할런지도 모르겠다. 다만 지금의 우리세대는 그들을 위한 밑거름이 되는 작업만을 준비 한다는 생각으로 접하는 단기계획은 큰 의미가 있으리라고 믿는다.

그리하여 그러한 계획에서 정리되는 개인-조직-정부에 이르는 라인의 입장정리는 사무소 기능의 자연 발생적이며 다양한 형태의 사무소 구성을 유도하게 될 것이며, 그 과정에서 국가가 개인에 대한 책임을 저준다는 식의 과대망상증은 소멸 되리라고 믿는다.

이차피 우리는 우리들 운명의 주인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정보화에 대한 요구와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선진국에서는 이미 문화 제국주의적 경향과 팽창을 우려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도 건축문화의 전반적 상황은 물론

엔지니어링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보존해 나가는 방안에 대한 심중한 자세가 더욱 귀중한 시점이다. 정보 매체의 핵을 이루는 컴퓨터 이용에 있어서도 하드웨어적 자료에 머물 것이 아니라 소프트웨어의 개발과 준비에 있어 적응성이 수반된 협조 체제가 요구 되는데 협회가 이러한 역할(Data Bank)의 구심체가 되어야 하며, 또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외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시행중인 컴퓨터를 통한 건축인허가 업무의 처리를 위한 전단계 준비 작업으로서도 마땅히 서둘러야 할 시점이 아닌가 여겨진다.

다양성의 시대에는 모두가 전문가가 되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각자의 역할이 극대화 되는 길을 모색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건축사는 말할 것도 없고 사무소 구성원의 역할도 분업화 전문화를 전제로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여러명의 건축사가 있음으로써 능력이 배가 된다는 생각은 식인종들을 거느리고 원자탄을 만들 수 있다는 발상과 하등 다를게 없다.

계획가(Planner)나 디자이너의 역할과 기능이 충분히 인정되어야 하고 드래프트맨이나 디테일러 등 개개인의 전문성을 수급해 주면서 서로를 인정하는 자세가 필요하며 이럴 경우 조직의 비대화는 개개인의 역량을 극대화 하는데 방해만 될 뿐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사무소 형태를 결정짓는 또 하나의 단서가 있다고 생각 된다.

전문인 양성에 주도적이어야 할 학교교육의 미흡을 외국의 그것과 비교하지만 우리의 건축교육의 기본제도가 바뀌어지지 않는 한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 건축사 제도에 이르러선 기본적으로 필요한 교육의 시간조차 갖지 못한 제도적 모순을 우리는 알고 있다.

「너희는 왜 설계를 하다가 마나? 개념(Concept)은 그럴듯한데 설계는(Design) 안 한 것 같으니, 너희나라에서는 다 이렇게 설계 하나?」 일전에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 건축가의 의문에 가득찬 눈동자가 잊혀 지지 않는 것은 우리의 설계의 질(Quality)에 대한 자괴심에서 이리라. 외국인의 눈에 비친 -하다가 그만둔 듯한 설계- 이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보면 차라리 서글퍼 진다. 완전성이 결여된 우리의 설계가 물고을 여러가지 문제 중에서 가격의 문제는 어떻게 보면 지엽적 문제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하나의 「완결」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는 저들의 자세를 설계가 요구하는 질적 평가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라고 한다면 이에 근접하기 위해선 먼저 외적 장애 요인은 과감히 수정되어야 하겠다. 설계 도면과 시방서는 각각 따로 놓고 있고, 그나마 표준 시방서라는 것도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부분이 오래도록 방치되고 있다.

건축관련 법규는 무슨 간첩들 난수표 들여다 보듯이 에너지를 허비해야 만 하고 그러다가 대강 넘긴 디테일에서 만약 미국 법원의 빨간 스티커라도 발부 받는 사태가 발생한다면 (우리가 일상 쓰는 디테일의 많은 부분이 이미 특허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임. 스위스 카다로그의 깨알같은 작은 글씨가 그러한 사실을 말하고 있다) 우리는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까. 그렇다고 우리 모두 외국 업체의 허가 대행 사무소로 전락할 수는 없지 않겠는가. 이시점에서 심각히 생각 하여야만 되는 것이 산학협동의 정신이다. 상아탑속의 교수들이 실제의 설계 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넓혀 줌으로써 진정한 산학 연계에 의한

협력이 이뤄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학생들을 지도 하는데 있어서도 실질적 경험에 의한 자질 향상을 기할 수 있으므로 우리의 설계의 질을 높이는 데 일익을 담당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5. 사무소 형태를 위한 Aphorism

현재에는 강대국간의 역학 관계 조정이 진행 중이어서 잘 드러나 보이지 않지만 신세계 질서를 위한 지역간 국가간 역관계가 조정 재편되는 시점에서는 어차피 선진국(강대국)의 힘의 논리가 우위에 실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이때 우리 문화 및 건축계에 가해질 강자의 논리는 어쩔수 없이 수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되리라. 이런 상황에서의 우리의 기본자세는 서비스 업무의 본질을 깊이 파고 들어가서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겠고 그러기 위한 자구책의 하나로써도 우리 스스로의 자질을 향상시키는 것에 노력을 집중하여야겠다. 더하여 외국인의 국내로의 진출시의 수용태세와 우리가 외국에 진출시의 적응태세에 대한 공통의 분모를 찾아서 법·제도 기준 등에 대한 철저한 대비만 이루어진다면 또 그러한 목표 설정에 의한 관민의 합치된 노력만 가시화 된다면 비판적인 상황을 역전으로 이끌 수 있는 훌륭한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한 역할을 담당할 건축인들의 조직이 설계 사무소라면 철저히 자유로운 형태의 사무소이면서 프로젝트 별로 이합집산(전문인들의 풀 시스템 등을 말함)이 이뤄지는 탄력있는 사무소 구성만이 그러한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지름길 이라고 믿는다.

4 건축설계시장 개방에 따른 우리들의 자세

UR and Our Posture

姜基世/종합건축사사무소 (주)범건축
by Kang, Ki-Se

요사이 예기치 않았던 재앙이라도 만난 것처럼 온 나라는 국민 각 분야별로 개방화에 따른 몸살을 앓으려고 하고 있다. 사실 개방화는 동구권이 무너지기 이전부터 짝이 났고, 그 이후 필연적으로 경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개방화는 역사적인 필연이며, 우리도 이 물결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다. 더구나 우리의 처지는 외세에 의하여 피해도

보았지만 외국에 의하여 혜택도 보아왔다. 침략도 받았지만 보호도 받았고, 근대화 과정에서 피해도 있으나 득도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지리적으로 보아도 우리는 문닫고 홀로 살 수 없으며, 자원면으로 살펴봐도 인적 자원이 그 나름대로 호조전에 속하리라 생각된다.

우리는 이제 무한경쟁 시대에 접어들었다. 우리가 개방화를 능동적으로 대처하느냐 수동적인 자세를 취하느냐에 따라 우리나라 역사의 흐름은 엄청나게 달라질 수 있다. 100년전 우리 역사를 되돌아보아도 너무나 자명하다. 동학난이 외세에 의하여 진압되지 않았다면 근대화는 엄청나게 빨라졌고, 외세에 의한 개화가 아닌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개화와 개방이 되었다면 오늘날 한국의 국제적인 입장과 국력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을 것이며, 건축설계 분야도 금번에 닦친 개방화에 그리 고민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개방화란 국경없는 무역경제를 의미하며, 국제화란 모든 분야의 수준높은 질의 향상을 의미한다. 개방화와 국제화는 우리로서는 불가분의 관계로서 국제화하지 못하면 무한경쟁 시대에 낙오하고 말 것이다.

그러기 위하여는 현재 우리 상황이 어떠한지, 건축설계 분야는 어떠한지, 8.15 해방, 6.25 한국전쟁, 4.19 혁명, 5.16 등 격동하는 시대에 물량위주의 건축설계와 모방설계가 주축을 이루었다고 생각된다.

주입식 교육과 획일적인 사고, 비타협적, 비민주적인 군사문화 배경 속에서 창작을 생명으로 하는 건축설계분야의 과거는 감히 짐작할 수 있다. 저렴한 설계비, 짧은 설계기간, 건축을 이해 못하는 건축주, 열악한 교육환경 속에서 자라난 인력들, 수준 낮은 건축기자재 등으로 외국잡지에 의존하고 창작을 위한 모방으로 몸부림쳐야 했던 과거를 우리는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

본래 창작이란 모방에서 출발한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이 있지만, 모방도 충실히 하면 저력이 생기는 것은 이웃나라 일본이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모방도 충실히 하지 못하였음을 자인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는 과거를 숨길 필요가 없다. 분열하고, Dumping하며 살아왔던 과거를 버리고, 현재를 냉철히 분석하고 비판하여야 한다.

교육방법은 바꾸지 않아도 되는지, 건축사들의 경쟁력 수준은 어떤지, 설계환경은 어떤지, 설계기간은 충분한지, 설계방법은 생산적인지, 설계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설계비 받는 수준은 어떤지, 각종 법규는 설계발전에 저해되는 요소는 없는지, 사회에서 건축사에 대한 인식은 어떤지, 건축사들의 사회활동은 과연 잘하여 왔는지, 건축사들은 싸우며 분열하지 않았는지, 건축사들은 사회 정의에 어긋난 행위는 없었는지, 건축사들은 건축주에게 서비스 정신을 발휘하였는지, 건축사협회는 리더십을 발휘하였는지, 건축주들의 건축의 이해도는 어떠한지, 설계자 선정 방법은 옳았는지 등등

이루 다 헤아리지 못한다. 누구나 긍정하여야 하는 내용들 그러나 우리만의 책임이 아닌 국가, 사회, 역사에 책임을 전가하고 싶은 심정이다.

나는 개방화가 건축설계 분야에 여러가지 면에서 찬만다행이라 생각된다.

어쨌든 독자적으로 살아갈 수 없을 바에야 하루빨리 늪에서 빠져 나와야 한다.

건축설계 분야에 봄이 다가오는 기분이다.

벌써 국제경쟁력에 가장 중요한 설계비가 상향되지 않았는가, 건축관계 규제가 풀리고 있지 않느냐, 건축사 합격률이 높아지고 있지 않느냐, 건축사협회가 꿈틀거리고 있지 않느냐, 학계도 걱정하고 있지 않느냐, 정부도 도와주려고 하고 있지 않느냐, 늦은 감이 있으나 UR 덕분에 우리도 살 맛이 나지 않겠느냐, 건축설계가 무엇인지 인식이 달라지지 않겠느냐, 건축사의 사회적 입지가 좋아지지 않겠느냐 등.

무지개 같은 꿈을 꾸면서도 꿈이 아니기를 바랄 뿐이다.

한편 건축문화가 어떻게 변할까, 온통 외국건축사들이 활보하고 다니지 않을까, 국내 건축사들은 외국 건축사들의 심부름꾼으로 전락되지 않을까, 설계비로 파다한 Dollar가 흘러 나가지 않을까 등의 걱정들이 기우일까

우리는 과연 개방화 시대에 국제화를 하기 위하여 각자든, 단체든, 국가든 장·단기적인 계획이 있는지, 우리는 스스로없이 외국인들과 일대일의 관계로 대처할 수 있는 자신이 있는지,

사고의 전환은 할 수 있는지, 다같이 침몰하지 않으려면 이에 대한 교육이 따라야 하며, 정보가 앞서야 하리라 생각된다.

우리는 현명하고 슬기롭게 대처하여야 하며, 조용하게 물밑에서 꿈틀거리야 한다.

그러기 위하여는 정부 당국에 의존하기에 앞서 건축 3단체가 앞장서야 하지 않을까, 그중에서도 대한건축사협회가 좀더 분발하기를 기대할 수밖에 없다.

대형 컴퓨터로 체계화된 각종 정보의 신속한 제공, 수준높은 자료 제공 등을 위한 투자는 열악한 설계분야의 활기를 불어 넣을 것이 틀림없다. 지체할 시간 여유가 없을 것이며, 또한 설계자들이 선진국들과 같이 자신감과 사회적인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는 책임과 권리를 갖게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명분있고 책임있는 보상방법을 사회에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협회가 좀더 적극적으로 국제사회에 뛰어들어야 할 것이며, 회원 각자의 자질과 사회발전에 적합한 Group을 형성하여 각기 발전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과 조직을 개편하여야 할 것이다.

설계분야에 종사하는 개인들은 사고의 전환과 합리화, 실력의 향상 및 객관화, 끈질긴 노력, 책임감, 협동정신 등의 노력이 꾸준히 따라야 할 것이며, 설계분야 중에서도 전문화를 선택하여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우리는 무엇하나 자신있게 선진국과 경쟁할 수 있는 분야가 없다. 이제부터라도 교육계를 비롯하여 개인의 전문화, 조직의 전문화를 위하여 총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개방화라는 무역경제 전쟁이 시작되었다. 끝없는 전쟁이다. 지금 어렵다고 영원히 지는 것은 아니다. 좌절은 금물이다.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장기가 있지 않은가. 닥치면 뛰는 버릇, 자극 받으면 뛰는 습관, 흥분하면 물불 안가리는 성미, 기본이면 베풀주는 좋은 습성들을 장기화하고 지속적으로만 한다면 그리 어려운 상황은 아닐 것으로 믿는다.

소극적인 대처보다는 적극적인 대처로서 수동적인 자세보다는 능동적인 자세는 무한한 힘이 될 것이다.

우리는 건축주가 훌륭한 설계를 바라고 있음을 인지하여야 하며, 수준높은 설계감리를 요구할 권리가 있으므로 국경넘어 설계감리자를 선택하려 함은 자연스러운 생각이다.

건축설계는 건축사법에 의하여 건축사가 설계하여야 하는 규정에 앞서 건축주에게 무한한 서비스 정신으로 임하여야 하며, 내가 외국인에게서 직접 느낀 경험으로도 서비스 정신에서부터 자세를 바꾸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개방화로 인하여 수평적 사고로서 단기적으로는 방어를 위한 노력과 장기적으로는 국제화를 통한 진출을 목표로 임하여야 건축설계를 하려는 후세에게 부끄럽지 않은 미래를 안겨주고 싶은 심정이다.

5

국제화와 건축설계 분야

Globalization and Architecture Design Industry

金知德/유신건축 종합건축사사무소

by Kim, Chi-Dok

정부는 UR 협상 및 정부조달 확장 협상의 타결로 건설시장 개방 일정이 확정됨에 따라 이를 국내 건설산업의 선진화와 국제화의 계기로 삼기 위해 관련 제도를 국제화하는 한편 기술개발, 설계감리분야 등 종합건설 능력배양, 원천하청 협력관계 강화, 입찰자격 사전심사제도(PQ) 확대시행 등 실질적인 대처 방안을 조속히 강구하기로 했었다.

아울러 해외사 면허기준도 마련하고 있다고 공식발표도 했다. 또한 해외 건설의 활성화를 위해 면허 도입허가제 등 정부 규제를 철폐한 개정 해외건설 촉진법을 시행중인데 이어 해외건설에 관련된 조세, 금융, 보험 등 모든 재원제도를 전면 재검토, 금융 경쟁력 강화대책도 마련할 방침이란다. 건설부가 밝힌 건설시장 개방대책 수립방향에 따르면, 우선 국내 부문은 국내업체의 경쟁력 제고 및 제도의 국제화 정비를 대별해 대책을 수립하기로 한다고 발표했다.

경쟁력 제고를 위해 종합 건설업 면허제도보다 더 효과가 큰 설계감리 참여 유도 방침도 시행할 생각이라고 했다. 더욱이 건설부는 입찰, 계약 등 정부예산 회계규정을 정부조달 협정규정을 개정하는 등 관련제도를 국제화해 나가기로 했다. 외국사에게 건설업 면허실시와 외국인 기술자 인정기준, 도급 한도액 산정 기준 등도 마련하며, 국제 경쟁력 제고를 통한 근본적인 체질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한다.

더욱이 국내 건설관계 기본조직의 우대조치는 불가능한 실정이라고 공식발표하고 있는 지금의 현실에 와 있는 것이다. 이런 시점에 와 있는 우리 용역업체는 어느것부터 손을 써야 할 것인가? 몇가지 대응 방안중 우선 피부에 와 닿는 시급한 것부터 순서로 기술해 본다.

첫째로 우루과이라운드 타결후 우리나라 건축설계 용역업체로서 뚜렷한 대응책을 아직도 만들 수 없다는 우리의 현실이 안타깝다는 이야기를 우선해야 한다. 물 밑듯이 밀어닥치는 선진 외국의 건축기술이 우리의 설계 용역시장을 잠식하였을 때 과연 우리의 현실이 수수방관할 수밖에 어떠한 대응책을 강구할 수 없다는 현실이 안타깝다.

우선 외국 선진 용역회사가 우리나라를 침투하여 이 용역업무를 하고자 했을 때, 우리나라의 건축설계 용역업 개설 조건이 사무실 30평, 전화 1대, 제도판 2개, 건축사 3인, 보조원 5인 등 이런식의 구태의연한 규정을 가지고는 선진 건축설계용역회사의 상륙을 막을 수 있을 것인가? 우선 우리나라 건축사협회 용역사 개설규정을 새로 제정하는 것이 첫째 대응 방안이라고 생각된다.

『한국의 관료들은 지나치게 경직되어 있어 한국의 국제화에 장애 요소가 되고 있다』는 그레그 전 주한대사의 말을 우선 인용할 필요가 있다.

우리 국제화 국제화 말로 수백번 해봤자 지금껏 관행으로 해온 여러가지 규제들이 그것을 막고 있다. 물론 관행과 우리의 역사가 좋은 것도 있다. 허가, 제도적 장치, 규제가 모두 지휘, 통솔, 감사, 일벌백계 형식의 경직된 과거의 폭거는 그 누가 현재 현황을 책임질 일인가?

둘째는 우리 건축 용역업체의 대응방안은 건축설계 용역업무 규정과 현상공모 규정의 단일안을 우리나라 현실에 맞도록 하루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한국내에는 지금 3개의 건축 단체가 있는데 각기 이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우리나라의 건축가협회에서 UIA현상설계 규정¹⁾ 있는데, 또 무얼만드느냐고 반대의 의견을 제시하는 분들이 많은데, 과연 UIA 건축설계 현상공모 규정이 우리나라 현실에 합당하다는 말인가? 이것은 현실성이 없다. 제반 새 규정에는 현상공모를 안해도 되는 건물의 종류를 분명히 나타내주고 이런류의 건축설계는 가격 경쟁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된다.

즉 공무원들의 감사를 대비하기 위한 현상공모 행사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제안이다. 진실로 현상공모해야 할 건축물은 그 규모가 건축심사위원 위촉과 그 선정과정이 분명해야 하고 사전에 심의위원을 만나서 작품의 자문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 풍토는 건축설계 용역업체의 전도를 흐리게 하는 결과 이외에는 어느 방향도 압담할 뿐이다.

94년 1월에 건설부에서 작성 시안발표한 새 현상설계 공모안도 공무원 감사대비 설계현상 규정에 불과할 뿐이다. 제도적 근본원인 개혁과 건축설계 본질의 작업성격파악이 미흡하기 짝이없는 구태의연한 안이라 지적한다. 이런 풍토의 쇄신을 과감히 건축 3단체의 설계경기 운영위원회에서 새 규정을 만들어 대응해야 하는 둘째번 문제를 제기하는 바이다.

셋째로 건축사(개업건축사)도 월급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허용하는 협회의 규정을 수용해야 한다고

제언하고 싶다. 왜냐하면 개업 건축사 제도를 두고서 월급을 받을 수 없는 현실 풍토를 만들어 놓았느냐 하는 것은 수년전부터의 눈감고 아용하는 격으로 운영되어졌던 것이 사실이었다.

누구나 건축사가 대표이사로 되면 대표 건축사가 하나의 건축설계 용역회사를 대표하게 되는 용역업 풍토조성이 되어야 한다. 설계법인의 특성을 현재 우리나라 설계용역업을 하는 개업건축사들은 이해안하려고 하는 특성들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전문의 면허를 받은 의사들도 의료법원에서 월급받고 의술을 전문업으로 하고 있는데 왜? 유독히 전문건축사들의 경우 건축사가 건축사 월급받고 건축사업을 할 수 없도록 그 규정을 만들고 시행하는 이 시대의 실질적 현상을 도외시한 규칙을 철폐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필자는 아직도 이해할 수가 없다고 생각한다.

넷째로 건축사 우리의 문화를 갖고 우리 것을 사랑했던 우리국민의 의식구조도 큰 문제라 생각된다. 기본계획 설계때부터 한국인 건축사, 한국인 기술을 갖고는 안된다고 해서 해외의 기술과 창작을 의뢰했던 우리의 과거 10년을 돌이켜 보자. 용산의 국제빌딩(기본계획 CRS), 여의도의 63빌딩(SOM), 여의도의 럭키금성빌딩(SOM), 대치동의 포철사옥(키엔세케이), 삼성동의 무역센터빌딩(키엔세케이) 등등 우리의 필설로 상당한 양의 건축 기본계획 설계를 외국에 줘야만 하는 대그롭의 운영지시는 우리를 슬프게 하는 하나의 사례라고 생각되며, 이런 지침을 갖게 한 지금의 현실을 우리 건축사 모두가 다시한번 반성할 때가 됐다고 본다.

우리나라의 이런 건축용역설계 풍토가 계속되는 한 우리것을 갖겠다고 하는 우리의 집념은 점차 태백될 것이나 이런 일련의 일은 문화개방 차원에서 봤을 때 더더욱 우리의 용역 풍토가 외국의 유명건축사의 좋은 시장 제공의 기회를 갖게 되리라고 생각된다.

우리는 우리의 좋은 것들을 전통적으로 많이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몇 년전 외국의 유명건축설계 전문건축가가 우리나라를 방문했을 때 안동의 河回마을을 보고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한 한국의 전통 농촌 마을의 아름다움에 감탄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우리의 선조들은 우리 것을 키우고 닦아 세계에 자랑할 만한 것을 얼마나 많이 쌓았는가를 생각할 때 우리의 현재 건축사들 모두는 좀 더 생각할 여러가지가 있다고 생각하며, 국제화가 우리의 전통을 무시하고 전통을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닌 무특성화를 갖는 설계라면 이것은 위험한 발상이라 생각된다.

꼭 외국제 내장재, 외국제 식기, 외국제가 최고라고만 해서는 우리가 설 자리는 점점 없어지고 말기 때문이다.

다섯째로 대처해야 할 것은 정부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을 수차례 역설했는데 계약제도, 입자선정제도가 지금처럼 이어서는 발전도 업무도 어렵다고 생각된다. Client가 어느 건물을 지으려면 우선 Consulting Office에 일을 우선 맞기는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한다.

변호사를 찾아서 어떠한 법적 판결을 부탁하는 Two Step Procurement System제도의 도입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리나라의 현행 계약제도는 One Step Procurement방식으로써 한 단계를 생략한 제도적으로 돈을

절약하기 위해 한 단계를 없앤 방식인데 발주자가 Consultine Services 건설업체 선정, Design Office 선정 등 집을 짓고자 하는 분은 우선 컨설팅 회사에 찾아가서 설계업자의 선정과 시공업자의 선정을 우선 순위에 따라 시행하는 외국의 제도적 장치를 도입하면 지금처럼 무질서한 건설시장 풍토는 없어질 수 있다고 생각된다.

각각 경험회사 선정을 의뢰하고 시공이 완성될 때까지 감리와 건설공사 진행의 모든 책임을 지우는 그런 제도로서 이 컨설팅 회사는 Client을 대신해서 모든 건설업자의 선정과 Design의 제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지휘 통솔하면서 건설의 품질관리 체계까지 전반적인 시공의 품질을 Client을 대신해서 해 주는 제도다.

이런 일련의 일은 Saudi에서 공사와 시공을 해본 분들은 잘 알고 있는 방식이며, 우리나라의 제도로써 USCOE(미국동건설 공병단) 계약 제도가 이 방식이다.

전체 공사비의 3%~4%가 Consulting회사가 대행비로 보수를 받고 엄청난 건축물공사의 완공때까지 그들의 Know How를 제공하는 계약제도에 이런 멋진 방식을 이미 도입해서 쓰고 있는 선진 외국의 용역 제도를 사용 안하고 있다는 우리나라 풍토에서는 속히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건축을 하고자 하는 업체가 건설회사 대표이사를 찾아가 내가 이런 이런 집을 짓고자 합니다 계약해서 알아서 해주십시오 하는 현행 우리나라의 수주, 발주 풍토에서는 꿈만 같은 이야기일 것 같다.

그러나 이런 제도적인 장치는 건설부의 기술 담당국의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성공적인 실행이 가능한 제도라고 생각된다.

『SAUDI, 미국, 기타 나라들의 이 제도 정착은 대형 공사의 경우 모든 것이 이런식이다』

여섯번째 대처방안은 『국제화 인재』 발굴에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국가 공무원들은 스스로 『나』는 국가에 큰 봉사를 했다고 자부 할는지 모른다.

그러나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잘못된 것이 또한 상당히 많다고 본다.

외국어를 일찌기 배울 수 없도록 처음부터 배려조차 안한 것도 공무원들의 안이한 태도였다고 생각한다.

예를들면 70년대 초에 우리나라에 있었던 몇 개의 외국인 학교에 한국의 선구자적 부모들이 자기의 자녀를 입학시켜 수업을 받게 했던 사실이 있었다.

문교부에서 높은 분의 지시라고 해서 모두 퇴교조치해야 한다고 각 학부모 한테 퇴학하도록 조치했던 일이 있었다. 당시 국민학교를 함께 다녔던 학생들이 88올림픽때 훌륭한 통역을 해냈던 기억을 필자는 갖고 있고, 당시 꾸준히 교육을 받게 했다면 사회에 충실한 일꾼으로서의 역할도 하리라 생각한다.

필자가 1980년대 초 일본의 상지대를 방문 했을 때, 벌써 교문내에만 들어서면(학교에 오면) 영어로 강의하고 말해야 하고, 영어 논문을 작성, 제출하는 학교를 보고 깜짝 놀랐던 기억도 새롭다.

실로 졸업하면 100% 실사회에 일꾼으로 쓰이고 동경대 졸업자보다 이 대학 출신을 각 회사에서 더 선호하고 있다고 듣고 있다. 우리나라의 언어 학자들 사이에 아직도 국민학교에서 영어나 일어를 정식과목에 넣지 못하게 하는 문교부 교직과목 담당자들은 UR시대 이후의 인재양성을

그럼 어떻게 하려는지 묻고 싶다.

특별히 해외 교육을 받고 실무에 뛰어난 우리 건축사 분들을 발굴해서 외국의 설계작업 등의 특별 교육 Program을 별도 개발하여 실행해 올길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일곱번째로 빨리 실행해야 할 큰 과제가 있다.

용역업체에서 또 다시 논의하여 도입될 큰 사항중 하나는 대학교 건축교육 교수방식중 건축설계 과목을 가르치는 교수님들에게 실지로 설계업무에 공동 참여를 시키야 한다고 강한 제언을 드리고 싶다.

실무의 경험이 많지 않은 건축설계 교수에게 건축설계를 배우는 학생들은 졸업 후 실제로 설계실에서 그들을 지도해 보면 정말로 한심한 일면을 우리는 봉착한다. 평면도 하나 제대로 작도 못해서 일일이 가르쳐 주고 왜? 45. 삼각자를 써야 평면도가 쉽게 그려지는지조차 모르고 졸업하고 학점을 받는다.

CAD교육으로 이런 것 필요없다고 할지 모르나 “설계의 원칙을 알아야 한다.” 물론 건축역사와 유명한 건축가의 설계작품을 섭렵하는 것도 대학교육의 기본임은 말할 나위도 없다. 그러나 건축설계를 실지로 가르치는 설계계획학 교수는 실지로 설계 용역업의 경험을 많이 쌓을 수 있도록 해야 유능한 학생이 될 수 있으며, 개업 건축사사무소 면허를 동시에 취득한다고 생각한다.

교수가 수업을 안하고 돈 벌이에 시간할애를 너무 많이하기 때문에 기존 건축사사무소의 설계업무에 영향을 준다는 과거 논법을 몰라서 이 제안을 하는 것이 아니다. 배우고 자라는 우리나라 후세 건축사의 상을 제대로 잡기 위한 나의 제안이다. 대학교에서 제대로 공부를 하려면 제대로 된 학생을 배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대학교 선생님에게 특히 실무 건축설계 교수에게 실무건축설계 작품에 참여 못하게 한 이 제도는 장래 우리나라 설계업계의 위대한 발상이다.

하루속히 설계 교수는 실무에 공동참여하여 실지로 우리의 용역업체 풍토를 분명히 알고 학생을 지도해야 우리나라 건축설계 업계가 발전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대안으로 제시한다.

여덟번째로의 대처방안은 설계비 효율에 치한 대처한이다. 건축설계 용역설계비도 효율을 단일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실적회비 산정 기준표는 무엇이고, 건축설계용역 효율표(건설부공고 129호)는 무엇인가? 이런 규정을 갖고는 해외 건축설계용역 전문회사와 어찌 대응할 수 있겠는가? 이웃 일본은 실비정산 건축설계 용역효율로 바뀌 시행하고 있는 지가 1년이 넘었다. 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협회의 실적회비 징수제도를 속히 연회비 제도로 바뀌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제도가말로 구태의연한 발상이다. 협회 운영은 뜻있는 건축사의 뜻의 모임단체로서 규정한대로 운영하고 생각이 있는 건축사는 복지회비, 연금회비 등에 가입하고, 강제규정을 삭제해야 한다고 생각되는 바이다.

이런 규정을 갖고 있는 한 해외 건축설계 용역전문 회사가 우리나라에 상륙했을 때 어떻게 대처할 작정인가? 한국의 설계비 수수료는 제도적으로 잘되어 있는 데도 우리 개업건축사의 자질이 문제되어 운영을 잘 못하고 있다.

왜? 건설부 공고로 건축사 업무보수기준이 발표됐는데도 업무보수 효율을 그대로 이용할 수 없는 것일까? 1년에

건축사 업무 허가면적을 Total해서 언젠가 비교 검토해보니까 1년에 4천여 건축사들이 건설부에서 받으라고 인정한 요율의 반밖에 받지 못하는 실정을 우리는 반성해야 한다.

1994년 제6차 개정인가를 받은 새 건축사업부 보수기준에 의하면 연립주택 설계도 평당 1십1만이 넘는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실정은 어떤가, 1년에 약 9천억원 정도를 안 받는 것인지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흘러버리는 것이 된다.

어떻든 UR이 개방되면 외국의 건축설계 요율은 공사비의 8% 정도가 분명하다 아주 작아야 7%가 일반적인 현황이다.

이 설계비 요율에 처한 것도 우리가 새롭게 대처해야 할 업무 개선이고 분명히 건축사 업무에 포함된 작업의 양을 나타낸 작업범위를 나타낸 별도의 안내 규정을 새롭게 작성해서 우리 건축사들이 우리의 문화창달에 이바지 할 성실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규범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규범이 있어야 덤핑의 풍조도 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계약을 1년에 1개회사가 150건씩 할 수 있었던 지난날의 엉터리 건축사사무소의 범주를 벗어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더욱이 계획설계비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정치도 이제는 고려되어야 한다. 한 개의 Project를 수개의 용역 건축사사무소에서 마구잡이로 공짜계획을 해 주고 계획설계비를 단 한 푼도 받지 못하는 현재의 우리 건축설계 용역풍토도 또한 UR시대에 진입하는 우리의 현실을 더욱 안타깝게만 느낄 뿐이다.

6

우리건축계의 실천과제

A Practice Problems of Our Architect's World

金白浩/(주)간삼종합건축사사무소

by Kim, Cha-Ho

우선 단편적으로 국내 건축설계시장 개방시 보완되어야 할 문제점을 이야기 하기 이전에 과거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과정부터 우리는 알아 두어야 할 것 같다.

해방후, 특히 제3공화국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나라는 부족한 인적·물적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국가의 모든 정책을 수출·제조업·생산재 기업 등 특정 분야에 우선 투입한 후 거기에서 파생된 수요나 소득 효과를 내수·서비스업 내구소비재 근로자 등에게 전파하는 형태로 불균형 성장 정책을 채택하여 왔다. 그럼으로써 경제발전을 이루는 데는 어느정도 성공하였다고 볼 수 있겠다.

그러나 그과정은 생산소요를 양적으로 증가 시키는데 치중하였고, 생산물 증가 효과가 눈에 띄게 빨리 드러나는 정책 수단을 동원하였다.

예를들면, 국내 기술 개발보다는 외국 기술 도입에 의존하였고, 부품산업 보다는 최종 조립제품 산업의 성장을 추구 했으며, 중소기업 보다는 재벌기업에 특혜를 주어 발전 하는 등 겉으로는 외형적 발전, 선진국의존형의 성장을 꾀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사회 가치관도 과정의 정당성 보다는 결과의 신속성이나 크기를 중요시 하는 경향으로 자리잡아 갔다.

또 그것이 항상 자랑거리가 되었다.

그러나 앞으로 전개되는 국내의 구조변화를 감안할 때는 과거의 방법으로 우리 국민이 기대하는 생활수준을 유지 하기 위하여서는 과거와는 다른 방법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이러한 과거의 사회적 변화를 배경으로 인하여 건축설계 분야도 마찬가지로 형태가 아니었다 생각해 본다.

앞으로 우리는 국내외적으로 다가오는 시장개방에 따른 충격은 그성격상 보통 사람으로서는 예측하기 힘든 불확실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만큼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거부가 아닌 탄력성 있는 대처 방안을 모색하여야만 될 것 같다.

우리 건축계에는 앞으로 어느 한 두 사람의 지시에 따르기보다는 건축계 전체가 스스로 판단하여 각 부문이 자동적으로 연계하여 대응할 장치가 요구된다.

우리가 안고있는 문제점을 정부의 관련 부서나 건축 3단체가 정책조치를 수시로 발동하여 시행하는 것이 잘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모두 창의력을 발휘하여 각자의 상황에 맞추어 시의적절하게 작용하도록 함으로써 우리 건축계의

전체가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국내는 물론 외국과도 선의의 경쟁이 될 것이다. 또한 우리가 선택한 방안들이 우리의 주요 경쟁국들의 눈에 불공정한 경쟁수단이 된다면 그 방식이 잘못 채택한 것이 될 것이 분명하다.

과거 10여년 동안 설계사무소를 운영 해오면서 나름대로 많은 경험은 하였다. 나 자신 실무에 대한 사회생활의 시작이 외국에서부터 시작하였고, 국내에 돌아와서도 반대로 국내사정에 익숙하여지는데 급급하였다.

모든 것이 긍정적이고 합리적인 체계에서 사회의 여러분야의 집단과 연계하여 생산성을 높여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이 주어진 선진국과는 반대로 어느 몇몇 사람의 주관적 판단과 부정적이고 무사안일주의의 정부의 행정기관, 외국인에 대한 배타성과 때에 따라서는 사대주의적인 판단으로 외국 것은 무조건 좋다고 하는 무분별한 판단으로 집행하여 온 것이 오늘의 현실인 것 같다.

이제 우리는 과거를 좀더 반성하고 수정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어야만 될 것이므로 나름대로 경험을 토대로 구체적인 예와 경험을 설명하여보면,

우선 우리 사회가 안고있는 역사적 배경에서 근본적으로 우리의 의식개혁이 없이는 선진국과의 경쟁에서는 항상 뒷전에 처져있는 모습만 보이게 된 것이다.

건축사가 상대방인 건축주의 업무를 수임받아 대행하는 위탁업무인 것이기 때문에 건축주와는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과거 국내에 세워진 건축물들 중에 외국인과 공동작업을 하여 만들어진 건축물의 내용을 살펴보면 몇가지 공통점이 있다.

우선 건축주가 외국건축사에게 업무의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가 국내건축가의 불신에서 시작됐고, 과연 외국건축사의 업무내용에는 창의적이고 신선한 맛이 담겨져 신뢰한 사실이 인정되었기 때문이며, 국내건축사의 배타적인 자세에 흥미를 잃어버린 건축주가 자신들의 사대주의적인 위안감에 이루어진 것이 공통점이다.

당대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여 보통은 한번밖에 기회가 없는 상품을 사기위하여는 욕심을 부리는 것이 당연할 것이다. 이러한 욕구에 우리 건축사 자신들은 창의적이고 신선한 맛의 상품을 제공 못한 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건축주의 요구에 거절 못하고 울며 겨자먹기로 외국인과 협동아닌 강제계약을 하여 왔고 또한 많은 월사금을 내어가며 업무를 수임받고 팔사를 당한 것도 사실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 몇가지 있다.

모든 업무의 기본은 계약에서 이루어진다. 그런데 국내건축사의 약점은 이것을 소홀히 하거나 인정에 치우쳐 요즘말로 '좋고 좋고가' 너무 많았다.

첫째, 나의 경험으로는 외국의 건축설계 방식에 대하여 우리는 너무 모르고 있다. 북미주, 유럽, 일본 등 선진국의 모든 나라의 설계의 기본은 같지만 업무수행 방법은 모두 다르다. 따라서 업무의 범위와 진행방법에서 발생하는 내용은 엄청나며, 때에 따라서는 막대한 손해를 볼 수 있고, 업무의 세분화에 따른 대화 부족으로 추가업무가 속출하게 된다. 이에 대하여 설계계약의 형태도 달라진다. 외국의 설계사무소에는 거의 전문 계약자가 있으며, 이에 따른 국제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등이 동원된다. 항상 느끼는

것이지만 업무 종료에는 우리는 선의의 피해를 보고 그들은 소정의 비즈니스를 모두 수행하였다.

운 좋게 아니면 '좋고 좋고가' 인정받아 서로 화기에애하게 종료할 때도 물론 있지만 이것은 다행스러운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앞으로 외국의 설계방법, 내용, 세분화된 업무내용을 충실히 공부 하여야만 할 것이다.

두번째는 언어의 불편함이다. 한국에 오면 한국어를 하여야지 하지만 그들이 한국어를 배우는 것은 무리이다.

우리 자신이 그들의 언어를 배우는 것이 더빠를 수가 있다. 언어의 장애로 인하여 업무의 시행착오는 현실로 아다르고 어다르다. 앞으로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세계로 미래를 지향한다면 불편없는 국제공통어를 익속하여야겠다.

세번째로는 업무수행능력의 신속성이다.

건축설계업무도 일종의 비즈니스인데 우리는 항상 많은 시간과 용역비를 요구하지만 그들은 많은 용역비와 짧은 시간을 추구한다. 그러므로 공동작업을 할때에는 우리는 너무나 혼란되어 있지 않고 불필요한 업무만 늘어 놓게 되는 것이 상례이므로 반성하고 주의할 점인 것 같다.

지금까지 우리는 그들과의 차이점은 주시하였지만, 이와 관련해서 우리 건축계가 꼭 서둘러 실천해야할 과제를 몇가지 제시하여 본다.

무엇보다 새시대에 맞는 사람 만들기부터 시작해야 한다.

고부가가치화를 지양하는 건축계는 그 구성원 보다는 좀더 깊은 전문지식과 높은 기술을 체득하여야 하므로 고학력화 추세에 실천할 학과교육을 뒷받침 하여야 하겠다.

그들의 수준은 대학을 졸업하고 설계사무소에 들어오면 1년후에는 훌륭한 전문인이 되는 것이 현실의 추세인 것이다.

다음으로는 시간을 충실하게 사용할 수 있는 업무 행위가 되어야겠다. 결국은 업무수행 시간을 단축하면서 성과를 올리고 소득을 늘리는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업무 내용 중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내용을 삭제하고 업무수행 시간은 줄이고 더많은 업무를 수행하는 방법으로 바꾸지 않으면 안된다.

불필요한 업무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건축계나 관련된 사회조직 내부의 권한을 위임하거나 자유화하여 대관청업무를 각종 심의라든가 방침, 억제규제 등은 완전히 없애 버려야 한다.

그밖에 미래에 대한 장치로 각종 업무 능률화를 위해 기술개발, 정보통신 기능의 선진화, 또한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의 과감한 공개 등이 우선 실천되어야겠다.

현재 선진국들이 갖추고 있는 수준의 기술과 도덕규범, 자본축척이 없이는 그들과 같은 수준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없다.

또 이러한 고부가가치는 그 성격상 사회의 한 두 분야가 일시적, 즉흥적으로 대처한다고 해서 실현될 수도 없다.

또한 현재의 우리 구조는 너무나 대외 과시적이고 성격이 강한 대외 의존적이기 때문에 개방화 시대에 격변하는 세계가 몰고 온 충격을 제대로 흡수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보다 튼튼한 우리 자신의 내부 실력의 받침대가 구축되지 않으면 우리의 경제적 안정성은 확보할 수 없을 것이다.

7

설계협력에 따른
계약의 문제점The problem in Contract Co-Work for Joint
Contract of Local Foreign architects蔣應在/(주)원도시종합건축사사무소
by Chang, Eung-Jae

① 10여년전 모 은행건물의 설계를 위하여 건축주되는 분들과 같이 외국의 유명 사무실건물 및 은행건물을 돌아보는 기회가 있었다. 그들 외국의 색다른 거리의 풍경에 매료되기도 하였지만 그들 우수한 건물의 규모와 외관의 스케일에 압도당하고, 자유분방한 기능이나 디자인요소의 적극적인 소화력이나, 끝없이 화려한 재료의 호사스러움과 반대로 값싼 재료의 사용에서도 그 질감이나 색깔의 연출에 의해 결코 천박하지 않게 느껴지게 하는 점에서 상업화된 하였어도 그 수준에서 감탄을 하던 기억이 있다. 그들의 현장에서 우리현실을 돌아보고 우리에게도 그들과 같은 수준의 용역비와 설계기간, 특히 그들의 건축디자인에 대한 일반인 건축주의 이해의 수준이 우리에게도 주어질 경우 그들 이상의 디자인을 구사할 능력이 있을까하고 생각해보았던 기억이 있다.

모든 분야에 전문가 동원을 필요로하며 실내디자인도 용도별로 동원 해결하며, 기준중 사무실의 배치계획이 실내디자인 용역을 거쳐서 소화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인식되어 있는 그들의 배경이 과연 우리에게 언제쯤 접할수 있게 될것인지, 또 그러한 일반의 인식에 앞서 우리들 건축인(건축주측의 건축인포함)이 과연 그러한 인식을 위한 노력에 얼마나 절실하게 앞장서고 있는지 짚어볼 필요가 있다.

② 외국 건축사의 국내 건축물 설계는 많은 수라고 할수는 없으나 그 질이나 규모에서 괄목할만하며 이는 역사적으로도 구한말이나 일제침략시대로 부터 시작되며, 초기 그들의 설계, 그들의 시공기술에 의해 전적으로 의존적수입되던 시대로 부터. 국내의 건축관계 법규가 정비되면서 국내에 세워지는 건축물의 설계에 대해 국내 건축사의 설계권을 규정한 시기에도 심심찮게 외국건축사의 설계 참여는 계속되어 우리들 앞에 그결과를 자랑하게 된다.

전체적으로 보면 초기 직수입의 수준에서 국내건축사와 협동설계의 단계로 변화해가는 일련의 과정을 그 시대의 흐름을 따라 읽어 볼수가 있다. 양식건축의 시대는 제척놓고 60년대의 경제기획원 청사(미국 King Architects Associations)및 조선호텔(미국 W. TABLER), 정부종합청사(미국PAE), 70년대에 세워진 하이아트호텔(日本팀+송민구건축)등은 설계의 100%직수입으로 볼수 있겠으며 그후의 롯데호텔(일본建設+엄이건축),

프라자호텔(일본+大成建設+정림건축)등의 호텔건축과 80년대초 교보빌딩(C.Pelli+엄이건축), 중앙일보사옥과 동방프라자빌딩(미국W. BECKET+삼우종합설계) 국제빌딩(미국CRS+국제종합엔지니어링+동해건축), 대한생명빌딩(미국SOM+박건축), 럭키금성사옥(미국S. O. M. +박건축+(주)창조건축) 등이 민간 대기업에서 발주하여 설계 작업 수행은 거의 대부분을 외국건축사가 행하고 국내 법규및 자재, 장비등의 자료제공및 건축허가를 대행하는 극히 적은 부분을 보조하는 역할을 국내 건축사가 담당했던 단계로 이해되며 80년대 후반에 이르러 한국종합무역센터와 롯데컴프렉스 프로젝트에 이르러 그 협동설계에서의 국내 건축사의 비율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으나 그 원칙적인 수행원칙은 비슷하다고 보아야 할것이다. 근본적으로 건축주의 「외국건축사 초청의도」에 의해 디자인 작업 및 주요 시스템의 결정은 외국건축사가 수행하고 그 초기에는 허가대행만 수행하다가, 실시설계 도서를 담당하고, 또 디자인의 각 단계별로 협력해 작업하는, 국내건축사의 작업범위가 조심스럽게 확대되어 온 것을 볼 수 있다. 어떤 의미에서는 국내건축사의 역할의 확대의 궁극적 종점은 외국건축사의 퇴장을 의미해야 하는가? 상호 역할이 뒤바뀌는 협력의 방법은 국내건축사의 외국건축물 설계에의 진출에서나 바라볼 일은 아닐는지? 「유행」을 좇음이나 「외환디자인」을 위한 말초적인 협력이 아닌 좋은 건축을 위한 성숙된 협력의 방법은 어떤것을 이야기함이며 과연 그것은 가능한 것인지 자문해본다.

이제 이 시점에서 「국제적으로 손색없는 우수한 건축」을 세워 보고자 하는 「건축주」측의 순수한 의지에 의해, 첨단기술경험이나 새로운 재료와 기법에서 우수한 외국건축사를 초빙하는 그 원칙적 의도를 무시하고 본말이 전도된 「희망」만을 늘어놓는 것은 무의미 하지 않을까.

또 이시점에서 우리에게 UR타결에 의한 모든 분야의 개방과 발맞추어 일어날, 공동계약에 의한 외국건축사의 국내건축설계에의 「침략」(?)에 의해 지금의 상황과 어떻게 달라질것인지, 과연 국내건축사와 공동계약이라는 단서가 붙어있긴 해도 개방의 제도적 보장이 국내건축사의 설자리를 잃게 해 줄것인지, 그들의 선진기술과 능력을 배울수 있으며, 국내의 제반여건이나 건축설계에 대한 일반적 인식의 수준을 높이는 역할도 하고 나아가 우리 능력에 의한 국제화에 궁극적으로 도움이 되는 수준으로 소화될수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③ 필자가 최근 10년에 걸쳐 계속적으로 참여한 3개의 프로젝트에서 외국건축사와 협력하여 설계한 경험을 가지게 되었다.

웅장한 민족주의적 배타심의 발로에 의한 과민반응이나, 건설회사가 주역이긴 하지만 내용적으로는 국내 설계능력의 해외 진출에 대해 과대한 평가가 안되도록 하는 바램에서, 길지않은 경험이라도 조금의 도움이 되고자 하는 바램으로 그 경험을 나열해 보고자 한다.

본 특집에서 관심사로 볼수있는 계약방법이나 역할의 분담방법에서의 문제점에 초점을 두고자 하며, 또 우리자체의 미숙함과 관련되는 문제점도 돌아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아직은 한사람의 건축인이 가진 의견의 개진이며 혹여 그 표현이 어느 특정인을 비방하는 내용으로 오해될까

두려우며, 확실하지 않는 해결책을 선불리 주장하는 것은 아닐런지 염려되는점 크다.

④ 최근에 와서는 개인기업의 사옥설계에서까지 국제설계경기에 의하는 사례도 있지만 그 당시(84년)까지는 처음 있는 일로서 국제설계경기 프로젝트로서 한국중합무역센터의 설계가 국제지명설계경기로 진행되어 1984년 11월에 제출된 8개 작품중에 일본의 넷켄세계이(日建設)팀의 작품이 최우수작으로 선정되고 가작으로 뽑힌 (주)원도시건축과 (주)정림건축이 국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넷켄세계이 팀과 협력하여 소위 「협동설계」가 진행된다. 85년 1월부터 86년 말까지 진행된 설계는 현상설계 작품을 바탕으로 FC(Final Concept), SD(Schematic Design) DD(Design Develop) 및 WD(Working Design) 단계를 「질서있게」 밟으면서 진행되었다. 물론 필자의 들은 바에 의하면 기히 언급한 경우에서와 같이, 현상출발 초기부터 디자인은 외국팀의 작품을 선택하고 실시설계 작업은 국내팀(그것도 1개사로는 부족해서 2개사로)에게 맡길 것을 원칙으로 기획되었다 한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는 초기단계부터 그 원칙을 「질서있게」 지킬것을 요구하였으며 설계 내용에 대한 건축가로서의 의견이 치기스런 작업방해(?)로 오해되는 경우도 있었다고 기억되는 필자만의 옹졸한 느낌이었을까?

구체적으로 계약의 시행은 그 당시의 다프로젝트에서와 같이 건축주-넷켄세계이, 건축주-국내설계팀이 별도의 계약으로 이뤄졌으며 협력작업을 해야할 설계팀으로서는 넷켄세계이와 국내설계팀은 직접적 계약관계가 아닌 건축주를 통한 간접적 계약관계로서 오직 행정적으로는 건축주를 통해서 연결되도록 장치된 셈이다. 실제로는 각 단계별로 넷켄세계이팀과 국내팀이 직접연결되어 검토 협의되어 진행되었으나 중요한 결정사항이나 의견의 접근이 어려울 경우에는 그 계약에 의한 문서에 의한 기록이외에는 효력이 없는 경우를 경험해 보면 「협력」의 의미를 되짚어 보게된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계약방법에서는 건축주의 코디네이터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며 그 능력에 따라 좌우되는 계약방법이라 할수 있다. 필자의 경험으로 다음에 언급하는 영종도 신 국제공항의 계약방법과는 크게 다른 계약방법으로, 외국용역사를 「강력한」 건축주가 직접 관리함으로써 요구사항의 강력한 관철과 건축주측의 의도에 맞춰 적극적으로 유도할수 있는 장점을 가지며 외국건축사로서도 건축적의도나 성과내용에 대한 적극적 데몬스트레이션 가능한 점에서 장점을 찾을 수 있었으나 국내팀과 직접연계 되는 점이 약하고 만약 건축주측의 코디네이션이 원활치 못할 경우 과업의 중첩내지는 누락사항이 발생되어 책임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계약방법으로 이해된다. 이와같은 계약방법을 선택한데에는 외환의 해외지출이 용역사로서는 불가능한 점도 작용한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방법에 의한 각각의 협의에 의한 용역비의 합의는 서로 다른 기준에 의한 용역비의 차이를 피할수 없었으며 그 금액에서 지불방법에서, 또 추가나 설계변경의 처리에서까지 너무나 많은 격차를 알게됨은 결코 즐거울수 없었으며 건축가로서의 자존심을 다치게 하는점이 많은 경우로 기억된다.

과업의 분담방법은 크게 기본설계 작업과 실시설계 작업으로 구분하였으며 각 단계별로 필요에 따라

상호협력(CORDINATION)하는 방법으로 초기의 작업은 외국건축사 위주로 진행되다가 점점 국내팀의 역할이 커지는 협력방법으로 진행되었다.

별도의 계약으로 외국팀 작업결과를 어느단계까지 진행된 후에 국내팀이 전달받는 방법보다는 디자인의 초기 의도를 같이 호흡하며 실시설계에까지 연결되는 점에서 협력의 체계가 확립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계약방법에서는 운영방법에 의해 협력의 수준은 편이하게 달라질수 있으며 계약방법의 성격상 국내팀의 주장이 외국팀에 의해 무시될 경우, 건축주측 코디네이션의 판단이 좌우하게 되며, 적극적인 양측 설계팀의 협의와 설득이 없이는 추후 발생하는 변경이나 의도의 변화에 대해 어느측에도 책임을 물을수 없는 가능성이 있다.

⑤ 1987년에 기히 착수된 프로젝트이었으나 건축주측의 추진변경에 따라 외국건축사가 초창된 프로젝트로 현재 여의도에 건설중인 쌍용투자증권사옥을 들수있다. 이 프로젝트는 계약방법은 상기 한국중합무역센터의 경우와 동일하다 하겠으나 특이한 것으로는 건축주측의 코디네이터 역할을 건설회사 설계팀에서 맡는 방법으로 추진되었다.

수의 계약에 의해 진행된 이 프로젝트는 설계계약을 쌍용건설과 미국의 WELTON BECKETT사가 기본설계 계약을, 쌍용건설과 국내팀인 (주)원도시 건축이 실시설계 계약을 따로 따로 맺고 작업진행 방법으로는 무역센터 경우와 동일한 방법으로 협력한 경우이다.

시공회사 측으로는 건축주인 쌍용투자증권으로부터 TURN-KEY 개념에 의한 C.M방법으로 위임받아 수행하는 방법이었으며 자칫 시공편의 위주의 판단에 치우칠까 우려되었던점을 유능한 시공회사 코디네이터에 의해 그 장점을 잘살린 예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경우에도 상기의 협력패턴은 전 경우와 동일한 경우이며 국내 건축사의 의견이 무시되는 성격은 거의 동일하다고 판단된다. 국내 법규의 구체성 결여에 의한 다각적 대처방안이나, 국내산업구조의 취약성에 의하여 그들의 의문에 구체적 답변을 머뭇거리게 되는점을 놓고 불신의 벽을 쌓게되는 어치구니 없는 경우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옳다고 하겠는가?

⑥ 그 다음의 경험으로 영종도 신국제공항 여객터미널 프로젝트를 들수 있으며 이 경우 상기 2개 프로젝트와는 다르게 건축주측은 국내건축사와 외국건축사 공동팀과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진행된 경우이다. 물론 이 프로젝트는 현재에도 설계작업이 진행중이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대단위프로젝트로 21세기 동북아의 중심공항(HUB AIRPORT)을 목표로 1990년 그 입지가 영종도로 결정되었으며 1991년 마스터프랜치 유신설계공단과 미국 벡텔(BECHTEL)사의 협력에 의해 마련되어 그 여객터미널 건축설계경기가 1992년 4월에 공고되었다. 그 지침에 따라 외국건축사및 공항전문가와 국내건축사가 팀을 만들어 총 15개팀이 지명신청을 하여 심사후 10개팀을 선정 6월에 계약하여 지명 국제 설계 경기가 진행되었다. 92년 10월 14일 제출된 작품을 심사하여 필자가 속한

BHJW컨소시엄(범+희림+정림+원도시건축)과 미국 C.W FENTRESS AND J.H BRADBURN MCLIER사 공동작품이 당선되어 기본설계 계약을 추진하게 되었다.

구체적으로 그 계약방법에 대해 논의가 있었으나,

협의결과 건축주측은 주 계약자로서 국내 BHIJW컨소시엄과 계약을 맺고 국내팀이 외국건축사와 공방전문가와 다시 계약하는 방법을 선택하였다.

결국 국내건축사팀이 주계약자로서 외국건축사및 전문가 그룹을 총괄하는 책임을 맡게된 셈이다. 일견하여 국내건축사의 권한이 증대하고 실시설계 최종설계 마무리를 맡는 팀으로서 국내사정이나, 최종단계의 책임에 대비하여 그 위상을 높이는 명분과 설계의 주 수행자로서 CREDIT을 얻는 방법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프로젝트는 공동으로 수행된 설계경기에 의해 당연히 작품으로 당선된 것으로 이해되어야하며 그 내부부의 작업이 외국건축사의 이해의 범위에서는 그들에 의해 이뤄진것으로 이해되는 바탕에서는 아무리 그 외국건축사가 우리식 개념에 의한 하청계약에 의해 국내건축사의 지휘감독을 받게 계약이 되었다 하여도 디자인의 주체 역할 및 작업의 주된 부분을 그들 외국 건축사가 갖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데에서 국내건축사가 갖는 계약상의 통제권은 의미가 퇴색되고 마는 점을 볼수가 있다. 물론 여러가지 여건의 마련이 상호협력에 충분하게 확보될 경우 우호적, 신뢰적 역할분담을 순조롭게 할수 있을 것이며, 이에 필연적으로 국내팀의 코디네이션 능력과 그들 외국건축사의 프로젝트에의 애정과 성실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다. 필자의 소견으로는 외국건축사 초빙의 원칙적 의도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계약방법에서는 주 계약자인 국내건축사의 총괄 능력에 우선하여 그 주 작업수행자인 외국건축사의 프로젝트 수행에 대한 애정과 능력이 필수적이며 또 이를 위하여 설계용역비의 지출이 적정히 책정되어야 할것이며 합리적 용역기간이 설정되고, 또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의사결정이나 검토과정이 적절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어쨌든 외국건축사 초빙 방법으로서 이러한 계약방법은 상기 2개 프로젝트의 계약방법과 마찬가지로 이상적인 계약방법이 되기에는 불충분 하다 할수 있겠다.

국가와 도시가 멀리 격리된 팀끼리의 디자인과 기술에의 협력이 어렵면 강제적이랄수 있는 계약의 형식에 의해 그 질을 높일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리일지 모른다. 우리의 일천한 용역의 역사로 단순히 기술로써 건축설계를 이해하고, 돈 받고 행하는 「설계업자」(?)로 대접받는, 일방적계약에의 습성을 국내 건축주는 물론 국내 건축인이 바꿀수 있을때 국내 건축의 질을 높이고 또 국제화에 의한 외국건축사의 우리 건축을 위한 긍정적인 노력도 유도될수 있을 것이다.

⑦ 건축설계용역도 타엔지니어링 용역과 마찬가지로 UR타결에 의해 국내 건축사와 외국건축사 공동계약의 길이 제도화된다고 한다.

국제화에 대한 인식의 요구나 해외시장에 대한 대외 지향전략에 대한 환기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며 타 경제분야는 물론 건설부문의 해외진출도 괄목할만한 성장을 우리 눈으로 확인하는 이 시점에서 더 이상 국외자로 머물수 없는 우리 건축사들이 문제인식을 어느정도 하고있으며 국수주의적인 배타성이나 치기스런 호연지기가 아닌, 실질적이고도 질적으로 우수한 성취를 위한 노력으로 우리 자신이 무장되어야 할 것이며 「개방화」에 대한 알레르기성 반응이 아니라 우리것을 바탕으로 한 「세계화」에 건축사의 참여를 위한 제도와 후원을 얻어야 할

것이다.

도시화, 산업화, 정보의 국제화 등의 추세가 과학의 발전과 더불어 이제 과거의 단일용도나 중소규모의 건축형태에서 대형화, 상업화, 복합화 되는 추세에 있다. 국제화된 기업이나 특정기관이 아니더라도 이와같은 대형 프로젝트에 외국건축사의 참여는 설계경기를 통한 직접적 초청에 의한 더욱 증가할것은 확실하다.

이러한 프로젝트의 수행은 그 관계되는 분야가 다양해지며 동원되는 기술의 첨단화, 고도화가 요구되며 또 이들 모두를 종합화하여 총체적으로 인간의 생활환경에 활력과 감동을 부여하여 건축적 디자인으로 승화시켜야 하는 것이 건축설계의 목표라 할수 있다.

이러한 건축설계의 특성은 어느 특정분야만의 효율이나 편의성에 좌우될 성질이 아니며, 단계별로 관계분야의 모든 사항이 종합화되고, 조정된 절충으로서의 선택을 정책적으로 해야하는 숙명을 가지고 있다. 이는 한 특정개인이 이러한 복합적 내용을 한꺼번에 파악하고 종합하여 판단하는 능력을 가지기 어렵다고 생각되지만, 아무리 개개의 연주자가 유능하다 하여도 유능한 지휘자가 없이는 감동적인 교향악은 창조될수 없듯 유능하고도 강력한 지휘자가 그 판단의 포스트 역할을 해야 일관성있고 특성있는 우수한 건축이 이뤄질것이 아니겠는가?

물리적이고 상업적인 「건물」로서 건축설계를 이해하고 여건의 마련이 미흡한 바탕에서 외국건축사만 초빙하면 모든것을 「해결」해 줄것으로 기대하는 어리석음은 누구의 탓으로 보아야 할 것인가?

8 한국건축의 해외진출을 위한 지름길

The Best Way of Promotion in Overseas Architectural Market

金宇成/아키프랜종합건축사사무소
by Kim, Woo-Sung

용역 시장의 96년도 개방을 앞두고 외국회사들의 국내시장 잠식을 걱정하는 마당에 외국에의 진출을 생각한다는 것은 요원한 먼 훗날의 희망사항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곰곰히 생각해보면 국내시장을 수호하건 외국시장을 개척하건 이에 대비하는 방법은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국경없는 경쟁, 설계사무소와 설계사무소간의 경쟁이기 때문에 한국에서건, 동남아시아에서건 구미 선진국이건 같은 상황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실력」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실력을 키우고 이를 보여줘야 인정받고 일을 줄 것이 아니겠는가.

현재 우리의 건축설계 실력은 선진국들과 비교해서 어느정도 평가받을 수 있을까 궁금하다. 외국차와 국산차의 수준 정도의 차이일까? 아니면 우리 국민소득수준과 선진국 소득수준차 정도일까?

건축은 그 사회의 수준의 반영이라고 하는 사람도 많다. 그러면 선진국을 100으로 볼 때 40~60점 정도 사이가 아닐까 생각해 본다. 그렇지만 반도체 산업분야처럼 노력하면 건축설계 분야도 세계 일류에 끼일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닐까?

외국 잡지에서 보여지는 수준 높은 많은 건축물들을 우리나라에서도 만들어내고 외국잡지에서 앞다투어 실려지는 일이 어려운 일일까?

그런 정도의 세계적으로 주목될만한 건축물들이 일년에 한두개씩만이라도 세워진다면 한국 건축계의 해외진출과 함께 선진국으로부터의 국내시장 수호도 어렵지 않다고 본다.

국내기업들이 외국용역회사에다 설계를 맡기는 이유가 몇가지가 있다.

첫째가 외국자본이 국내에 투자되면서 기술도입과 함께 건축물의 설계도 한류음으로 들어오는 경우,

둘째는 국내에 사례가 없는 새로운 형태의 영업방법이나 개발방법때문에 이에 대한 새로운 건축개념을 도입하고 싶을때,

셋째는 국내에서 갖고 있지 않은 공법이나 최신 설비를 들여와야만 하는 경우,

넷째는 새롭고, 창의적인 공간개념, 독특하고 아름다운 형태, 첨단적인 외관을 갖춘 건물을 원할 경우들이라고 생각한다.

외국설계회사들이 위와 같은 이유때문에 국내시장에서 활동한다면, 바꾸어 말해 우리 건축가들이 다른 나라에 진출하려면 위와같은 이유를 갖추어야 된다는 아주 간단한 논리가 성립된다고 본다.

첫째 이유를 제외한 나머지 이유들은 우리 건축가들이 어떻게 역량키우고 발전시키느냐에 많이 달려있다고 본다. 새로운 건축개념, 새로운 설비공법, 창의적인 건축공간, 아름다운 외관 이런 것들은 끊임없이 새로운 가능성을 추구하고 노력하면 이를 수 있는 분야인데 과연 기존의 건축과 연관된 제반제도가 이를 달성할 수 있도록 열려 있는지 아니면 닫혀 있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건축과 연관된 모든 법과 규정, 행정절차가 난마처럼 얽혀 있어 아무리 유능한 건축가라도 많은 정력을 소모하지 않으면 헤쳐나가기 힘들도록 되어 있다고 본다.

좋은 설계를 위해 투입하는 정력보다 더많은 정력을 규정과 절차와 씨름하는데 낭비하게 되어 있다고 본다.

다른 한가지는 설계, 발주 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진정 좋은 설계 창의적인 설계가 나오기가 힘든 발주방법이 아닌가 생각된다는 점이다.

창의적이고 발전적인 Concept나 기술은 자유롭고, 합리성을 존중하는 사회분위기, 토양에서만 발전하고 인정된다.

예를들면 지금은 많이 완화됐지만 과거에 있었던 50% 옥외주차장 확보규정이라든지, 건축선후퇴, 인동거리, 일조권, 사선제한, 층수제한, 건폐율적률 등의 경직된

적용이다. 각종 심의로 거치다보면 설계안은 "누더기작품"이 되기 십상이다.

선진국에서는 건축심의제도가 기존의 규제를 어떻게 하면 완화시켜주어 전에 보지 못했던 창의적이고 발전적인 건축이 되게 하여 줄까 하는 것이 목적인데, 우리는 심의라고 하면 새롭고, 다르면 문제시되어 보편성 있는 수준으로 평형되게 끌어내기 위해 제동을 걸거나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것을 시정시키는 방향이 활용되고 있다. 그러니까 수준급이하를 어느수준까지 끌어올리기 위한 규정을 만들다 보니까, 수준급이상으로 진보적으로 하려다 보면 규정에 걸려 수준급으로만 평범하거나 모순되고 비효율적인 건축물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본다.

그리고 건축설계 발주제도도 건축의 향상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 있다. 가장 능력있고, 효율적으로 좋은 설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선정되어야 하는데 규정일변도의 제도적 과정들을 무난히 넘어갈 줄 아는 사람들이 더 필요로 하는 여건이 되다보면 건축설계 능력보다는 행정능력이 선호되게 된다.

건축설계자 선정방법인 현상설계의 경우도 그렇다. 원래 현상설계의 취지는 새로운 건축개념과 건축가를 발굴해 내기 위한 제도이다. 즉 특출한 Idea나 Concept 그리고 Form을 찾는 방법중의 하나인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대체로 수의계약방식이 어려운데 따른 방편으로 활용되다보니 특출한 설계안보다는 발주처에서 시행하는데 무난한 보통의 안들이 채택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보통이고 보편적인 설계안이라고 나쁘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건축계가 발전하고, 전세계적인 건축을 지향한다고 한다면 보편타당성의 수준을 넘어 진보적이고 어떻게 보면 생소한 안도 포용하는 분위기가 아니면 어렵다는 점이다.

건축설계도 일종의 商品이라고 볼 수 있다. 소위 세계시장에서 "잘 팔리는" 세계적 유명 건축가들을 볼 때 작품들이 굉장히 독특하고, 다양하고 전에 보지 못했던 실험적이기도 한 설계들을 잘하는 사람들이다.

물론 이런 건축가들의 개개의 능력이 탁월한 점도 있겠지만 이러한 설계안들을 포용하고 격려해주는 그리고 가능케 하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불란서에서는 대통령이 현상설계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국가적인 건물을 만드는데 노력을 한다고 한다. 그만큼 건축가들이 참신한 건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발전하고 있고 그래서 해외진출도 용이한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들은 과연 누구 때문일까. 우리의 경제적 여유 수준의 문제도 있고, 관주도의 규제, 행정 편의주의의 탓도 있고 건축물을 통한 기업들의 불공정한 이윤추구 등 건축인들의 외적 요인들이 더 크다고도 말할 수 있겠지만 이러한 여건들을 개선하는데는 우리 건축인들 스스로 방안을 찾아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우리 건축인들—설계사무소에 종사하는 사람만이 아닌 관에 있는 건축행정인, 연구 교육계의 건축인, 건설, 개발기업에 속한 건축인들을 포함한 건축인들의 단합된 노력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된다.

그래서 진정을 노력하고 발전적인 건축인들이 더욱 참여할 수 있고 모일수 있는 그래서 건축의 제반 여건을 개선해나가는 데 솔선수범하는 건축인들이 빛을 볼 수 있는 풍토가 되어야만 한국의 건축계가 세계적 수준에

도달하리라 본다.

울타리없는 지구촌의 경쟁시대에서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세계적인 건축가들이 후배들중에서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열심히 밑거름을 뿌려야 할 때라고 생각된다.



9 UR-그 허구의 벽 앞에서의 자성

Self-repentance in front of the fake wall of UR

李芝勳/태두종합건축사사무소

by Lee, Pil-Hoon

UR 서비스업종개방, 건설시장개방에 따른 설계 사무소들의 위기감과 두려움.

—실제로 건축사들이 두려워하는 상황은 무엇인가?

서비스업의 개방에 따른 외국 설계 사무소들의 국내약진과 그로인한 상대적 박탈감?

외국문화의 무분별한 침투현상에 의한 한국건축문화의 몰락? 혹은 영화개방이 몰고온것 같은 국내 설계 사무소의 엄청난 파국?

도대체 외국 설계사무소들이 국내에서 차지할 위치는 어디일까?

우선 국제적 수준의 대량·저가 생산 체계를 갖추고 있는 아파트·공장·다세대·다가구 주택등의 설계에 있어서는 거의 발붙일 곳이 없을게다.

시장개방에 따른 시장공략 방침중 제일 중요한 세가지는 가격경쟁, 품질경쟁, 서비스 경쟁일텐데 품질 및 서비스가 원래 별의미를 못찾던 분야에서는 일단 시장개방은 문제가 될리 없다.

건축사 설계·감리 보수기준을 아무리 올려봐도 그건 세금 및 각종 원가절감(?)에 의한 저가 경쟁 체제로 경쟁력을 유지할테니까.

물론 자국의 자동차를 팔아먹기 위해 남의 나라 자동차세의 배기량 기준까지를 간섭하려는 미국의 태도를 보면 설계비 정상화 까지도 그 큰코를 드러낼지 모르지만 그렇게만 되면 애써 열개하던 설계 두·세개만 해도 충분할테니까 그 역시 큰 걱정거리의 아니다.

그러면 대형 Project를 다루는 곳이 문제인가?

우선 현상설계 Project를 생각해 보자.

이때까지 인맥·학연·로비로 굳게 얹혀있던 현상설계가 하루아침에 어디서 외치듯 개혁되어 실력위주의 작품을 뽑게될 염려는 별로 없을 듯하다.

도대체 건축설계에 있어 좋고 나쁘다는 기준이 무엇이며

몇장의 도면으로, 지어질 집의 우열을 어떻게 판별해 낼 것인가?—심사위원들의 변명여지는 언제나 충분하다. 그외에 좋은작품을 알아볼 수 있다는 것은 실제로 건축에 대한 상당한 이해가 필요한데 그게 단시간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다. 여기에 심사위원들의 한국인 특유의 애국심까지 동원된다면 현상설계에 관해선 아마 철벽의 방어선이 구축될 것이다.

또 현실적으로, 현상설계에서 발군의 당선확률을 자랑하는 설계사무실들은 이미 외국의 이러·저러한 설계사무실들을 적당히 들러리 세울수 있는 능력까지를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다.

정부의 일반 Project에 관해선 로비라고는 전혀 모르는 외국사무실에 정부가 발벗고 나서서 일을 몰아줄것 같지는 않고—건설회사에서 짓고 있는 수많은 상업성 대형건물은 이제껏 그래왔듯 지명도를 높일 필요가 있는 건물들은 외국건축가 끌어들이어 이름값으로 땀뭍어주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공식·비공식적으로 거느리고 있는 설계사무실들을 통해 이제껏 그래왔듯 담핑설계는 계속할 것이다.

결국 설계시장개방에 따른 국내적 문제는 작품성 있는 몇몇 '건축작품수준'의 건물들을 설계하는 사무소들에 대한 위협으로 좁혀진다. 그런데 그런 설계를 하는 설계사무소가 다행(?)어도 국내설계사무소의 몇% 정도이고 보면 그렇게 많은 설계사무소가 건설시장개방에 별별 떨거나 침튀겨가며 흥분할 필요는 없는 듯하다.

바둑에서도 대마불사(大馬不死)라는 말이 있듯 큰 설계사무소들이야 벌써 외국에 있던 한국인건축가들을 데려 오거나 그곳에 있는 설계사무소들과 이렇게 저렇게 열개를 맞춰 놓았을 것이고 동네일들 하는 소규모 사무소들이야 영어잘하는 건축주라곤 거의 없는내 갑자기 만들어진 수입품 사는 것도 아니고 그리 쉽게 외국설계사무소를 찾아 나설일 없을 것이다.

대부분의 건축사들이 무서워하는 것은 UR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렇듯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막연한 공포일 것이다. 국가의 미래·회사의 미래·가정의 미래·자신의 미래에 대한 본능적 공포감—그것이 UR이라는 허울을 뒤집어 쓰고 도깨비 춤을 추는 것일게다.

그렇다면 외국 설계사무실과 실제로 부딪치게될 자칭 설계 잘하는 사무소들은 어떻게 해야할까?

실제로 외국 설계사무소, 외국 건축가와 우리와의 실력차라야 종이 한장 차이 아닐까?

아니, 오히려 그들이 우리 수준의 건축주, 공사비, 건축재료의 조건으로 우리와 대결하면 우리가 훨씬 나은 것은 아닐까?

어느 라디오 방송에서 들은 잡담이다.—

A: 세상의 각 백사장 모래의 수를 곱한 것과 사람들의 머리카락 수를 곱한 것중 어느 것이 더 많을까요?

B: 모래알 수요

A: 왜 그렇죠?

B: 머리카락 수는 열심히 곱해가다가 대머리가 나오면 '0'이 되고 일단 '0'이 되면 그다음부터 아무리 곱해봐도 '0'이니까요.

우리문화계에서 건축이 차지하는 위치, 그리고 건축계 내에서 자신이 팬클럽 건축가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문화계전반에서 차지하는 위치는 어디쯤일까?

혹시 대머리는 아닐까?

한국의 현대 건축매체에 한국의 문화전반이 우습게 평가되고 또 그중 나서기 좋아하는 '건축작가군'들 때문에 한국의 건축문화 전반이 '일본 현대건축의 아류화'로 평가되는 것은 아닌가? 이들이 이끄는 한국 건축의 국제적 감각은 어느 정도에 와 있을까?

최근 건축사 잡지 및 건축잡지들의 영어표제를 보면 실소를 금치 못한다.

한글을 직역한 이해 못할 단어들의 나열, 단·복수의 혼동, 부경관사의 무차별 사용, 엉터리 문법—이것이 우리 건축계의 국제화 감각의 한 단면일 수 있다. 그건 전공이 아니어서 그렇다 치고 정말 앞에 나선 몇몇 사람은 설계를 잘 하는가?

실례된 말이지만 잘 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고 있나? 옛날 절에는 섬돌 한쪽에 조호각하(照顧脚下)라는 명패가 붙어 있었다고 한다. 신발을 제자리에 벗어 놓았는지 살펴 보라는 직접적인 뜻도 있겠지만 근본적 의미는 자기가 서있는 발뿌리를 돌아 보라는 법문으로 알고 있다.

UR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첫번째 작업

그것은 우리 자신을 아는 일이다.

마치 특산물 개발하듯 한국적인 것을 찾아내서 그것을 잘 포장해 팔아먹으려고 눈을 돌리는 약삭빠름을 아는 것이 아닌, 건축에 대한 우리의 피상적 접근을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

건축에 대한 우리의 무지와 빼돌려진 선입견에 대한 근본적 발성이 있어야 한다.

도대체 아무 것도 들어있지 않은 빈 강통을 팔아보려고 열심히 들고 다녔던 것에 대한 창피함, 자기 자신에 대한 기만도 모자라 동급들까지 동원해 작품 세일즈에 동맹인 아바위 근성에 대한 근본적 반성이 있어야 한다.

분명 우리는 대머리 임을 인정해야 한다.

그것이 인정되지 않는 사람은 잘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조차 모르는, 자신이 배서해는 집에 무엇이 잘못 되었는지를 발견할 수 없는 무지라도 인정해야 한다.

UR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두번째 작업

그것은 배워야 한다는 겸손함을 키우는 일이다.

시장개방후 들어올 설계 사무실 이라야 기껏 두·세부류 아닐까? 외국 건설회사를 등에 업은 대규모 엔지니어링 사무실과 유명 건축사무소의 한국지사형—대부분 미국주둔 한국계 건축회사(?)를 앞장 세우겠지만—그리고 지명도 있는 건축가들의 합작형 사무실.

건축은 영화와 같이 자국에서 완제품을 만들어 무차별 수출하는 것과는 다르고, 자동화에 의한 저가제품의 대량생산도 아니다. 하나의 땅에 하나의 집—단일품종의 생산이고 여쭙 수 없이 주변의 상황을 고려할 수 밖에 없다. 최소한 그나라의 실정법이라고 지켜줘야 한다.

다른 땅에 다른 조건으로 지어졌던 집들, 그래서 우리에게 도망갈 구석을 제공했던 평계거리들—이제 같은 조건 아래 그들과 부딪쳐야 한다. 그래서 도대체 그들이 얼마나 잘하는지를 배워야 한다.

현상설계가 흥분을 제공하는 것은 당락여부보다는 같은 땅에 대한 다른 이의 해석을 읽을 기회를 갖는다는 것이다. 비슷비슷한 이들과 키재기를 해서 수주여부에 대해 왈가왈부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벗어나 우리보다 훨씬

뛰어난 설계를 제시하는 이들을 접할 기회를 가져야 하고 직접체험을 해야 한다.

그들 눈에 비친 우리 것의 객관적 평가 역시 배워야 한다. 그의 멀지 않은 장래에 우리도 나가게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 먼저 깨져야 한다.

늘 자해(自害)는 어렵다. 그러나 싸우는 상대방이 크면 쿨수룩 쉽게 깨지게 되어 있는게 싸움의 방식이다.

UR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세번째 작업

그것은 돌을 비축하는 일이다.

히틀러가 게르만족을 단결시키기 위해 쓴 수법은 외부에 적을 만드는 일이었다. 3공부터 6공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써먹어 우리에게 식상한 수법이지만 그래도 내부의 갈등구조를 무마하고 의견을 하나로 집약시킬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임을 부인할 수 없다.

사실 우리들 공동의 적은 외국 설계 사무실이 아닌 국내 건설업체 일지도 모른다. UR개방과 국제경쟁력 강화를 앞세워 일괄 입찰제도에 대비한 시공·설계의 일체화를 외치며 설계 사무소를 흡수·통합하려는 건설업체들, —오히려 이들이 우리앞에 실체를 들어낸 적일 수 있다.

또 설계사무소에서 근무한 사람이 건축사가 되도록하는 강력한 경력규제 없이 일인당 과다한 수주량을 평계로 합격자 수만을 늘려잡은 무모한 건축사 시험제도가 우리의 적일지도 모른다. (분명 수주량의 파악은 평균치 보다는 최민치를 살펴 보았어야 하고 이와함께 실제 수입금액을 참고하여 건당 설계비를 오히려 문제삼았어야 할 사항임에도 건축사를 늘려야 한다는 자기 희생적(?)인 아름다운 구호의 테이타가 되었다.)

건축을 돈벌이의 수단쯤으로 생각하고 부동산 중개사 시험치듯, 쉬워진 건축사 자격증 취득에 목을매 건축과 졸업의 건축 맹인들, 그리고 그들이 제시하는 턱없는 설계비가 우리의 목을 죄고들지 모른다.

선무당은 분명히 사람을 잡는다.

애들은 장난으로 돌을 던지지만 개구리는 그들에 맞아 죽는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여기저기 장난으로 돌을 던져보는 일이 아닌, 돌을 비축해야 하는 일일 것이다.

한한 얼굴 뒤에 숨어있는 교묘한 음모들을 분석·파악하는 일과 적과 아군을 판별하는 일이다.

대개 속으로는 느끼겠지만 자본주의 체제에선 건축작업 자체가 순수하지 못하기에 건축가는 개혁의 주체일 수 없다. 그런 모순을 인정하지 않은채 칼을 든 사람을 대려다 여기저기를 잘라내면 결국 우리를 부리는 사람은 또 칼을 든 사람이 될 것이다.

험한 모양새의 내부개혁 보다는 바깥의 적을 찾아 우리끼리의 의견을 한번이라도 집약해 보는 지혜가 절실하다. 다투어 풀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중 하나는 그의 수중에 돌이 있었기 때문이다.

UR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네번째 작업

그것은 사랑하는 일이다

아브라함의 적자인 이삭과 서자인 이스마엘의 갈등구조에 의해 그들의 자손인 이스라엘과 중동의 반목이 성경의 창세기에 예견되어 있는 이후, 그런 이유에서든 아니든 종족간의 반목과 살육은 역사의 기록 그 자체이다.

근년의 2차대전, 중동전쟁, 유고내전에 이르기까지

자기종족 우선 주의는 어떤 유토피아적 사상도 뛰어 넘는다.

소련의 붕괴, 바르셀로나 올림픽의 이슈도 결국 이 범주에 속한다.

U.R 역시 작게는 국가 크게는 종족간의 편싸움과 별반 다르지 않다. 낙관적인 측면으로 보면 세계의 분업화에 의한 전 인류적인 복지향상을 목표로 하는 '세계는 하나'의 가치를 내건 협회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매일 신문에서 보듯, 각 나라간·민족간의 피말리는 이해관계 쟁기기 외에 별게 아니다.

우리나라가 협상을 잘했네, 못했네 하는 것은 결국 줄것 조금주고 받을 것 많이 받아 왔는가에 대한 평가이다.

본시 정치의 원리란 지극히 간단한데서 출발한다. 누구의 이야기처럼 자기 밑에 있는 사람 등따습고 배부르게 해주는 것이다. 협정, 조약, 협약, Agreement, 맹약, 법, 제도, 규칙 등의 모든 약속은 그것을 보장해주는 장치일 뿐이다.

UR 시장개방에 대해 마치 새로운 세상이 열린양, 이때까지 우리는 완벽하게 갖춰진 사회에서 우리식대로 잘못 살아온 양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가치관을 바꿔야 하는 양 호들갑을 떠는 일이나, 갑자기 우리 몸을 요구하는 거대한 치환을 만난 것처럼 경제의 눈빛으로 한껏 몸을 움추리며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는 일이나 존스럼기는 매한가지다.

이때까지 쇠국을 잘해서 영어한마디 제대로 못하는 것도 아니고 또 쇠국을 안해서 햄버거, 피자, 램덴스에 수입 증고 옷들이 거리를 활보하는 것도 아니다.

이때껏 그래왔듯 UR이란 이익쟁기기의 또다른 모습일 뿐이다. 대부분의 인간이 이때까지 추구해왔던 '육체를 위한' 일일 뿐이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갈라디아서 6장19~21절).

모든 갈등의 원인은 결국 육체의 일을 도모하는데서 출발한다.

U.R을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설계개방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사무소의 형태·기능 어떻게 달라져야 하나—결국 육체의 일을 어떻게 잘 해나갈 것인가에 대한 논의이다.

어떻게 술수를 잘부리고, 당을 지을 것이며, 분리를 잘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이다.

혹시 좋은 건축설계는 이 모든 작전·모의·협약위에 고고히 떠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가 선한 마음을 먹고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태도를 기르는 데서부터 시작되고 습득되어 지는 것은 아닐까? 조나단은 일상의 먹이에서 떼났을때 새로운 비상의 방법을 습득했고, 고갱역시 육체의 일을 버렸을때 환상의 그림을 그려냈다.

결국 우리가 우리를 살리는 일은 좋은 설계를 하는데서부터 가능할 것이다. 그것을 위해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고, 깨지고, 배워야 하며, 협력해야 할 것이다. 좋은 설계란 분명 미움에서 보다는 사랑에서 출발하는 것이 그 뿌리가 든든할 것이다.

증오를 이기는 법, 그것은 마음을 여는데서 출발한다.

자신과 가장 가까운데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일 그것으로 부터 모든 것을 이겨낼 넉넉한 힘은 나올 것이다.

UR과 아무 관련없는 우리의 삶의 방식 개선에서 허구의 벽을 깨어버릴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생성될 것이다. 너무 비현실적이고 이상적인 의식의 사치, 이미 죽은 논리—그러나 외국기업을 이겨낸 국내기업의 성공사례에는 늘 사장과 직원간의 믿음, 직원과 직원간의 사랑이 힘의 원천이었다는 고백이 있다.

건축은 결국 인간사랑의 형식화된 모습의 한 줄기일 뿐. 사랑할 줄 아는 것—그것 만이 우리 앞에 드리워진 공포의 허구성을 폭로하고 우리에게 진정한 건축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UR—그 허구의 벽은 사랑을 이해하고 좋은 설계를 해낼 수 있는 기회의 제공으로 용해되어야 한다.

10

참여와 약속

Participation and Engagement

崔勝元/건축사사무소 앙가주망
by Choi, Seung-Won

세계 116개국이 모여 7년간 끌어왔던 우루과이 라운드(UR)협상이 이제 막바지에 와 있다. 특히 대외 의존도가 높은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UR협상 결과가 우리 건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지 회원 모두가 다시 한번 곰곰히 생각해 보아야 하겠다.

사실 UR협상문제는 시작부터 우리에게 보도되어 왔고 하루아침에 나타난 사건도 아니다. 세계적인 문제이므로 직접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7년이 지났다.

먼저 간단히 내용을 보면 무역에 대한 장벽을 없애고 자유무역의 실현을 위해 관세를 낮추고 수입 수량제한 등 비관세 장벽을 제거하자는 것이다. 또 국내 시장가격보다 싸게 수출하는 행위등을 방지함으로써 해외시장에서 기업간에 경쟁 당당히 경쟁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원자재의 국산이용 의무 등 여러가지 제한을 없애고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등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무역과 관련된 이들 분야의 새로운 국제질서를 세우는 것이다. 또한 서비스교역을 자유화하여 금융, 보험, 해운, 유통 등 서비스교역에 대한 새로운 국제 규범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현재까지 관세와 수량규제 등 무역 제한조치를 통해 국내시장을 보호해 온 우리나라로서는 UR협상에 따라

이러한 장벽을 대부분 제거해야 하는 입장이어서 그 영향이 우리 건축계에도 크다고 할수도 있다. 그러나 제약조건에도 불구하고 호텔이나 일부 빌딩분야에서는 과거부터 외국에서 참여하였고 요사이에는 작은 일도 다소 참여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UR협상에 따른 시장개방은 우리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주변국가들도 시장을 개방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의 일이 늘어날수 있는 긍정적 효과도 있다. 세계화 국제화 미래화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 경쟁과 협력을 선택하고 대처해야 한다.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문제는 기술도입이 점점 어려워지고 도입 기술의 대가인 로열티가 상승하는 부담도 있다. 그러나 선진국의 첨단기술을 정상적으로 도입하여 산업구조를 고도화해서 대형건설사고 등을 예방해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 기업의 부담으로만 생각해서는 안된다. 뿐만 아니라 지적 재산권 보호강화는 자체 디자인의 중요성을 크게 부각시켜 우리 디자인의 발전을 촉진하는 효과도 있다.

우리나라는 건설 등 일부 분야에서 상당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나 건축디자인에서는 바닥수준인 것으로 알고 있다. 서비스 시장은 그 나라의 사회 문화적 전통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외국기업의 진출에는 상당한 제약이 본래부터 내제되어 있다. 이것은 오히려 우리의 발목을 조이고 있는 격이다. 예를 들면 내화구조 문제로 목조건축이나 철골건축이 설계자체부터 제약이 따르고 설계는 엄두도 못내는 것이 우리의 실정이다. 수준이 올라가게끔 사전에 풀어서 위밍업을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나라는 현재 495m²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신축 증축등은 건설업자만이 시공할수 있다고 되어있다. 이 법은 생긴지 오래 되었고 과연 이 작은 건물들을 직접 시공관리 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문어발식으로 업무량만 확대 되어 있지 제대로 되는게 거의 없다. 하나의 예에서 보듯이 구조적으로 해결될 것이 되어야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고 일도 지속시킬 수 있다. 종합이다 단독이다 하는 행정따위로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모든 장애물들이 제거될 때 우리의 경쟁력을 높일수 있는 것이지 경쟁력을 누가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다.

사람은 역사적으로 또는 본능적으로 디자인과 성능이 좋은 외제를 선호하는 듯하다. 실크로드도 이같은 현상에서 생긴것이 아닌가 한다. 현재의 생활속에서도 외제를 선호하고 있고 또한 소유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자동차 분야에서도 외제선호도는 마찬가지이고 먹고 입는 분야에서도 외제가 많이 개방되었고 이용되고 있다. 건축도 여러 분야가 들어와 있다. 이 시점에 UR 개방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실제 진행되어 있는데 무엇이 문제인가 생각해 보자

외국제품을 선호하는 것은 다양한 디자인과 성능 및 품질이다. 다양한 디자인은 다양한 교육이 필요한데 우리는 건축을 거의 공과대학에서 공과우선으로 교육되고 있다. 그러므로 설계도를 보고 건설하는 일은 어느정도 따라가고 있지만 디자인을 직접 하는 일은 선진국의 몫으로 되어 있다. 다양한 재료의 사용도 필요한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내용은 한계가 있다. 이어서 다양한 건축 서비스가 수반되어야 한다.

사회적으로 개발력이 약하고 지적인 것을 인정치 않는

풍토가 있고 기업은 경쟁력관계로 개발이 1년은 걸릴것을 2개월에 해놓으라는 것이 보통이고 이러다 보니 실무자들은 개발보다는 유사하게 베끼는 현실속에 안주하고 있다.

문제는 우리모두 알고 있다. 빨리 빨리 서둘지 말고 본질적인 것을 생각하자

UR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는 국제화와 관계가 있다. 우리의 문화를 재조명(레트루바이오)하면서 국제적 문제를 현실적으로 참여(불 : Engagement)하는 정신이 필요하다. 아울러 국제화에는 진실한 약속(Engagement)이행이 필요하다. 국제화에서 약속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는 균형을 말하는데 균형이 이룰때 좋은 거래가 서로가 성립되고 질을 유지하면서 약속을 지킬수 있다고 본다.

최근 사고가 나면 죄송합니다. 하고 사과하는 풍조가 있는데 이 과정을 빨리 벗어나 약속을 지키는 풍토를 조성 했을 때 정신적으로 국제화를 위한 자세를 키울수 있다고 본다. 국제적인 상거래에서는 죄송합니다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약속을 지켜나갈 때 신용이 생기고 진실한 거래가 이루어질 것이다. 국민개인의 정신적인 자세가 개방에 즈음하여 필요하다. 받아들일 것을 받아들이면 자국이 되어 배우는 면도 있다.

UR에 대비하여 각종 규제와 행정을 푸는 방향으로 나가야지 변칙적인 형태와 기능을 물리적으로 요구하지 말아야 한다.

마음을 열어야 연만큼 보이고 생각한만큼 실천할 수 있고 본만큼 할 수 있다. 우리는 상업주의와 관료주의에 물들어 주민에게 건축이 피해를 주는 경우가 많다.

신라가 황룡사를 건축할때 백제의 아버지를 초대하였듯이 문화는 높은 곳에서 흐른다. 흐르는 물의 힘은 너무나도 강하다. 일본도 외국풍의 선호는 대단하다. 최근 후쿠오카에 외국인들 설계로 건축된 집합주택들 중에서 일본 건축가 설계가 인기가 제일 없다고 한다. 이것이 현실이다.

일본이 감치를 선호하고 이것을 개발하여 감치 하면 일본의 이미지로 유도 하는 원리를 볼 때 놀라운 일이고 앞으로는 온돌도 일본이 개발하여 전세계를 공략할 가능성이 있다. 우리는 자신의 지나친 우월감이나 자존심 때문에 빠르게 받아들이 자기것으로 만들어 다시 파는일에 약하다. 감치나 온돌 같이 일상적인 것에 무관심하다. 좀 자상하게 우리생활주변을 돌아보면 새로운 안목이 생기고 새로운 디자인이 생긴다. 이렇게 해서 힘을 키우는 것이다. 우리가 평범하게 생각하는 것을 이웃은 개발하여 새로운 디자인으로 변신시킨다.

서로 도우면서 당당하게 의연한 자세로 우리는 우리의 생활을 건축으로 표현해야 한다. 국민들이 생각하는 건축의 희망을 최대로 설계에 반영하면서 건축가의 디자인 철학을 대입시킬 필요가 있다. 엄연한 현실을 냉정하게 받아들이자.

적극적인 참여의식과 진실한 약속 이행으로 우루과이라운드의 높은 파고를 같이 탈수있도록 작은 배라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 노를 젓자.

대전건축사회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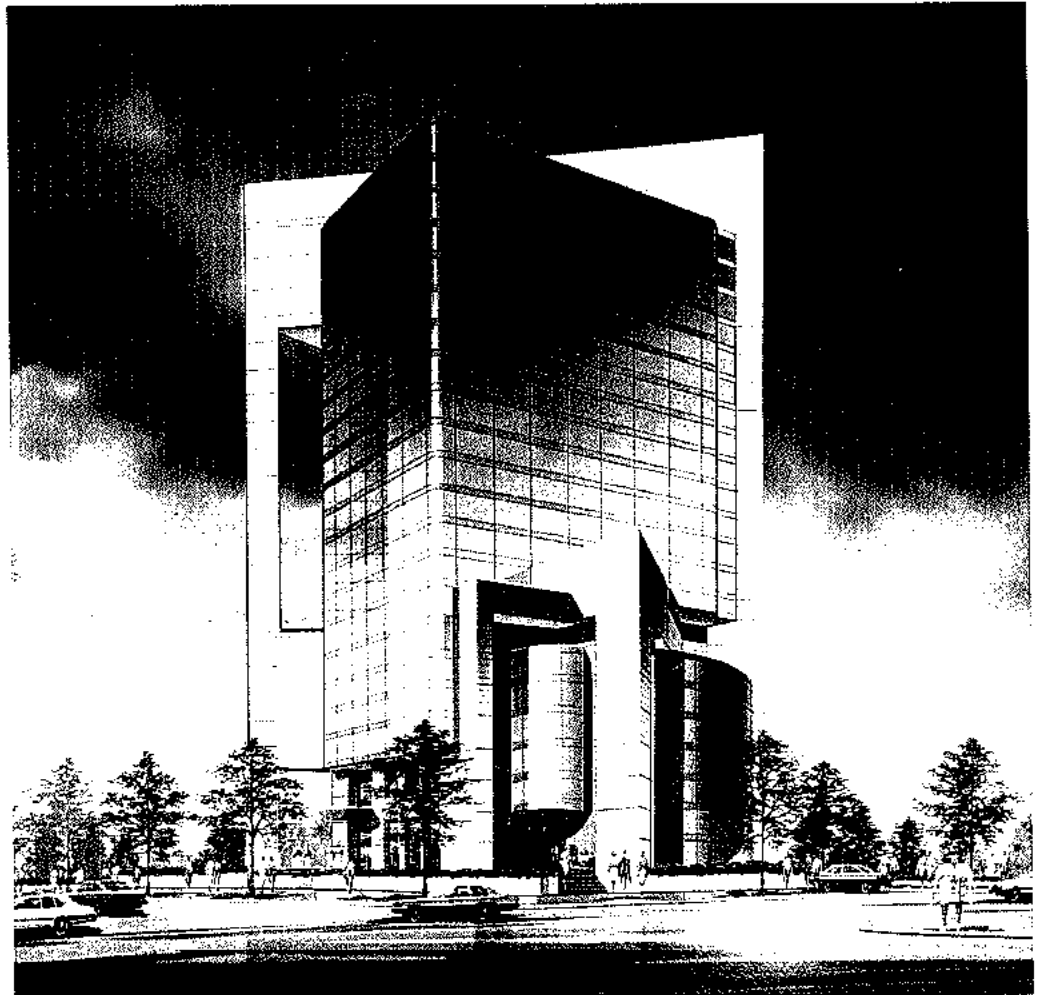
대전직할시 건축사회에서는 대전건축사의 위상정립과 지역건축문화를 상징하는 한편,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회관건립 현상공모를 실시하였다.

총 16개사무소에서 작품을 제출한 이번 현상공모에서는 1, 2차 심사를 거쳐 (주)청전종합건축(정덕훈+이병수)안을 당선작으로 선정, 발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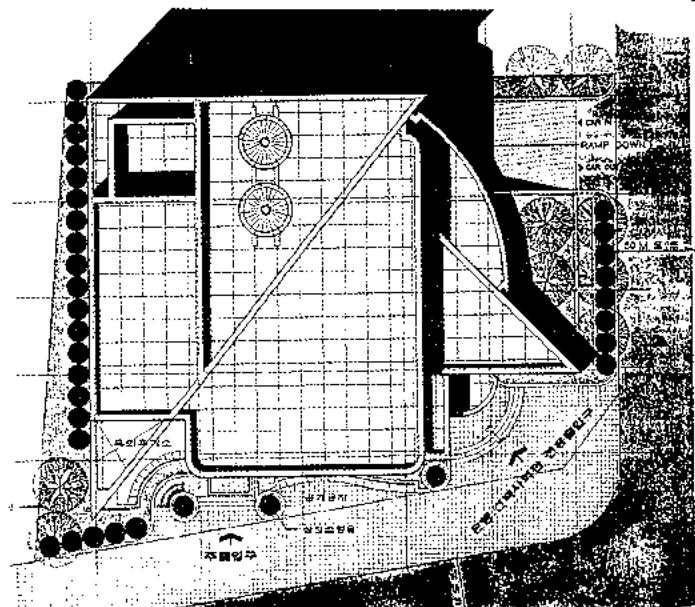
당선작

청전건축(인)
정덕훈+이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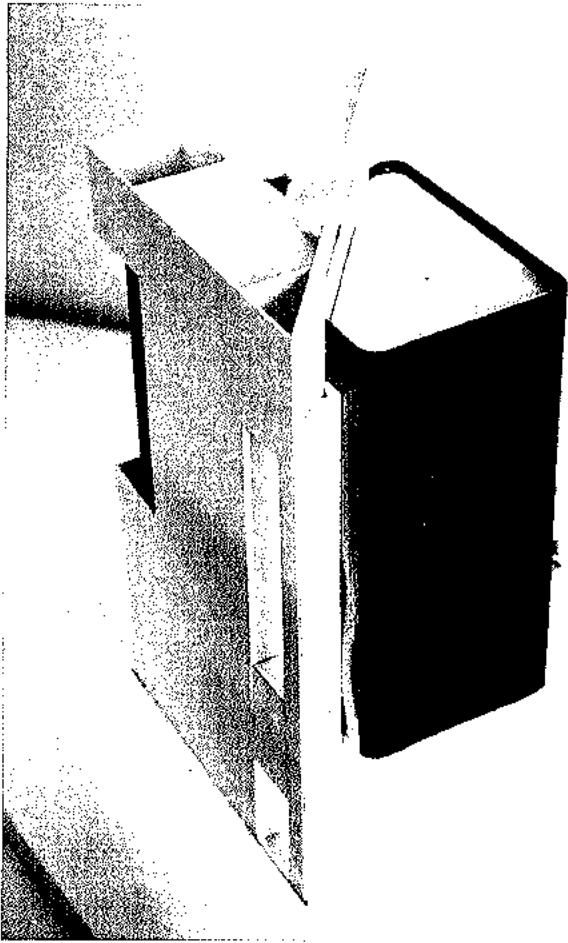
대지위치 / 대전직할시 서구 둔산
지구 264브럭 19호
지여·지구 / 준주거지역 및 도시
설계지구
대지면적 / 1,054㎡
건축면적 / 603.80㎡
연면적 / 6,916.31㎡
건폐율 / 57.29%
용적률 / 468.83%
규모 / 지하 3층, 지상 10층
구조 / R.C
주차대수 / 66대
외부마감 / 알미늄 커튼월+외강
용 타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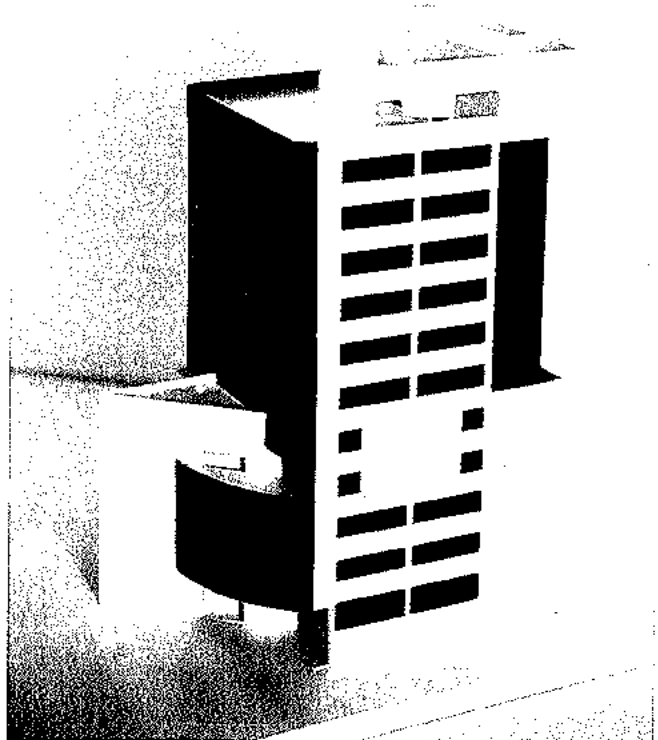
투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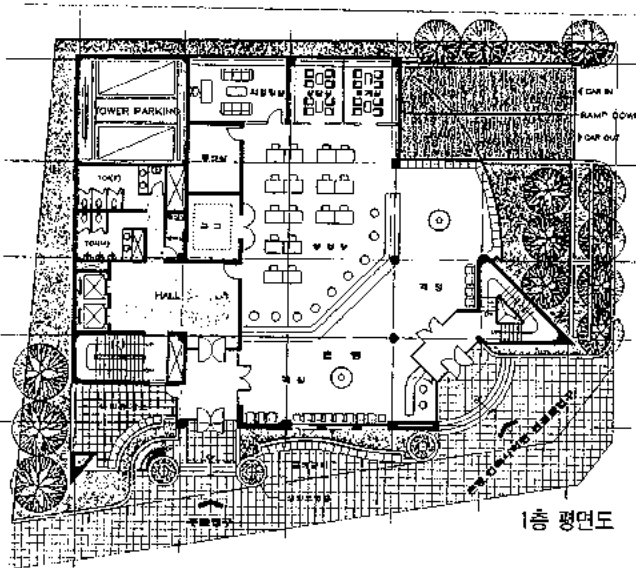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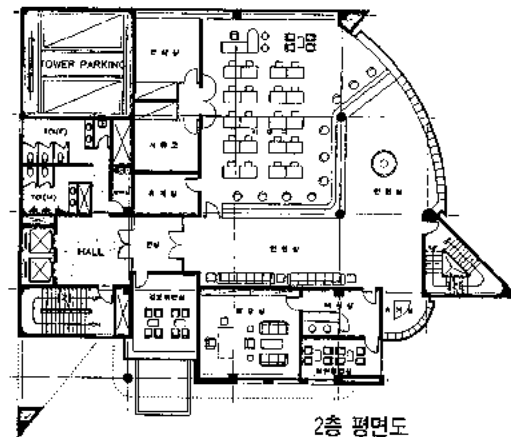
모형도 I



모형도 II



1층 평면도



2층 평면도

■ 계획의 기본 방향

- 건축사 회관으로서의 이미지 부각과 건물의 상징성 추구
- 에너지 절약형의 경제적 건물
- 최대의 임대공간 확보
- 건물 유지관리의 원활함과 안정성 추구
- 공간의 융통성과 합리성 추구

■ 주변현황 분석

- 신도시 계획 수립에 따른 오

피스를 포함한 도시 기반시설과 시설녹지, 문화 시설에 인접해 있어 생활 여건 및 문화적 여건이 양호

- 조망—시계 양호, 랜드 마크적 역할 가능
- 지형—약 2% 정도의 남북한 고저차
- 진입—주간선 도로에 인접하여 접근성이 용이, 보차분리 실현

- 녹지 환경은 비교적 양호한 편이며 인접도로에서의 소음 처리가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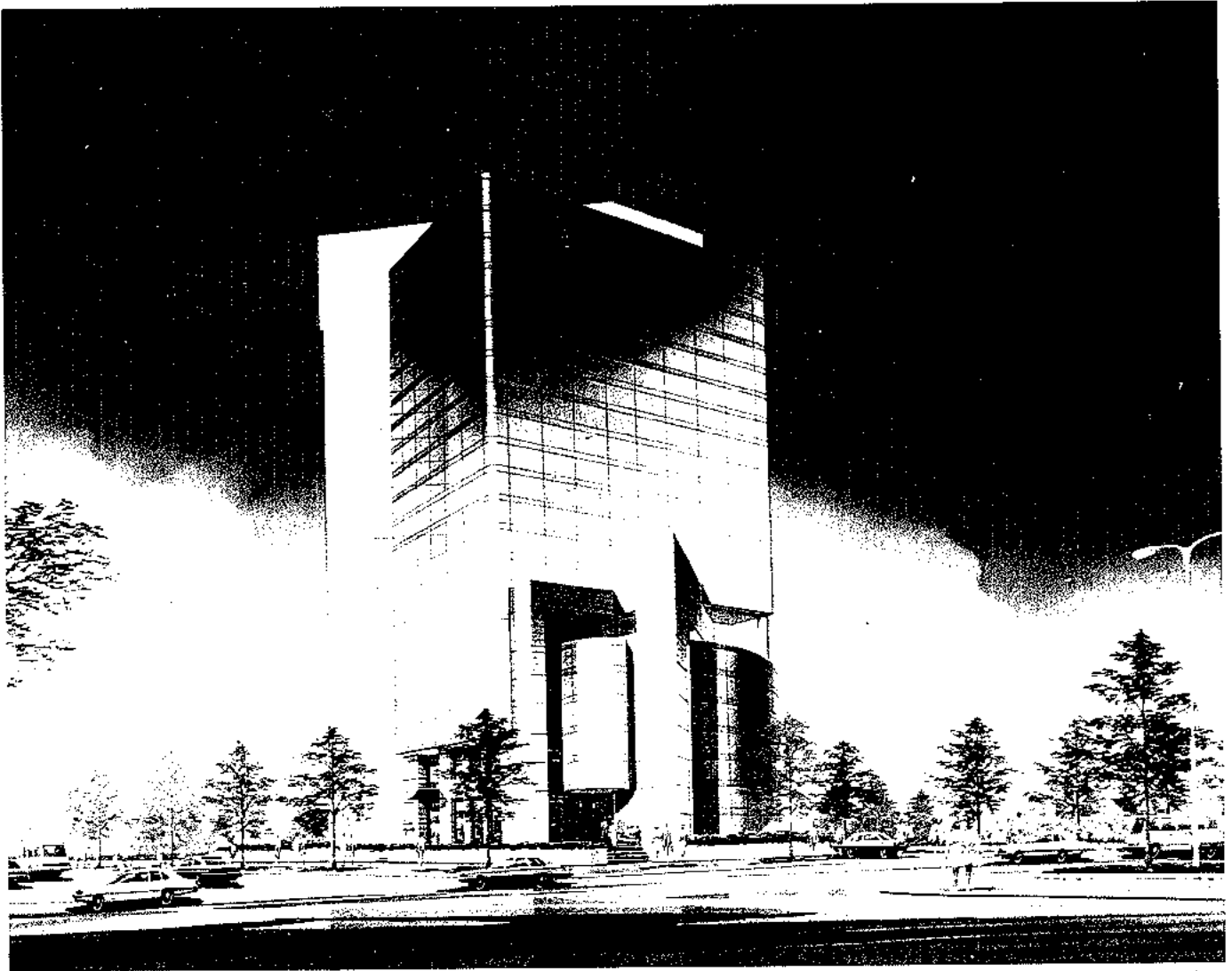
■ 배치계획

- 부지의 효율적인 활용 및 보차 분리의 원활한 동선체계
- 도로구배 및 지반고 설정, 녹지대 배치, 건물향 등을 최대한으로 자연지형 및 주변도로, 건물들과 관련해서 배치

- 부분적인 가로의 휴식공간과 조경요소를 적극적으로 도입함으로써 건축인 및 시민들에게 친근감 및 편안함을 유도

■ 평면계획

- 합리적인 동선체계
- 사무공간의 융통성
- 기능의 블록화와 독립화
- 경제성을 고려한 평면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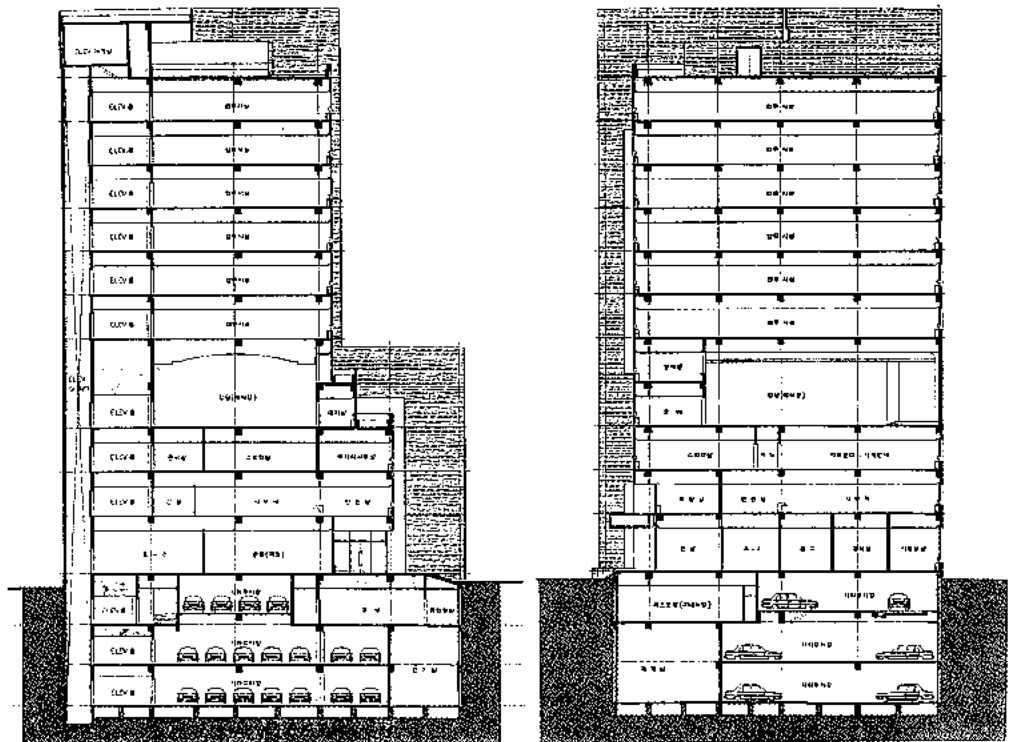
투시도

■ 입면 및 조형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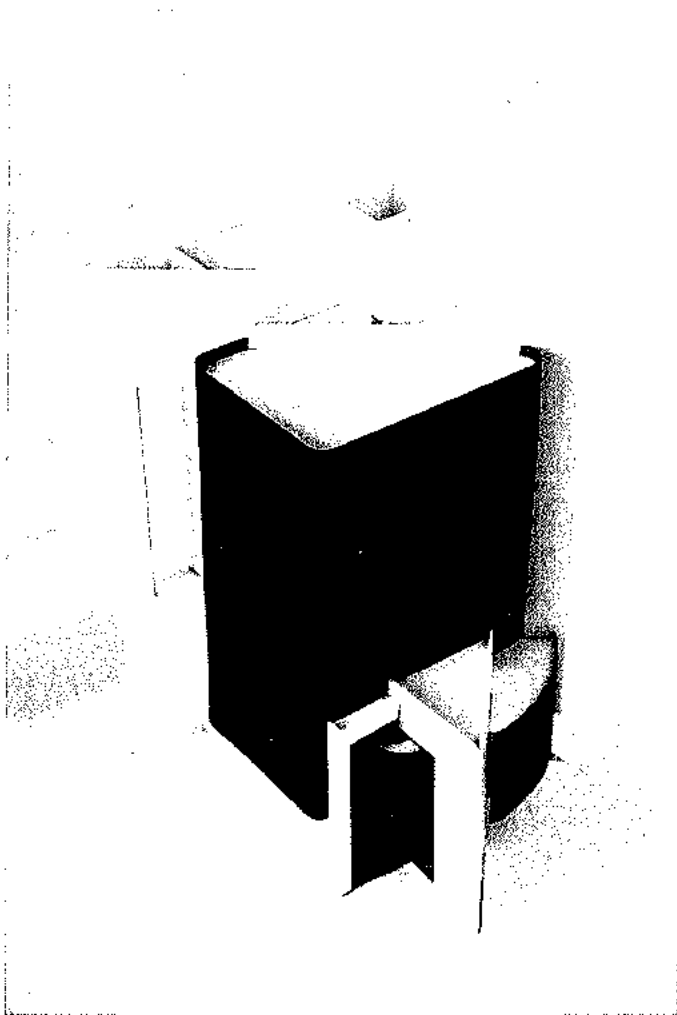
- 건축사 회관으로서의 이미지 부각과 도시 시각요소로서의 상징성 추구
- 주변 도로의 개방감 확보와 Human Scale의 접근 시도
- 레이아웃 전반에 걸쳐 사용된 기본 모듈을 바탕으로 입면을 모듈화
- 주변환경과의 조화 및 과감한 매스의 변화작업

■ 단면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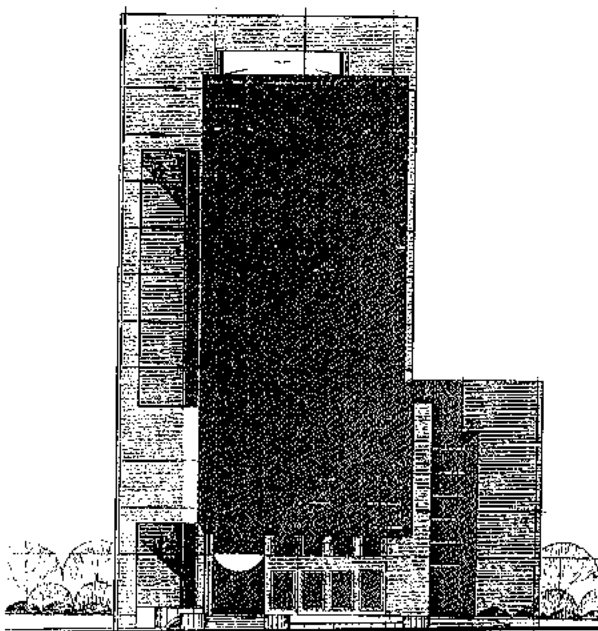
- 다양한 기능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융통성 있는 계획과 설비적 측면에서의 경제성 고려
- 사무공간의 쾌적성과 사용자 의 압박감을 배제시킬 수 있는 적절한 층고설정
- 기능에 따른 층별 표고를 유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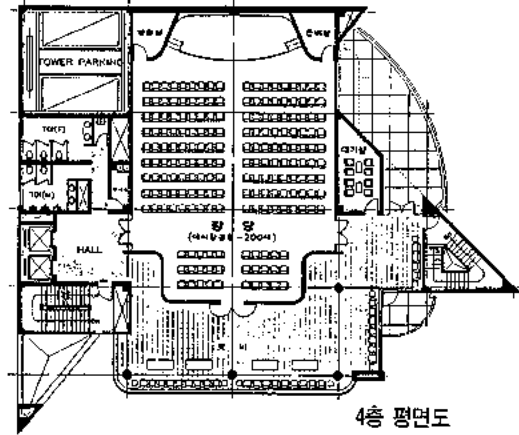
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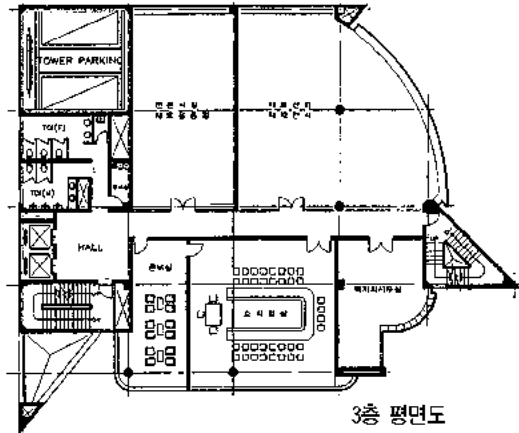
모형도 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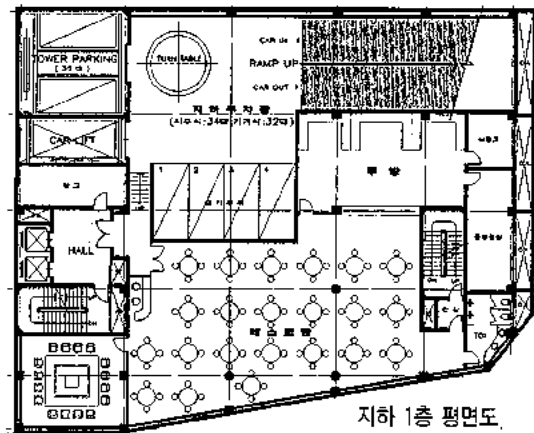
서측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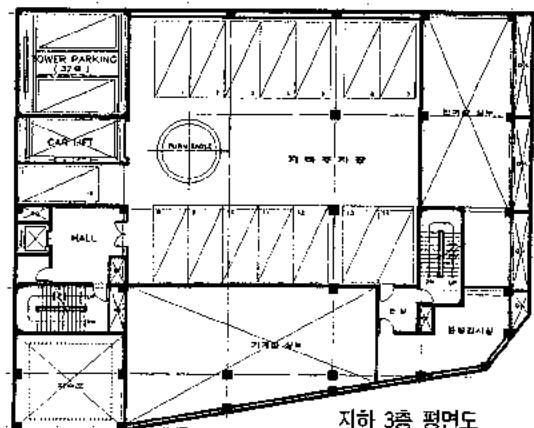
4층 평면도



3층 평면도



지하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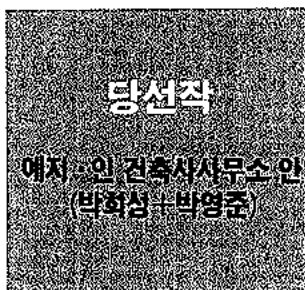
지하 3층 평면도

강서구의회 의사당

강서구청에서는 지방자치의 전당으로서 의정활동에 기여하고 의회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의회 의사당 신축 현상공모를 실시, 총 6개사무소에서 작품을 제출한 바, 예지·인건축(박희성+박영준)안을 지난 강동구의회 의사당 현상공모에 이어 당선

작으로 선정, 발표하였다. 한편, 가작으로는 가화건축(강석후)안이 선정되었다.

본지에서는 당선작인 예지·인건축(박희성+박영준)안을 게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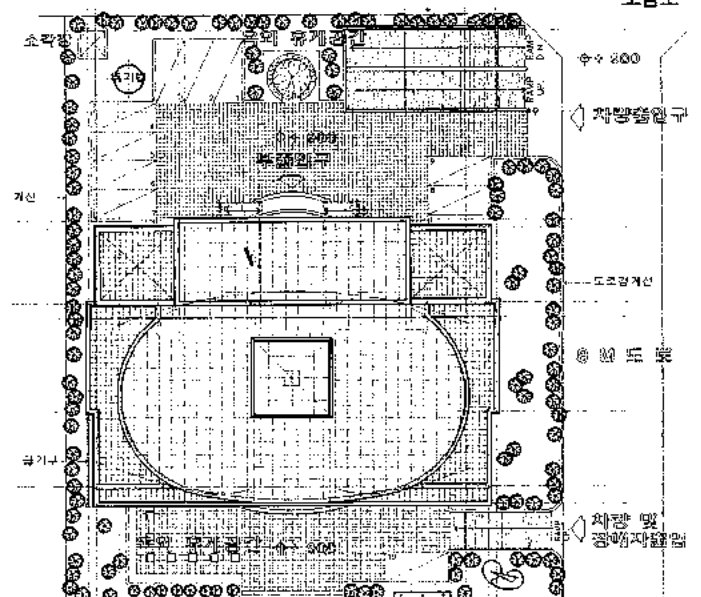


당선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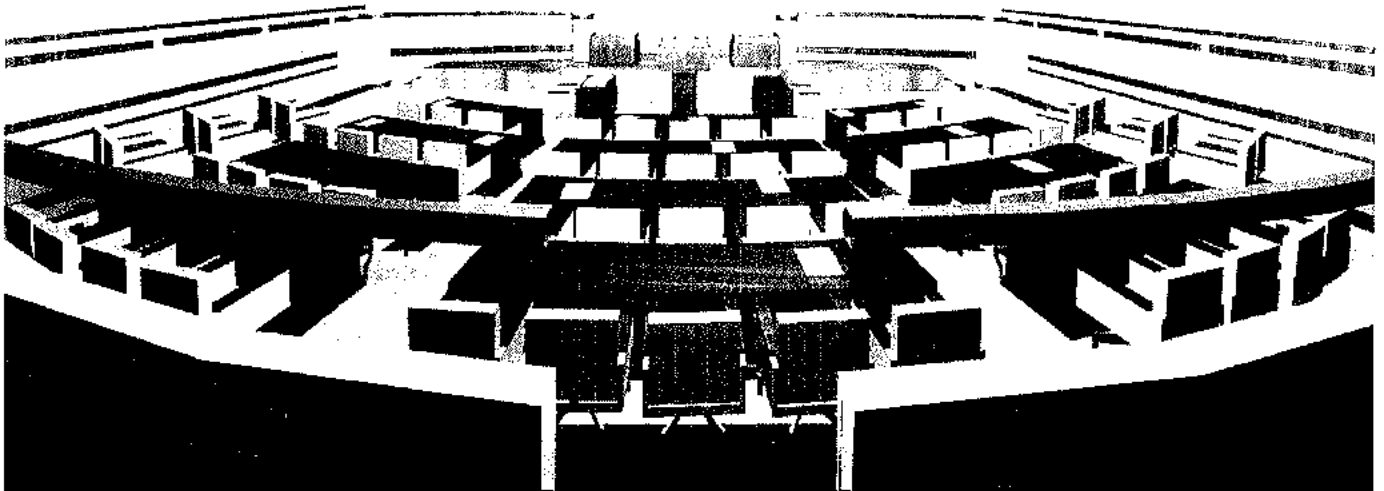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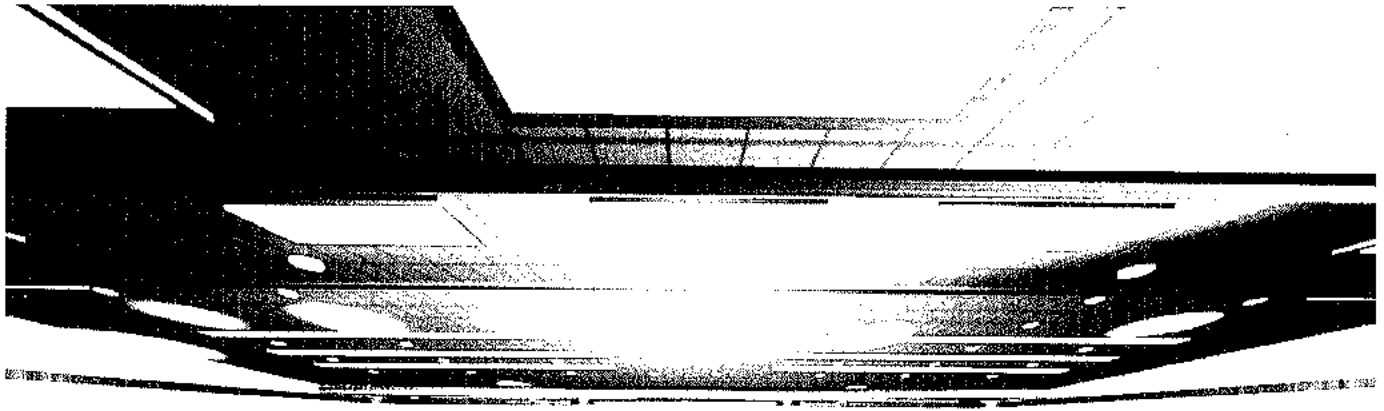
예지·인 건축사사무소 안
(박희성+박영준)

대지위치 / 서울시 강서구 동촌동 512-1
대지면적 / 1,939.6m²
지역·지구 / 일반주거지역, 4종
비관지구, 주차장 정비지구
규모 / 지하 1층, 지상 5층
건축면적 / 680.58m²
연면적 / 4,578.44m²
건폐율 / 35.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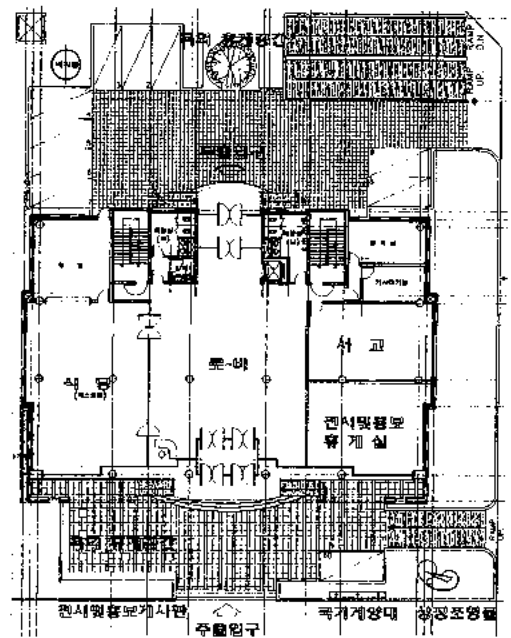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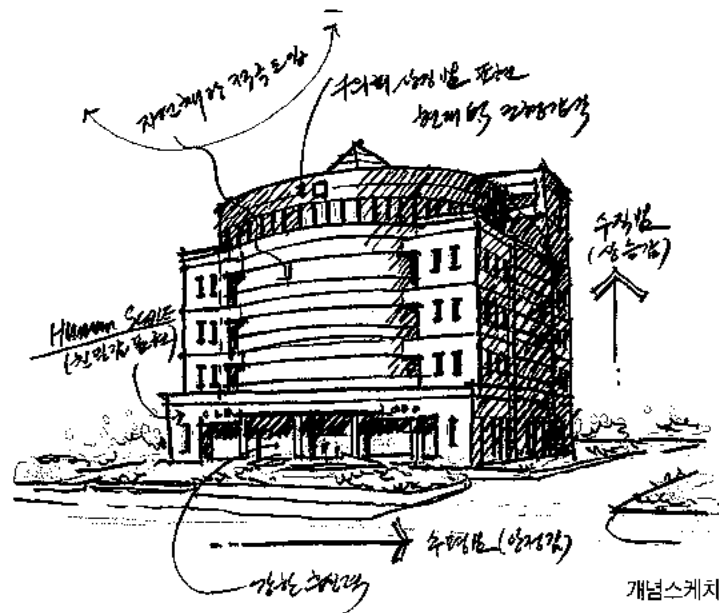
용적률 / 162.66%
주차대수 / 계획 51대
구조 / 철근콘크리트 라멘조 경량
철골트러스조(최상부)
외부마감 / 외벽: 화강석 버너구
이(건식공법)+복층유리



배치도



실내투시도



1층 평면도

■ 계획의 목표

- 강서구 의사당 청사로서의 상징성 부여
- 건축문화의 선도적 역할 담당
- Identity (독창성) 확보
- 공공 건물의 Image 확보
- 건축 공간 활동의 극대화
- 이용률 높은 실 저층부에

계획

- 에너지 절감을 위한 층별 공간 Zoning
- 층별 유기적 연계성 확보
- 공간 활동의 융통성 발휘
- 합리적인 구조계획
- 여유있는 주차공간
- 민원인 및 대기용 옥외주차 공간 확보

■ 계획의 원칙

- 융통성 높은 시설공간 계획
- 의회 의정활동 공간과 구민 편의 공간 구분
- 구민을 위한 집회, 관람, 전시·홍보 및 교육의 장 마련
- 구민 의정활동의 장소성(Land Mark)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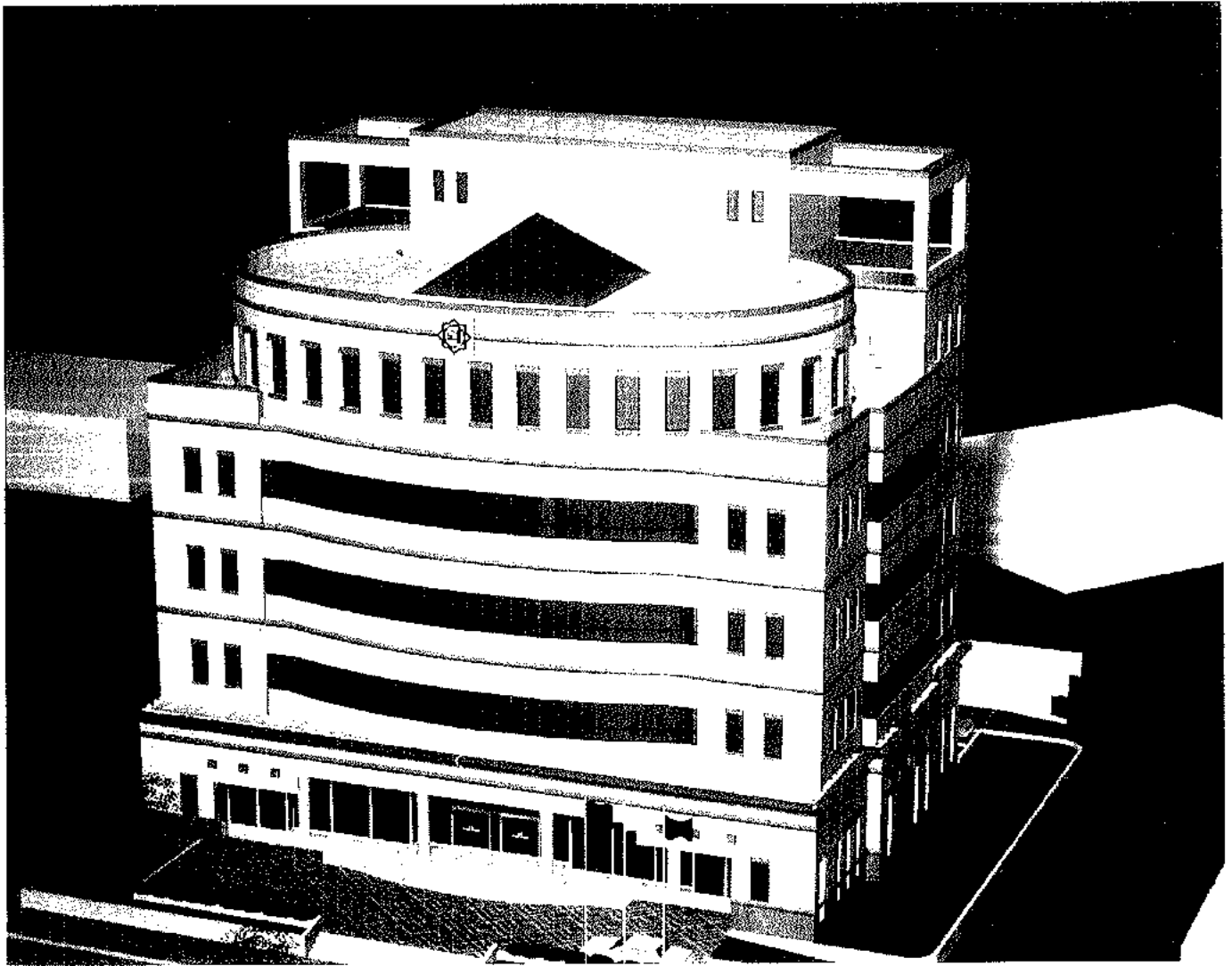
— 구의회 의사당 건물로서의 상징성 표현

— 현대 조형 감각에 의한 전통건축기법 구현

• 친밀감 있는 외부공간(소공원) 구성

• Sunken Garden 계획으로 지하 공간의 이용 증대

— 보·차 분리에 의한 명료한



모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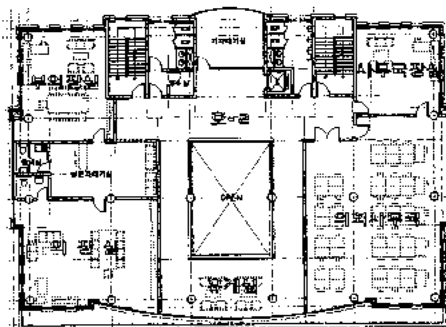
동선 체계도 수립
—옥외 휴게 및 조경공간 확보

■ 배치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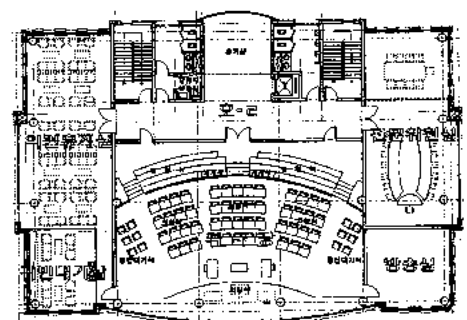
- 의정활동 시설로서의 상징성 부각
 - 자연축과 도심축을 기본으로 정면성과 장소에 대한 인식 강조
 - 기능별 공간구성으로 동선의 혼재방지
- 지형의 흐름과의 조화
 - 도심지역의 시각과 지세를 (레벨차) 적절히 활용한 여유있는 공간확보
- 옥외정원계획으로 도시민의 이용자에 대한 여가 공간의 제공
- 외부 주차공간 확보 및 장애인 동선고려

■ 평면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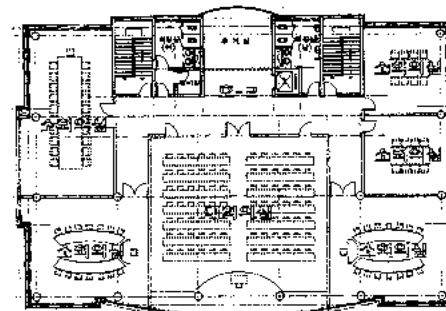
- 공간의 융통성(Flexibility)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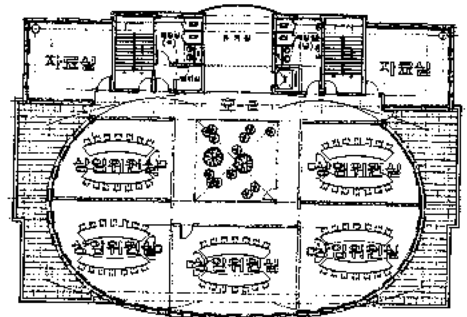
2층 평면도



3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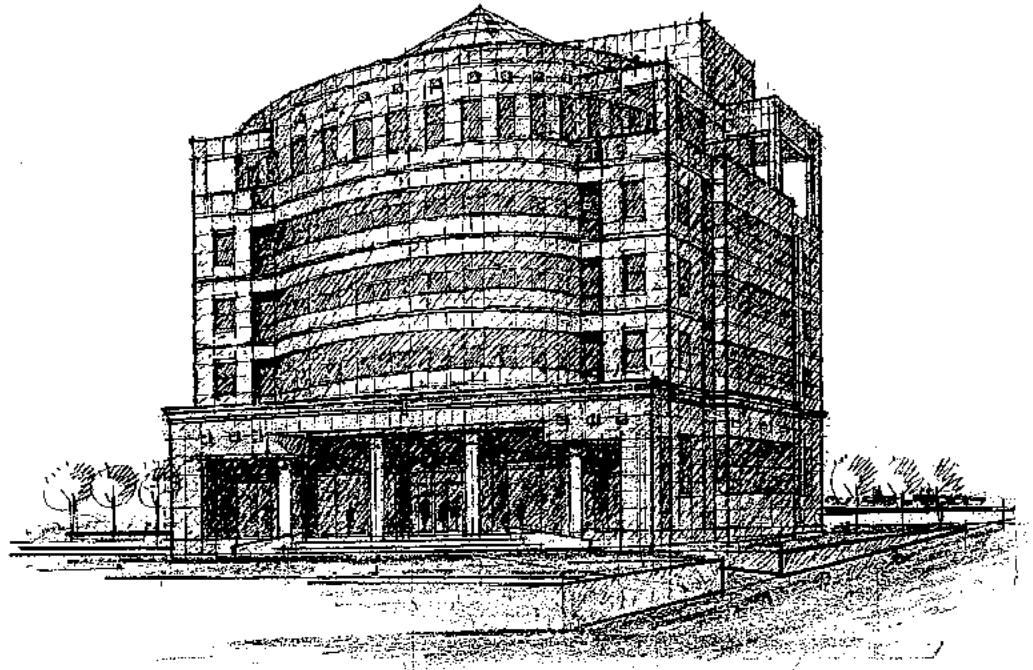
4층 평면도



5층 평면도

보

- 상호동선의 분리 연결이 용이하도록 구성
- 집중 코아 계획으로 수직동선의 간결한 체계도 확립
- 공간구성의 스페이스 프로그래밍
- Module(3.0m×3.0m)계획에 의한 사무공간의 융통성 및 업무의 변화, 커뮤니케이션의 원활화 및 OA기기 설치 등을 고려함
- 장애자 이용에 대한 배려
전용주차장: 경사로 설치, 장애자용 화장실 및 엘리베이터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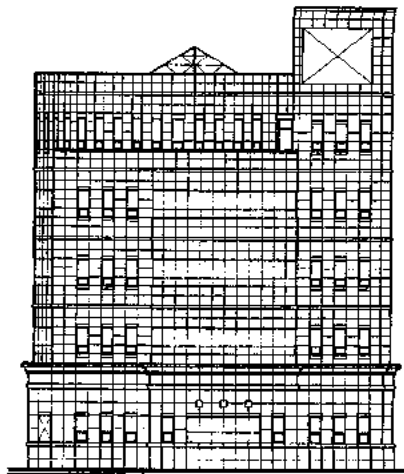
입면 스케치

■ 입면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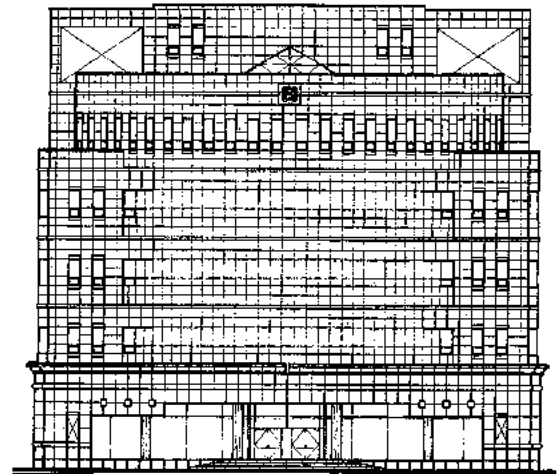
- 의사당으로서의 이미지 창출
- 현대적 조형감각에 적합한 전통건축의 기법사용
- 도심지 환경에 조화를 이룬 안정감 고려
- 휴먼스케일(Human Scale)에 적합한 저층부 형성
- 반복된 수평요소와 수직요소의 결합
- 외부 음영의 효과적 처리로 볼륨감 부여
- 자연채광 적극도입으로 실내공간의 쾌적성 부여

■ 단면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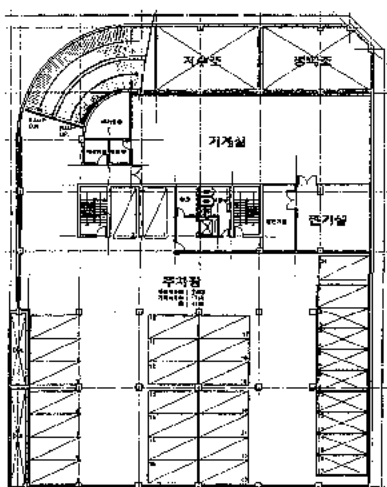
- 유기적인 수직 동선 처리
- 집중코아 배치로 수직동선의 단순화
- 구의회 공간과 구민공간의 구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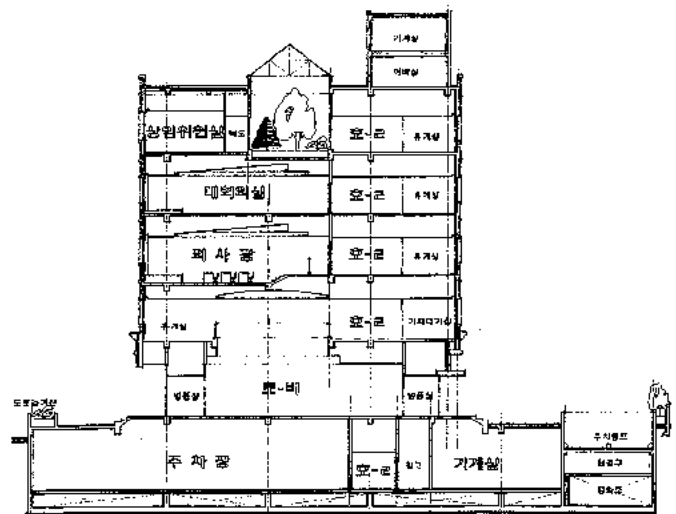
우측면도



정면도



지하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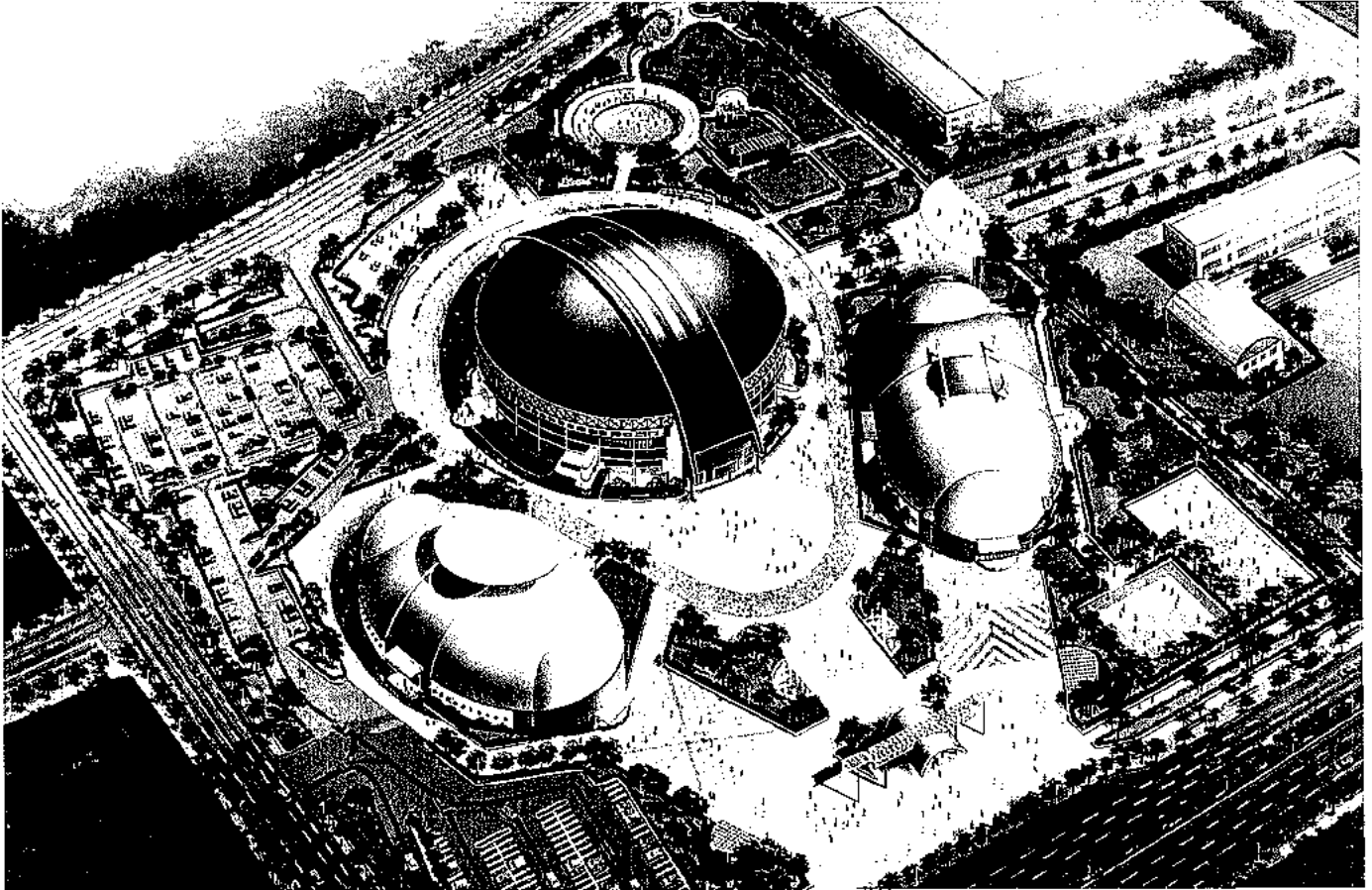
주단면도

부천시 실내체육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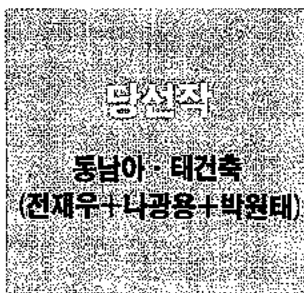
부천시에서는 범시민적 다양한 기능과 욕구를 충족시키는 물론 시민체육문화 활성화로 국민체육문화 발전에 기여하고자 부천실내체육관 현상공모를 실시, 총 9개 사무소에서 참여한 결과, (주)동남아·태건축(전재우+나광용+박원태)안을 최우수

작으로 선정, 발표하였다.

한편, 우수작으로는 (주)무이건축(조원민)안과 환경동인건축(전찬진)안이 각각 선정되었다.



조감도



대지위치 / 부천시 원미구 중동 169번지
지역·지구 / 중동도시개발지구, 공공의
시설용지(체육공원시설용지)

대지면적 / 81,631㎡

건축면적 / 5,430.00㎡

연면적 / 12,232.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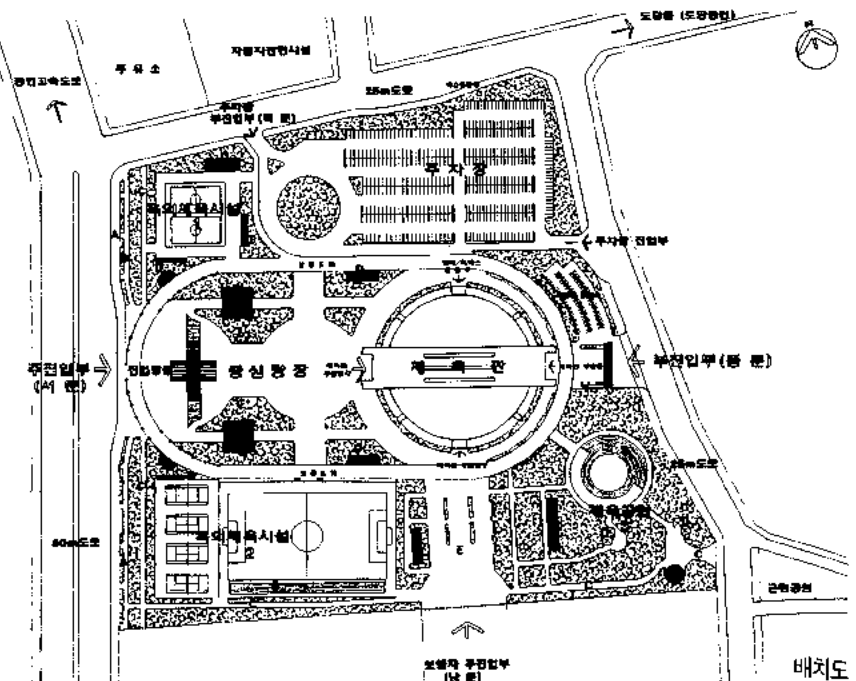
건폐율 / 6.65%

용적률 / 10.71%

구조 / 철근콘크리트라멘조+철골 트러스

규모 / 지하 1층, 지상 3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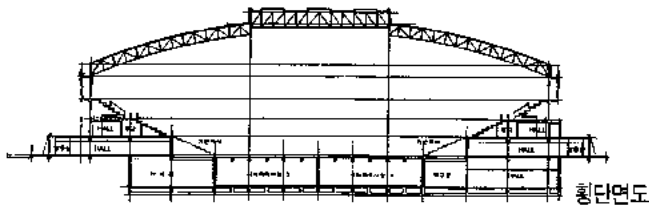
외부미감 / 드라이비트+컬리복층유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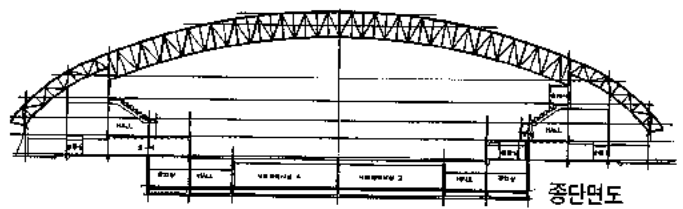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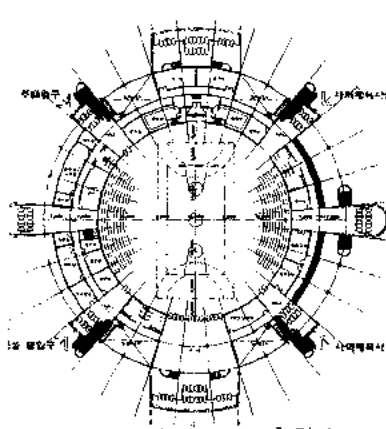
투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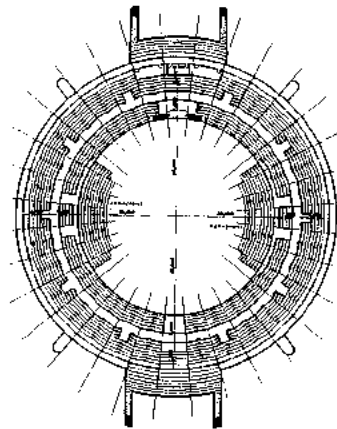
횡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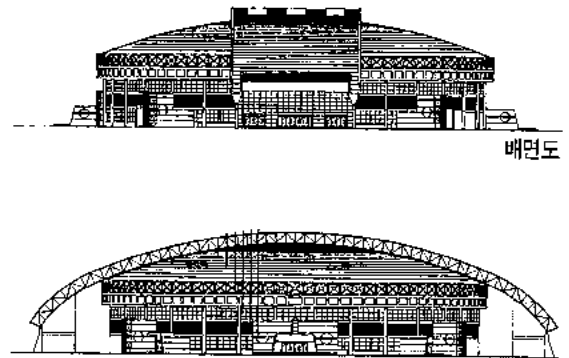
종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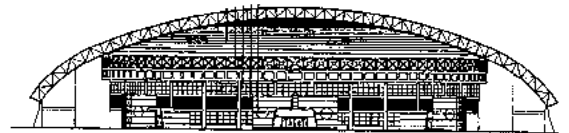
1층 평면도



3층 평면도



배면도



우측면도

■ 평면계획

- 원활한 동선 체계
 - 관리, 임원 및 선수, 관람자, 이용자들의 출입구를 별도로 분리설치
- 양호한 관람시선대 확보
 - 관람자의 시선대를 가장 양호한 곳에 집중배치하였으며, 이동식 관람석 설치
- 각종 경기 수용
 - 국제규모의 경기 및 전국체전의 경기가 가능하도록 규모설정
 - 각 기능별 적절한 기능의 최대 발휘를 위한 연계성 도모

■ 입면/형태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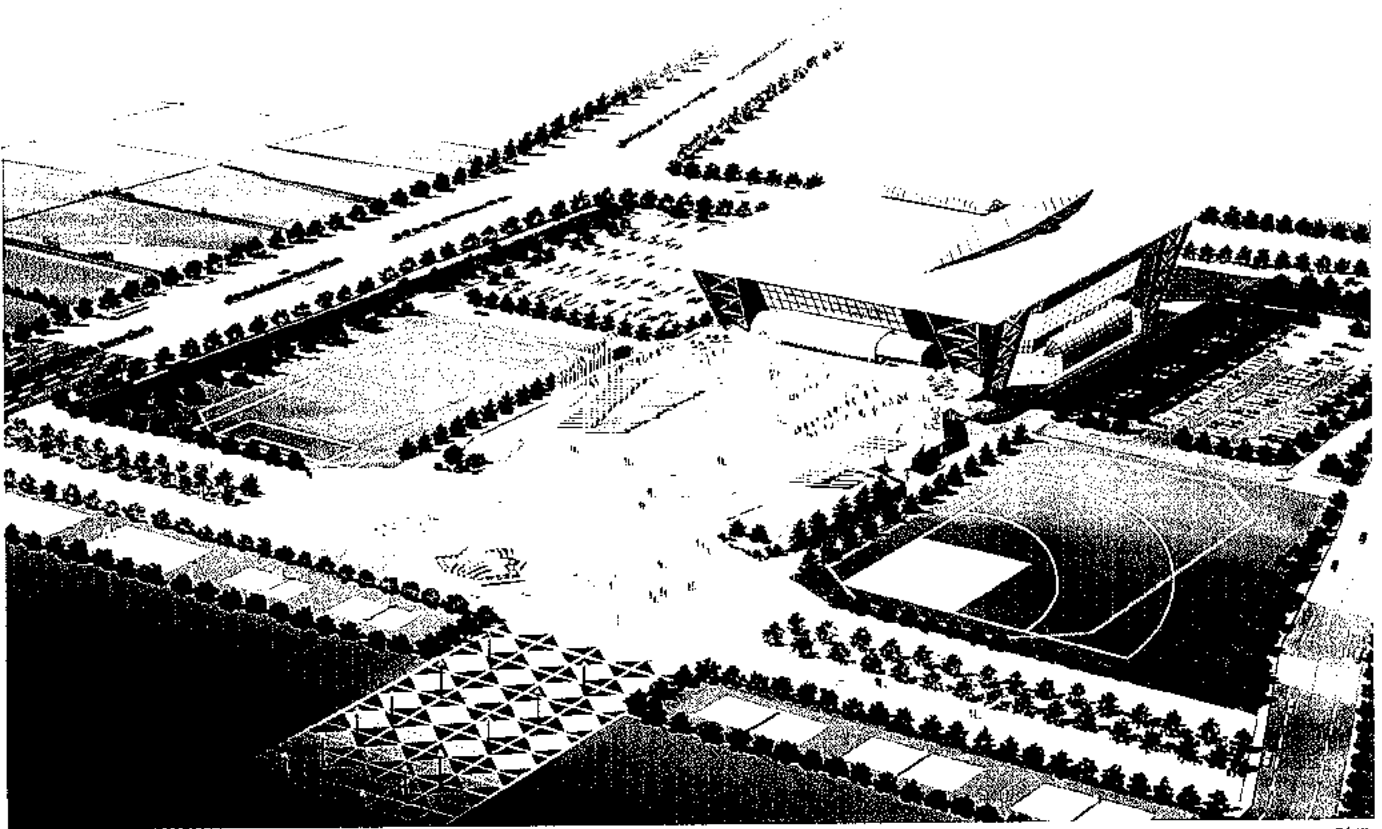
- 새로운 이미지 창출
 - 부천시의 랜드마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독창적인 입면구성 및 형태디자인
- 건축언어의 통일성 및 개방성
 - 주출입구를 중심으로 개방성 강조 및 수평적 매스(Mass) 처리
 - 저층부를 개방감있게 계획하며, 이용자에게 친금감을 줄 수 있도록 유도
- 효율성 및 균형미 유지
 - 전체적인 안정감 있는 매스 계획으로 균형미 창출
 - 디자인 요소의 절제로 전체

적인 통일감 도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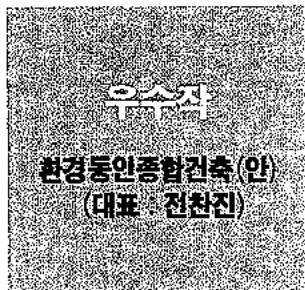
- 수평성의 안정감
 - 체육관의 매스는 완전한 형태의 원형으로 처리하며 전체적으로 수평선을 강조
- 스카이라인(Sky Line)
 - 도시구조적 건축물들의 점진적인 스카이라인의 변화를 유도
- 균형미 창출
 - 전체적인 볼륨이 균형 및 통일성에 의한 매스의 균형미 도출

■ 단면계획

- ARENA부분에 자연채광을 유입하여 조명에너지를 절감하되, 경기자의 눈부심을 방지할 수 있도록 확유리 사용 및 차광막 설치를 하며, 측면창부분은 시간대별로 광선유입을 조절
- 장래 기능에 부합되는 각실별 적정 층고의 결정.
- 이용자 빈도에 따른 적합한 공간배치
- 중앙 시가축을 이용한 상징성 도입
- 구조의 경제성 및 안정성 확보



조감도



대지위치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169번지(중동택지
개발지구 내)

대지면적 / 81,631㎡

건축면적 / 7,812㎡

연면적 / 12,1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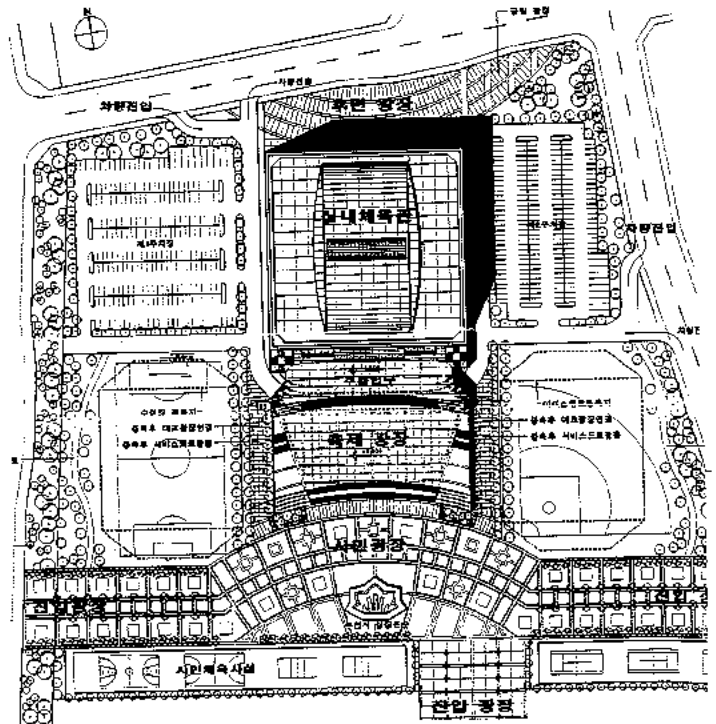
건폐율 / 9.6%

용적률 / 14.93%

규모 / 지상 3층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주차대수 / 464대



배치도

■계획의 방향

- 지방체육의 발전과 시민의 체력증진을 통한 체육활동인구 저변화 및 건전한 체육문화 육성
- 독창성과 독특한 주체성을 갖 추도록 구성
- 이용특성을 감안한 가변적 공간의 설정으로 탄력성과 경제성 확보

간의 설정으로 탄력성과 경제성 확보

- 이용형태 및 대상별 공간구분과 시설배치로 위계적 질서감 및 편의성, 쾌적성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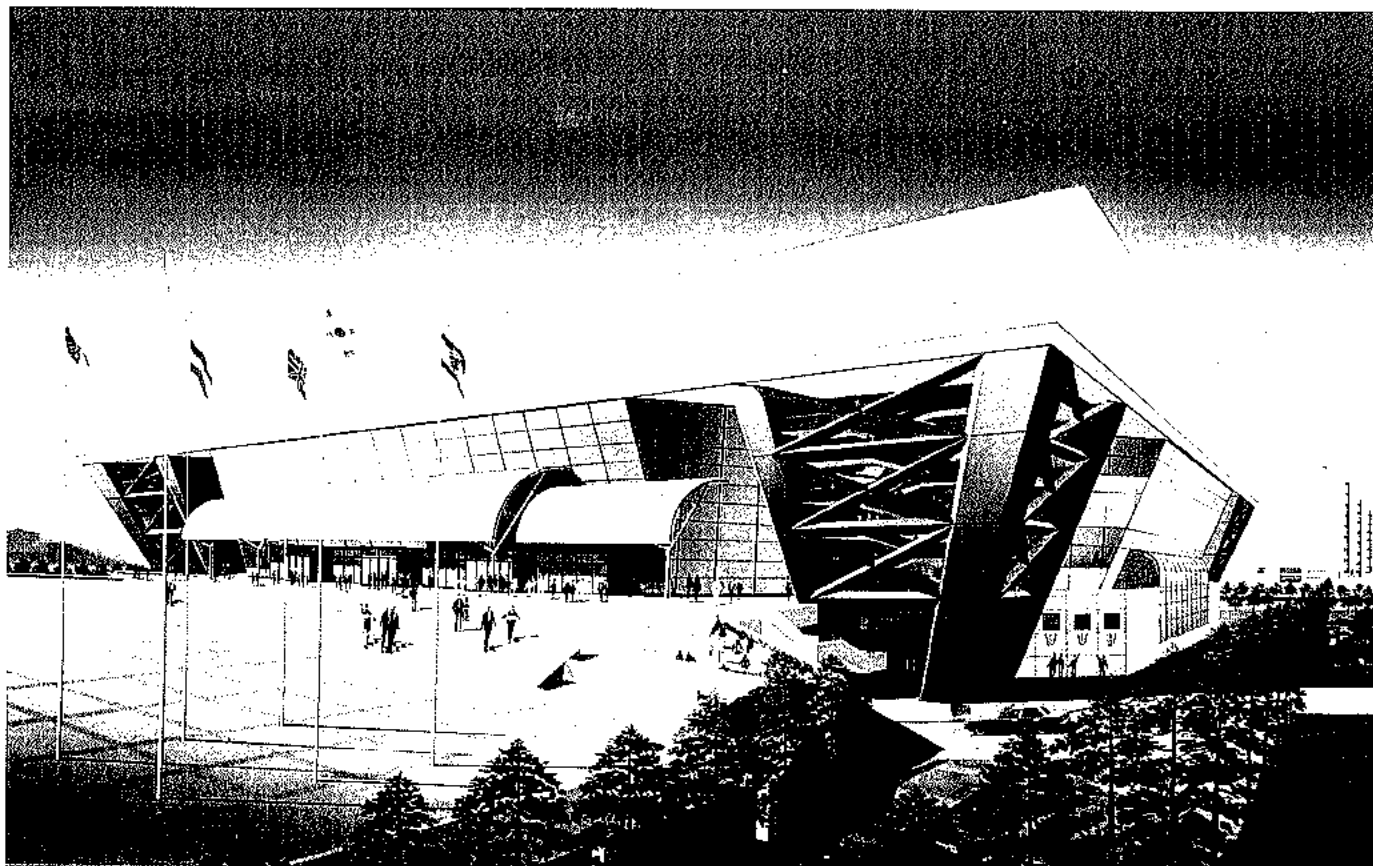
■배치계획

- 집중과 분산의 효율적인 배치가 되게 함

- 각 공간의 특성과 효율성을 가미함으로써 살아있는 공간이 되도록 함

- 옥외공간은 진입광장, 축제광장, 시민광장 등으로 구분하여 시민행사나 청소년의 문화축제시 적극활용한다.

- 시민을 위한 산책로, 조깅코



투시도

스, 체육공원 등을 조성하여 지역주민과의 커뮤니티를 활성화한다.

- 법정주차대수를 상회하는 주차면적 확보
- 평상시 시민체육시설 휴식공간으로 활용 가능한 동선계획

■평면계획

- 관중의 입장시 통제원활을 위한 집중과 퇴장시 분산원칙
- 여러 사용자들의 진출·입 동선 분리
- 경기장 주변에 가장 좋은 시야의 많은 좌석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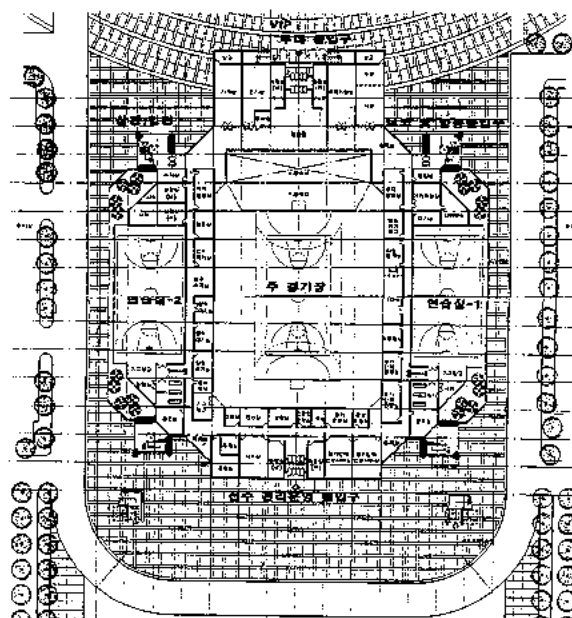
■입면계획

- 부천시, 중동신시가지의 아이덴티티 확보
- 기존 체육시설과의 차별성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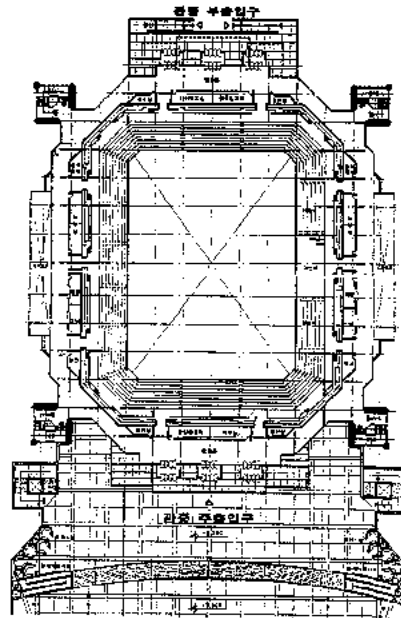
- 구조체의 미적 승화

■단면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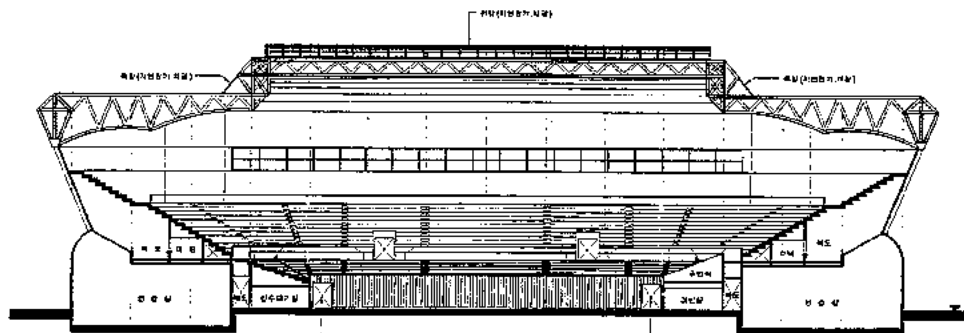
- 관중동선과 특수동선을 분리
- 관중은 2층 Level의 출입구 이용
- 심판, 선수, VIP 관리동선을 분산 1층에 배치
- 입장은 두곳서 통제하고 해산을 각 코너 네부분에서 즉시 분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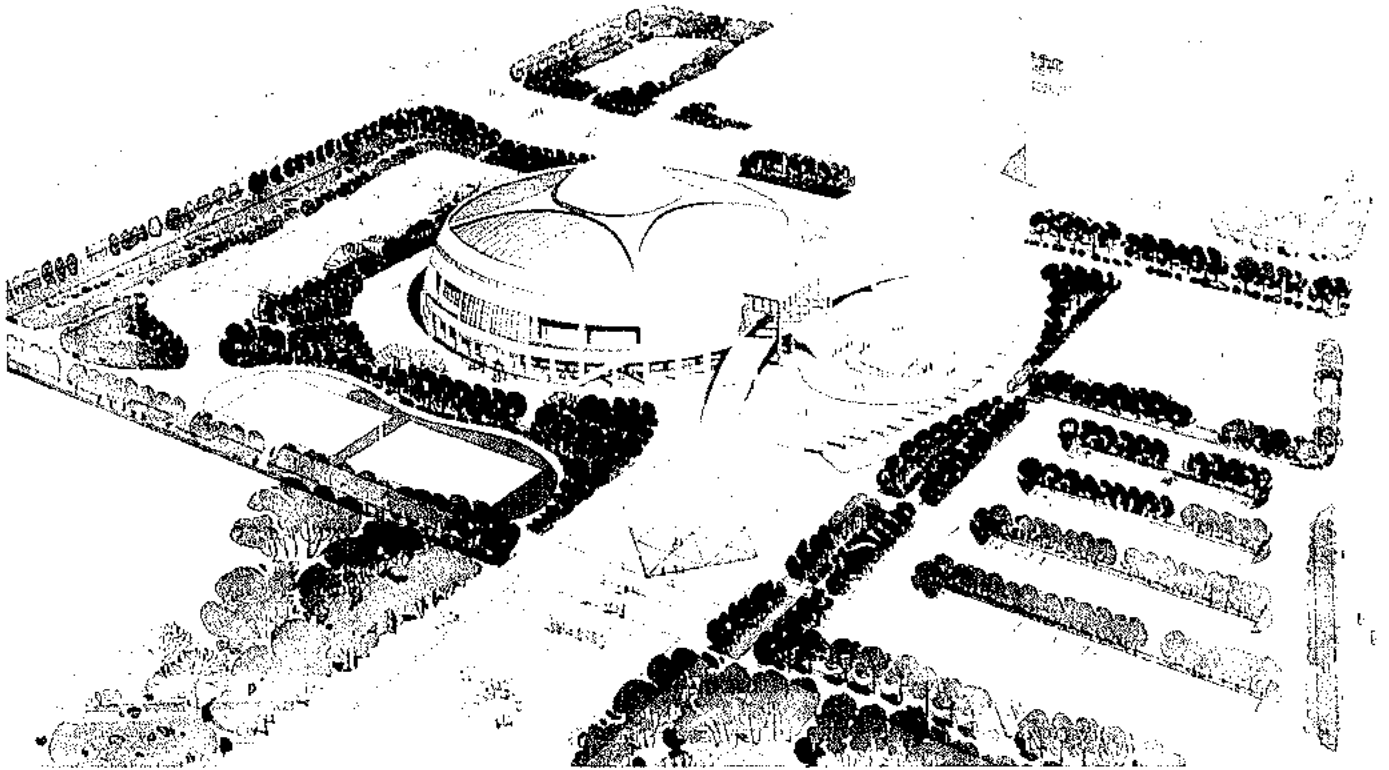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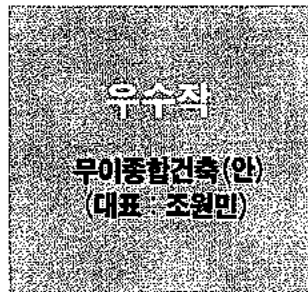
2층 평면도



횡단면도



조감도



대지위치 / 부천시 원미구 중동
169번지

지역지구 / 자연녹지지역 도시설
계지구(운동장)

대지면적 / 81,631m²

건축면적 / 16,834.6m²

연면적 / 31,672.3m²

건폐율 /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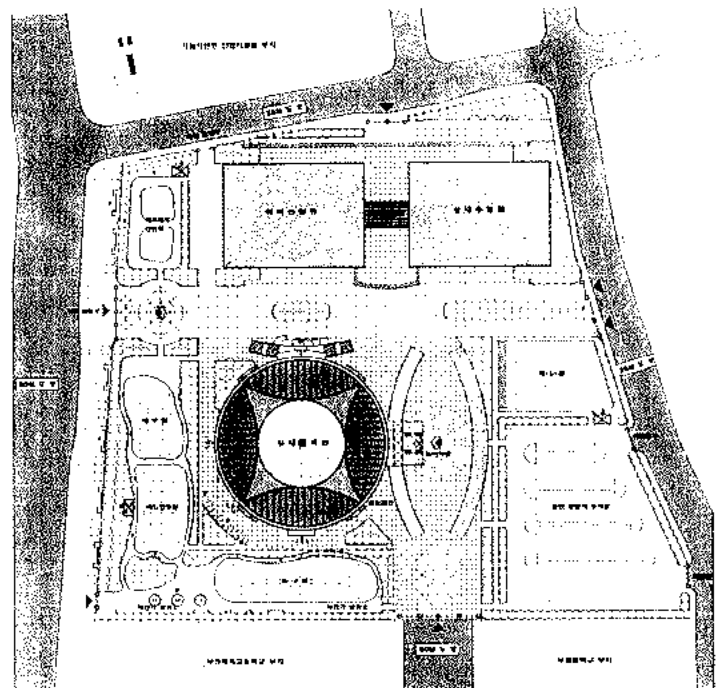
용적률 / 38%

규모 / 지하 1층, 지상 3층

구조 / 하부구조 : 철근콘크리트
라멘조

지붕구조 : Pantadome
System(Space Frame)

외부마감 / 알루미늄페널, 컬러복
층유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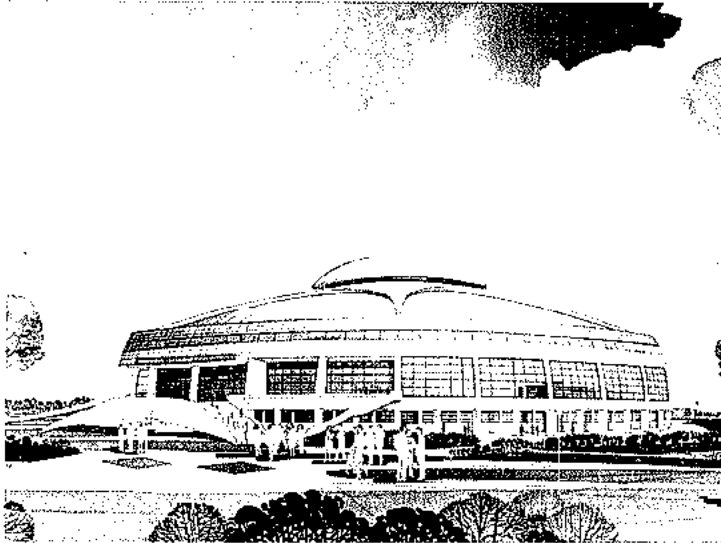
마스터 플랜

■ 배치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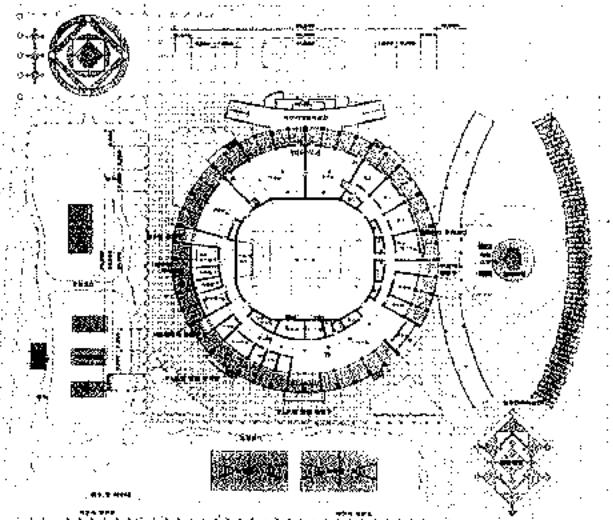
- 이용자와 주민을 위한 보행자 전용도로의 설치, 도보접근 용이
- 보행자 위주의 대지내 동선 계획

- 자전거 이용자를 위한 전용도로 및 자전거 보관소 설치
- 대규모 경기시 이용자, 선수, 임원, VIP의 차량 진입분리, 주차장 분리
- 실내수영장, 아이스링크 등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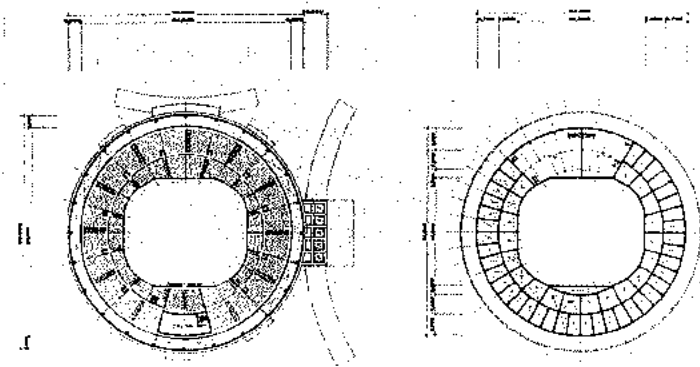
- 상설이용자 동선의 분리
- 대지내 차량 통과 금지
- 보행자와 일반체육이용시설의 유연한 연계
- 관람객, 선수, 보도진 등의 출입구 분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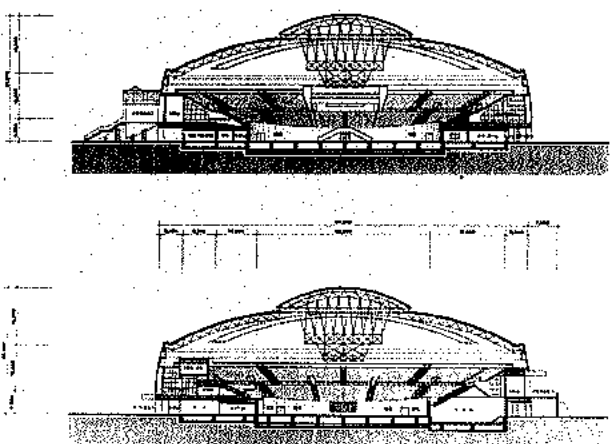
투시도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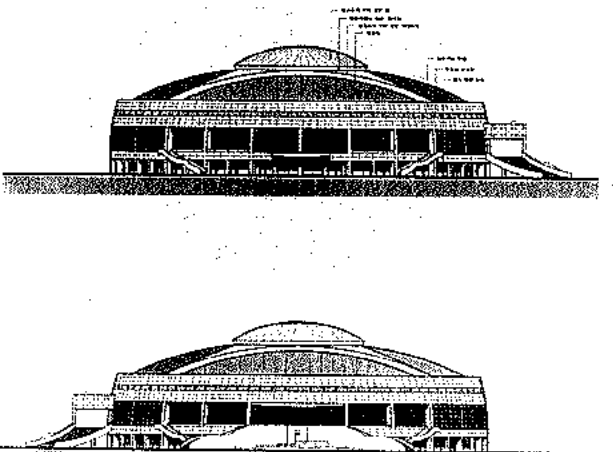
기준층 및 지하층 평면도



단면도

- 사방에서 접근이 용이한 출입구 계획
- 주차장의 분리
- 각 시설들의 독립성 확보
- 체육관, 실내수영장, 아이스 링크, 체육공원 등이 분리 이용
- 다양한 공간 구성-공간 이용의 다양성
- 시민들의 사회체육활동 만족
- 아이스 링크와 수영장의 계절별 사용(여름-수영장, 겨울-아이스 링크)
- 대지의 활용도 증가-축구장 등 확보가능
- 문화시설을 위한 공간확보 가능
- 각 시설의 독립성 확보
- 실내수영장, 아이스하키 링크의 추가 건립시 기존 시설과의 연계성
- 체육공원과 주차장을 이용한 완충공간
- 놀이마당 & 집회시설
- 놀이마당 이용시 주계단의

- 스탠드화
- 집회시설 이용시 주계단을 단상으로 이용
- 연습실과 선수대기실과의 연계성을 높임
- 격투기(태권도, 유도, 검도 등)의 경우 보조경기장으로 활용
- 구기종목(농구, 핸드볼, 배구 등)의 경우 워밍업 장소로 이용
- 경기장이 집회 혹은 공연의 용도로 사용될 때 연습실은 그 준비실로 사용
- 관람석은 스탠드 상부 30°, 하부 27°로 계획하여 가장 적절한 시선 확보
- 앞 열과의 고저차는 40~45, 너비는 80cm로 계획하여 이상적인 관람공간 확보
- 운동 경기 혹은 집회, 행사 등이 있을 때 귀빈, 임원, 운영위원 등을 위한 충분한 공간의 확보
- 주요 시설의 이용이 없을 때



입면도

- 부천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개방
- 연회, 리셉션, 예식 등의 다양한 용도로 활용 가능
- 충분한 공간과 부속실 그리고 적절한 접근 등 다용도에 맞도록 계획
- 기자실은 필자실을 겸하고 인

- 터뷰실을 확보한 충분한 공간 확보
- 방송실은 좋은 시각을 갖고 있으며 차음이 되도록 계획
- 기록실은 방송실과 연계되어 경기의 기록, 정리, 발표가 용이하도록 계획

건축사업무 및 보수기준

(건설부공고 제227호, 1993년 12월 31일)

Architect's Business and Recompense Rule

◇ 추진경위

본 협회는 그 동안 건축물의 대형화, 고층화, 국제화 추세에 따라 건축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건축사가 수행하는 설계 및 공사감리 업무를 구체적으로 조정하고, 이에 따른 보수기준을 현실화 하는 등 현행 기준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건축사업무 및 보수기준 개정을 추진, 대한건축학회에 용역을 의뢰하여 지난 92년 12월 28일 완료됨에 따라 건설부에 개정 인가를 요청(93년 1월 28일), 건축물의 유지관리상태 조사대가기준 등 추가 인가요청(93년 5월 3일)등을 거쳐 건설부가 검토하고 경제기획원 물가정책국의 협의(93년 10월 29일)를 거쳐 지난해 12월 31일, 건설부가 인가 공고함으로써 올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됐다.

이번 개정된 건축사업무 및 보수기준은 본 협회 건의내용 대부분이 수용됐다.

◇ 주요내용

1. 기존의 요율계산체계와 달리 기존 5종으로 구분하던 건축물의 종별을 건축물의 복잡도, 설계의 난이도에 따라 단순, 보통, 복잡으로 구분(업무의 복잡도에 따라 단순건축물은 기준보수액의 10%하향조정, 복잡한 건축물은 10%상향조정→건축물설계 및 감리의 난이도 고려)
2. 공사감리의 비율을 35%~45%까지 대폭 상향조정(설계와 감리가 분리되는 공공공사 설계비는 55%~65%인데 비해 감리비는 45%로 설계비 과소평가)
3. 특별업무로 설계경기(현상설계), 건축물대장의 기재에 따른 현황도면 작성, 특수분야의 설계, 평가, 자문조정업무 추가 신설(제4조)
4. 계획설계를 삭제하고 업무는 기본설계에 포함(제9조)
5. 공사감리의 내용을 명확히하고 전기법에 의한 시공감리내용과 동일하게 조정(제10조)

제1장 총 칙

- 건설부장관인가: 건국시지령44. 1~59 (1966. 7. 5)
제1차 개정인가: 도사444. 1~19053 (1968. 11. 27)
제2차 개정인가: 건축444. 1~655 (1971. 1. 16)
제3차 개정인가: 건설부고시 제197호 (1973. 12. 15)
제4차 개정인가: 건설부공고 제100호 (1984. 12. 31)
제5차 개정인가: 건설부공고 제129호 (1986. 1. 7)
제6차 개정인가: 건설부공고 제227호 (1993. 12. 31)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축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가 타인의 위탁을 받아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기준과 그 업무에 관하여 위탁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보수 및 기타 이에 부수하여 체결하는 계약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 건축사가 타인으로 부터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위탁을 받을 때에는 이 기준에 의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3조(자료의 요구) 건축사는 수탁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다음 각호의 자료를 업무진행상의 소요시간 이내에 제공할 것을 건축주에게 요구할 수 있다.

1. 건축물의 구체적 용도와 이에 관련된 건축주의 요구사항
2.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 소유권이 외의 권리에 관한 자료, 건축대지증명 또는 환지증명, 대지측량도(경계복원측량도를 포함한다)와 지질 또는 지내력 검사서
3. 대지에 관한 급배수, 전기, 가스 등 사

설의 현황을 표시하는 자료

4. 기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

제4조(저작권)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는 당해 건축물에 한하여 사용하며 그 저작권은 설계도서의 인도, 공사의 실시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작성한 건축사에게 귀속한다. 다만,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의 구분별로 단계적 설계를 하거나 설계 변경 또는 공사감리를 함에 있어서 원작성자가 이를 단독 수행할 의사가 없거나 이를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저작권에 의한 원상유지권, 개작권 및 실시권을 주장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하여야 한다.

제5조(기준의 해석) 이 기준의 해석에 의의가 있는 경우에는 대한건축사협회 이사회(이하 "이사회"라 한다)의 해석에 따른다.

제2장 업 무

제6조(업무의 범위) ①건축사가 행하는 기본업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건축물(이에 수반되는 조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설계

2. 건축물의 공사감리

②건축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 외에 다음 각호에 계기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설계·공사감리업무에 관련되는 추가 업무
2. 조사·기획업무
3. 특별업무
4. 건축물의 조사감정

제7조(설계·공사감리업무) ①건축물의 설계·공사감리업무(이하 “기본업무”라 한다)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단계별로 구분하여 행한다.

1. 기본설계(계획설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실시설계
3. 공사감리

②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등의 업무는 동일인의 건축사가 일괄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의 공사감리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공사감리업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동일인의 건축사가 계속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해당 건축물의 건축을 중지하기로 한 때(일시 중지하는 경우는 제외), 또는 건축주와 협의하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와 공사감리를 별도로 분리하여 위탁한 때
2.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한 때
3. 해당 건축사가 휴업 또는 폐업한 때나 실종 또는 사망한 때
4. 기타 이사회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때

④제2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초 설계 및 공사감리를 수행한 건축사가 저작권을 포기하여 이를 인수받은 다른 건축사가 설계 및 공사감리를 수행한 경우의 책임은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한다.

1.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의 별도의 건축물을 설계 또는 공사감리를 한 건축사는 해당 별도의 건축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기존 건축물의 하자를 제외한 기존 건축물에 대한 기타 하자 발생에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2. 하나의 대지 안의 기존 건축물에 수직 증축 또는 수평증축(기존 건축물에 영향을 미칠 경우에 한함)의 설계 및 공사감리를 수행한 건축사는 특별한 경우의 사유를 제외하고는 기존 건축물

에 대한 모든 부분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8조(기본설계) 건축사가 기본설계를 함에 있어서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주로부터 제공된 자료를 참작하고 건축주와 협의한 후 건축사 자신의 창의로서 건축물에 대한 기본구상을 입안하고 기본구상에 바탕을 둔 다음 각호의 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일반단면도
2. 건축, 구조, 설비 등의 설계설명서
3. 공사비계산서

제9조(실시설계) 건축사가 실시설계를 함에 있어서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기본 설계를 기초로 하여 다음 각호의 설계도서 등 해당 건축물의 건축허가신청 및 공사실시에 필요한 설계도서 및 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부지안내도, 배치도, 각종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상세도
2. 구조도(구조안전확인대상건축물) 및 구조계산서
3. 주차장평면도(주차장법에 의하여 주차장 설치를 요하는 건축물), 건축설비도, 소방설비도(소방법에 의하여 소방관서의 동의를 요하는 건축물), 건축계획서(건축에 관한 사전 결정을 신청한 건축물), 기타 필요한 설비설계도 및 계산서
4. 공사시방서
5. 공사비명세서
6. 건축허가신청서

제10조(공사감리) ①건축사가 공사감리를 함에 있어서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실시설계 및 공사계약에 의하여 다음 각호에 계기하는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시공계획 및 공정표 검토
2. 시공도 등의 적합성 검토
3. 공사도급계약의 협력
4. 설계변경사항의 검토
5. 구조물의 위치와 규격 및 사용자재의 적합성 검토
6. 주요기자재의 적합성 검토
7. 시공자가 제시하는 시험성과표의 검토 및 확인
8. 누수·단열 및 방습에 관한 시공성 검토
9. 공사의 확인
10. 공사비 지불 심사·확인
11. 사용검사 신청서 사용도서의 확인
12. 공사감리완료보고

②공사시공자가 설계도서 및 공사계약서

내용대로 시공하지 아니할 때에는 건축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건축사의 공사감리업무는 건축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에 합격 되므로써 완료한다.

④건축사가 공사감리를 함에 있어서 기본업무 이외에 건축주의 요구가 있거나 공사성질 및 규모에 따라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축사는 건축주의 동의를 얻어 상주감리보조원을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주감리보조원의 업무범위는 건축주와 협의하여 정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상주감리 보조원은 건축에 관한 법령이 규정하는 건축사의 권리 의무를 대리하지 못한다.

제11조(설계·공사감리업무에 관련되는 추가업무) 제6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추가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건축허가신청서 작성 이외의 대관청 신청, 수속대리업무
2. 모형, 투시도, 사진, 영상물의 제작

제12조(감리자의 면책사유) 건축사가 공사감리를 하는 기간중에 발생하는 다음 각호에 계기하는 행위는 건축사의 귀책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1. 공사시공자와 건축주간의 공사계약조건외의 불이행
2. 공사시공자, 그 현장대리인이나 그 고용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행한 행위
3.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사시공자가 공사감리자의 감리지도에 따르지 아니하고 계속 시공을 하는 행위

제13조(조사·기획업무) 제6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조사·기획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획 및 경제성 검토, 전 일정의 검토
2. 자금계획 등에 관한 협력
3. 부지측량, 지반조사의 협력
4. 조사·검토에 바탕을 둔 조사보고서, 기획설명서 등의 작성

제14조(특별업무) 제6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역계획 및 도시계획 설계
2. 단지계획 설계
3. 전체계획 설계(마스터 플랜)
4. 음향, 공기조화, 기계장치, 건축자재, 구조, 설비, 에너지 기타 특별한 기술적 연구, 실험적 조사 또는 이화학적 실험
5. 특수분야의 설계, 평가, 자문조정업무
6. 건축물대장의 기재에 따른 현황 도면

작성

7. 설계경기(현상설계)

제3장 설계·공사감리업무의 보수

제15조(기본업무의 보수) ①기본업무에 대한 보수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최저한도로 하되 건축물의 특성 및 건축주의 의지에 따른 기본업무 보수의 상충은 해당 금액의 1.5배 범위 안에서 건축사와 건축주가 협의하여 정한다.

1. 1동의 건축물을 신축(재축, 이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의 기본업무의 보수는 공사비총액에 “별표1”의 해당 인·월수에 기준임금과 승수를 곱한 금액(이하 “기본보수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2. 하나의 대지(건축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안에 각기 규모 및 구조가 다른 2동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의 기본업무의 보수는 각 동마다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기준보수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3. 하나의 대지 안에 동일한 설계에 의하여 2동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의 기본업무의 보수는 다음 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F=A \times 0.65 \left(1 + \frac{1}{N} + \frac{1}{N} + \dots + \frac{1}{N}\right) + 0.35N$$

F : 기본업무의 보수

A : 1동의 기준보수액

N : 동수

4. 동일한 설계에 의하여 각기 다른 대지에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의 설계업무의 보수는 1동에 대하여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기본보수액으로 하고, 1동을 초과하여 신축하는 매 1동에 대하여는 현장 조사 및 배치설계도 작성 등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실비보상가산식의 방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한다.
5. 건축사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 설계도서에 의하여 신축하는 경우의 공사감리업무의 보수는 1동마다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공사감리보수액의 50% 상당액으로 한다.
6. 1동의 건축물을 증축, 개축 또는 대수선(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의 기본업무의 보수는 해당 증축, 개축 또는 대수선하는 부분을 신축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이에 대하여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기준보수액을 기본보수액으로 한다.

7. 동일한 설계에 의하여 조립식 건축물(부속되는 설비, 가구, 기구를 포함한다)의 대량 생산 판매되는 경우의 설계도서에 대한 저작권료는 매제품의 판매가격의 0.5% 상당액으로 한다.
8. 조립식 건축물(철근 및 철골콘크리트조 제외)을 건축하는 경우 농건축물의 설계도서를 활용하는 때의 설계업무의 보수는 1동마다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보수액 중 설계보수액의 50% 상당액으로 하되 하나의 대지 안에 동일한 설계에 의하여 2동 이상의 설계를 하는 때에는 제3호에 의한 체감식을 적용한다.
9. 건축법령 규정에 의한 상주공사감리 대상건축물인 경우의 기본업무의 보수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기준보수액에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하여 정한다.

가. 총공사비가 50억미만인 건축물 : 기준보수액에 20%

나. 총공사비가 50억이상인 건축물 : 기준보수액에 10%

②1동의 건축물에 2이상의 용도에 쓰이는 부분에 있어 “별표1”을 적용함에 있어서 종별이 2 이상에 걸치는 경우에는 각종별에 해당하는 바닥 면적에 따라 가장 넓은 바닥 면적을 가진 종별에 속하는 건축물로 보며 각종별 해당 바닥 면적이 동일한 경우에는 그중 높은 요율의 종별에 속하는 건축물로 본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설계·공사감리 기본업무 인·월수 표는 당해 건축사사무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6조(기본업무 보수의 조정) 건축물의 종류는 난이도에 따라 단순, 보통, 복잡으로 구분하고 기본업무의 보수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정하며, 조정된 인·월수는 “별표1”과 같다.

1. 단순한 건축물...기준보수액의 10% 하향 조정
2. 보통의 건축물...기준보수액
3. 복잡한 건축물...기준보수액의 10% 상향 조정

제17조(추가업무 등의 보수) 제11조 및 제13조에 규정한 추가업무와 조정·기획업무의 보수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실비보상가산식으로 산정한다. 다만, 품질관리시험실시여부 및 그 시험성과 확인 등의 업무를 더하여 행할 시에는 건설기술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감리대가 기준에 의한다.

제18조(특별업무의 보수)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업무의 보수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실비보상가산식으로 산정한다. 다만, 제14조 제7호

의 설계경기(현상설계)에 있어 주최자(건축주)가 용모자(입찰자)에게 지급할 업무의 보수(상금)는 설계비총액의 20%이상으로 정하며, 제14조 제6호에 의한 건축물대장의 기재에 따른 현황도면작성의 보수기준은 “별표2”와 같다.

제19조(공사비의 산출) ①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수액을 산출함에 있어서 적용하는 공사비 총액은 건축사가 설계완료시의 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 공사원가금액(해당 공사에 필요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의 합산액)으로 하되 부가가치세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원가금액을 산출함에 있어서 건축주가 재료 또는 노력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제공되는 재료(고재인 경우에는 산재로 본다) 또는 노력을 시가로 환산하여 공사원가금액을 산출한다.

제20조(보수액의 증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보수액(이하 “소정보수액”이라 한다)에 각해당호의 정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1. 건축주가 2인이상의 건축사에게 공동으로 설계·공사감리업무를 하도록 위탁한 경우에는 소정보수액의 25% 상당액. 다만, 331㎡ 이하인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건축주가 건축사에게 건축의 설계·공사감리를 위탁하되 구조, 설비, 정원, 내장, 가구 등의 설계 또는 공사감리를 제3자에게 분리하여 위탁하고 건축사에게 건축의 설계·공사감리와 관련하여 전체를 종합 조정하게 하는 경우에는 소정보수액의 20% 상당액
3. 설계도서 및 공사감리업무에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병용하는 경우에는 소정보수액의 20% 상당액
4. 외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설계·공사감리를 하는 경우에는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정보수액의 50% 상당액을 최저한도로 하여 건축사와 건축주가 협의하여 정하는 금액
5. 설계변경(구조, 용도, 면적, 설비, 내·외장 등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있을 경우에 기준보수액의 설계업무 보수는 해당 설계변경 하는 부분을 신축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이에 대하여 제15조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을 최저한도로 하여 건축사와 건축주가 협의하여 정하는 금액

제21조(보수액의 단계별 구분) 건축사가 설계·공사감리업무를 일괄하여 위탁을 받거나 또는 단계별로 분리하여 위탁을 받은 경우에는 기본업무보수총액(제20조의 가산 사유가 있는 경우

업무구분	일괄수행		분리수행			
			법령의 규정 또는 건축주의 요구에 의한 경우		설계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	
설	기본 설계	소정보수 총액의 25%	소정보수	소정보수 총액의 25%	소정보수	소정보수 총액의 20%
계	사실 설계	소정보수 총액의 40%	소정보수	소정보수 총액의 40%	소정보수	소정보수 총액의 35%
공사감리	소정보수 총액의 35%		소정보수 총액의 45%		소정보수 총액의 45%	

에는 동가산액을 포함한다)에 다음 표의 정한 비율을 곱한 금액을 그 보수액으로 한다.

제22조(보수의 지급방법) ①건축사는 기본업무의 계약시에 전급금을 받으며 건축주와 협의에 의하여 업무진행기간중에 보수의 분할지급을 받을 수 있다.

②건축주와의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보수액 전액을 일시급으로 받을 수 있다.

제23조(보수 이외의 비용부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주는 기본업무보수 외에 각 해당호의 정하는 비용을 부담한다.

1. 제1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주감리보조원을 두는 경우에는 그 인건비, 현장 사무비 및 기타제경비
2. 건축주 또는 공사시공자의 책임 또는 제해에 의하여 업무가 추가되는 업무의 보수
3.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주가 제공하여야 할 자료를 건축사에게 확보의뢰한 경우에는 그 확보에 소요되는 경비
4. 건축사 또는 그 보조원이 업무의 수행을 위

하여 해외에 출장하는 경우에는 그에 소요되는 경비

5. 건축주가 다음 각목에 계기하는 부수를 초과하여 설계도서를 추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추가에 소요되는 비용

가. 기본설계도서 3부

나. 실시설계도서 5부

다. 공사비명세서 2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산출방법에 관하여는 제25조의 규정을, 그 지급방법에 관하여는 제22조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제24조(조사감정업무등의 보수) ①제6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보수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실비보상가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보수액으로 한다.

②보수의 지불방법에 관하여는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5조(실비보상가산식의 산정방법) 실비보상가산식의 보수는 다음 산정방법에 의하여 산출한다.

※보수액 = [(직접비 + 간접비) + 보상비]

1. 직접비(직접인건비+직접경비)

가. 직접인건비 : 해당업무에 종사하는 기술자의 급여,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 산재보험금등을 포함한다.

나. 직접경비 : 해당 업무수행에 직접 필요한 여비, 특수자료비(특허권사용료 포함), 제출도서의 인쇄비 또는 청사진비, 측량비, 토질 및 재료등의 시험검사비, 전산비, 모형제작비, 다전문기술자에 대한 자문비 또는 위탁비 등을 포함한 금액

2. 간접비 : 직접비를 제외한 제경비로서 임원, 서무, 경리직원등의 인건비, 지급임차료, 수도광열비, 소모품비, 기계기구의 수선 및 상각비, 통신비, 회의비, 공과금, 업무활동비 등을 포함한 금액으로서 직접인건비의 110%를 초과할 수 없다.

3. 보상비 : 직접비와 간접비의 합계액의 25%를 초과할 수 없다.

제26조(인건비) 본 기준에 의하여 비용을 산출함에 있어서 적용할 인건비의 기준액은 과학기술처장관이 공고하는 엔지니어링 사업 노임 단가에 준하여 이사회가 정한다.

부 칙

①이 기준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이 기준은 시행 당시 이미 계약체결된 업무는 종전의 기준에 의한다.

(별표 1) 다음 페이지 참조

(별표 2)

건축물 대장의 기재에 따른 현황도면 작성 보수요율표

(단위 : 원)

구분	건축신고대상건축물	건축허가대상건축물
배치도	기준임금의 2.19%	기준임금의 6.28%
평면도1면당	기준임금의 1.46%	기준임금의 2.19%

주) —————

1. 도면작성원칙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 서식” 제3면, “별지 제2호 서식” 제3면, “별지 제3호 서식” 제2면에 작성한다.

◇잉크등 지워지지 아니하는 필기구로 작성한다.

◇벽체는 단선으로 표기한다.

◇창문 표기는 하지 아니한다(단 출입구는 표기).

◇주요치수는 mm단위로 표시하되 축척은 1/

2. 도면작성요령

◇수개층이 동일도면인 경우에는 1도면으로 작성하고 해당층 범위를 기입한다.

◇1층평면도는 배치도에 포함하여 작성할 수 있다.

◇1층지에 수개의 도면을 배치하여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위 표에 의한 대기는 도면수에 따라 산정한다.

◇집합건축물의 전유부분 대장에 첨부되는 현황도면을 각층평면도(전유부분별 번호기입)와 전유부분 형태별 도면을 일괄 별지로 작성하여 첨부하고 동 전유부분 번호와 형태를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3호 서식”

제2면에 기입하는 것으로 가름할 수 있다.

3. 도면작성시 표시 사항

◇배치도 : 대지경계선, 주차장, 조정부분, 건축물외곽선(주출입구 및 부출입구 표시), 대지상왕벽, 정화조 등 기타 주요시설물

◇평면도 : 내부주요 간막이 및 용도, 주요설비(승강기, 화장실 등), 내부주요치수(단, 수개층이 동일도면일 경우에는 1도면으로 작성하며 1층은 배치도에 포함하여 도면작성이 가능함)

4. 설계자, 감리자 또는 조사·점사 대행자가 아닌 자가 도면을 작성하므로써 실측을 하여야 하는 경우, 실측에 소요되는 경비는 건축사업무 및 보수기준 제25조 규정에 의한 실시보상가산방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신고대상건축물의 경우 등 산정된 금액은 6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5. 기준임금의 산출방식은 [별표1]을 참조한다.

◇기준임금 : 건축사보(중급) 1일
직접인건비×25일

〔별표 1〕 건축물의 설계·공사감리 기본업무 인·월수표

(단위: 인·월)

구분	종종사(인·월)	인·월수표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3월	14월	15월	16월
건축물의 종류	1월만	17인	17인	17인	17인	17인	17인	17인	17인	17인	17인	17인	17인	17인	17인	17인	17인
	2월만	17인	17인	17인	17인	17인	17인	17인	17인	17인	17인	17인	17인	17인	17인	17인	17인
	3월만	17인	17인	17인	17인	17인	17인	17인	17인	17인	17인	17인	17인	17인	17인	17인	17인
	4월만	17인	17인	17인	17인	17인	17인	17인	17인	17인	17인	17인	17인	17인	17인	17인	17인
	5월만	17인	17인	17인	17인	17인	17인	17인	17인	17인	17인	17인	17인	17인	17인	17인	17인
건축물의 종류	1월만	17인	17인	17인	17인	17인	17인	17인	17인	17인	17인	17인	17인	17인	17인	17인	17인
	2월만	17인	17인	17인	17인	17인	17인	17인	17인	17인	17인	17인	17인	17인	17인	17인	17인
	3월만	17인	17인	17인	17인	17인	17인	17인	17인	17인	17인	17인	17인	17인	17인	17인	17인
	4월만	17인	17인	17인	17인	17인	17인	17인	17인	17인	17인	17인	17인	17인	17인	17인	17인
	5월만	17인	17인	17인	17인	17인	17인	17인	17인	17인	17인	17인	17인	17인	17인	17인	17인
건축물의 종류	1월만	17인	17인	17인	17인	17인	17인	17인	17인	17인	17인	17인	17인	17인	17인	17인	17인
	2월만	17인	17인	17인	17인	17인	17인	17인	17인	17인	17인	17인	17인	17인	17인	17인	17인
	3월만	17인	17인	17인	17인	17인	17인	17인	17인	17인	17인	17인	17인	17인	17인	17인	17인
	4월만	17인	17인	17인	17인	17인	17인	17인	17인	17인	17인	17인	17인	17인	17인	17인	17인
	5월만	17인	17인	17인	17인	17인	17인	17인	17인	17인	17인	17인	17인	17인	17인	17인	17인
건축물의 종류	1월만	17인	17인	17인	17인	17인	17인	17인	17인	17인	17인	17인	17인	17인	17인	17인	17인
	2월만	17인	17인	17인	17인	17인	17인	17인	17인	17인	17인	17인	17인	17인	17인	17인	17인
	3월만	17인	17인	17인	17인	17인	17인	17인	17인	17인	17인	17인	17인	17인	17인	17인	17인
	4월만	17인	17인	17인	17인	17인	17인	17인	17인	17인	17인	17인	17인	17인	17인	17인	17인
	5월만	17인	17인	17인	17인	17인	17인	17인	17인	17인	17인	17인	17인	17인	17인	17인	17인

건설부 공고 제227호(1993.12.31)

주: 1. 공사비가 중간부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적산보간하며 적산보간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본 인·월수표는 적산보간된 것임)

2. 건축물 중별 용도구분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근거하여 정한다.

3. 설계·공사감리요원의 기준임금은 건축사법(중급)의 월보수액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 산정한다.

※ 기본업무 보수 산출 방식

기본업무 보수=설계·공사감리 기본업무 인·월수×기준임금×승수(1.038×2.63)

◇인·월: 건축사 1인과 건축사보 3인(고급, 중급, 초급 각 1인) 및 보조원 1인(제5인)이 1개 구성원으로서 기본업무를 수행함에 따른 연소요인수

◇기준임금: 건축사보(중급) 1인 직결인건비×25%

◇승수 1.038: 중급 건축사보의 직결인건비 기준에 따른 원상비 평균치

2.63: 직결인건비에 대한 1.1배의 간접비와 직접인건비 및 간접비 합계의 0.25배의 보상비를 적용한 수치

건축사 세무의 이론과 실제 (1)

Architect's Tax Affairs Theory and Practice (1)

黃龍顯/공인회계사·우진합동회계사무소

by Hwang, Yong-Hyun

목 차

〈1회〉

- I. 머리말
- II. 최근의 세무정책 방향
- III. 건축사 세무상 특징
- IV. 수입금액 신고
- V. 소득세 신고

〈2회〉

- VI. 법인세 신고
- VII. 토지공개념
- VIII. 취득세 및 등록세
- IX. 세무 의사결정
- X. 맺음말

I. 머리말

세무란 그 본질이 국가공권력을 바탕으로 한 강제집행력에 있다. 국민의 납세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대한민국 헌법에 의거 시행되고 있는 조세법 및 조세행정은 경제현상의 다양화에 부응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개편·발전되고 있다. 조세전문가들도 이러한 변화속도를 따라 잡기가 쉽지 않으며 문민정부가 들어서고부터는 그 정도가 실로 두드러진다.

이러한 상황은 건축사의 세무문제에 있어서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성서에서도 언급되는 세리의 황포는 당사자간의 쌍무계약이 아닌 일방적인 계약으로서의 강제성을 지닌 세무의 특징을 잘 나타내고 있으며, 사업자로서의 건축사도 세무문제에서 해방될 수 없으므로 합리적인 세무처리의 중요성이 간파될 수 없다.

최근의 상황은 단순히 건축사의 사업소득에 대한 세무지식만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 건축주로부터 설계수주를 하기 위해서는 건축주의 세무의사결정문제도 지도를 해야 하며, 설계의 예술성과 실용성만을 고집하기에는 세무상 제약조건이 미치는 영향이 크다.

본 글에서는 최근의 세무정책 방향(II)과 건축사의 세무상 특징(III)을 살펴보고 건축사의 사업소득과 직접관련된 세무문제(IV~VI)와 건축설계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제반 세무문제(VII~IX)를 2회에 걸쳐 설명하고자 한다.

II. 최근의 세무정책방향

건축사의 세무에 영향을 미치는 최근의 세무정책은 신경제 세제개혁안, 소득세 신고체제의 전환, 금융실명제 및 세무조사 강화 등을 들 수 있다.

1. 신경제 세제개혁안

(1) 소득세 기능의 강화

근로소득 과세가 비율을 확대하고 이자 및 배당소득의 비과세 범위를 축소하며 금융자산소득(이자·배당 및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종합과세를 96년부터 시행한다. 따라서 현재 과세되고 있지 않은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조만간 과세방침이 확정될 것으로 예견된다. 한편, 과세기반이 확대되면 그에 따라 합리적으로 소득세 및 법인세의 세율구조를 하향 조정한다.

(2) 재산과세의 실효성 제고

고액재산가에 대하여는 그 가족까지 포함한 자산변동상황을 96년부터 완전 전산으로 관리하여 정밀조사를 실시한다.

토지초과이익세는 시행의 마비점을 보완하고 96년~97년에 취득·보유·이전단계별로 개편되는 토지관련세제로 통합한다. 양도소득세의 각종 감면사항 및 감면율을 축소하며, 종합토지세는 과세표준을 96년부터 공시지가로 전환하기 위하여 연도별로 과표 현실화율을 상향시키며 절산체제를 정비한다. 1세대 2주택 이상의 다주택 보유자의 재산세는 95년부터 중과세한다.

(3) 소비과세의 개선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자를 일반과세자로 전환시키면 면세사업자의 범위를 축소한다. 1세대 2대 이상의 승용차 취득시 취득세 및 등록세를 94년부터 중과세한다.(중과세율: 12%)

(4) 조세행정의 혁신

93년부터 97년까지 단계적으로 고소득 전문직종의 과세포착율을 높이며 사치성 업종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세무서간, 외부기관(금융기관, 행정 전산망)과의 전산망을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2. 소득세 신고체제의 전환

95년 귀속 소득세 신고(96년 5월 신고)부터 소득세 신고체제가 현행의 부과과세제도

에서 법인세와 같이 신고납부제도로 전환될 예정이다. 이러한 신고체제의 변경은 부과 과세제도하에서 현재 적용되고 있는 표준소득율에 의한 서면신고체제의 폐지를 뜻하며 사업자가 업종에 불구하고 실제 가득한 소득을 신고하게 된다. 수입금액신고의 자율성 유도, 실상반영제도 및 소득세 신고에 있어서의 보정요구 등은 향후 신고체제의 변경에 따르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현재 시행되고 있다.

한편으로 이러한 소득세 신고체제의 전환에 따르는 신고의 임의성은 금융실명제로서 조절될 수 있다.

3. 금융실명제

1993년 8월 12일부터 금융실명제가 실시되고 있다. 현단계하에서는 금융자산의 내역이 개인별로 관리되지 않고 계좌별로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미치는 영향만큼 현실적으로 세무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금융실명제가 96년에 예정대로 완성·시행된다면 세무에 미치는 영향이 절대적이다.

건축사의 세무에 금융실명제가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보면 타업종보다는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다. 개인건축사의 수입금액신고가 실적회비 역산에 의한 기본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실제 받는 설계수입이 표준설계비보다 적은 상황에서는 수입금액신고에 있어서 더 불리할 게 없으며, 소득세신고시에도 금융실명제 실시에 따르는 과세기반의 확대에 맞춰 세율이 하향조정될 것이므로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다. 다만, 건축법인의 자금인출에 큰 제약을 받기 때문에 보다 신중한 회계처리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4. 세무조사 강화

건축사는 1993년에 특별관리업종으로 지정되어 기중관리대상, 기획조사대상 및 표본조사대상으로 선정되었다.

기본사항 및 소비실태를 조사하여 실시하는 기획조사는 수입금액과 소득세를 정밀조사하여 세액을 추징하는 것이며, 면세사업자의 수입금액신고의 성실분위기를 유도하기 위하여 실시되는 표본조사와 더불어 사업자에게 세무간섭을 강화하는 것이다. 또한 기중관리대상으로 선정되면 기획조사 및 표본조사를 받지 않더라도 5월 소득세신고시 실상반영(할증)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다.

이러한 면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는 최근의 경기부진으로 소득세의 감소가 우려됨

에 따라 각종 전문직종에 대하여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III. 건축사의 세무상 특징

1. 면세사업자

부가가치세(Value Added Tax)란 재화의 판매나 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 가치(마진)에 대하여 10%의 세금을 내는 것으로서 물건을 사면서 부담한 세금과 다른사람으로부터 받은 세금과의 차액을 일정 기간(분기)별로 계산하여 내는 것으로 결국은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간접세의 일종이다.

이러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과세사업자(외형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과세특례자로 구별됨)라고 하고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은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면세사업자라고 한다. 일반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며, 과세특례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면세사업자는 「계산서」를 발행한다.

건축사는 면세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의 신고 및 납부의무가 없으며, 그 대신 수입금액신고의 의무만 있다. 따라서 건축사는 과세사업자에 비해 세무처리가 상대적으로 간편하다.

2. 수입금액상의 특징

건축사의 수입금액은 거의 설계 및 감리 수입으로 구성되며 타전문직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입금액이 완전 노출되고 있다.

변호사의 수입금액은 매년 협회와 국세청 간에 등급별 평균수입료를 협의하여 결정하며 국세청에서 파악되는 자료는 변호사별 수입건수밖에 없기 때문에 변호사의 신고수입은 실제와 격차가 크며, 의사와 경우에도 병과별로 의료보험수입과 일반수입비율을 규정해놓고 의료보험조합에서 파악된 의료보험수입을 기준으로 전체수입금액을 산정하므로 일반수입비율이 높은 병과는 상대적으로 수입누락이 클 수 있다.

반면, 건축사는 실적회비에 의해 수입금액이 파악될 수 있고 오히려 현실적으로 받는 수입보다 과대계상될 수 있다.

3. 경비구성상의 특징

건축사는 그 업무특성상 측량, 투시도, 조감도, 전기, 상·하수도, 냉난방, 지열조사, 조경설계, 토목 설계, 구조계산 및 기타 건축설계와 관련하여 타인에게 위탁할 수밖에 없는 업무가 많아 반드시 외주가공비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외주가공비는

적게는 외형의 20%에서부터 많게는 40%까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건축사의 경비구성은 인건비가 외형의 20%~40% 정도 차지하며, 외주가공비도 20%~40%의 구성비를 이루며 나머지는 기타경비로 구별될 수 있다.

4. 원천징수

건축사가 수입이 발생되거나 지출이 있을 때 수반되는 원천징수 등의 문제는 건축사 세무에 있어서 중요한 특징이 된다.

(1) 설계대금 수령시

건축사가 설계용역 대금을 수령할 때 발생하는 계산서 또는 원천징수(대금수령액의 1.075%)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건축주	건축사		건축법인	
	원천징수	계산서	원천징수	계산서
개 인	X	X	X	X
사업자	○	△	X	○

○: 원천징수를 당하거나 계산서를 발행함.

X: 원천징수를 당하지 않거나 계산서를 발행할 필요가 없음.

△: 사업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않을 때에만 계산서 발행함.

(2) 외주용역 대금 지급시

건축사가 타건축사무소 또는 기술사사무소 등에 외주를 주고 그 대가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지급금액의 1.075%)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지급처	구분		계산서
	개 인	원천징수	
면세사업자	개 인	○	X
	법 인	X	계산서
과세사업자 (투시도, 모형도 설계 포함)		X	(간이)세금계산서

IV. 수입금액신고

1. 수입금액신고의 의의

수입금액신고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일반과세자가 분기별로 매출액을 신고하는 것과는 달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면세사업자(개인)가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기간동안에 당해 면세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을 익년 1월31일까지 신고함으로써 연간 수입금액을 확정하는 과정을 말한다.

건축사업은 세법상 면세사업자에 해당되므로 단독 또는 종합건축사무소 중에서 법인이 아닌 개인 사업자등록을 한 건축사는 신고의무가 있다.

2. 수입금액신고의 중요성

수입금액신고가 갖는 중요성은 그것이 당해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납부와 직접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개인사업자의 소득세 신고 및 납부는 매년 5월에 이루어지는데 현행 세무행정하에서 행정의 편의성과 효율성 때문에 업종별로 표준소득율을 설정해 놓고 수입금액 증가에 따라 시면신고세액이 늘어나게 되어있다.

최근 소득세 실지조사가 강화됨에 따라 향후 시면신고가 대부분이 될 수밖에 없는 실정에서 합리적인 수입금액신고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

3. 수입금액의 결정

신고된 수입금액은 정부에서 조사하여 결정하게 되어 있으며, 수입금액 결정과정 및 유형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수입금액 결정유형
무기장 사업자		추계조사결정(7)
가 장 사 업 자	기본수입금액(1) 이상신고자	형성 신고자(3) 일반 불성실신고자(6) 서면조사결정(8)
	기본수입금액 미만 신고자	
	기중관리대상자(5)	실지조사결정(9)
	조사대상자(4)	

(1) 기본수입금액

1993년에 건축사협회에 납부한 실적회비를 역산한 설계비 수입금액과 (공동)감리 수입금액을 합계한 금액이며 '93설계비 수입금액 산출을 위해 실적회비에 적용할 배수는 다음과 같다.

지 역	회비징수율	작용배수
전국공통	0.5%	200배
서울	0.4%	250배
부산	0.73%	133배
대구	0.7%	142배
인천	0.7%	142배
광주	0.5%	200배
대전	0.7%	142배
경기	0.4%	250배
강원	0.5%	200배
충북	0.5%	200배
충남	0.8%	125배
전북	1.0%	100배
전남	0.6%	166배
경북	0.4%	250배
경남	0.3%	333배
제주	1.25%	80배

(2) 불성실 신고자

기본수입금액에 미달되게 신고한 경우 및 기본수입금액 이상을 신고하더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된다.

- 인별 세부관리종합분석카드에 의해 선정된 기준수입금액에 현저하게 미달하여 신고한 경우
- 제출서류를 종합심사하여 객관적인 수입금액 탈루혐의가 발생한 경우
- 시설규모 등에 비추어 수입금액신고가 현저히 불성실한 경우

(3) 성실신고자

불성실신고의 유형에 해당되지 않는 건축사로서 수입금액이 신고대로 결정된다.

(4) 조사대상자

불성실신고자중에서 실지조사 결정대상으로 선정된 경우로서 조사대상자의 선정절차 및 방침은 다음과 같다.

- 건축사를 포함한 모든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업종별 불성실신고자 명단을 세무서별로 작성
- 업종별로 수입금액 탈루규모가 큰 사업자와 서비스업을 우선적으로 선정하되 해당 세무서 관내의 지역적 특성 및 업종분포를 감안하여 업종별로 조사대상자의 균형을 맞춤
- 세무서 소득세과 조사가능인원을 고려하여 적정수의 사업자를 조사대상자로 확정

(5) 기중관리대상자

조사대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불성실신고자중에서 적정수가 선정되며 기중관리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수입금액은 신고한대로 결정되나 다음과 같은 제약이 따른다.

- 고용, 시설규모, 임차 및 승용차 보유 현황 등의 기본사항을 확인 조사한다.
- 표본조사 및 기획조사 대상으로 우선 선정될 수 있다.

(6) 일반불성실신고자

조사대상자 및 기중관리대상자를 제외한 불성실신고자가 이에 해당된다.

(7) 추계조사결정

기장을 하지 않는 경우나 신고가 없을 경우의 결정방법으로서 실적회비 역산 등에 의해 수입금액을 결정한다.

(8) 서면조사결정

수입금액이 세무공무원의 장부대사와 증빙실사 없이 신고대로 결정된다.

(9) 실지조사결정

세무공무원이 사업장을 방문하여 장부 및 중방의 실질여부를 확인하여 수입금액을 결정한다.

4. 제출서류

1994년 1월31일까지 신고하여야 할 '93귀속 수입금액신고서 제출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부가가치세 면세업자 수입금액 신고서

수입금액신고의 기본내용을 기재

(2) 실적회비 납부확인서

대한건축사협회에서 확인하는 실적회비 납부에 관한 확인서를 첨부

(3) 수입금액 검토조서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등의 세무대리인이나 담당공무원이 확인검토한 분석서류

(4) 월별수입명세서

수입금액을 월별로 작성하여 첨부

5. 합리적인 수입금액 신고요령

(1) 무기장 사업자

기장을 하지 않고 수입금액을 신고하거나 또는 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실적회비를 역산하여 수입금액을 결정하므로 세부담이 과중될 수 있다. 따라서 반드시 기장을 하고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소비수준이 높은 사업자

- 별장, 콘도, 골프회원권 등의 고급재산 보유
- 고급승용차 보유
- 고급주택의 보유
- 해외여행의 빈도가 잦음
- 최근 5년간 부동산거래가 있음

건축사가 상기 어느 항목에 해당되는 경우 최대한 기본수입금액에 맞추어 성실히 신고하여야 한다. 만약 불성실하게 신고할 경우에는 수입금액 조사대상자로 선정되거나 기획조사 또는 표본조사를 받을 수 있으며, 소득세 신고시 할증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다.

(3) 소비수준이 높지 않은 사업자

건축사가 받고 있는 현실의 설계비는 기본수입금액보다 낮은 것이 일반적이며, 소비수준이 높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 받는대로 신고함으로써 부당한 세부담으로부터 탈피할 수 있어야 한다.

(4) 거래처가 대부분 법인인 경우

건축주가 대부분 법인인 건축사는 계산서가 대부분 발행되므로 발행된 계산서 위주로 신고하되 만약 설계기간 및 대금수취조건이 변경될 경우 계약서를 갱신해 놓는 것이 필요하다.

(5) 수입금액이 과다 발생한 경우

소득세의 세율체계는 누진세율이므로 일정수입금액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단일 세율 체계를 적용받는 법인사업자보다 세금면에서 불리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의 개인사업자는 법인전환을 신중히 검토하여야 한다.

법인으로 사업을 할 경우에는 세금측면의 외에도 다음과 장점을 갖는다.

- 거래처의 인식과 금융기관의 신용도가 증가되어 영업활동 및 자금조달 측면에서 유리하다.
- 동일한 수입금액의 경우에도 개인사업자는 대사업자로 분류되어 각종 세무조사와 간섭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으나 법인사업자는 상대적으로 대사업자로 분류되지 않을 수 있다.
- 법인은 실제 발생하는 수입금액을 회계처리하고 실적회비 역산에 의한 기본수입금액과는 무관하므로 수입금액이 과다신고되는 것을 피할 수 있다.

상기와 같은 장점이 있는 반면 법인은 자금인출의 제약이 따르고 경비지출사항에 대하여 근거와 증빙이 보다 명확해야 하는 등 신중한 회계처리가 수반되어야 하는 점이 불리한 점으로 지적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의사결정을 하여야 한다.

(6) 허가반려 설계를 한 경우

실적회비를 납부하고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반려된 경우에는 수입금액신고시 허가반려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수입금액이 과다결정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7) 연도이월 설계를 한 경우

당해년도에 실적회비를 납부했으나 설계기간이나 대금수취년도가 이월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중요성에 따라 수입금액신고시 당해년도에 해당하는 수입금액만을 신고하되 계약서사본 등을 첨부하여 제출함으로써 이를 사전에 입증할 필요가 있다.

V. 소득세 신고

1. 소득세 신고의 개요

(1) 소득의 종류

소득세는 개인의 소득을 원천으로 하여 소득의 크기에 따라 부과되는 인적조세로서 당해년도에 발생하는 소득을 익년 5월31일까지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

소득세의 신고대상소득은 다음과 같다.

가. 이자소득

은행등의 금융기관에서 수취한 이자소득은 이미 과세되었기에 신고할 필요가 없으며, 개인사채이자나 신고대상이나 현실적으로 신고되는 경우가 없는 것이다.

나. 배당소득

- 상장법인의 주식을 1%이상 소유하고 있는 경우 상장법인으로부터 수령한 배당금
- 비상장법인으로부터 수령한 배당금

다. 부동산 소득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발생하는 부동산 임대소득은 신고대상이 된다.

- 토지, 건물 및 상가의 임대
- 단독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및 주거용 시설이 포함된 근린상가들의 주택을 3채이상 소유하고 있 경우
- 2주택 모두가 일정기준(단독주택 : 건평35평, 공동주택 : 전용면적 25.7평)을 초과한 경우

라. 사업소득 : 사업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

- 설계, 감리 등의 건축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 건축사업 이외의 개인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마. 근로소득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않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며 사업자등록이 되어 사업소득이 있고 동일년도에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 동 근로소득은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신고되어야 한다.

바. 기타소득

연간 200만원 이상의 다음과 같은 소득(수입금액 기준 : 800만원)은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신고되어야 한다.

- 학교 등에서 강의를 하고 받은 근로소득 이외의 강사료
- TV 또는 라디오에 출연하고 받은 출연료
- 일시적인 저술활동 등으로 인하여 받은 원고료

시. 양도소득

당해년도에 토지, 건물, 상가 및 과세되는 주택 등을 양도하고 예정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익년 5월에 확정신고 및 세액납부를 하여야 한다.

(2) 과세방법

종합소득에 속하는 소득은 합산하여 과세하여 퇴직소득, 양도소득, 산림소득은 각각 개별적으로 분류되어 과세된다.

한편, 자산소득(이자, 배당, 부동산 소득)합산과세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는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중에 자산소득이 있을 경우에 동거가족중 자산소득이외의 종합소득금액이 제일 많은 가족을 주된소득자로 하여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개별 신고시 가산세 부과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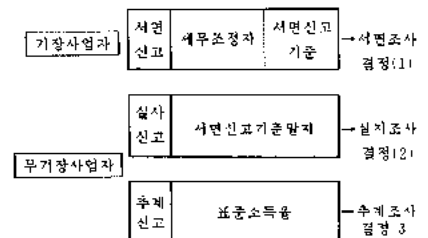
[예시]

부 : 부동산 임대 소득 3천만원
자 : 근로소득 1천만원
→이들이 아버지와 임대소득을 자신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함.

2. 소득세의 결정 및 납부

소득세는 신고에 의하여 결정되는 법인세와는 달리 사업자가 신고한 것을 바탕으로 정부에서 결정하여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에는 신고와 더불어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소득세의 7.5%에 해당하는 주민세는 5월에 납부하지 않고 추후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인별로 고지서가 오면 그때 납부한다.

현행 소득세법하에서의 소득세 결정유형은 다음과 같다.



(1) 서면조사결정

성실하게 기장하고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그 기재내용이 정당하다고 확인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는 경우에 개인별 신고소득율이 각자의 전년결정을 이상이고 업종별 신고기준을 이상이면 서면으로 조사하여 소득세를 결정한다.

그러나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일 때 혹은 시설규모, 종업원수 등에 비추어 기장의 내용이 허위임에 명백할 때에는 실지조사 또는 추계조사 결정을 할 수 있다.

(2) 실지조사결정

기장을 하였으나 서면신고기준 미달인 경우에는 장부와 증빙을 실지조사하여 소득세

를 결정한다.

(3) 추계조사결정

기장을 하지 아니한 사업자는 표준소득율에 의해 추계로 소득금액을 결정하고 납부세액을 계산할 때 기장세액공제의 배제, 가산세 부과 등의 불리한 점이 있다.

한편, 상기 결정방법 이외에 신고의 성실성 또는 행정적 편의에 의해 영세사업자나 계속 성실 기장사업자에게 적용하여 소득금액과 세액의 결정이 신고대로 결정되는 확정신고결정 유형이 있다.

3. 건축사 소득금액의 계산

기장을 하고 서면신고를 하기 위한 서면 신고기준율은 건축사의 경우 다음과 같다.

'92 귀속 소득세 신고		서면 신고 기준율(3)		
결정상황	결정소득율	서울	(주)	지방
○신규사업(1)	없음	65%	63%	60%
○추계신고결정				
○실사유예(2)	65%미만	65%	63%	60%
○실사신고결정				
○확정신고결정	60%~65%	65%	63%	60%
	85%이상	85%		
○서면신고결정	65%~85%	전년결정소득율(4)		

(주) 작합시, 안양시, 부천시, 수원시

이때 서면신고 기준소득금액은

수입금액×표준소득율×서면신고기준율

이 된다.

(1) 신규사업

93년중에 사업을 개시하였거나 92년중에 사업을 개시하였지만 92년 수입금액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93년에 수입금액이 발생한 경우

(2) 실사유예

92년 귀속 소득세를 93년 5월에 서면신고 기준이하로 신고하고 94년 5월까지 실지조사가 끝나지 않은 경우

(3) 서면신고기준율

$$\frac{93\text{년 서면신고기준소득금액}}{93\text{년 표준소득금액}} \times 100$$

(표준소득금액=수입금액×표준소득율)

(4) 전년결정소득율

$$\frac{92\text{년 결정소득금액}}{92\text{년 표준소득금액}} \times 100$$

4. 건축사 소득세 계산과정

구분	내역
①수입금액	94년 1월에 신고, 결정된 사업수입금액
②필요경비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제반비용
③소득금액	①-②, 서면신고의 경우는 전항 감소
④소득공제	
· 기초공제	60만원
· 배우자공제	54만원(배우자가 타소득이 없을 경우)
· 부양가족공제	1인당 48만원(1)
· 경로우대공제	1인당 48만원(2)
· 부녀자세대주공제	1인당 54만원(3)
⑤과세표준	③-④
⑥세율	5%~50%까지의 누진세율(4)
⑦산출세액	⑤×⑥
⑧기장세액공제	⑦×10%(5)
⑨결정세액	⑦×⑧
⑩가납부세액	중산여납세액 및 원천납부세액
⑪차감납부할세액	⑨-⑩, 94년 5월에 납부할 세액임
⑫주민세	⑨×7.5%, 추후 정부에서 결정 조치함

(1) 부양가족공제

- 1933년 12월31일 이전에 출생한 부(만 60세 이상)
- 1938년 12월31일 이전에 출생한 모(만 55세 이상)
- 1974년 1월1일 이후에 출생한 자녀, 형제자매(만 20세 미만)으로서 이자, 배당, 부동산소득

이외의 타소득이 없을 경우에 적용되며, 자녀는 2인을 한도로 한다.

(2) 경로우대공제

1928년 12월31일 이전에 출생한 본인, 배우자, 부모, 형제자매(만 65세 이상)로서 본인 이외의 경우에는 이자, 배당, 부동산소득 이외의 타소득이 없어야 한다.

(3) 부녀자 세대주 공제

배우자가 없는 부녀자가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에 공제받는다.

(4) 종합소득세 기본세율(속산)표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400만원 이하	5%	0
800만원 이하	10%	200,000
1,600만원 이하	20%	1,000,000
3,200만원 이하	30%	2,600,000
6,400만원 이하	40%	5,800,000
6,400만원 초과	50%	12,200,000

· 누진 공제액 : 소득세의 누진세율 효과금액을 차감함

· 산출세액 :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액

【예시】

- 과세표준 3,600만원의 경우
산출세액=3,600만원×40%-5,800,000
=8,600,000

5. 소득세액조건표

서면신고기준율 '93수입금액		40,000	60,000	80,000	100,000	125,000	150,000	175,000	200,000	225,000	250,000	275,000	300,000
65%	소 득 세	335	806	1,051	2,305	3,608	4,911	6,214	7,423	9,661	12,685	14,535	16,526
	수입금액대비세율	0.8%	1.3%	1.9%	2.3%	2.9%	3.3%	3.6%	4.0%	4.3%	5.1%	5.3%	5.5%
69%	소 득 세	368	935	1,672	2,625	4,009	5,332	6,934	8,778	10,623	13,353	15,992	17,951
	수입금액대비세율	0.9%	1.6%	2.1%	2.6%	3.2%	3.6%	4.0%	4.4%	4.7%	5.5%	5.8%	6.0%
73%	소 득 세	411	1,063	1,844	2,946	4,410	5,893	7,683	9,634	11,585	15,041	17,299	19,377
	수입금액대비세율	1.0%	1.8%	2.3%	2.9%	3.5%	3.9%	4.4%	4.8%	5.1%	6.0%	6.3%	6.5%
77%	소 득 세	454	1,191	2,032	3,267	4,811	6,396	8,431	10,489	12,547	16,229	18,515	21,053
	수입금액대비세율	1.1%	2.0%	2.5%	3.3%	3.8%	4.3%	4.8%	5.2%	5.6%	6.5%	6.7%	7.0%
81%	소 득 세	497	1,300	2,289	3,588	5,212	7,014	9,179	11,345	13,510	17,417	19,829	22,835
	수입금액대비세율	1.2%	2.2%	2.9%	3.6%	4.3%	4.7%	5.2%	5.7%	6.0%	7.0%	7.2%	7.6%
85%	소 득 세	539	1,446	2,545	3,909	5,613	7,656	9,926	12,200	14,472	18,605	21,461	24,617
	수입금액대비세율	1.3%	2.4%	3.2%	3.9%	4.5%	5.1%	5.7%	6.1%	6.4%	7.4%	7.8%	8.2%
89%	소 득 세	625	1,576	2,802	4,229	6,014	8,297	10,676	13,055	15,434	19,793	23,095	26,399
	수입금액대비세율	1.6%	2.6%	3.5%	4.2%	4.8%	5.5%	6.1%	6.5%	6.9%	7.9%	8.4%	8.8%
93%	소 득 세	710	1,705	3,059	4,550	6,453	8,939	11,425	13,911	16,397	21,276	24,728	28,181
	수입금액대비세율	1.8%	2.8%	3.8%	4.6%	5.2%	6.0%	6.5%	7.0%	7.3%	8.5%	9.0%	9.4%

※ 소득공제 : 2,100천원(배우자, 부양가족 2인)

서면신고기준율 = $\frac{92\text{년 결정소득금액}}{92\text{년 표준소득금액}} \times 100$

수입금액대비세율 = $\frac{\text{소득세}}{\text{수입금액}} \times 100$

다음호에 계속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중 개정령

(대통령령 제14,093호, 1993년 12월31일)

◇개정이유

건설기술관리법의 개정(1993. 6. 11. 공포, 법률제4562호)으로 부실공사로 인한 대형건설공사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품질관리 및 감리기능이 대폭 강화되어 종전의 시공감리가 책임감리로 일원화되고, 감리원의 권한도 강화됨에 따라 전면 책임감리대상공사의 범위 및 감리원의 업무범위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건설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건설기술관리에 관한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 가. 건설부장관은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건설기술연구·개발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을 실시하도록 함에 따라 그 기관 또는 단체의 범위를 정하고, 건설부장관은 위 기관 또는 단체중 연구·개발과제별로 주관연구기관을 선정하여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도록 함(령 제29조의2 내지 제29조의5).
- 나. 종전에는 총공사비가 10억이상인 토목공사·특수공사 또는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이상이거나 5층이상의 건축공사는 품질시험을 실시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품질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범위를 5억이상인 토목공사·특수공사나 연면적이 661제곱미터이상이인 건축공사로 확대하여 건설공사의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함(령 제41조).
- 다. 계약단위별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발주자 및 건설업자 등은 공사착공일부터 1년마다 1회이상 전문기관이 실시하는 안전점검을 받도록

의무화하여 건설공사의 안전을 도모하도록 함(령 제46조의2).

- 라.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과 지방공기업 등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로서 총계약공사비가 50억원이상인 토목공사나 건축공사 또는 바닥면적이 1만제곱미터이상인 건축공사는 감리전문회사에 의한 전면책임감리를 받도록 하고, 신공법 등 특수한 공법으로 시공되는 건설공사는 외국감리전문회사에 감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실공사의 방지 및 건설공사품질의 향상을 도모하도록 함(령 제50조 및 제50조의2).
- 마. 감리전문회사의 소속직원으로서 건축공사의 책임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감리원의 자격을 기술자격 및 학력·경력에 따라 특급·고급·중급·초급의 4계등급으로 구분하여 정하고, 감리원이 수행하는 업무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함(령 제51조의2·제52조 및 별표 3).
- 바. 감리전문회사를 종합감리전문회사·토목감리전문회사·건축감리전문회사로 구분하여 각각 등록기준을 정하고, 감리전문회사의 종류별로 책임감리를 할 수 있는 공사의 범위를 정함(령 제53조 및 제54조).
- 사. 감리전문회사가 부실한 감리를 하거나 기타법령에 위반한 경우 그에 대한 제재로서 등록취소·업무정지의 처분기준을 정하고, 외국감리전문회사가 부실한 감리를 한 경우에는 계약해제요구, 6월이내의 추징금 또는 감리원의 교체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함(령 제54조의3 내지 제54조의5).
- 아.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나 특정기업체가 발주하는 건설공사는 시공평가를 실시하여 우수건설업자로 지정하고 그를 지원하거나 우대하도록 하고 있는 바, 그 시공평가대상인 건설공사의 범위를 종전에는 공사계약금액이 10억원이상의 건설공사로 하였으나, 건설원가의 상승등으로 인하여 앞으로는 그 대상을 30억원이상의 건설공사로 상향조정함(령 제57조).

(법제처 제공)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호단서중 “이에 수반되는 구조물”을 “전선로(전선을 지지하거나 보장하는 지중터널에 한한다)”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건설기술자의 범위) 법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별표 1에서 정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의2(책임감리의 구분) 법 제2조제6호에서 “전면책임감리”라 함은 계약단위별 공사전부에 대하여 책임감리를 하는 것을 말하고, “부분책임감리”라 함은 계약단위별 공사의 일부에 대하여 책임감리를 하는 것을 말한다.

제6조제1항중 “기술능력등”을 “기술능력 및 취업현황등”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건설기술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를 “건설기술자 또는 건설기술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사용자단체를 포함한다)”로 하며, 동조제3항중 “경력·기술능력등의 확인”을 “경력·기술능력 및 취업현황등의 확인”으로 한다. 제7조 및 제8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건설기술자의 교육훈련) ①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는 건설기술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만, 건설업법·산업안전보건법 기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와 유사한 내용의 교육훈련을 받은 자를 제외한다.

1. 감리전문회사에 근무하는 건설기술자
2.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자
3. 건설업법에 의한 건설업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자

4.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시험대행자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는 건설기술자

②제1항의 교육훈련의 기간은 1주이상으로 하되, 건설기술자의 등급별로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기간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의 내용은 건설기술자의 종류 및 등급을 기준으로 훈련과정별로 정하되, 교과목에는 이론과목 및 실기과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8조(건설기술자의 관리 및 교육훈련의 대행) 건설부장관은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의 관리업무 및 교육훈련업무를 건설기술자단체 기타 건설기술과 관련된 비영리법인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제9항을 삭제한다.

제10조제1항중 “150인 이내의 위원”을 “200인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 제3호를 삭제한다.

1. 제39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되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당해공사의 기본설계를 완료한때(중앙위원회가 기본설계의 심의시 실시설계에 대하여도 심의가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건설공사와 기본설계를 하지 아니하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실시설계를 완료한 때)

2. 제39조제1항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되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당해공사의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를 완료한 때

제14조 제2항 본문중 “제6호·제7호 및 제9호”를 “제6호 및 제7호”로 한다.

제19조제1항중 “120인”을 “150인”으로 하고, 동조제 3항제2호중 “예산회계법시행령 제 95조의 3제3항”을 “예산회계법시행령 제 112조제5항”으로 한다.

제21조본문중 “법 제10조제1항제2호”를 “법 제10조 제1항제3호”로 하고, 동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사업자단체 및 주택사업공제조합

제27조제1항본문중 “다음 각호의 자료를 건설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를 “다음 각호의 자료를 발행일 또는 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건설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2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건설부장관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원으로 하여금 건설기술정보에 관한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하게 하고, 그 자료·정보등을 수요자가 이용하게 할 수 있다.

1. 건설기술정보의 유통망 구축
2. 건설기술정보의 표준화
3. 건설기술정보의 전산화 및 전산자료제작
4. 건설기술정보의 수집·관리 및 보급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업무를 위한 건설관련기관 또는 단체와의 공동사업

제29조의2 내지 제29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2(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의 협약 체결대상기관등) ①법 제1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의 실시를 위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공립연구기관
2. 연구원

3.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

4. 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5.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건설기술분야의 법인인 연구기관

6. 기술개발촉진법 제8조의3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7. 건설부령이 정하는 기관·협회 등의 부설연구소

②건설부장관은 건설기술에 관한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할 때에는 제1항각호의 기관 또는 단체중 당해 분야의 연구를 주관하여 연구·개발할 기관 또는 단체(이하 “주관연구기관”이라 한다)와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개발사업을 행함에 있어서 연구·개발사업비에 법 제1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개발비(현물을 포함한다)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건설기술연구·개발비용을 부담하는 자와 미리 출자계약 또는 연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구의 과제·범위 및 수행방법
2. 연구책임자의 설명
3. 연구비 및 그 지급방법
4. 연구결과의 보고 및 활용
5. 연구성과의 활용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
6. 협약의 변경 및 해약
7. 협약위반에 대한 조치
8. 기타 연구·개발에 수반되는 사항

⑤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구과제의 일부를 제1항각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29조의3(출연금의 지급) 법 제1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은 분할하여 지급한다. 다만, 연구과제의 규모·착수시기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제29조의4(출연금등의 관리 및 사용) ①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법 제1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의 경비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비를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비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1. 연구요원의 인건비

2. 외국전문가의 초청 및 연구요원의 교육훈련에 따른 경비

3. 연구시설(기자재를 포함한다)의 구입·설치·임차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4. 재료구입비

5. 기술도입비 및 기술정보활동비

6. 국외연구소의 설치 및 운영비

7. 개발보전비

8. 과제개발·기술지도등의 연구·개발에 수반되는 경비

③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비의 매년도 사용실적을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연도 3월31일까지 건설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의한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계획과 그 집행실적과의 대비표

2. 회계감사를 한 공인회계사의 의견서(당해연도의 연구과제가 5건이상이거나 정부출연연구비가 2억원을 초과하는 연구기관의 경우에 한한다). 다만, 국·공립연구기관의 경우에는 감독관청의 의견서로, 대학 및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총장 또는 학장의 의견서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④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건설업자등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의 연구성과를 생산과정에 이용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이용으로 원가절감·품질향상등의 효과를 얻은 때에는 그 이용자로부터 제29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의 내용에 따른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⑤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료를 징수할 때에는 그 징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건설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하며, 징수된 기술료는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원의 연구능력향상, 연구·개발 및 기초연구를 위한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비의 조성등의 목적에 사용하여야 하고, 당해연도의 사용실적을 다음 연도의 3월31일까지 건설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9조의5(전문기관의 업무) 법 제1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전문기관은 건설부장관의 권한중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건설기술연구과제의 선정
2.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협약체결
3. 제29조의3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의 지급·관리
4. 연구성과의 이용·관리

5. 기타 건설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0조의 제목중 “(건설기술개발투자의 권고)”를 “(건설기술개발투자등의 권고)”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중 “건설업자에 대하여 매년 전년도 건설공사실적의 1만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건설업자 및 건설기술용역업자에 대하여 매년 전년도건설공사실적 또는 건설기술용역실적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①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기술개발투자등을 권고할 수 있는 건설업자 및 건설기술용역업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의 건설공사실적 또는 건설기술용역실적이 있는 자로서 건설부장관이 지정한 자로 한다.

제31조의 제목 “(기술개발투자계획의 제출)”을 “(건설기술개발투자등의 계획의 제출)”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중 “기술개발투자계획이 건설기술개발에”를 “기술개발투자등의 계획이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연구·개발계획에”로 하고 동조제3항중 “기술개발투자등”을 “건설기술개발투자등”으로 한다.

①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권고에 따라 건설기술개발투자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기술개발투자등의 계획을 작성하여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제1항본문중 “새로운 건설기술(이하 “신기술”이라 한다)이 고시를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신기술고시신청서에”를 “신기술의 지정을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신기술지정신청서에”로 하고, 동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신기술의 내용 및 범위

8. 기타 신기술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33조의 제목 “(신기술의 결정·고시)”를 “(신기술의 지정·고시)”로 하고, 동조제1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3항을 삭제하고, 동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건설부장관은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지정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90일 이내에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기술의 지정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건설부장관은 신기술을 심의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중앙위원회의 심의전에 연구원 또는 건설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신기술

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게 하거나, 신기술 지정신청인으로 하여금 전문기관에 의한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을 받게 한 후 그 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⑥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의 지정을 받은 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기술의 활용실적을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제1항본문중 “법 제18조제2항”을 “법 제18조 제3항”으로 하고, 동항제1호중 “신기술의 개발 또는 개량에 소요된 비용의 5퍼센트”를 신기술이 적용되는 공사의 해당공종 순공사비의 3퍼센트”로 하며, 동조제2항중 “1년이상 3년이하”를 “2년이상 5년이하”로 한다.

제3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2(신기술지정의 취소공고) 건설부장관은 법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고,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6조단서를 삭제한다.

제37조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의 2분의 1이상을 출자한 기업체의 장은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용역사업에 관한 집행계획을 매년 2월말까지 수립하여야 하며, 집행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제38조제1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국가·지방자치단체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의 2분의 1이상을 출자한 기업체의 장은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용역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건설기술용역사업에 참여하는 기술자의 능력, 용역사업의 수행실적, 신용도 기타 건설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국가·지방자치단체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의 2분의 1이상을 출자한 기업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심의하게 할 수 있다.

제39조제1항제1호중 “총공사비”를 “총공사비(관급자제비를 포함한 총사업비에서 토지등의 취득·사용에 따른 보상비를 제외한 공사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고, 동항제3호중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을 “지방자치단체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의 2분의 1이상을 출자한 기업체”로 하며, 동

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5호를 삭제한다.

4. 총공사비가 200억원이상인 공사비로서 당해 건설공사를 승인인가 또는 허가등을 하는 관서(이하 “허가관서”라 한다)의 장이 요청하는 공사

제39조제1항제6호본문중 “공사발주관서의 장”을 “공사를 발주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의 2분의 1이상을 출자한 기업체(이하 “공사발주관서”라 한다)의 장”으로 하고, 동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기본적인 계획 또는 공법이 변경되는 공사

제39조제2항제1호중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의 2분의 1이상을 출자한 기업체”로, “10억원이상”을 “30억원이상”으로 하고, 동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총공사비가 10억원이상 200억원미만인 건설공사로서 공사발주관서의 장 또는 허가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공사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 기본적인 계획 또는 공법이 변경되는 공사로서 공사발주관서의 장 또는 허가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공사 제40조제4항중 “실시되었는 지의”를 “실시되는 지의”로 한다.

제40조제4항중 “실시되었는 지의”를 “실시되는 지의”로 한다.

제41조제1항본문중 “건설업자”를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건설업자등”이라 한다)”로 하고, 동항제1호 및 제3호중 “10억원이상”을 각각 “5억원이상”으로 하며, 동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2. 연면적이 661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제42조제1항중 “공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공업규격”을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건설업자가”를 각각 “건설업자등”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공업표준화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공업규격표시품”을 “산업표준화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표시품”으로, “공산품품질관리법 제7조제1항”을 “공산품품질관리법 제10조제1항”으로, “기타 관계법령

의 규정"을 "주택건설촉진법 제43조 기타 관계법령"으로 하고, 동조제 4항 중 "건설업자"를 "건설업자등"으로 한다.

제43조제1항중 "건설업자"를 "건설업자등"으로, "공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공업규격"을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으로, "공사감리자"를 "감리원"으로, "공사감리자"를 "감리원"으로 하고, 동조제 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3항(중전의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4항(중전의 제3항)중 "건설업자"를 "건설업자등"으로 한다.

②건설업자등은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관리시험계획서를 발주자 또는 허가판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42조제3항의 규정은 관리시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하되, 건설업자등은 건설공사의 재료가 보관·운반등으로 인하여 품질의 변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시험대행기관(이하 "품질시험대행기관"이라 한다)에 품질의 적합성 여부에 대한 시험을 의뢰할 수 있으며, 그 시험실시에 따른 비용은 당해 재료를 생산(채취를 포함한다) 또는 수입·판매하는 자(이하 "생산자등"이라 한다)가 이를 부담한다. 다만, 품질변화의 원인이 건설업자등의 취급부주의로 인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건설업자등이 그 비용을 부담한다.

제44조제1항본문중 "건설업자"를 "건설업자등"으로 하고, 동항단서중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을 "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및 제49조의2 각호의 기관"으로 하며, 동조제2항중 "공사감리자와 건설업자"를 "감리원과 건설업자등"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건설업자에게"를 "건설업자등에게"로, "건설업자"를 "건설업자등"으로 한다.

제45조제1항중 "건설업자"를 "건설업자등"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건설업자"를 "건설업자등"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건설업자"를 "건설업자등"으로, "하자보수의무기간이 끝날 때까지"를 "완공일"로부터 10년간"으로 한다.

제46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4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품질시험의 비용) ①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시험대상인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품질시험의 비용을 당해 건설공사의 공사비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건설업자등은 법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시험대행기관에 품질시험의 실시를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당해 건설공사의 품질시험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품질시험비용의 산출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부령으로 정한다.

제46조의2(건설공사의 안전점검) ①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안전점검은 건설공사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점검하는 것으로서 발주자 및 건설업자등이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자체안전점검과 건설부령이 정하는 안전점검전문기관(이하 "건설안전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전문안전점검으로 구분한다.

1. 공사목적물의 안전성
2. 공사시공도면 및 공법선택의 적합성
3. 공사수행의 안정성
4. 인접된 건축물·구조물의 안전성

②발주자 및 건설업자등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자체안전점검은 건설공사의 공사가간 동안 매일 실시한다.
2. 계약단위별 총공사비(관급자계비를 포함한 총사업비에서 토지등의 취득사용에 따른 보상비를 제외한 공사비를 말하되, 장기계속공사계약인 경우에는 부기된 총공사금액을 말하며, 이하 "계약총공사비"라 한다)가 100억원이 상인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공사착공일로부터 1년마다 1회이상 전문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는 전문안전점검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 가. 발주자가 당해 공사의 안전에 대한 위험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공사
- 나.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으로부터 안전진단을 받은 공사

3. 제2호의 경우에 해해발생률이 높은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전문안전점검회수를 증가시킬 수 있으며, 계약총공사비가 100억원미만인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안전에 대한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전문안전점검을 실시한다.

③발주자 및 건설업자등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안전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당해 건설안전 전문기관에 점검비용을 지급하고, 이를 당해 공사의 공사비에 계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비용의 사정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의한다.

④발주자 및 건설업자등은 안전점검의 결과와 조치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당해 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제47조의 제목“(품질시험확인대상건설공사의 범위등)”을 “(품질시험의 적정성 확인대상건설공사의 범위등)”으로 한다.

제47조의2 내지 제47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7조의2(품질시험의 적정성확인기관등) ①법 제24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의 장”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의 장을 말한다.

1. 건설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 정부투자기관
2.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어촌진흥공사
3. 한국전력공사법에 의한 한국전력공사
4. 한국가스공사법에 의한 한국가스공사
5. 한국전기통신공사법에 의한 한국전기통신공사

②건설부장관은 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품질시험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확인의 결과 건설공사의 품질이 기준에 맞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건설공사를 허가하였거나 발주를 한 행정기관의 장 또는 제1항의 정부투자기관의 장에 대하여 당해 공사를 품질기준에 맞도록 시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 또는 정부투자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제47조의3(품질시험대상 건설자재) 법 제24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재”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재를 말한다. 다만, 산업표준화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표시품인 자재와 주택건설촉진법 제43조 및 공산품품질관리법 제10조제1항의 규정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인정을 받은 자재를 제외한다.

1. 레디믹스트콘크리트
2. 아스팔트콘크리트
3. 바다모래
4. 철강계로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것
5. 운반과정 및 시간의 경과등에 따라 품질변화가 예상되는 자재로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것

제47조의4(건설자재품질시험의 종류) ①법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품질시험의 종류 및 방법은 한국산업규격에 준하여 정

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건설부령으로 정한다.

②법 제2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산자등은 품질시험시설의 부족등으로 인하여 직접 품질시험을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품질시험대상기관에 품질시험의 실시를 의뢰할 수 있다.

③생산자등은 제47조의3의 규정에 의한 건설자재를 발주자 또는 건설업자등에게 납품하는 경우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표준납품서를 제출해야 한다.

④제47조의3의 규정에 의한 건설자재를 주문한 자는 표준납품서에 품질시험의 결과가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나 그 건설자재가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건설자재의 인수를 거부할 수 있다.

제48조의 제목중 “국·공립시험기관의 범위”를 “국·공립시험기관의 범위등”으로 하고, 동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공업진흥청 국립공업기술원 및 지방공업기술원

②품질시험대행기관은 품질시험에 사용되는 장비·기술인력의 현황 및 시험실 시종목과 전년도 품질시험대행실적을 매년 1월31일까지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건설부장관은 품질시험대상기관이 대행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험장비·기술인력의 보완권고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장의 제목중 “시공감리등”을 “책임감리등”으로 한다.

제7장에 제4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9조의2(책임감리대상기관의 범위) 법 제27조제1항 본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3.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축산업협동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임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임업협동조합
4. 토지수용법에 의한 기업자

제50조의 제목 “(감리대상 건설공사의 범위)”를 “(책임감리대상 건설공사의 범

위)”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27조제1항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전문회사로 하여금 책임감리를 하게 하여야 할 건설공사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면책임감리대상인 건설공사는 다음의 공사로 한다.

가. 계약총공사비가 50억원이상인 토목공사

나. 계약총공사비가 50억원이상이거나 건축물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이상인 건축공사

다. 가목 및 나목외의 건설공사로서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의 발주기관(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전면책임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2. 부분책임감리대상인 건설공사는 제1호의 공사외의 건설공사로서 교량·터널·배수문 기타 건설부령이 정하는 주요구조물을 건설하는 건설공사중 발주기관의 장이 부분책임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로 한다.

제50조제2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4호 및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2.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한 농지개량사업에 따른 공사 및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농외소득원개발사업과 농어촌정주생활관사업에 따른 공사

3. 제47조의2제1항각호의 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가 시행하는 공사로서 당해 기관 또는 공사의 소속 직원이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의 배치기준에 따라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공사

제5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0조의2(외국감리전문회사에 의한 감리)

①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감리전문회사로 하여금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는 건설공사는 다음 각호의 공사로서 발주기관의 장이 외국감리전문회사로 하여금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공사로 한다.

1. 신품법등 특수한 공법으로 시공하는 공사로서 국내 감리전문회사가 감리하기 곤란한 경우

2. 예정가격의 100분의 85미만의 금액으로 낙찰된 경우

②발주기관의 장은 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감리를 외국감리전문회사에 의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외국감리용역발주신청서에 주무부장관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건설부장관은 제2항의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외국감리전문회사에 의한 감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당해 건설공사에 대한 국내감리전문회사에 의한 감리수행능력
2. 감리의 내용 및 수행방법의 타당성
3. 감리기술능력 및 인원의 타당성
4. 기타 감리수행능력에 관한 사항으로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사항

제51조제1항중 “공사발주관서”를 “발주기관”으로, “시공감리 또는 전면책임감리”를 “책임감리”로 하고, 동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여 동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발주기관의 장은 감리전문회사를 선정함에 있어서 건설공사의 규모 및 구조물의 특수성등을 감안하여 감리원으로 배치될 자의 자격의 종류, 기술수준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발주기관의 장은 건설공사의 책임감리업무를 적절히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의 용역기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리전문회사로 하여금 외국의 용역업자를 감리보조자로 선정하여 감리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5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1조2(감리원의 자격등) ①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의 자격은 별표 3과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중 학력경력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건설부장관은 연구원으로 하여금 감리원에 대한 수급 및 교육계획을 수립하게 할 수 있다.

제5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2조(감리원의 업무범위 및 배치기준등)

①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공계획의 검토
2. 공정표의 검토
3. 시공자가 작성한 시공도면의 검토
4. 시공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행하여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5. 구조물 규격에 관한 검토·확인
6. 사용자재의 적합성 검토·확인
7. 품질관리시험·계획실시지도 및 시험결과에 관한 검토·확인
8. 재해예방대책 및 안전관리의 확인

9.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확인
10. 공사진척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사
11. 완공도면의 검토 및 준공검사
12.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
13. 기타 공사의 질적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감리원의 배치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③공사발주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치된 감리원이 당해 건설공사의 감리업무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감리전문회사에 감리원의 교체요구를 할 수 있으며, 감리전문회사가 스스로 감리원을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발주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감리전문회사는 감리업무에 종사하는 감리원이 감리업무의 수행기간중 이 영에 의한 교육이나 민방위기본법 또는 향도예비군설치법에 의한 교육을 받는 경우에는 감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장은 감리원이 교육을 받는 기간에 대한 감리대가를 지불하여야 한다.

⑤발주기관의 장은 소속직원을 지정하여 공사수행에 따른 업무연락 및 문제점의 파악, 민원해결, 용지보상지원업무 기타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⑥감리원의 배치방법, 경력확인 및 관리, 공사현장의 상주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부령으로 정한다.

제5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2조의2(감리대가의 기준공고) 건설부장관은 법 제2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감리대가기준을 인가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53조 및 제5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53조(감리전문회사의 종류 및 업무범위)

①법 제28조제1항본문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는 종합감리를 전문으로 하는 종합감리전문회사, 토목감리를 전문으로 하는 토목감리전문회사 및 건축감리를 전문으로 하는 건축감리전문회사로 구분한다.

②종합감리전문회사는 건설업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일반공사·특수공사 및 전문공사에 대한 책임감리를 할 수 있다.

③토목감리전문회사는 건설업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일반공사중 주된 공종이 토목공사인 건설공사, 특수공사(철강재로 설치하는 건축공사를 제외한다) 및 해당전문공사에 대한 책임감리

를 할 수 있다.

④건축감리전문회사는 건설업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일반공사중 주된 공종이 건축공사인 건설공사, 특수공사중 철강재로 설치하는 건축공사 및 해당전문공사에 대한 책임감리를 할 수 있다.

제54조(감리전문회사의 등록기준) ①제53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의 종류별 등록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감리전문회사와 토목감리전문회사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건설분야에 20년이상 종사한 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사를, 건축감리전문회사는 건축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를 각각 대표자로 하여야 한다.

제54조의2 내지 제54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4조의2(감리원의 공사중지명령등) ①발주기관의 장은 법 제28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원으로부터 제시공·공사중지명령등의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한 후 시정여부의 확인, 공사재개지시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발주기관의 장은 법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의 공사중지명령등의 조치를 이유로 감리원의 변경, 현상상주의 거부, 감리대가지급의 거부·지체 기타 감리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4조의3(외국감리전문회사의 감리업무 수행제한) ①건설부장관은 법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외국감리전문회사에 대하여 책임감리업무수행을 제한하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당해 건설공사의 발주기관에 대한 감리용역계약의 해제요구
2.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국내에서 발주되는 건설공사감리용역의 수주제한
3. 감리원의 교체요구

제54조의4(감리전문회사의 처분기준)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에 대한 등록취소등의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54조의5(등록취소등의 공고) 건설부장관은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전문회사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한 경우 또는 외국감리전문회사에 대하여 책임감리업무수행을 제한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고, 당해 감리전문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5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건설부장관은 건설기술관련단체·연구기관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건설부

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기준을 당해 단체 또는 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유상보급하게 할 수 있다.

제5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6조(건설공사감독자의 업무) ①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의 감독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건설공사가 설계도서·시방서등에 적합하게 시공되고 있는지 여부를 감독하고, 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시공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것
2. 공사계획을 검토하고, 공사시공상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그 대책을 강구할 것
3. 품질시험 및 안전관리업무를 지도·감독할 것
4. 공사현장에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응급조치를 하고, 그 경위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할 것
5. 시공자가 제출하는 서류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할 것
6. 매월공사진행상황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할 것
7. 공사시행과정에서 설계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현장실정에 맞도록 설계변경할 것
8. 건설업법 제22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하도급하는지 여부 및 동법 제2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의무이행 여부를 확인할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 감독자는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전면책임감리대상건설공사외의 건설공사에 대하여 감독업무를 수행한다.

③제1항각호의 공사감독자의 업무에 관한 세부내용은 건설부령으로 정한다.

제57조제1항본문중 “10억원이상”을 “30억원이상”으로 하고, 동항단서중 “10억원미만”을 “30억원미만”으로 한다.

제59조제1항단서중 “예산회계법시행령 제89조”를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30조”로 한다.

제59조의2 및 제5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9조의2(정관의 기재사항) 법 제36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회의 정관에 기재할 사항은 다음 각호의 사항으로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회원의 가입과 탈퇴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6. 회비에 관한 사항
7. 총회에 관한 사항
8. 자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해산 및 잔여재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
11.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12. 회원의 교육 및 감리기술에 관한 사항
13. 기타 필요한 사항

제50조의3(의견진술의 절차) ①건설부장관은 법 제3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견진술지정일 7일전에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은 지정된 날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은 그 요지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출석자 본인으로 하여금 이를 확인하게 한 후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는 정당한 사유없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의견진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별표 2]의 품질시험대행자의 지정기준표중 종합분야의 기술인력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품질시험기술사 1인이상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설재료시험기사 1인이상
3.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설재료시험기능사 1인이상

[별표 2]의 품질시험대행자의 지정기준표중 토목분야의 기술인력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토목품질시험기술사 1인이상과 건축품질시험기술사 1인이상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설재료시험기사 2인이상과 화공기사 1인이상
3.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설재료시험기능사 2인이상

[별표 2]의 품질시험대행자의 지정기준표중 건축분야의 기술인력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토목품질시험기술사 1인이상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설재료시험기사 1인이상
3.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설재료시험기능사 1인이상

[별표 2]의 비교란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위표의 기술인력중 토목품질시험기술사·건축품질시험기술사는 국·공립시험기관(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국·공립시험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10년이상 품질시험업무를 담당한 자로, 건설재료시험기사 및 화공기사는 국·공립시험기관에서 5년이상 품질시험업무를 담당한 자로, 건설재료시험기능사는 국·공립시험기관에서 3년이상 품질시험업무를 담당한 자로 각각 갈음할 수 있음

[별표 3]을 [별표 5]로 하여 동표를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3]·[별표 4] 및 [별표 6]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①(시행일)이 영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감리전문회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감리전문회사중 토목전문책임감리전문회사 및 건축전문책임감리전문회사는 제54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토목감리전문회사 및 건축감리전문회사로, 토목사공감리전문회사 및 건축사공감리전문회사는 제54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토목감리전문회사 및 건축감리전문회사로 본다. 다만, 토목사공감리전문회사 및 건축사공감리전문회사의 경우에는 이 영 시행후 2월 이내에 제54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③(건설공사감리계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책임감리계약 또는 시공감리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시행중인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공사발주기관의 장과 감리전문회사가 합의하여 종전의 감리용역계약을 이 영에 의한 책임감리용역계약으로 변경·체결할 수 있다.

④(품질시험대행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품질시험대행자는 이 영에 의하여 지정된 품질시험대행자로 본다. 다만, 당해 품질시험대행자는 이 영 시행당시 그가 보유한 기술인력중 다음표의 개정

전의 기술자격자에게 해당하는 자를 이 영 시행후 다른 자로 교체하는 경우에는 다음 표의 개정된 기술자격을 가진 자로 교체하여야 한다.

개정된 기술자격자	개정된 기술자격자
토목기술사	토목품질시험기술사
건축시공기술사, 건축사	건축품질시험기술사
건축기사	건설재료시험기사

[별표 3]

감리원의 자격(제51조의2제 1항 관련)

구분	기술자격자	학력·경력자
감리원 의등급		
특 급 감리원	기사1급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10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별표 1의 기술사 또는 건축사	박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3년이상, 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9년이상, 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12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고 급 감리원	기사1급자격을 가진 자로서 7년이상, 기사2급자격을 가진 자로서 10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박사학위를 가진 자, 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6년이상, 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9년이상,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12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중 급 감리원	기사1급자격을 가진 자로서 4년이상, 기사2급자격을 가진 자로서 7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3년이상, 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6년이상,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9년이상,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12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초 급 감리원	기사2급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2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또는 기사1급자격을 가진 자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3년이상,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6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또는 학사학위를 가진 자

※ 비교

1. 위 표의 기술자격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기술분야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2. 위 표의 학력·경력자는 교육법에 의한 해당학교에서 건설기술과 관련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를 말한다.
3. 위 표에서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라 함은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의 임직원,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의 임직원 또는 감리전문회사·건설업체에서 위 표에서 정한 기간 이상 해당분야의 건설공사의 계획·설계·시공·검사·공사감독 또는 감리업무를 수행한 자를 말한다.

[별표 4]

감리원의 배치기준(제52조제2항 관련)

구 분	책임감리원	보조감리원
총공사비 2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특급감리원	초급감리원 이상의 감리원
총공사비 5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	고급감리원 이상의 감리원	초급감리원 이상의 감리원
총공사비 5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	중급감리원 이상의 감리원	초급감리원 이상의 감리원

※ 비고

1. 책임감리원이라 함은 감리전문회사를 대표하여 현장에 상주하면서 당해 공사 전반에 관한 감리업무를 책임지는 자를 말한다.
2. 보조감리원이라 함은 책임감리원을 보좌하는 감리원을 말한다.
3. 감리원의 배치인원의 수는 법 제27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감리대가기준에 정한 표준적인 수를 원칙으로 한다.
4. 발주기관의 장은 공사의 성질상 특별한 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리원의 배치기준을 위표의 기준보다 강화하여 감리하게 할 수 있다.
5.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전문회사는 책임감리를 실시함에 있어서 당해 공사의 규모 및 공종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감리원을 감리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6. 공사발주기관의 장은 공사에정가격의 85퍼센트미만으로 낙찰된 공사로서 부실시공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설공사감리대가기준에 정한 표준적인 감리원의 수보다 높여 배치하게 할 수 있다.

[별표 5]

감리전문회사 등록기준(제54조제1항 관련)

종류	감 리 원	자본금	사 설	장 비
종합 감리 전문 회사	1. 특급감리원 10인 이상. 이 경우 감리원중 3인이상이 토목분야기술사, 2인이상이 건축사 또는 건축분야 기술사의 자격을 가지고 있을 것 2. 초급감리원 40인 이상. 이 경우 감리원중 20인이상이 기사1급이상의 자격을 가지고 있을 것	10억원 이상	사무실(전용면적) 300제곱미터 이상	건설부령이 정하는 시험장비를 갖추것
토목 감리 전문 회사	1. 토목분야 특급감리원 5인이상. 이 경우 감리원중 3인이상이 토목분야 기술사의 자격을 가지고 있을 것 2. 초급감리원 25인 이상. 이 경우 감리원중 10인이상이 기사1급이상의 자격을 가지고 있을 것	3억원 이상	사무실(전용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건축 감리 전문 회사	1. 특급감리원 5인 이상. 이 경우 감리원중 3인이상이 건축사 또는 건축분야 기술사(건축사 및 건축분야 기술사 각 1인이상)자격을 가지고 있을 것 2. 초급감리원 25인 이상. 이 경우 감리원중 10인이상이 기사1급이상의 자격을 가지고 있을 것	3억원 이상	사무실(전용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 비고

1.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개설자가 감리전문회사로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이미 보유하고 있는

기술인력·자본금·시설 및 장비는 위 기준에 포함된다.

2. 외국의 용역업자와 합작투자한 감리전문회사의 경우에는 감리원의 일부를 외국에서 건설기술과 관련한 소정의 학력을 갖춘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당해 분야에서 별표 3에서 정하는 기간이상 건설공사의 설계·시공·검사·공사감독 또는 감리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외국인으로 대체할 수 있다.
3. 위 표에서 기술사·기사1급의 기술자격자는 별표 1에 정한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별표 6]

감리전문회사에 대한 등록취소등의 행정처분 기준(제54조의4 관련)

위 반 사 항	처분기준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때	등록취소
2. 업무정지기간중에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책임감리를 한 때	등록취소
3. 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등록취소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책임감리를 부실하게 하거나 건설공사의 안전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그 업무를 함으로써 당해 건설공사가 부실하게 되었거나 공중에 위해를 끼친 때	6월이내의 업무정지
5.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의 책임감리를 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대여한 때	등록취소
6. 2년이상 책임감리의 실적이 없을 때 가. 2년이상 3년미만인 경우 나. 3년이상인 경우	3월이내의 업무정지 등록취소
7. 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에 불응한 때 가. 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되어 시정명령을 받은 때 나.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관계자료의 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때 다. 정당한 사유없이 책임감리의 업무를 수행을 위한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때 라.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책임감리를 부실하게 함으로써 공중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시정명령을 받은 때	3월이내의 업무정지 3월이내의 업무정지 6월이내의 업무정지 1월이내의 업무정지

주택건설촉진법중 개정법률

(법률 제4,723호, 1994년 1월7일)

◇개정이유

공동주택에 대한 설계·시공·감리 및 하자보수책임을 강화하여 부실사공으로 인한 하자발생을 방지하도록 하고,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사전결정제도를 도입하여 사업시행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등 공동주택에 관한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주택건설사업의 사업계획승인을 받기 전에 당해 사업계획의 시행이 법령에 적합한지의 여부에 대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전결정제도를 도입하고, 사전결정을 받으면 토지형질변경허가·산림훼손허가 또는 농지전용허가등의 관련 법령에 의한 허가등도 받은 것으로 의제함과 아울러 건설부장관은 사전

결정의 내용과 다르게 사업승인을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민원을 해소하도록 함(법 제32조의4).

나. 공동주택은 표준설계도서에서 따라 설계 및 시공하도록 하고, 공동주택실계의 사업계획승인시 감리자를 지정하여 공사를 감리하도록 함으로써 공동주택의 부실시공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함.(법 제33조의5 및 제33조의6)

다. 현재는 공동주택과 부대시공·복리시설을 개축·훼손 또는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도지사 등의 허가를 받도록 하되, 단지안의 주차장 확장등 주민의 사익을 위한 경미한 사항의 용도변경등은 신고만으로 할 수 있도록 완화함.(법 제38조제2항)

라. 공동주택의 주요구조부에 대한 하자보수책임기간을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주택의 내력 구조부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실시공등을 한 설계자·시공자 및 사업주체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함(법 제38조제16항·제17항 및 제50조의2).

마. 주택관리업을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함(법 제39조)

주택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제제7항중 “국민주택사업주체는”을 “건설부장관은”으로, “조사를 하여야 한다”를 “조사를 할 수 있다”로 한다.

제6조제2항 및 제3항을 삭제한다.

제6조의 2제4호중 “형법 제87조 내지 제104조의2”를 “형법 제87조 내지 제14조”로 한다.

제7조제1항제7호중 “등록증등”을 “등록증”으로 한다.

제9조제1항에 제2호의2·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6월이상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때

5. 제4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지정서의 대여등을 한 때

6. 어음이나 수표를 발행하여 예금부족·거래정지처분등으로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

제11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1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면허·허가·인가를 받거나 등기·등록을 신청하는 자

2.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과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

3. 이 법에 의하여 건설·공급하는 주택을 공급받는 자

제3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2조(주택의 공급) 사업주체와 주택(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건설부분이 정하는 주택의 공급조건·방법·절차 등에 따라 주택을 건설·공급하거나 주택을 공급받아야 한다.

제32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4(사업계획의 사전결정)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및 규모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신청전에 건설부장관에게 당해 주택건설사업이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허용되는지의 여부에 대한 사전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건설부장관이 제1항의 신청을 받아 사전결정을 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결정과 동조제3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건설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결정을 함에 있어서 건축법 제7조제3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얻은 것으로 보는 내용에 대하여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요청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요

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건설부장관은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 계획을 승인함에 있어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결정에 따라야 한다. 다만,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사전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건설부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결정의 내용·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제4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도·소매업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의 개설허가 제33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을 “제1항”으로 하며, 동조제4항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으로, “입주자”를 “입주예정자”로 하고,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사업주체는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는 주택·부대시설·복리시설 및 대지에 대하여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경우

로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완료전이라도 완공부분에 대하여 동별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⑤사업주체 또는 입주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를 받은 후가 아니면 주택·부대시설·복리시설 또는 대지를 사용하게 하거나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3조의5 및 제33조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5(주택의 설계 및 시공) ①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되는 주택(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을 설계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계도서작성기준에 적합하게 설계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을 시공하는 자(이하 “시공자”라 한다)와 사업주체는 설계도서에 적합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제33조의6(주택의 감리등) ①건설부장관은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주택건설공사를 감리할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체가 대한주택공사·시공공사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할 자로 지정받은 자(이하 “감리자”라 한다)는 주택건설공사에 관한 다음 각호의 감리업무를 행한다.

1. 시공자가 설계도서에 따라 적합하게 시공하는지 여부의 확인
2. 시공자가 사용하는 건축자재가 관계법령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건축자재인지 여부의 확인
3. 주택건설공사에 대한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시험의 실시 여부 확인
4. 기타 주택건설공사의 시공감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감리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업무의 수행사항을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부장관 및 사업주체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감리자는 제2항각호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위반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시공자 및 사업주체에게 위반사항을 시정할 것을 통지하고, 7일 이내에 건설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⑤시공자 및 사업주체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당해 공사를 중지하고, 위반사항을 시정한 후 감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감리자의 시정통지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즉시 당해 공사를 중지하고 건설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⑥사업주체는 감리자에게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감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⑦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대시설 및 감리자의 자격과 감리의 방법·절차,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의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건설부장관은 감리자가 입부수행중 위반사항을 묵인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리자를 교체하고, 당해 감리자에 대하여는 1년의 범위안에서 감리업무의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

제36조제2항중 “제33조의2제1항 본문 또는 동조제2항에 의한 사용검사일”을 “제33조의2항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일”로 한다.

제38조제2항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을 삭제하며, 동조에 제16항 및 제1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절차 등에 따라 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⑬제1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체와 건축주는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10년의 범위안에서 이를 보수하고,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구조별 하자보수기간과 하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⑭시장등은 제16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공동주택의 구조안전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진단의 대상·절차 및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과 안전진단실시기간의 범위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제1항중 “건설부장관의 주택관리업면허를 받아야 한다”를 “건설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중 “면허를 받은 자”를 “등록을 한 자”로, “면허가 취소되고”를 “등록이 말소되고”로, “면허를 받을 수 없다”를 “등록할 수 없다”로 하며, 동조제3항중 “면허의 종류 및 기준과”를 “등록의 기준, 영업의 종류와”로 하고, 동조제4항중 “면허를 받은 자”를 “등록을 한 자”로 한다.

제39조의2의 제목 “(주택관리업면허의 취소등)”을 “(주택관리업의 등록말소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본문중 “면허를 취소하거나”를 “등록을 말소하거나”로,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를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로 하며, 동항제1호중 “면허를 받은 때”를 “등록을 한 때”로 하고, 동항제2호중 “면허기준”을 “등록기준”으로 하며, 동조제2항중 “면허의 취소”를 “등록의 말소”로 한다.

제39조의4의 제목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시험)”을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주택관리사등이”를 “주택관리사보가”로 하며, 동조제2항중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시험과목”을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의 응시자격·시험과목·시험의 일부면제”로 하고, 동조에 제3항 내지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주택관리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주택관리실부경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사의 자격인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주택관리사등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한정치산자 또는 미성년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형의 집행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4.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39조의5제1항단서중 “제1호”를 “제1호·제2호의2”로 하고, 동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39조의4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제40조의 제목중 “가임”을 “분양대금”으로 하고, 동조제1항 및 제2항중 “가임” 및 “분양대금”을 각각 “분양대금·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로 한다.

제44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시장 등은 재건축조합이 노후·불량한 주택을 철거하고 그 철거한 대지위에 주택을 재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노후·불량주택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진단을 대상·기준·실시기관·수수료 기타 필요한 사항은 건설부령으로 정한다.

제45조의4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건설부령이 정하는 기술능력을 갖추고 있는 자가 공업화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에는 제33조의5·제33조의6 및 건축사법 제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6조중 “등록업자”를 “등록업자·지정업자”로, “면허증”을 “지정서”로 한다.

제47조의제1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조합원의 주택사업에 필요한 택지의 구입·개발·공급에 관한 사업

제47조의1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7조의12(조합의 책임등) ①조합은 그가 보증한 사항에 관하여 법령 기타 계약서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금을 납입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보증금을 보증채권자에게 납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채권자가 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보증금에 관한 권리는 보증기간 만료일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삭감한다.

제49조의제1항중 “면허를 받았거나 등록을 한 자”를 “등록을 한 자”로 한다.

제5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0조의2(벌칙) 고의 또는 과실로 제33조의5 및 제33조의6의 규정에 위반하여 설계·시공 및 감리를 함으로써 하자보수책임기간내에 제38조제16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내력구조부에 중대한 하자를 발생하게 한 설계자·시공자·감리자 및 사업주체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1조제2호의3중 “주택을 건설·공급한 자”를 “주택을 건설·공급한 자 또는 공

급받은 자”로 하고, 동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33조의2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택등을 사용하게 하거나 사용한 자

5.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주택관리업을 영위한 자나 허위 기타 부정당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

5의2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자가 주택조합의 가입을 알선·모집광고 등을 하거나 주택가격외의 수수료 기타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자

제52조의제1항에 제2호·제2호의2 및 제2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고의 또는 과실로 제33조의5의 규정을 위반하여 설계하거나 시공함으로써 사고주체 또는 입주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자

2의2 고의 또는 과실로 제33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업무를 태만히 하여 위법한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함으로써 사고주체 또는 입주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자

2의3 제33조의6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시정통지를 받고 계속하여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한 시공자 및 사업주체

제52조의3제1항제1호를 동항제1호의2로 하

고, 동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33조의6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보고를 한 감리자

제5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3조의2(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제33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업무를 행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법은 199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주택의 설계·시공 및 감리등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5 및 제33조의6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주택을 건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③(하자보수 및 안전진단등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16항 및 제1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제3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를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 ④(면허에 관한 적용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주택관리업자는 제39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주택관리업자로 등록한 것으로 본다.

건설업법중 개정법률

(법률 제4,724호, 1994년 1월7일)

◇개정이유

건설시장의 대외개방을 앞두고 국내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건설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도록 하고, 시공을 부실하게 한 건설업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건설업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 가. 종전에는 건설업면허를 3년마다 실시하였으나, 앞으로는 매년 1회 실시하도록 하고, 건설업면허의 갱신을 3년마다 하던 것을, 앞으로는 5년마다 갱신하도록 완화함(법제6조제3항 및 제4항).
- 나.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로서 예산회계

관계법령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사전심사에 의하여 시공능력이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도급한도액을 초과하여 도급받을 수 있도록 함(법 제17조제1항).

- 다. 건설업자는 그가 시공한 건설공사에 대하여 목적물의 재료에 따라 10년 또는 5년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지도록 하는 하자담보책임제도를 도입하고, 건설업자가 고의·과실로 부실시공하여 타인에게 공사를 조자하게 한 때에는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연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함(법 제21조의2 및 제37조).

- 라. 일괄 하도급금지규정에 위반하거나 고의·과실로 건설공사를 조잡하게 한 건설업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영업정지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면허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함 건설업자에 대한 처분을 강화함(법 제52조제1항).

(법제처 제공)

건설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9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9. “건설기술자”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5호에서 정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건설공사와 건설업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하되, 건설업자가 이를 도급받는 경우에는 제21조·제21조의2·제22조·제23조 내지 제32조·제32조의2 내지 제32조의10·제37조·제49조 내지 제54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한다.

제4조제2호중 “신축·증축·개축·재축”을 “건축”으로 한다.

제8조제1항중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종류별”을 “업종별”로 하고,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4항중 “3년마다”를 “5년마다”로 한다.

③건설업의 면허는 매년 1회 실시한다.

제8조(건설업의 점업제한) ①일반건설업의 면허를 받은 자(이하 “일반건설업자”라 한다) 또는 특수건설업의 면허를 받은 자(이하 “특수건설업자”라 한다)는 전문건설업의 면허를 중복하여 받을 수 없다.

②전문건설업의 면허를 받은 자(이하 “전문건설업자”라 한다)는 다른 업종의 전문건설업의 면허를 중복하여 면허를 받을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같은 계열에 속하는 업종인 경우에는 2개업종에 한하여 중복하여 면허를 받을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업자인 개인은 건설업자인 법인의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건설업자인 법인의 대표자는 그 개인의 명의로 건설업의 면허를 받을 수 없다.

제9조제1항제3호중 “제52조제1항제3호 내지 제6호”를 “제52조제1항제1호·제3호 및 제5호”로 하고, 동항제4호중 “제104조의2”를 “제104조4로 하며, 동조제2항중 “건설업의 면허를 받은 자”를 “건설업자”로 한다.

제1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영업정지 또는 면허취소의 처분을 받은 건축업자나 포괄승계인은 그 처분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관계법령에 의하여 인·허가 등을 받아 착공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이를 계속하여 시공할 수 있다. 건설업의 면허가 그 효력을 잃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1조제2항을 삭제하고, 동조제3항중 “시장(서울특별시·광역시장을 포함한다)·군수가 건축법 제7조제1항의 규정”을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건축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되 동항중 “도급받은”을 “도급받는”으로 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일반건설업자 또는 특수건설업자는 전문건설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건설공사(이하 “전문공사”라 한다)만을 도급받아 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도급의 제한으로 인하여 당해 전문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할 수 있는 전문건설업자가 없는 경우와 일반건설업자 또는 특수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2개의 업종이상의 전문건설업의 면허를 받은 전문건설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건설공사로 구성된 복합공사를 하도급받을 수 있다.

제13조의 제목 “(건설업의 양도와 건설업면허의 이전)”을 “(건설업의 양도등)”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중 “제13조제1항 또는 동조제3항후단”을 “제13조”로 한다.

제14조제1항중 “제13조제1항 또는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①건설업자는 그가 도급받을 수 있는 건설공사금액의 한도액(이하 “도급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여 건설공사를 도급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사착수후에 설계변경·물가변동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공사비가 증가되어 건설공사의 공사금액이 도급한도액을 초과하게 된 경우
2. 건설공사의 공사금액이 높아 그에 상응하는 금액이상의 도급한도액의 적용을 받는 건설업자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가 당해 건설공사를 도급받는 경우
3.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하 “정부투자기관”이라 한다)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로서 발주자가 예산회계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미리 심사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한 자가 도급받는 경우

제19조중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을 “정부투자기관”으로 한다.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①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하여 건설공사의 목적이 벽돌쌓기식구조·철근콘크리트구조·철골구조·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기

타 이와 유사한 구조로 된 것인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완공일로부터 10년의 범위내에서, 기타 구조로 된 것인 경우에는 시설공사의 완공일로부터 5년의 범위내에서 공사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이 있다.

②수급인은 다음 각호의 1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담보책임이 없다.

1.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의 성질로 인한 경우
 2.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 경우
 3. 발주자가 건설공사의 목적물을 관계법령에 의한 내용기간 또는 설계상의 구조내력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 ③건설공사에 관한 하자담보의 책임기간에 관하여 다른 법령(민법 제670조 및 동법 제671조를 제외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도급계약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22조제1항단서 및 동조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항본문중 “하수급인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하수급인”으로 하며, 동항단서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하수급인”을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받은 일반건설업자”로 한다.

다만, 발주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하는 바에 따라 2인 이상에게 분할하여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일반건설업자 또는 특수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발주자의 서면에 의한 승낙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건설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고자 할 때에는 미리 하도급받을 전문건설업자의 견적을 받아 도급금액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때에는 수급인과 전문건설업자는 그 견적한 내용대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24조를 삭제한다.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조(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①발주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직접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채무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한 한도안에서 삭감한 것으로 본다.

1. 발주자와 수급인간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는 뜻과 그 지급의 방법 및 절차를 명백히

하여 합의한 경우

2. 하수급인이 수급인을 상대로 하여 받은 판결로서 그가 시공한 분에 대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3.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중 수급인이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1회이상 지체한 경우 또는 공사에정가격의 100분의 85미만의 금액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발주자가 하수급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수급인의 파산등으로 인하여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발주자가 인정하는 경우

②수급인은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하수급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하여 자신이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자에 대하여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③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하는 경우의 지급방법 및 절차는 건설부령으로 정한다.

제33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전문건설업자는 그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 및 규모의 건설공사로서 발주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에게 갈음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분야의 기능계 기술자격취득자를 배치할 수 있다.

제36조를 삭제한다.

제36조 및 제3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6조(건설공사표식의 게시) ①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현장에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의 내용을 기재한 표식을 내걸어야 한다.

②건설업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건설공사를 완공한 때에는 당해 공사의 발주자·설계자·감리원 및 시공한 건설업자의 상호·대표자성명등을 기재한 표식판을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이 보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발주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식판의 설치비용을 당해 건설공사의 공사비용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37조(건설업자의 손해배상책임) ①건설업자가 고의·과실로 인하여 건설공사의 시공관리를 조잡하게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건설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가 발주자의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인 때에는 발주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수급인은 하도급인이 고의·과실로 인하여 하도급받은 공사를 조잡하게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④하수급인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배상할 책임이 있는 하수급인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39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건설부장관은 재무관리 및 기술관리등 경영실태가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건설업자에 대하여는 경영개선에 관한 권고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중·장기 또는 년차별 경영개선에 관한 계획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건설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가 제출한 경영개선에 관한 계획등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

제39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의2(경영자연수교육) 건설부장관은 건설업자의 경영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경영을 담당하는 임원(개인인 경우에는 건설업자를 말한다)에 대하여 경영자연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41조제3항을 제5항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건설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에 대한 경영실태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인회계사 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영진단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건설업자의 재무관리상태를 진단하게 할 수 있다.

④건설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의 경영실태조사 또는 실태조사부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발주자·감리원 기타 건설공사 관련기관에 건설공사의 시공상황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하는 공무원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43조제1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각 협회 임원으로서는 회장·이사 및 감

사를 둔다.

④각 협회의 정원·임기 및 선출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 협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49조에 제2호의2·제2호의3 및 제4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2의3. 제22조의2제2항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로서 하도급계약당사자 일방이 정당한 사유없이 당초 견적한 내용대로의 하도급계약체결을 거부한 때

4의2.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의 내용을 기재한 표식을 내걸지 아니하거나 건설공사완공후 표식판을 설치하지 아니한 때

제50조제1항제2호중 “건설공사도급계약에 의한 하자보수의무기간”을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으로 하고 동항에 제3호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항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의2. 제22조제2항후단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허위로 한때

4.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한 때

5.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건설업자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영업정지의 요청이 있는 경우와 기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기관으로부터 영업정지의 요구가 있는 때

제50조제2항본문중 “도급금액”을 “도급금액(제3호의 경우에는 하도급금액을, 제4호의 경우에는 하도급하여야 할 전문공사의 금액을 말한다)”로 하고, 동항제3호중 “제22조”를 “제22조제2항 내지 제4항”으로 한다.

제5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2조(건설업의 면허취소등) ①건설부장관은 건설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건설업의 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건설업의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 또는 면허의 갱신을 받은 때

2.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면허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3. 제16조의2의 규정에 위반한 때

4.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때

5. 제50조 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

의 정지처분에 위반한 때

6. 건설업의 면허를 받은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이상 휴업한 때
7. 고의·과실로 인하여 건설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게 한 때
8. 다른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으로부터 면허취소의 요구가 있는 때

②건설부장관은 각 협회가 회원인 건설업자에 대한 건설업의 면허취소를 건의한 때에는 당해 건설업자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제57조제1항중 “시·도지사”를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도지사”로 하고, 동조제2항제1호를 제1호의2로 하며, 동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항제3호를 삭제하며, 동항에 제4호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의 신고의 수리
- 4의2 제3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경영자 연수교육
6.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의 경영실태등의 조사 및 건설업자실태조사

부의 작성·보관과 이의 수행에 필요한 건설공사의 시공상황에 관한 자료 제출 요구

제59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건설업자 또는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로서 고의 또는 업무상 과실로 건설공사를 조잡하게 시공함으로써 착공후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내에 교량·터널·철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부분에 중대한 손해를 야기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제62조중 “도급금액”을 “도급금액(제3호의 경우에는 하도급금액을, 제4호의 경우에는 하도급하여야 할 전문공사의 금액을 말한다)”로 한다.

제66조제4호중 “허위로 통제한 자”를 “태만한 자”로 한다.

제66조제1호중 “제1항 제2항”을 “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3호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법은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미한 건설공사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당시 시공중인 경미한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제3조단서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건설업면허갱신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전에 발급받은 건설업면허의 갱신에 대하여는 제6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점업제하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전에 건설업의 면허를 받은 자로서 제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동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자는 1995년 6월 30일까지 이 법에 적합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하자담보책임기간 및 그 벌칙에 대한 적용례) ①제21조의2 및 제5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완공하는 건설공사분부터 적용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완공된 건설공사에 관하여 종전의 제59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손해를 생기게 한 자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적용한다.

제6조(지하도급의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전에 하도급한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제22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수도권정비계획법개정법률

(1994.1.7, 법률 제4,721호)

제1조(목적)이 법은 수도권의 정비에 관한 종합적인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 및 산업의 적정배치를 유도하여 수도권의 질서있는 정비와 균형있는 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도권”이라 함은 서울특별시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그 주변지역을 말한다.
2. “수도권정비계획”이라 함은 국토건설종합계획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전국 건설종합계획을 기본으로 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되는 계획을 말한다.
3. “인구집중유발시설”이라 함은 학교·공장·공공청사·업무용건축물·판매용건축물·연수시설 기타 인구집중을 유발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 및 규모이상의 시설을 말한다.
4. “대규모개발사업”이라 함은 택지·공

업용지 및 관광지등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 및 규모이상의 사업을 말한다.

5. “공업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지역을 말한다.

가.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지역

나. 국토이용관리법 기타 관계법률에 의하여 공업용지 및 이에 부수되는 용도로 이용되고 있거나 이용될 일단의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 및 규모이상의 지역

제3조(다른 계획등과의 관계) ①수도권정비계획은 수도권안에서의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국토이용계획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토지이용계획 또는 개발계획등에 우선하며, 그 계획의 기본이 된다. 다만, 군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서울특별시

장·직할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등 관청행정기관의 장은 수도권정비계획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토지이용계획 또는 개발계획등을 수립·시행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수도권안에서의 공장 신설·증설에 대하여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총량규제의 범위안에서 공업배치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을 적용한다.

제4조(수도권정비계획의 수립) ①건설부장관은 수도권의 인구 및 산업의 집중억제와 적정배치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서울특별시·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수도권정비계획안을 입안한다.

1. 수도권정비의 목표와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인구 및 산업등의 배치에 관한 사항
3. 권역의 구분 및 권역별 정비에 관한 사항

4. 인구집중유발시설 및 개발사업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광역적 교통시설, 상·하수도시설등의 정비에 관한 사항
6.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7. 수도권정비비를 위한 지원등에 관한 사항
8. 제1호 내지 제7호의 계획의 집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정비에 관한 사항

② 건설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정비계획안을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후 국무회의의 심의와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이를 결정한다. 결정된 수도권정비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할 수 있다.

③ 건설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수도권정비계획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추진계획)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수도권정비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소관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진계획은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며, 건설부장관은 추진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확정된 추진계획을 통보받은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추진계획을 집행한 실적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부장관은 이를 종합하여 수도권정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권역의 구분 및 지정) ① 수도권에서의 인구 및 산업의 적정배치를 위하여 수도권을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과밀억제권역 : 인구, 및 산업이 과도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그 이전 또는 정비가 필요한 지역
 2. 성장관리권역 : 과밀억제권역으로부터 이전하는 인구 및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하고 산업의 입지와 도시의 개발을 적절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3. 자연보전권역 : 한강수계의 수질 및 녹지등 자연환경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 ②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 및 자연

보전권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과밀억제권역에서의 행위제한)

①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과밀억제권역에서 다음 각호의 행위나 이의 허가·인가·승인 또는 협의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교·공공청사·연수시설 기타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증설(용지변경을 포함하며, 학교의 증설은 입학정원의 증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2. 공업지역의 지정

②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행위나 이의 허가등을 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교·공공청사의 신설·증설
2. 서울특별시·직할시·도(이하 "시·도"라 한다)별 기존 공업지역의 총면적을 증가시키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의 공업지역의 지정. 다만, 건설부장관이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거나 허가등을 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8조(성장관리권역에서의 행위제한)

①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성장관리권역이 적절하게 성장하도록 하되, 과도한 인구집중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교·공공청사·연수시설 기타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증설이나 이의 허가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성장관리권역에서 공업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수도권정비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제9조(자연보전권역에서의 행위제한)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자연보전권역안에서

다음 각호의 행위나 이의 허가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택지·공업용지·관광지등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 및 규모이상의 개발사업
2.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교·공공청사·업무용건축물·판매용건축물·연수시설 기타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증설

제10조(이전자에 대한 지원)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은 과밀억제권역안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을 성장

관리권역안에서 조성한 대지로 이전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대지를 우선하여 분양할 수 있다.

제11조(중전대지에 대한 조치) ① 건설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과밀억제권역안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이전된 중전의 대지(이하 "중전대지"라 한다)를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증설이 아닌 다른 용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률에 의한 지역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중전대지에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증설이나 이의 허가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이용계획을 입안하여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설부장관과 협의하거나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2조(과밀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과밀억제권역안의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안에서 인구집중유발시설중 업무용건축물·판매용건축물·공공청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신축·증축 및 용도변경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고자 하는 자는 과밀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인 경우 그 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그 조합원이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부담금의 납부의무의 승계, 연대납부의무 및 제2차납부의무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23조 내지 제25조와 동법 제30조 내지 제4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부과금의 감면) 다음 각호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
2.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심지재개발사업에 따른 건축물
3. 건축물중 주차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
4. 건축물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이하의 부분

제14조(부담금의 산정기준) ① 부담금은 건축비의 100분의 10으로 하되, 지역별 여건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비의 100분의 5까지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비는 건설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③ 부담금의 산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부담금의 부과·징수 및 납부기한

등) ① 부담금은 부과대상건축물이 속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하되, 건축물의 건축허가일 또는 신고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과한다.

② 부담금의 납부기한은 건축물의 사용검사일(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한다)로 한다.

③ 시·도지사는 납부의무자가 부담금을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의 경과후 1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의 납부기한은 독촉장의 발부일부터 10일로 한다.

④ 시·도지사는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담금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⑤ 시·도지사는 납부의무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부담금 및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⑥ 부담금의 부과·징수의 방법·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부담금의 배분) 징수된 부담금의 100분의 50은 토지관리및지역균형개발특별법에 의한 토지관리및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에 귀속하고, 100분의 50은 부담금을 징수한 건축물이 소재하는 시·도에 귀속한다.

제17조(이의신청) ①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토지수용법에 의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행정심판청구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 제5조 및 동법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심리·의결하여 제결한다.

제18조(총량규제) ① 건설부장관은 공장·학교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 신설·증설의 총허용량을 정하여 이를 초과하는 신설·증설을 제한할 수 있다.

② 공장에 대한 제1항의 총량규제의 내용 및 방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며, 건설부장관은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 학교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구집중유발시설에 대한 제1항의 총량규제의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증설에 대하여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총량규제의 내용과 다르게 허가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9조(대규모개발사업에 대한 규제) ①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수도권안에서 대규모개발사업을 시행하거나 이의 허가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개발계획에 대하여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설부장관과 협의하거나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건설부장관이 대규모개발사업을 시행하거나 이의 허가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인구영향평가·교통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를 토대로 인구집중문제·교통문제·환경오염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광역적 기반시설의 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구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교통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는 각각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및 환경영향평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제20조(광역적 기반시설의 설치비용부담)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광역적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은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규모개발시설을 시행하는 자에게 이를 부담시킬 수 있다.

제21조(수도권정비위원회의 설치등) ① 수도권의 정비 및 건전한 발전과 관련되는 중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소속하에 수도권정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수도권정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수도권정비계획의 소관별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3. 수도권의 정비와 관련된 정책·계획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과밀억제권역안에서의 공업지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5. 종전대지의 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6.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총량규제에 관한 사항
7. 대규모개발사업의 개발계획에 관한 사항
8. 기타 수도권의 정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2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과 16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경제기획원장관과 건설부장관이 된다.

③ 위원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된다.

제23조(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의 설치등)

① 위원회에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과 수도권정비정책에 관계되는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되는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에 대한 검토·조정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제24조(위원회등의 조직등) 이 법에 규정한 사항외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기초조사등) 건설부장관은 수도권정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거나 수도권정비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인구·산업·토지이용·주용시설 및 기반시설등에 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거나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26조(보고 및 감독) ① 건설부장관은 수도권정비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나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집행상황 또는 지역현황을 검사 또는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집행상황 또는 지역현황을 검사 또는 조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27조(권한의 위임) 건설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과밀부담금의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설부장관이 협의 또는 승인한 건축물과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허가등을 신청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방법중개정법률

(법률 제4,612호, 1993년 12월27일)

◇ 개정이유

소방관서에서 실시하던 위험물제조소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그 시설주가 실시하도록 원칙적으로 자율화하고, 소방시설의 적합한 설치를 위하여 소방공사감리제도를 신설하는 한편, 제도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마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가. 종전에 호텔·의료기관·고층빌딩등의 특수장소에서 사용하는 커튼·카페트등 실내장식물에 방화처리를 하지 아니한 경우 이의 시정을 위한 지시나

명령없이 1년이하의 징벌 또는 1,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소방관서장이 그 시정등을 명하도록 하고, 그 시정지시등에 위반한 경우에 한하여 처벌하도록 함.(법 제11조제3항 제112조제1호)

나. 종전에는 위험물제조소등의 시설기준에의 적합여부에 대한 점검을 소방관서에서 직접 실시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당해 제조소등의 설치자가 정기적으로 자체점검등을 실시하고, 직장하게 유지·관리하도록 하여 제조소등의 관리를 자율화 함.(법 제17조의2)

다. 건축물의 설계 및 시공단계에서부터 소방시설이 적합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전문기술인력과 시설을 갖춘 자가 그 설계 및 시공감리를 담당할 수 있도록 소방시설설계자 및 공사감리업의 등록제도를 신설함.(법 제65조의2 내지 제65조의9)

(법제처 제공)

소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특수장소의 소방훈련등)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장소의 관계인은 그 장소에 상시 근무 또는 거주하는 사람에 대하여 소화·통보·피난등의 훈련과 방화관리상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난훈련은 그 특수장소에 출입하는 사람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유도하는 훈련을 포함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과 교육의 횟수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특수장소의 관계인은 그 장소에 대한 방화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장소의 관계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을 방화관리자로 선임하여 그 방화관리업무를 대행하도록 하되, 그 방화관리자가 방화관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9조제2항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 3항후단을 삭제한다.

특수장소의 관계인 및 방화관리자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업무는 제1항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방화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수장소의 경우에 한한다.

3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소화·통보·피난등의 훈련 및 교육

제11조제1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하 “방염대상물품”이라 한다)”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장소에 있어서의 방염대상물품이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방염성능의 검사를 받지 아니한것인 때에는 특수장소의 관계인에게 방염대상물품의 제거 또는 방염성능의 검사를 받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2조중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염성능이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할 품목”을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장소에

서 사용하는 방염대상물품”으로 한다.

제17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제조소등의 안전유지등) ① 제조소등의 설치자는 당해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및 설비를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의 설치자는 그 시설 기준에의 적합여부를 정기적으로 자체점검하거나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조소등의 설치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을 한 때에는 그 점검결과를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의 구분 및 점검자의 자격·점검장비·점검방법·점검횟수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제3호 내지 제6호를 각각 제4호 내지 제7호로 하고, 동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

이 신설한다.

3. 제1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을 하지 아니한 때

제33조제1항본문중 “용도변경의 공사중인 특수장소”를 “용도변경중인 특수장소”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② 기존 특수장소가 증축 또는 용도변경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증축 또는 용도변경당시의 소방시설의 기중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내무부령을 적용한다.

제33조제2항제2호중 “소방시설관리사를 두어야 한다”를 “소방시설관리사를 두어야 하며, 직원중 소방시설점검보조자를 지정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50조제1항중 “소방용기계·기구등”을 “소방용기계·기구등(수입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하고, 동조제2항중 “성능등”을 “성능등(이하 “형상등”이라 한다)”로 하며, 동조제3항중 “검정합격표시가 없는 소방용 기계·기구등”을 “검정합격표시가 없거나 검정을 받은 후 그 형상등을 임의로 변경한 소방용기계·기구등”으로 하고, 동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내무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소방용 기계·기구등에 대하여는 그 제조업자(수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수거·교체·폐기등 내무부령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61조제1항전단중 “면허의 갱신을 받지 못한 소방설비공사업자”를 “면허의 갱신을 받지 못한 소방설비공사업자 그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소방설비 공사업자”로 한다.

제6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1조의2(공사감리)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특수장소의 관계인은 그 특수장소의 소방시설공사에 대한 감리를 위하여 제6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소방공사감리업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의 경우에는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중 소방설비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 1급 자격을 가진 사람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장소의 관계인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때에는 이를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서 신고하여야 한다. 공사감리자를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소방시설공사업자는 소방시설공사를 함에 있어서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및 관계법령에 적합하게 시공하여야 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공사감리자의 지도를 받아 설계도서대로 성실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제62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신고한 사항중 내무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62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장소에 대한 소방시설의 완공검사는 제65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감리결과보고서로 갈음한다.

제62조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의 완공검사를 갈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62조제4항제2 내지 제65조의10)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장의 2 소방시설의 설계 및 공사감리업

제65조의 2(소방시설의 설계업 및 공사감리업의 등록)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 영업을 종류별로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특수장소에 대한 소방시설의 설계업(이하 “소방시설설계업”이라 한다).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특수장소에 대한 소방시설공사의 감리업(이하 “소방공사감리업”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설계업 또는 소방공사감리업의 종류와 그 종류별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소방시설설계업 및 소방공사감리업의 등록절차 및 설계·감리에 대한 수수료 그밖의 필요한 사항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제65조3(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6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설계업 또는 소방공사감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금치산자·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이 법에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이 법에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의 집

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중에 있는 사람

5. 제65조의9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설계업 또는 소방공사감리업의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임원중 제1호 내지 제5호의1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제65조의4(소방시설의 설계 및 감리) ① 소방시설설계업자 및 소방공사감리업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및 관계법령에 적합하도록 소방시설을 설계하거나 공사감리를 하되, 소방공사감리업자는 소방시설공사가 설계도서대로 시공되도록 지도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② 소방시설설계업자는 소방시설설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그 특수장소의 설계를 담당하는 건축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소방공사감리의 종류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소방시설공사에 대한 감리를 하는 소방공사감리업자는 그 공사기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을 공사현장에 배치하여 감리업무를 보조하게 하여야 한다.

④ 소방공사감리업자는 공사를 감리함에 있어서 이법, 이 법에 의한 명령 및 관계법령에 위반된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시정하도록 소방시설공사업자(그 공사의 도급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 특수장소의 관계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소방시설공사업자 또는 그 특수장소의 관계인이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공사감리업자로부터 시정통보를 받은 소방시설공사업자 또는 특수장소의 관계인은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고는 그 공사를 계속 하여서는 아니된다.

⑥ 소방시설공사업자 또는 그 특수장소의 관계인은 소방공사감리업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반사항을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한 것을 이유로 공사감리계약을 취소하거나 공사감리에 대한 수수료의 지급을 거부 또는 지연시키거나 그밖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제65조의5(감리결과와 통보등) 소방공사감리업자는 소방시설의 공사감리를 완료한 때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리결과를 그 특수장소의 관계인·소방

시설공사의 도급인 및 그 특수장소의 공사를 감리한 건축사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감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5조의6(소방공사감리업자의 공사제한) 동일인이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업과 제6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공사감리업(소방시설설계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에 그 사람은 동일한 특수장소(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한 것으로 허가동의된 특수장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방시설에 대한 공사와 감리(설계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함께 할 수 없다. 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중 1인이상이 소방시설공사업 및 소방공사감리업을 하거나 소방공사감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임원으로 된 경우에도 그 소방시설공사업자 및 공사감리자는 동일한 특수장소의 소방시설에 대한 공사와 감리를 함께 할 수 없다.

제65조의7(소방시설설계업 및 소방공사감리업의 승계) 제19조·제65조의2제2항 및 제65조의3의 규정은 소방시설설계업 또는 소방공사감리업의 승계에 이를 준용한다.

제65조의8(영업의 휴업등) 제36조의 규정은 소방시설설계업 또는 소방공사감리업의 휴업등에 이를 준용한다.

제65조의9(등록의 취소·영업정지) 시·도지사는 소방시설설계업자 또는 소방공사감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내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하고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을 정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6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한 때
2. 제65조의3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법인의 임원중 제65조의3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3월이내에 그 임원을 개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사위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
4.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을 대여한 때
5. 정당한 사유없이 소방시설의 설계 또는 공사감리의 지정의뢰를 회피하거나 거부한 때
6.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설계·감리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인명 또는 재산피해를 끼친 때
7.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

한 때

제65조의10(감독) ①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소방시설설계업자 또는 소방공사감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소·사무소 또는 사업장(소방시설감리가 완료된 특수장소를 포함한다)에 출입하여 관계장부·시설등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② 제5조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9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0조(의용소방대의 경비) 의용소방대의 경비는 그 대원의 임명권자가 이를 부담한다.

제103조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제6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설계업 또는 소방공사감리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람

제112조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7호중 “검정합격표시가 없는 소방용기계·기구등”을 “검정합격표시가 없거나 검정을 받은 후 그 형상등을 임의로 변경한 소방용기계·기구등”으로 하며, 동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사람
10. 제65조의2의 규정에 위반하여 소방시설설계업 또는 소방공사감리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거나 등록한 사항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여업을 한 사람

제114조에 제3호의 2 및 제10호 내지 제1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의2.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제조소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사람
10. 제6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사람
11. 제6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설계업자 또는 소방공사감리업자가 설계 또는 감리를 허위로 하거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부당한 금품을 수수·요구·약속한 때 또는 제3자에게 부당한 금품을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을 요구 또는 약속한 때
12. 제65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설계업자 또는 소방공사감리업자의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사람
13. 제65조의4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소정의 통보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허위로 한 사람

14. 제65조의4제6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소방공사 감리업자가 통보한 사항을 시정하지 아니하고 공사를 계속한 사람

15. 제65조의4제7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사감리계약을 취소하거나 수수료의 지급을 거부 또는 지연시키거나 불이익을 준 사람

16. 제65조의5의 규정에 위반하여 감리결과와 통보 또는 감리결과보고서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허위로 한 사람

제116조제3호를 제4호로 하고, 동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8조제2의 규정에 위반하여 훈련 또는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사람

제117조제1호중 “방화관리자(제9조제3항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방화관리업무를 하는 관계인을 포함한다)”를 “특수장소의 관계인 또는 방화관리자”로 하고, 동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5호 및 제7호를 각각 삭제한다.

2.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취급에 관한 안전관리 및 감독을 게을리한 사람

제119조제11항제1호중 “제9조제4항”을 “제9조제4항·제10조제2항”으로 하고, 동조제2호중 “제32조제2항”을 “제17조의2제3항 또는 제32조제2항”으로 하며, 동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 동항에 제3호·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소방용수시설을 변경 또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한 사람
6. 제65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아니한 사람
7.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검사 소방훈련을 거부·방해 또는 기괴하거나 소방용수·소화기구등의 설치명령에 위반한 사람

부 칙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1조의2·제65조의2 내지 제65조의10·제109조제11호·제112조제10호·제114조제10호 내지 제16호 및 제119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소음·진동규제법중개정법률

(법률 제4,654호, 1993년 12월 27일)

◇개정이유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등에 관한 업무를 환경처장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로 전환하고, 전용공업지역·공업단지등에 위치한 공장의 배출시설은 허가대상에서 제외하며, 측정대행자의 지정제도를 등록제로 전환함과 아울러 경수제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벌칙중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과태료로 완화하는 등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 가.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수리에 관한 업무를 환경처장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로 전환하고, 전용공업지역·공업단지등에 위치한 공장의 배출시설에 대하여는 허가대상에서 제외함(법 제9조).
- 나. 배출시설의 기능 및 공정상 소음·진동이 배출허용기준이하로 배출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방지시설설치면제승인을 받아야 하는 바, 이 경우 환경기술감리단의 기술검토를 받도록 하던 절차를 폐지함(법 제10조제1호).
- 다. 사업자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설치한 경우 종전에는 설치완료신고와 시

설확인 및 적합관정을 받아 조업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가동개시신고후 즉시 조업할 수 있도록 하되, 시·도지사가 조업개시일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시설을 확인하도록 함(법 제13조).

- 라. 건설 및 교통소음·진동의 규제기준은 시·도지사가 규제지역지정시 그 기준을 정하여 환경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고시하던 것을 앞으로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등을 통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함(법 제21조 및 제29조).
- 마. 시·도지사가 생활소음·진동 규제지역안의 이동소음원에 대하여 관찰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동소음원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사용시간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법 제41조).
- 바. 소음·진동의 자가측정업무를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처장관의 지정을 받도록 하던 것을 등록하는 제도로 전환하고, 측정대행자에 대한 경수제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경쟁제한적 요소를 폐지함(법 제47조).
- 사. 소음·진동의 직접적인 배출과 직결되지 아니하는 측정기록의 보존위반등 가매운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을 형법에서 과태료로 완화함(법 제60조 및 제61조).

(법제처 제공)

소음·진동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중 “소음·진동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에서 배출되는”을 “소음·진동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한 공장에서 배출되는”으로 한다.”

제9조제1항중 “환경처장관”을 “시·도지사”로 하고, 동조제2항중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총리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업단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위치한 공장에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의 경우에는 허가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허가대상에서 제외된 자는 제14조 내지 제17조, 제18조(허가취소의 경우를 제외한다), 제51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이를 사업자로 본다.

제10조본문중 “그 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을 “그 공장으로부터 배출되는”으로 하고, 동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시·도지사가 그 배출시설의 기능·공

정 또는 공장의 부지여건상 소음·진동이 항상 배출허용기준이하로 배출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의2제2항중 “환경처장관”을 “시·도지사”로 한다.

제1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제1항 본문”을 “제1항”으로 한다.

- ①방지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은 사업자가 스스로 설계·시공하거나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방지시설업자로 하여금 설계·시공(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지시설업자의 경우에는 설계에 한한다)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의 제목중 “설치승인등”을 “설치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전단중 “환경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배출시설로부터”를 “공장에서”로 하며,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3조의 제목중 “설치완료”를 “가동개시”로 하고, 동조제1항중 “환경처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를 “미리 시·도지사에게 가동개시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가동개시일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로 하며, 동조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후가 아니면 그 시설을 이용하여 조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시·도지사는 사업자가 제2항의 규정에 적합하게 조업을 하는 때에는 조업개시일로부터 7일 이내에 허가 또는 변경허가사항과의 부합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그 결과 허가 또는 변경허가사항과 부합되지 아니하여 시설개선·조업정지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때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기간이 지난 후 지체없이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배출허용기준의 준수 의무) 사업자는 제8조 또는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5조중 “환경처장관은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합관정을 받아 조업중인 배출시설에서”를 “시·도지사는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후 조업 중인 공장으로서"로 한다.

제16조제1항 및 제2항중 "환경처장관은"을 각각 "시·도지사는"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중 "환경처장관은"을 "시·도지사는"으로 한다.

제18조본문중 "환경처장관은"을 "시·도지사는"으로 하고, 동조제3호를 삭제한다.

제19조제1항 및 제2항전단중 "환경처장관"을 각각 "시·도지사는"으로 한다.

제20조제1항중 "측정대행자"를 "측정대행업자"로 한다.

제21조제1항중 "환경처장관"을 "시·도지사"로 한다.

제22조중 "환경처장관은"을 "시·도지사는"으로 한다.

제24조·제27조 및 제29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건설소음·진동 규제기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규제지역안의 특정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의 규제기준은 환경처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27조(폭약의 사용으로 인한 소음·진동의 방지) 시·도지사는 폭약의 사용으로 인한 소음·진동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에 의하여 폭약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그 사용의 규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경찰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9조(교통소음·진동의 한도)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규제지역안의 교통기관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의 한도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그 한도 및 시행시기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환경처장관은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구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30조중 "우회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를 "우회등을 지방경찰청장에게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경찰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31조중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규제기준을"을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한도를"로 한다.

제37조제1항중 "환경처장관은"을 "시·도지사는"으로 한다.

제38조제1항전단중 "환경처장관은"을 "시·도지사는"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환경처장관이"를 "시·도지사"로, "환경처장관에게"를 "시·도지사에게"로 한다.

제5장 제목중 "생활소음"을 "생활소음·진동"으로 한다.

제3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9조(생활소음·진동의 규제) ①시·도지사는 주민의 정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고 주거환경에 산재되어 있는 각종 소음·진동발생원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생활소음·진동 규제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소음·진동 규제지역의 범위, 규제지역안의 규제대상 및 규제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③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규제지역을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40조의 제목중 "방음시설"을 "방음·방진시설"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중 "작업시간의 조정·소음발생행위의 중지·방음시설의 조치등"을 "작업시간의 조정, 소음·진동 발생행위의 중지, 방음·방진시설의 조치등"으로 한다.

①시·도지사는 생활소음·진동 규제지역안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이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규제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음·진동을 발생하는 자에 대하여 작업시간의 조정, 소음·진동 발생행위의 중지, 방음·방진시설의 설치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4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시·도지사는 이동소음원으로 인한 소음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소음·진동규제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동소음원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사용시간등을 제한할 수 있다.

제4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2조(항공기소음의 규제) ①환경처장관은 항공기소음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항공기소음의 한도를 초과하여 항공기 주변의 생활환경이 매우 손상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방음시설의 설치 기타 항공기소음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항공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는 항공기소음규제에 관한 다른 법률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2조 다음에 제6장의2(제4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장의2 방음시설의 설치기준등

제6장의2 방음시설의 설치기준 등.

제42조의2(방음시설의 성능 및 설치기준)

①소음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음벽·방음림·방음독등 방음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충분한 차음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설계·시공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음시설의 성능 및 설치기준은 환경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이 방음시설의 성능 및 설치기준을 달리 정하는 있는 경우에는 그 성능 및 설치기준에 의한다.

제43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음·진동방지시설의 설계를 그 직무로 하고자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 또는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소음·진동방지시설의 설계를 위한 영업을 하고자 엔지니어링 활동주체의 신고를 한 자중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처장관에게 신고를 한 자는 당해 분야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한 방진시설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47조의 제목 "(측정대행자의 지정)"을 "(측정대행업의 등록)"으로 하고, 동조제1항전단중 "(이하 '측정대행자'라 한다)"를 "(이하 '측정대행업자'라 한다)"로, "환경처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를 "환경처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로 하며, 동항후단중 "지정받은"을 "등록한"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하며, 동조제3항 및 제4항중 "측정대행자"를 각각 "측정대행업자"로 하고, 동조제5항중 "측정대행자"를 "측정대행업자"로, "지정의 취소"를 "등록의 취소"라 한다.

제48조제1항전단 및 제2항중 "환경처장관"을 각각 "시·도지사 또는 환경처장관"으로 한다.

제49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9조의2(소음도표식의 부착권고) 환경처장관은 소비자에게 저소음제품을 선택·구매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고소음을 발생하는 기계·기구 기타 제품(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형식승인대상기구를 제외한다)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에 대하여 당해 기계등에 소음의 정도를 표시하는 표식을 부착하여 판매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50조중 "방진시설업"을 "방진시설업(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진시설업의 등록을 한 경우에 한한다)"으로 한다.

제51조제1항제3호중 "사용하는 채석장·공사장등의 운영·관리자"를 "사용하는 자"로 하고, 동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항제7호중 “측정대행자”를 “측정대행업자”로 한다.

5의2.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소음·진동의 규제대상인 자

제5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4조의2(연차보고서의 제출) ①시·도지사는 매년 주요 소음·진동관리정책의 추진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환경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55조제4호중 “측정대행자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측정대행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으로 한다.

제57조제1호 내지 제4호를 각각 제2호 내지 제5호로 하고, 동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업정지 명령을 위반한 자

제58조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6호를 삭제하며, 동조제7호중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을 “등록·변경등록 또는 신고를”로 하고, 동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조업한 자

3.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결과 허가 또는 변경허가사항과 부합되지 아니하여 조합정지명령외의 시설개선등의 조치명령을 받고도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8.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측정대행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측정업무를 대행한 자

제59조제1호를 삭제하고, 동조에 제2호의 2 및 제2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점검에 불응하거나 이를 방해한 자

2의3.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 또는 사용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제60조제1호 및 제5호를 삭제하고, 동조제6호를 제5호로 하며, 동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여 이를 제6호로 하고, 동조제3호를 제2호로 하며, 동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관리인을 임명하지 아니한 자

6. 제47조제3항 또는 제48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측정결과 또는 검사결과를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허위로 기록한 자

제6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동항에 제2호의2 및 제3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동항제5호 및 제7호를 삭제하고, 동조동항제8호중 “규제를 위한 명령을 위반한 자”를 “사용금지 또는 제한조치를 위반한 자”로 하며, 동조제2항중 “환경처장관이”를 “환경처장관 또는 시·도지사가”로 하고, 동조제3항중 “환경처장관” “환경처장관 또는 시·도지사”로 하며, 동조제4항중 “환경처장관”을 “환경처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으로 하고, 동조제5항중 “국세체납처분”을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으로 한다.

1. 제9조제2항, 제10조의2제2항, 제21조제1항 또는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의2.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3의2. 제20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측정결과를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한 자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측정대행자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또는 변경지정된 측정대행자는 제47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변경등록된 측정대행업자로 본다.

③(검사대행자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자외의 확인업무를 행하는 검사대행자로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은 자는 제48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로부터 동 업무를 행하는 검사대행자로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은 자로 본다.

④(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중 개정법률

(법률 제4,656호, 1993년 12월 27일)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8호중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을 “축산폐수처리시설”로, “방법에 따라 공동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방법에 의하여 처리하는 시설”로 한다.

7. “분뇨처리시설”이라 함은 분뇨를 침전·분해 등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제2항전단,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및 제8조제1항중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을 각각 “축산폐수처리시설”로 한다.

제9조제1항2호를 삭제한다.

제10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기타 침화조를 설치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경우

제12조중 “환경정책기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술감리단의 기술검토를 거쳐”를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처장관의 승인을 얻어”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24조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한 축산폐수정화시설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동일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수·분뇨와 축산폐수를 병합

처리하는 시설을 설치한 사업장은 이 법에 의한 오수정화시설 또는 정화조를 각각 설치한 것으로 본다.

제13조제1항제1호중 “설치하는 경우”를 “설치 또는 변경하는 경우”로 하고, 동조제3항중 “제38조제2항”을 “제38조제1항”으로 한다.

2. 오수처리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오수정화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는 경우

제14조제4항중 “정화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2항의 관리기준에 의한 정화조의”를 “오수정화시설 또는 정화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시설의”로 한다.

제15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공중위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특정공산품의 사용제한등)환경처리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공산품의 사용으로 인하여 오수의 수질을 현저히 악화시키는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당해 공산품의 판매나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다.

제24조제3항중 “그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로 한다.

제25조의2 및 제25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축산단지 등에 설치하는 공동축산폐수정화시설의 설치승인 등)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폐수정화시설을 공동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축산업자로서 축산단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 동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시설의 설치전에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처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중 총리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25조의3(권리·의무의 승계) ①축산업자가 축산폐수배출시설 및 축산폐수정화시설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허가 또는 신고에 따른 축산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처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축산폐수배출시설등의 준공검사) 축산업자는 축산폐수배출시설과 축산폐수정화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을 완료한 때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처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27조본문중 “제38조제2항”을 “제38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환경처장관이 정하는 표준설계도서에 의하여 축산폐수정화시설을 스스로 설치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4항(종전의 제3항)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 및 제3항”으로 한다.

②축산업자는 축산폐수배출시설 및 축산폐수정화시설을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운영할 수 없어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게 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처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9조제2항 내지 제4항을 각각 제4항 내지 제6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 제4항(종전의 제2항)중 “환경처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부과금을 징수한 때에는”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 부과금 및 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은”으로 하고 동조제5항(종전의 제3항)중 “배출부과금징수”를 “배출부과금 및 가산금”의 징수”로, “배출부과금중”을 “배출부과금 및 가산금 중”으로 하며, 동조제6항(종전의 제4항)중 “제3항”을 “제5항”으로, “배출부과금”을 “배출부과금 또는 가산금”으로 한다.

②환경처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부과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소정의 기한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에 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동법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0조의 제목 및 동조제1항·제2항전단, 제31조의 제목 및 동조제2항, 제32조의 제목 및 동조제1항·제2항중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을 각각 “축산폐수처리시설”로 한다.

제33조의 제목 중 “설치권고등”을 “설치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3항(종전의 제1항)중 “축산폐수배출시설외의”를 “축산폐수배출시설 및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이축산폐수정화조 설치대상축산시설외의”로 하며, 동조제4항(종전의 제2항)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3항”으로 한다.

①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대상지역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서 제24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폐수배출시설외의 시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축산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그 축산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처리하기 위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간이축산폐수정화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간이축산폐수정화조설치외의 방법으로 축산폐수의 적정처리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총리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축산폐수정화조를 설치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설치신고를 하여야 하며, 그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3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2(간이축산폐수정화조의 관리 등)

①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축산폐수정화조를 설치하는 자는 총리령이 정하는 설치기준과 관리기준에 따라 그 설치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간이축산폐수정화조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유지·관리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축산업자에게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당해 시설의 개선·대체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35조제14항 중 “영업구역·기한”을 “영업구역을 정하거나”로 한다.

제36조제3호중 “이 법 또는 수질환경보전법”을 “이 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폐기물관리법”으로 한다.

제38조제1항전단중 “분뇨처리시설 또는 오수정화시설”을 “분뇨처리시설·오수정화시설·정화조 또는 축산폐수정화시설”로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하며, 동조제3항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의 준수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⑤분뇨처리시설 등의 설계·시공업자가 제13조제1항·제3항, 제22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처리시설 등을 시공함에 있어서 그 시공이 건설업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설계·시공할 수 있다.

제39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화조제조업의 등록을 한 자의 준수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40조본문중 “환경처장관 또는 시·도지사”를 “환경처장관”으로 하고, 동조제1호본문 중 “제39조제4항”을 “제39조제5항”으로 하며, 동조제4호중 “제39조제1항·제2항”을 “제39조제1항”으로 한다.

제42조제1항제2호중 “배출시설관리인”을 “환경관리인”으로 한다.

제47조중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을 “축산폐수처리시설”로 한다.

제49조제3호중 “제3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제38조제1항”으로 한다.

제52조제2항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을 “축산폐수처리시설”로, “총리령(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이 정하는”을 “총리령이 정하는”으로 한다.

제53조제3호중 “설치한 자”를 “설치 또는 운영한 자”로 한다.

제54조제6호중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자”를 “분뇨처리시설 또는 오수정화시설의 설계·시공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자”로 하고, 동조제7호중 “등록사항을 변경한 자”를 “분뇨처리시설 또는 오수정화시설의 설계·시공업의 등록사항을 변경한 자”로 하며, 동조제8호중 “제38조제2항”을 “제38조제1항”으로 한다.

제55조제8호중 “제28조제3항”을 “제28조제4항”으로 하고, 동조제13호 및 제1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3.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화조 또는 축산폐수정화시설의 설계·시공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자

14.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정화조 또는 축산폐수정화시설의 설계·시공업의 등록사항을 변경한 자

제56조제6호중 “제28조제3항”을 “제28조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6호의2 및 제6호의3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승인 또

는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축산폐수정화시설을 처리하거나 승인사항을 변경한 자

6의3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간이축산폐수정화조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

제58조제1항제3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10호의2 및 제10호의3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항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제11조, 제26조 또는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오수정화시설·정화조·축산폐수정화시설 또는 간이축산폐수정화조를 사용한 자

5. 제14조제2항, 제28조제3항 또는 제3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오수정화시설·정화조·축산폐수정화시설 또는 간이축산폐수정화조를 그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유지·관리한 자

6의2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공산품의 판매 또는 사용금지조치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9. 제3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구역 기타 필요한 조건을 위반한 자

10의2 제38조 4항의 규정에 의한 분뇨처리시설등의 설계·시공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0의3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정화조제조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4. 제4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기록·보존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자

제58조제2항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처분이 고지된 날부터”를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로 하며, 동조제3항 및 제4항중 “제2항”을 각각 “제3항”으로 하고, 동조제4항 및 제5항중 “제3항”을 각각 “제4항”으로 하며, 동조제2항 내지 제5항을 동조제3항 내지 제6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25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산금등에 관한 적용례) 가산금등에

관한 제29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에 부과되는 축산폐수에 대한 배출부과금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3조(오·폐수병합처리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정책기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술감리단의 기술검토를 거쳐 설치하였거나 설치중인 오수·분뇨·축산폐수 또는 폐수를 병합처리하는 시설은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환경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설치하였거나 설치중인 시설로 본다.

제4조(공동축산폐수정화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업자가 공동으로 설치하였거나 설치중인 축산폐수정화시설로서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축산단지 또는 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 설치된 축산폐수정화시설은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설치승인을 얻은 시설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방류수수질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간이축산폐수정화조의 설치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였거나 설치중인 간이축산폐수정화조로서 제3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특별대책지역등에 설치된 것은 제33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적합한 간이축산폐수정화조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제3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간이축산폐수정화조를 설치하여야 하는 축산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33조제1항의 개정 규정에 적합한 간이축산폐수정화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정화조 또는 축산폐수정화시설의 설계·시공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정화조 또는 축산폐수정화시설의 설계·시공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자는 제3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환경처장관에게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 처리에관한법률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1993년 11월분 전국도서신고현황

종합평가

가. 전년동월비

전년도 11월분 9백48만1천1백48㎡보다 3.5%(32만7천8백87㎡)증가 한 9백80만9천35㎡의 실적을 보였다.

나. 전년동기비

전년도 11월 누계 1억31만9천3백51㎡보다 12.0%(1천2백7

만9백92㎡)증가한 1억1천2백39만3백43㎡의 실적을 보였다.

다. 전월비

전월 10월분 1천1백74만5천1백6㎡보다 16.5% (1백93만6천71㎡)감소한 9백80만9천35㎡의 실적을 보였다.

全國圖書申告 概況(地域別 増減 狀態)

(연면적기준~전년동월비)

(단위/㎡)

구 분		1992년도	1993년도	증 감	비율(%)
증가지역	서울	2,171,824	2,462,490	290,666	13.4%
	광주	191,152	312,874	121,722	63.7%
	대전	269,586	297,855	28,269	10.5%
	경기	1,232,080	1,702,745	470,665	38.2%
	강원	215,919	256,293	40,374	18.7%
	충북	222,321	393,572	171,251	77.0%
	전북	293,461	574,210	280,749	95.7%
	전남	217,677	340,801	123,124	56.6%
	경북	535,355	747,851	212,496	39.7%
	경남	579,280	1,019,661	440,381	76.0%
	제주	57,770	76,545	18,775	32.5%
감소지역	부산	2,102,248	431,302	(1,670,946)	-79.5%
	대구	571,411	508,028	(63,383)	-11.1%
	인천	356,076	287,797	(68,279)	-19.2%
	충남	464,988	397,011	(67,977)	-14.6%
합 계		9,481,148	9,809,035	327,887	3.5%

全國圖書申告 概況(用途別 増減 狀態)

(연면적기준)

(단위/㎡)

용 도 별	10월분	11월분	증 감	비율(%)
단 독 주 택	526,316	496,203	(30,113)	-5.7%
다 세 대 주 택	177,234	242,540	65,306	36.8%
연 립 주 택	784,585	98,383	(686,202)	-87.5%
아 파 트	5,532,731	4,052,274	(1,480,457)	-26.8%
근린생활시설	1,237,055	1,394,526	157,471	12.7%
종 교 시 설	88,162	76,333	(11,829)	-13.4%
의 료 시 설	19,771	39,276	19,505	98.7%
교육연구시설	182,950	332,363	149,413	81.7%
업 무 시 설	316,040	560,002	243,962	77.2%
숙 박 시 설	109,001	148,679	39,678	36.4%
공 장	1,186,959	1,066,535	(120,424)	-10.1%
기 타	1,584,302	1,301,921	(282,381)	-17.8%
계	11,745,106	9,809,035	(1,936,071)	-16.5%

市·道別 前年對比 全國圖書申告 概況(11月分)

구분	1992년			1993년			대 비			연면적 비율 (%)	비 고
	건 수	동 수	연 면 적	건 수	동 수	연 면 적	건 수	동 수	연 면 적		
서울	2,884	2,926	2,171,824	871	1,166	2,462,490	(2,013)	(1,760)	290,666	13.4%	
부산	1,011	1,499	2,102,248	872	934	431,302	(139)	(565)	(1,670,946)	-79.5%	
대구	859	988	571,411	1,018	1,517	508,028	159	529	(63,383)	-11.1%	
인천	584	599	356,076	353	357	287,797	(231)	(242)	(68,279)	-19.2%	
광주	243	269	191,152	276	334	312,874	33	65	121,722	63.7%	
대전	353	397	269,586	354	382	297,855	1	(15)	28,269	10.5%	
경기	1,253	1,508	1,232,080	1,541	1,980	1,702,745	288	472	470,665	38.2%	
강원	441	531	215,919	568	712	256,293	127	181	40,374	18.7%	
충북	472	619	222,321	585	752	393,572	113	133	171,251	77.0%	
충남	397	412	464,988	535	568	397,011	138	156	(67,977)	-14.6%	
전북	322	360	293,461	332	395	574,210	10	35	280,749	95.7%	
전남	379	465	217,677	535	753	340,801	156	288	123,124	56.6%	
경북	507	720	535,355	683	1,024	747,851	176	304	212,496	39.7%	
경남	830	1,109	579,280	1,128	1,525	1,019,661	298	416	440,381	76.0%	
제주	153	166	57,770	176	219	76,545	23	53	18,775	32.5%	
합 계	10,688	12,568	9,481,148	9,827	12,618	9,809,035	(861)	50	327,887	3.5%	()=마이너스

市・道別 前年對比 全國 圖書申告 概況(1~11月 合計分)

구분 건축사회	1992년			1993년			대 비			연면적 비율 (%)	비 고
	건 수	동 수	연 면 적	건 수	동 수	연 면 적	건 수	동 수	연 면 적		
서 울	26,612	27,882	18,335,928	26,611	27,919	17,579,472	(1)	37	(756,456)	-4.1%	
부 산	14,012	18,156	10,709,015	10,222	13,237	11,625,140	(3,790)	(4,919)	916,125	8.6%	
대 구	9,266	10,075	4,227,760	13,214	17,287	7,070,595	3,948	7,212	2,842,835	67.2%	
인 천	4,851	6,084	4,598,334	6,307	6,542	5,444,549	1,456	458	846,215	18.4%	
광 주	3,551	4,128	2,888,965	3,324	3,827	2,962,165	(227)	(301)	73,200	2.5%	
대 전	4,401	5,074	4,661,372	3,889	4,286	3,660,811	(512)	(788)	(1,000,561)	-21.5%	
경 기	18,211	23,593	21,916,469	20,458	26,562	24,825,421	2,247	2,969	2,908,952	13.3%	
강 원	6,429	7,518	3,703,192	6,710	8,022	3,543,641	281	504	(159,551)	-4.3%	
충 북	7,345	8,995	3,371,427	7,136	8,990	4,400,285	(209)	(5)	1,028,858	30.5%	
충 남	5,471	5,843	4,137,285	5,537	5,945	5,806,419	66	102	1,669,134	40.3%	
전 북	4,525	5,198	3,148,970	3,893	4,696	4,270,900	(632)	(502)	1,121,930	35.6%	
전 남	5,900	7,461	3,637,329	5,347	7,163	3,480,017	(553)	(298)	(157,312)	-4.3%	
경 북	8,118	10,045	6,152,584	8,241	11,811	7,613,382	123	1,766	1,460,798	23.7%	
경 남	11,682	14,600	7,932,285	12,138	15,551	9,193,918	456	951	1,261,633	15.9%	
제 주	2,502	2,784	898,436	2,027	2,426	913,628	(475)	(358)	15,192	1.7%	
합 계	132,876	157,436	100,319,351	135,054	164,264	112,390,343	2,178	6,828	12,070,992	12.0%	()=마이너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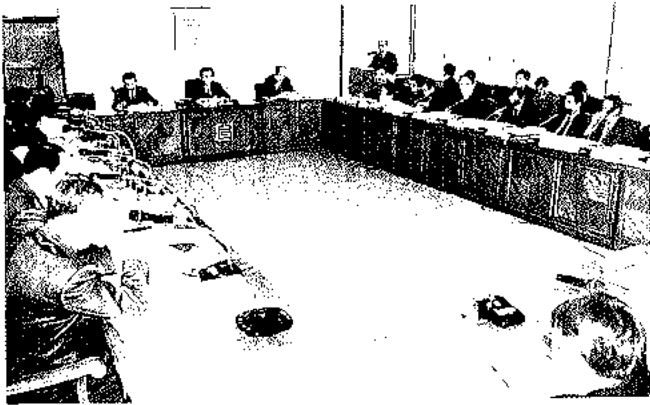
用途別 前年對比 全國 圖書申告 概況(11月分)

구분 용도별	1992년			1993년			대 비			연면적 비율 (%)	비 고
	건 수	동 수	연 면 적	건 수	동 수	연 면 적	건 수	동 수	연 면 적		
단 독 주 택	3,574	3,726	684,611	2,580	2,868	496,203	(994)	(858)	(188,408)	-27.5%	
다 세 대 주 택	628	664	310,239	432	550	242,540	(196)	(114)	(67,699)	-21.8%	
연 립 주 택	44	58	47,468	74	82	98,383	30	24	50,915	107.3%	
아 파 트	114	675	2,869,574	150	894	4,052,274	36	219	1,182,700	41.2%	
근린생활시설	3,918	4,099	1,736,104	3,272	3,443	1,394,526	(646)	(656)	(341,578)	-19.7%	
종 교 시 설	106	120	66,922	128	149	76,333	22	29	9,411	14.1%	
의 료 시 설	17	18	79,513	15	16	39,276	(2)	(2)	(40,237)	-50.6%	
교육연구시설	158	226	649,918	144	175	332,363	(14)	(51)	(317,555)	-48.9%	
업 무 시 설	125	134	984,566	132	149	560,002	7	15	(424,564)	-43.1%	
숙 박 시 설	30	30	78,512	119	142	148,679	89	112	70,167	89.4%	
공 장	671	1,076	996,954	823	1,275	1,066,535	152	199	69,581	7.0%	
기 타	1,303	1,742	976,767	1,958	2,875	1,301,921	655	1,133	325,154	33.3%	
합 계	10,688	12,568	9,481,148	9,827	12,618	9,809,035	(861)	50	327,887	3.5%	()=마이너스

用途別 前年對比 全國 圖書申告 概況(1~11月 合計分)

구분 용도별	1992년			1993년			대 비			연면적 비율 (%)	비 고
	건 수	동 수	연 면 적	건 수	동 수	연 면 적	건 수	동 수	연 면 적		
단 독 주 택	53,875	56,263	8,884,650	49,281	51,996	9,646,316	(4,594)	(4,267)	761,666	8.6%	
다 세 대 주 택	5,436	7,053	2,585,349	9,679	10,669	4,813,285	4,243	3,616	2,227,936	86.2%	
연 립 주 택	570	754	914,514	762	1,610	2,314,816	192	856	1,400,302	153.1%	
아 파 트	1,738	9,689	42,844,771	2,057	10,435	46,446,374	319	746	3,601,603	8.4%	
근린생활시설	43,509	45,574	15,329,755	40,771	43,206	15,603,558	(2,738)	(2,368)	273,803	1.8%	
종 교 시 설	1,339	1,591	802,326	1,323	1,563	1,054,993	(16)	(28)	252,667	31.5%	
의 료 시 설	190	214	639,286	180	190	310,357	(10)	(24)	(328,929)	-51.5%	
교육연구시설	1,578	2,008	3,761,404	1,434	1,825	3,413,306	(144)	(183)	(348,098)	-9.3%	
업 무 시 설	1,757	1,933	5,235,685	1,455	1,606	3,999,410	(302)	(327)	(1,236,275)	-23.6%	
숙 박 시 설	398	416	642,000	1,234	1,319	1,673,762	836	903	1,031,762	160.7%	
공 장	7,450	12,216	9,566,578	8,458	13,662	10,651,543	1,008	1,446	1,084,965	11.3%	
기 타	15,036	19,725	9,113,033	18,420	26,183	12,462,623	3,384	6,458	3,349,590	36.8%	
합 계	132,876	157,436	100,319,351	135,054	164,264	112,390,343	2,178	6,828	12,070,992	12.0%	()=마이너스

93년도 제11회 이사회 개최



제11회 이사회 전경

본협회에서는 지난해 12월 28일(화) 오후 3시부터 대회의실에서 제11회 이사회를 개최했다.

어날 열린 회의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부의사항

- 제1호의 안 : 94년도 위원회 조직 및 위원장 선임의 건
—연금연구위원회/이춘상, 윤리위원회/이일운, 편찬위원회/이준현, 홍보위원회/이중관, 연수위원회/김택성, 국제위원회/김지덕, 건축사시험위원회/김안곤, 21세기준비위원회/조성룡, 법제위원회/이종만, 건축설계위원회/김광욱, 건축감리위원회/김규태, 건축설비위원회/박용한, 개건축심의위원회/전상백
- 제2호의 안 : 협회 직제 개편(안) 승인의 건
—정관 개정(안) 건설부 승인 후 검토기로 함.
- 제3호의 안 : 실적회비 산출기준 조정시행에 따른 유예기간 설정 승인의 건

—원안대로 승인

- 제4호의 안 : 설계, 공사감리 표준계약서 및 건축사업부 기준용역 발주승인의 건
—이사3인(김택성, 김광욱, 김규태)에게 위임하되, 용역기관 및 용역금액에 대해서는 차기회의에서 추진하기로 함.

◇협의사항

- 제1호 : 건축사연금기금 관리 전환 지침(안)에 대한 협의
—외부기관의 회계감사 실시 후 보완하기로 함.
- 제2호 : 설계 공사감리 분리시행제도 폐지에 따른 감리 연금회비 납입방안에 대한 협의
—94년 1월1일부터 설계, 공사감리제도를 분리시행하기에는 시간상으로 촉박하며, 건축설계 및 공사감리 표준계약서 역시 전문기관에 용역의뢰하기 위하여 과업지시서를 작성중에 있으므로 이 제도의 시행시기를 연기해 주도록 건설부에 건의하기로 함.

94년도 제1회 이사회 개최

본 협회는 지난 1월 21일(금) 오후 2시부터 대회의실에서 94년도 제1회 이사회를 개최했다.

오웅석회장의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는 경제규제완화조치점검 등 보고사항에 이은 전회회의록 승인(원안대로 승인)과 부의사항 의결의 순으로 진행됐다.

주요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부의사항

- 제1호의 안 : 건축사업부 및 보수기준 개정에 따른 회비 수납방침 승인의 건
—원안대로 승인함.
- 제2호의 안 : 건축물의 설계 · 공사감리 기본업무인 · 월수 직선보간표 승인의 건
—원안대로 승인함.
- 제3호의 안 : 보수규정개정(안) 승인의 건
—본 협회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면허)소지자에게 다음과 같은 수당을 매월 지급하되, 현금출납담당에게 지급되는 수당에 대해서는 시 · 도건축사회의 출납수당 지급현황을 파악한 후

차기 이사회에서 결정하기로 함.

건축사 및 기술사—500,000원,
건축 및 시험재료기사1급—100,000원
건축 및 시험재료기사2급—50,000원
기능사(원동기, 위험물, 전기)—50,000원

- 제4호의 안 : 위원회 조직 및 위원선임 승인의 건
—위원회조직은 원안대로 승인하되, 미확정 분과위원장 및 위원선임에 대해서는 회장과 위원장이 협의, 결정하도록 위임함.

◇협의사항

- 제1호 : 감리점검반 설치방안에 대한 협의
—위법건축 및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감리점검반을 설치 운영키로 하되, 세부운영지침에 대해서는 건축감리위원장인 김규태이사가 시 · 도건축사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작성하기로 함.

건축사업부 및 보수기준 현실화

본 협회는 그동안 건축물의 대형화, 고층화 추세에 따라 건축물의 질적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건축사가 수행하는 설계 및 공사감리업무를 구체적으로 조정하고, 이에 따른 보수기준을 현실화 하는 등 현행 기준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건축사업부 및 보수기준 개정작업을 추진한 결과, 그 개정(안)을 지난해 12월 31일 건설부가 인가, 공고함으로써 올해 1월1일부터 건축사가 건축물의 설계

공사감리업무 등을 위탁받았을 때 건축주에게 청구할 수 있는 건축사업부 및 보수기준이 인상 조정, 현실화 됐다.

또한, 산정기준을 종전 보수요율방식에서 실비보상방식으로 전환하였으며, 건축물의 종별구분도 종전 5단계에서 난이도에 따라 단순, 보통, 복잡 등 3단계로 구분, 단순화하는 등 건축사 보수액 및 산정기준이 현실화됐다. (자세한 내용은 본지 100쪽 참조)

광주건축사회, 귀순건축가 김영성씨 초청 강연회 개최

광주직할시건축사회(회장 김덕수)에서는 지난해 12월14일 오후 2시부터 광주건축사회관 5층 회의실에서 귀순건축가 김영성씨를 초청, 강연회를 개최했다.

관내 건축사를 비롯한 건축관련인 1백여명이 참석한 이번 강연회는 김영성씨의 「사회주의 건축변천사 및 북한의 건축양식」의 주제 강연에 이은 질의응답으로 진행됐다.

귀순 건축가 김영성 초청 강연회

광주직할시 건축사회, 한국건축가협회 광주직할시지회



김영성초청
강연회 광경



강연회 광경

경기도건축사회, 「건축행정쇄신 건설화」 간담회 개최

경기도 건축사회(회장 송인창)에서는 지난 1월13일 오전 11시부터 한국마사회 2층 회의실에서 회원 및 건축사보와 관내 건축담당공무원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안영준 의정부 분회장의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건축사업무에 대한 실무교육 및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일선 건축행정분야의 제도적 문제점을 파악, 개선하고, 건축민원처리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건축행정 건설화 대책 추진의 일환으로 개최됐다.

경북건축사회, 건축CAD 교육 실시

경북건축사회(회장 김태웅)에서는 지난해 12월6일부터 24일까지 3주간에 걸쳐 경북건축사회 회의실에서 회원업무의 능률

향상과 정확한 설계도서의 작성 및 건축사보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건축사보를 대상으로 실습위주의 CAD교육을 실시했다.

건축계 소식

건축 설계경기(현상설계)지침 새로 제정

건설부는 지난 1월5일 공공기관인 건축 설계경기(현상설계) 시행 방식을 통일하기 위한 지침을 새로 제정, 발표했다.

이 운영지침에 따르면 그동안 설계경기에 의한 발주방식이 일반화되고 활성화되는 추세에 따라 일부 편법과 형식에 치우친 파행운동을 막고, 통일된 지침하에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새로 제정, 시행키로 했다.

이 지침은 2월1일부터 시행되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설계방식은 참가대상자의 범위에 따라 일반공개경기, 제한공개경기, 지명초청경기로 구분한다.

◇시행기관은 참가자격, 추진일

정, 설계조건, 입상내용 등 세부 프로그램을 일간지에 공고한다.

◇참가 설계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출도서를 최소한으로 억제하고 설계기간은 최소한 3개월 이상 부여한다.

◇심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설계경기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되, 그 반수 이상은 건축사 등 건축설계전문가를 위촉, 설계내용 위주로 평가 되도록 한다.

◇심사위원의 명단, 심사과정 및 심사결과를 공개한다.

◇공모안은 일정기간 전시한 후 응모자에게 반환한다.

건축가협회, 금요토론회 개최

한국건축가협회(회장 장석웅)에서는 지난해 12월17일 한국여성건축가협회(회장 김화련) 주관으로 금요토론회를 개최했다.

「탁아시설의 확대방안과 건축

설계 방향에 관한 연구」란 주제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최경숙 교수(인덕공전 건축과)의 주제 발표에 이은 토론자의 열띤 토론으로 진행됐다.

민예총, 겨울 건축특강 개최

민족예술인총연합회에서는 지난 1월10일부터 오는 2월26일까지 문예아카데미 겨울특강이 진행된다.

이 강좌는 매년 봄, 가을의 16주 정규강좌와 여름, 겨울의 6주 특강으로 진행되는데, 이번 겨울 건축특강은 「도시건축 이론에 대하여-이상과 현실」이란 주제하에 개최되며, 강연제목과 발표자는 다음과 같다.

◇에티엔느 푸리에트, 앙겔스/정기용(기용건축대표)
-1월 15일

◇게오르크 기마이, 알도로시/

정기용-1월 22일

◇루이스뎀포트, 패트릭게데스/양우현(동선대 교수)

-1월 29일

◇캐빈린치, 제인야콥/양우현
-2월 5일

◇알베르티, 카밀로지테/김익중(한남대 교수)-2월 19일

◇르코르뷔지에/김익중-2월 26일

◇종합토론/정기용, 양우현, 김익중-2월 26일

※문의: 민예총 사무국(전화: 746-6471, 743-5872~3)

「'93창원시 건축대상제」 수상작 발표

창원시는 시민의 건축문화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건축설계자의 창의력 유도로 창조적인 건축문화 창달을 꾀하고자 제정, 실시한 '93창원시 건축대상의 수상작을 지난해 12월 10일 발표했다.

총 20작품이 출품된 이 대상에서는 서진건축(허정도)이 설계한 팔용동 주민회관이 대상을 차지하는 등 5개작품이 수상했다.

수상작 현황은 다음과 같다.

◇대상/팔용동 주민회관
(서진건축-허정도)

◇금상/한국은행 창원지점
(간삼건축-지순)

◇은상/박순원주택
(한성건축-박성기)

국민연금관리공단 경남회관
(인터플랜-조대회)

◇장려상/박충렬주택
(가원건축-이정호)

■알 림

본지의 지난해(94년 1월호) 특집 "우리 건축교육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내용중 김정신, 김형우 교수가 집필한 원고중 일부

■정정합니다

본지의 지난해(94년 1월호) 특집내용중 송효상님의 "누가 우리의 교육을 열악하다 하는

자료는 필자가 대한건축학회에서 조사, 분석한 자료를 인용한 것임을 밝혀드립니다.

가!" 제목의 원고중 "82쪽 8~29줄"을 "83쪽 34줄"로 옮겼습니다.

제8차 아시아건축사대회 개최

제6차 아시아건축사대회가 올해는 12월12일부터 5일간 필리핀 수도 마닐라에서 개최된다.

이번 대회는 「건축교육의 혁신」이란 주제로 개최되어 과거와 현재의 아시아건축양상과 그에 따른 교육풍토를 개조명하는 계기를 마련, 새로운 시대에 도전하는 전문인으로서 도약할 수 있는 혁신 방향을 설정하고, 아시아 지역의 교육균형을 통해 전통적 가치와 새로운 기술발전을 접목시키기 위한 제안에 대한 결의가 있을 것이다.

이 회의를 주재할 ARCASIA는 아시아 각 국가의 건축사 연합회 이사회로 각 국가의 건축사협회장을 대표로 한 건축사협회 회장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각국의 협회가 회원으로 된 아시아 지역만의 국제조직으로 현재 15개국이 가입돼 있다.

건축설계를 직업으로 하는 아시아 지역의 전문 건축사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들이 이사회의를 통해 협의되며, 아울러 이번 여행관광단은 필리핀, 호주, 뉴질랜드 3개국을 동시에 건축투어할 계획으로 있다.

이번 대회에 많은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가를 바라며, 참가를 희망하는 회원은 본 협회 총무부(담당 민홍기, 581-5711~4)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일정

○1994년 12월 12일 월요일

09:00~12:00 제15차 아카시아 이사회의 개최식

12:00~13:00 중식

13:00~17:00 제15차 아카시아 이사회의(연차회의)

○1994년 12월 13일 화요일

09:00~12:00 제15차 아카시아 이사회의(연차회의)

12:00~13:00 중식

13:00~17:00 제15차 아카시아 이사회의(연차회의)

○1994년 12월 14일 수요일

08:00~17:00 등록(모든 참가국 건축사 등록)

08:00~12:00 관광

12:00~14:00 중식

14:00~18:00 제6차 아시아건축사대회 개최식

19:00~23:00 환영파티

○1994년 12월 15일 목요일

08:00~17:00 등록

09:00~12:00 연구논문 발표회

12:00~13:00 중식

13:00~17:00 건축교육개혁 연구발표 및 워크숍

19:00~23:00 우정의 밤 행사

○1994년 12월 16일 금요일

08:00~17:00 등록

09:00~12:00 연구논문 발표회

12:00~13:00 중식

13:00~17:00 건축교육의 혁신에 대한 공표

19:00~23:00 만찬

무 지 보 역 타 설 공 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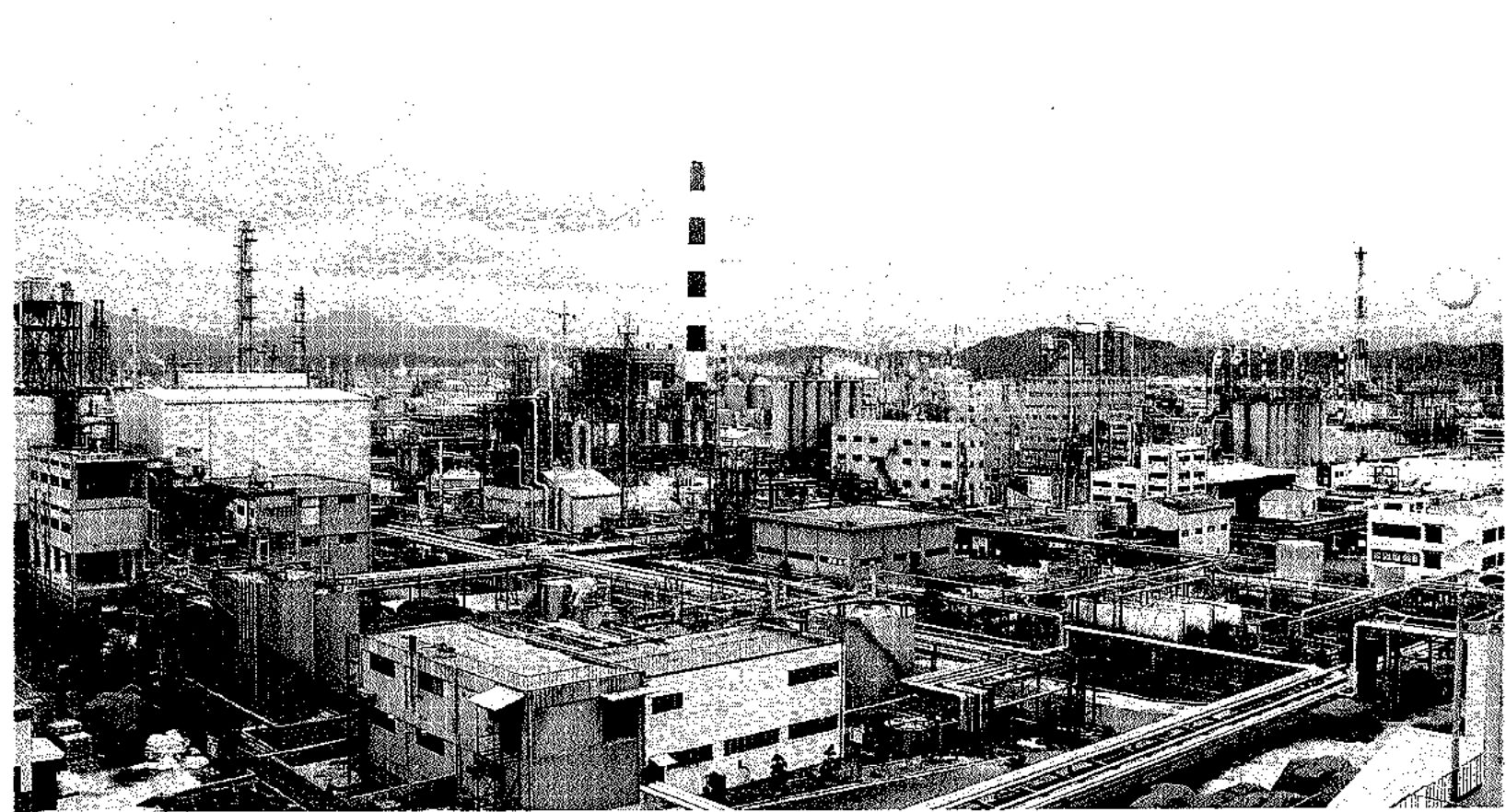
무지보 역타설(N.S.T.D.)공법은 기존의 모든 토류벽을 이용하여 건축지하 구조물을 축조하는 공법으로 종래 역타설 공법의 굳은암층, 선굴착, Con'c 타설용 거푸집 받치, 동바리, 중량(작업 방해)가 필요하지 않고 토류벽의 얹지말뚝(H-PILE) 또는 건축구조물의 철골기둥(STEEL COLUMN)에 기 제작된 철골통(강재거푸집)을 설치하여 상, 하향 자유자재 이동하며 Con'c를 타설하는 공법이며 철골통이 강기둥(STEEL COLUMN)의 LIFT BLOCK에 의하여 매달려 있으므로 지하굴토 작업공간이 확보되어 굴토작업의 연속성이 보장됩니다.

종래 TOP DOWN 공법과 비교하면 30%의 공기 절감과 중장비 작업대기, 동바리, 거푸집 설치해체, 소운반품 등의 삭감이 15%의 공사비를 절감합니다.

무지보 역타설 (N.S.T.D.)공법은 공사비, 공사기간, 지하굴토 공사로 인할주변 피해 원인을 억제하는 획기적인 공법으로 적극적인 활용을 기대하며 건축기술인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주식회사 정 님

TEL: (02)594-8100 / 9



한남화학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주)미원유화

**21세기 석유화학산업—
미원유화가 선도하겠습니다.**

국내 유화산업 발전에 앞장서온 한남화학—
한남화학이 세계시장을 무대로
21세기 초우량기업이 되고자
94년 1월 1일부터 미원유화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미원유화는 첨단 신소재 개발과
최상의 서비스 실현에 더욱 주력하여
미래 석유화학산업을 이끌어하겠습니다.



주식회사 미원유화